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북한
인권
백서

2021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북한 인권 백서

2021

북한인권백서 2021

발행일: 2021년 5월
저자: 오경섭·홍석훈·홍제환·정은미·이지순
발행인: 고유환
편집인: 인도협력연구실
등록: 제2-02361호 (97.4.23)
주소: (06578)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02-2023-8000 (팩시밀리) 02-2023-8295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아미고디자인 (02-517-5043)
인쇄: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02-2269-9917)

I S B N 979-11-6589-043-8 93340

가격 21,000원

©통일연구원, 2021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02-734-6818 ·사무실: 02-394-0337



북한 인권 백서

2021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북한 인권 백서

2021

오경섭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홍석훈 인도협력연구실 연구위원

홍제환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정은미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이지순 인도협력연구실 부연구위원

홍예선 연구지원/인도협력연구실 연구원

C O N T E N T S

요 약	14
-----	----

❖ Chapter I

발간목적 및 연구방법

1 발간목적	26
2 연구방법	28

❖ Chapter II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1 생명권	38
2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52
3 강제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	63
4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73
5 피구금자의 권리	83
6 이동 및 거주에 대한 자유에 대한 권리	111
7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127
8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153
9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166
10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180
11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200
12 참정권	207
13 평등권	219

Chapter III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태

1 식량권	236
2 건강권	258
3 노동권	276
4 교육권	291
5 사회보장권	306

Chapter IV

취약계층

1 여성	322
2 아동	353
3 장애인	377

Chapter V

주요사안

1 정치범수용소	406
2 해외 탈북자	418
3 해외 노동자	445
4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465

C O N T E N T S _ 표

〈표 I-1〉	북한의 국제인권조약 비준·가입 현황	29
〈표 I-2〉	2020년 심층면접대상자 인구학적 통계	32
〈표 II-1〉	자유권규약 제6조	38
〈표 II-2〉	형법상 사형대상범죄와 그 구성요건 및 법정형	42
〈표 II-3〉	아편재배 및 마약제조 관련 북한 형법 규정 변화	43
〈표 II-4〉	2007년 형법부칙과 2010년 형법부칙상 사형대상범죄 및 법정형	44
〈표 II-5〉	마약 및 한국 녹화물 관련 사형 사례	47
〈표 II-6〉	자유권규약 제7조	52
〈표 II-7〉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의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사례	55
〈표 II-8〉	공개총살 사례	59
〈표 II-9〉	자유권규약 제8조	63
〈표 II-10〉	노동단련형 사례	66
〈표 II-11〉	행정처벌법상 노동교양처벌기관 관련 규정	67
〈표 II-12〉	노동교양처벌 사례	68
〈표 II-13〉	집결소 강제노동 사례	71
〈표 II-14〉	자유권규약 제9조	74
〈표 II-15〉	수사·예심·기소기간 및 피의자 구속기간	80
〈표 II-16〉	자유권규약 제10조	83
〈표 II-17〉	교화소 내 폭행 및 가혹행위 관련 증언	93
〈표 II-18〉	교화소 내 영양·위생·의료 상황 관련 증언	94
〈표 II-19〉	노동단련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 관련 증언	96
〈표 II-20〉	노동단련대 내 영양·위생·의료 상황 관련 증언	97
〈표 II-21〉	집결소 내 폭행 및 가혹행위 관련 증언	98
〈표 II-22〉	집결소 내 영양·위생·의료 상황 관련 증언	99

〈표Ⅱ-23〉	구류장 내 폭행 및 가혹행위 관련 증언	102
〈표Ⅱ-24〉	구류장 내 영양·위생·의료 상황 관련 증언	104
〈표Ⅱ-25〉	교화소 내 과도한 노동 실태	108
〈표Ⅱ-26〉	자유권규약 제12조	111
〈표Ⅱ-27〉	여행증 관련 사례	116
〈표Ⅱ-28〉	강제추방 관련 사례	121
〈표Ⅱ-29〉	자유권규약 제14조	128
〈표Ⅱ-30〉	북한의 외국인 재판과 판결 집행	147
〈표Ⅱ-31〉	영사협약상의 영사접견권 규정	149
〈표Ⅱ-32〉	자유권규약 제17조	153
〈표Ⅱ-33〉	주민감시 및 사회통제 사례	160
〈표Ⅱ-34〉	불법 가택수사를 당한 사례	164
〈표Ⅱ-35〉	자유권규약 제18조	166
〈표Ⅱ-36〉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	169
〈표Ⅱ-37〉	10대 원칙 관련 사례	172
〈표Ⅱ-38〉	종교의 자유 침해 사례	176
〈표Ⅱ-39〉	자유권규약 제19조	180
〈표Ⅱ-40〉	한국·외국 출판물 접촉 및 단속 사례	187
〈표Ⅱ-41〉	퇴폐적인 문화 반입 및 유포 관련 북한 형법 규정 변화	189
〈표Ⅱ-42〉	녹화물 시청 및 처벌 실태	193
〈표Ⅱ-43〉	휴대전화 단속 및 처벌 실태	197
〈표Ⅱ-44〉	자유권규약 제21조, 제22조	201
〈표Ⅱ-45〉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침해 사례	205
〈표Ⅱ-46〉	자유권규약 제25조	207
〈표Ⅱ-47〉	참정권 침해 사례	216

〈표Ⅱ-48〉	차별금지에 관한 국제인권규범	220
〈표Ⅱ-49〉	북한의 주민 계층 및 성분 분류	222
〈표Ⅲ-1〉	사회권규약 제11조	236
〈표Ⅲ-2〉	최근 식량수령 실태	245
〈표Ⅲ-3〉	대북제재 이후 기업소 배급이 악화된 사례	249
〈표Ⅲ-4〉	기업소(공장)의 배급이 양호한 사례	250
〈표Ⅲ-5〉	군부대 배급이 잘 이뤄진 사례	253
〈표Ⅲ-6〉	사회권규약 제12조	258
〈표Ⅲ-7〉	의료서비스 비용의 환자부담 사례	262
〈표Ⅲ-8〉	돈이 없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사례	264
〈표Ⅲ-9〉	계층별 의료서비스 접근성 불균형 실태	265
〈표Ⅲ-10〉	사회권규약 제6조, 제7조, 제8조	276
〈표Ⅲ-11〉	북한의 임금 지급 실태	285
〈표Ⅲ-12〉	사회권규약 제13조	291
〈표Ⅲ-13〉	교육 시설과 환경 실태	295
〈표Ⅲ-14〉	교원 처우 실태	296
〈표Ⅲ-15〉	무상교육 실태	298
〈표Ⅲ-16〉	취약계층 아동들의 교육 접근성	300
〈표Ⅲ-17〉	북한 초중등학교 교과목	303
〈표Ⅲ-18〉	사회보장 관련 법규	307
〈표Ⅲ-19〉	부족한 연료연금 관련 증언	308
〈표Ⅳ-1〉	남존여비 고정관념과 성역할의 정형화 관련 증언	326
〈표Ⅳ-2〉	강제송환 임신여성의 인권침해 사례	342
〈표Ⅳ-3〉	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	354
〈표Ⅳ-4〉	김일성·김정일·김정은 관련 과목 연간 교육시간	364

〈표Ⅳ-5〉	정치행사 및 체제선전 동원 사례	366
〈표Ⅳ-6〉	학생들의 노동동원 실태	370
〈표Ⅳ-7〉	장애인의 성별 및 연령별 비율(2016년 기준)	381
〈표Ⅳ-8〉	영예군인 공장 운영 실태	385
〈표Ⅳ-9〉	일반 장애인 공장 운영 실태	386
〈표Ⅳ-10〉	왜소증 장애인 격리 관련 증언	393
〈표Ⅳ-11〉	왜소증 장애인 비격리 관련 증언	394
〈표Ⅴ-1〉	정치범수용소 관리 및 운영 현황	408
〈표Ⅴ-2〉	탈북과정 중 총기사용 사례	421
〈표Ⅴ-3〉	난민 자격 해외 탈북자 수	422
〈표Ⅴ-4〉	탈북자 처벌 사례	434
〈표Ⅴ-5〉	탈북자 가족 처벌 사례	438
〈표Ⅴ-6〉	신분증 압수 주체 관련 증언	462
〈표Ⅴ-7〉	이산가족 등록 현황	466
〈표Ⅴ-8〉	이산가족 생존자 현황	467
〈표Ⅴ-9〉	생존 이산가족의 80세 이상 비율	467
〈표Ⅴ-10〉	이산가족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체 조사 현황	468
〈표Ⅴ-11〉	제네바 제4협약 가족권 관련 규정	468
〈표Ⅴ-12〉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현황	470
〈표Ⅴ-13〉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현황	472
〈표Ⅴ-14〉	이산가족 북한 주민에 대한 차별 사례	473
〈표Ⅴ-15〉	전시납북자 규모	474
〈표Ⅴ-16〉	전시납북자 처리 현황	475
〈표Ⅴ-17〉	전후납북자 현황(추정)	476
〈표Ⅴ-18〉	연도별 납북역류자 현황	476

〈표 V-19〉	귀환 납북자 현황	477
〈표 V-20〉	납북피해자 연도별 피해위로금 등 신청·접수 결과	477
〈표 V-21〉	납북피해자 피해위로금 등 지급결정 현황	478
〈표 V-22〉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478
〈표 V-23〉	제네바 제4협약 강제이송 및 억류 관련 규정	480
〈표 V-24〉	연도별 귀환 국군포로 현황	486
〈표 V-25〉	국군포로(사망자 포함) 출신지 현황	486
〈표 V-26〉	생존 국군포로 연령 현황	487
〈표 V-27〉	사망 국군포로 연령 현황	487
〈표 V-28〉	제네바 제3협약 강제노동 관련 규정	491
〈표 V-29〉	국군포로와 가족들에 대한 차별 사례	492
〈표 V-30〉	귀환 국군포로(사망자 포함)의 거주지 현황	493
〈표 V-31〉	생존 국군포로의 거주지 현황	493

C O N T E N T S _ 그림

〈그림II-1〉 교화소 위치	85
〈그림II-2〉 위성사진으로 본 전거리교화소	86
〈그림II-3〉 전거리교화소 3과 내부	87
〈그림II-4〉 위성사진으로 본 개천교화소	88
〈그림IV-1〉 북한의 농아학교와 맹아학교	358
〈그림V-1〉 정치범수용소 위치	408

요약

Chapter I

발간목적 및 연구방법

1996년부터 매년 발간되어 온 통일연구원 북한인권백서는 북한인권 상황을 객관적으로 조사 및 분석함으로써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북한인권백서 2021』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가장 최근까지 북한에 머물렀던 50명에 대한 심층면접 결과를 반영하였다. 『북한인권백서 2021』은 북한인권 침해상황을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태, 취약계층, 주요사안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Chapter II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북한에서는 여전히 주민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 2020년 조사에서도 2019년 조사결과와 상반되는 증언은 수집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 마약 거래행위와 한국 녹화물 시청 및 유포행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에 대한 사형 사례가 다수 수집

되었다. 구체적인 형 집행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성경 소지, 선전물 유통, 미신행위를 이유로 처형된 사례도 많다. 수집된 사례가 초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북한 형법상 사형대상범죄의 폭넓은 규정과 빈번한 집행은 자유권규약에 명시된 당사국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과거에 비해 공개처형의 빈도가 줄어들고 있으며, 실제로 공개처형 현장에 주민이 동원되는 경우도 줄어들고 있다는 증언도 있다. 이것이 실제로 공개처형이 줄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비공개 사형집행이나 비밀 즉결처형이 늘어났기 때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북한 당국은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류시설에 수감되는 기간 동안 구타 및 가혹행위를 자행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이 있었다. 북한에서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 규정과는 다르게 사건 처리과정에서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가 여전히 발생하는 것으로 수집되었다. 또한 국경지역 집결소에서 수용자들에게 매우 강도 높은 노동을 부과하고 있다는 증언이 다수 수집되었는데, 경미한 범죄에 대한 노동단련형 부과, 행정처벌법 및 인민보안단속법에 따른 노동교양처벌 부과, 집결소 수용자들에 대한 노동 강요는 강제노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에서는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체포·억류가 지속되고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수사단계에서는 체포의 이유와 피의사실 고지에 관한 규정이 없고, 법관에 의한 영장실질심사제도도 없다. 2020년 조사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에 대한 증언은 수집되지 않았다.

북한주민들에 의하면 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구류장 등 구금시설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영양·위생·의료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북한 주민들의 이동 및 거주 자유 또한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는데, 여행증 제도 및 구간별 단속, 강제추방, 특정지역 접근 제한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탈북 관련 강제추방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는데, 추방자를 수용할 수 있는 당국의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탈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북한에서는 재판의 독립 부인, 불공정하고 형식적인 재판 운영, 유사사법제도의 운영을 통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변호권 침해, 상소권 침해, 외국인 억류자에 대한 임의적인 영사접견권 제한도 지속되고 있다. 일부 북한이 탈주민들은 사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인민반, 생활총화 등을 통한 주민의 일상적 감시, 행방불명자·탈북자·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이 있는 주민, 밀수하는 주민, 해외파견자 가족에 대한 감시와 도청, 불법 가택수사 및 통신 간섭 등을 통한 사생활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 영장 없이 불시에 이루어지는 불법 가택수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하는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북한 주민의 권리 의식 신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다수의 증언자들은 김정은 정권에서 불법적 가택수색이 공안기관 종사자들의 금품 편취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등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있다.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침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침해,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침해도 지속되고 있다. 이 권리들의 통제 및 불인정은 북한체제를 떠받치는 핵심 요인들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2020년 조사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심해 성경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지거나 처형을 당하며, 점쟁이나 무당과 같은 미신행위자들에게 무거운 형벌이 내려졌다는 증언이 다수 수집되었다. 다만 김정은의 통치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당의 유일적령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에 대한 강조와 교육은 다소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와 휴대전화 보급률이 현저히 높아짐에 따라 외부 문화 콘텐츠 또한 디지털 기기를 통해 유입되고 있다. 영상 및 음원, 국제전화 및 문자메시지에 대한 당국의 검열과 단속은 일상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이다. 휴대전화를 소지한 학생들이 늘어남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들의 전화를 단속하는 사례도 수집되었다. 단속에 걸렸을 경우 뇌물을 통해 형기를 낮추거나 처벌을 면했다는 증언도 다수 수집되었다. 김정은 체제 이후 녹화물 및 손전화(휴대전화) 단속·처벌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15년 형법을 개정하여 비법적인 국제통신죄(제222조)를 신설함으로써 국경지역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였다. 2019년 조사에서는 한국 녹화물과 한국과의 전화연결이 단속에 걸릴 경우 뇌물로 해결되지 않고 처벌로 이어지고 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유의미한 증언은 수집되지 않았

으며, 해당 권리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단기간 내 확대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2019년에 개최된 두 차례(최고인민회의와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를 경험하여 참정권 실태에 대한 최신 사례들이 2020년 조사에서 다수 수집되었다. 대다수의 증언자들은 후보자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선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거 참여의 자율적 선택이 보장되지 않으며, 후보자에 대한 찬반 의사 표시를 위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지 않고, 자유 의지에 의한 입후보가 불가하여 참정권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

평등권은 성분 및 계층 분류에 의한 차별을 통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입당, 사회진출, 직장 배치, 간부 등용 및 승진, 진학, 군입대, 거주지 배치 등에서 성분과 토대에 의한 차별을 받는다. 김정은 집권 이후 성분과 토대보다는 경제력으로 인해 차별 현상이 일부 완화되고 있으나, 이는 성분과 토대에 따른 기존의 차별이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경제적 요소에 의한 새로운 차별과 불평등이 중첩되어 차별구조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Chapter III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태

북한의 식량 사정은 다소 나아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 부족 상태에서 벗어나

지 못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식량 증산을 위해 포전담당책임제를 도입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불공정한 운영과 영농물자의 부족, 과도한 생산계획 등으로 인해 농업 증산 및 농장원의 식량권 개선에는 별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당간부 등 일부 특권층들은 정상적인 배급을 받고 있지만 교원 및 의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를 비롯해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배급을 거의 받지 못하거나 배급량이 실수요에 크게 미달한다. 게다가 강화된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기존에 정상적으로 배급받던 주민들 역시 배급이 중단되거나 줄어드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상당수의 주민들은 장사와 소토지 농사 등 개인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고 있으며, 일부 전문직 종사자들은 뇌물 수수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등 식량권의 위기가 부정부패와 연계되고 있다.

북한은 무상치료제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 의료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는 환자가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또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은 계층에 따라서 차별이 존재한다. 당 간부가 이용하는 별도의 의료시설을 마련한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 주민들은 아플 경우 병원에 가기보다는 개인 의사를 찾아가거나 직접 약을 사서 복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오진, 의료과실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예방접종을 비롯한 예방의학적 조치들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결핵 등의 감염병 예방 측면에서는 여전히 취약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권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무리배치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직업선택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또한 노동자들이 유리한 노동조건에서 노동할 권리,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권리 또한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노동조합을 결성·가입·탈퇴할 수 있는 자유 역시 주어지지 않아, 노동자들은 불합리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처우 개선을 요구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한편, 북한 당국은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은 교육 여건이 향상되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인 교육 조건과 환경이 지역별·학종별로 균등하게 향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무상교육제도를 표방하고 있지만 교육 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교사들의 보수를 부담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생활고 때문에 학업중단이 발생하고 있어,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당국의 관심이 필요하다.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는 법적인 측면에서는 잘 갖추어져 있으나, 실제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연로연금은 매우 적은 금액만 지급되고 있어 고령층의 생계유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며, 가정의 경제활동을 담당하던 구성원이 갑작스럽게 질병, 사망 등의 상황에 직면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경제적 위기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질병 혹은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주민에 대한 지원도 매우 미흡하며, 산재노동자와 그 가족 역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Chapter IV

취약계층

북한의 모성보건 환경은 많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가임기 여성의 건강 상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임이나 낙태 과정에서 가임기 여성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기도 하다. 또 여전히 많은 여성이 임신 기간 내내 적절한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시에도 무료라는 규정과 달리 실제로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일부 여성이 병원이라는 안전한 환경 대신 집에서 출산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동의 인권상황은 아동의 성장발달에 필요한 영양 및 보건의료 부문에서 당국의 지속적인 관심 아래 일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문화와 여가, 체육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아동의 발달권 증진을 도모했다. 그러나 교육목표와 부합하지 않는 정치사상 교육과 군사훈련이 필수 교육과정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과도한 노동동원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 19’)로 인해 외부 지원과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중단됨에 따라 인도적 지원을 받던 아동들은 취약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북한은 2019년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장애 건축설계기준을 채택하는 등 장애인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했다. 또한 북한은 2019년 제3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과정에서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유엔 회원국들의 권고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장애인들이 처해 있는 인권 상황은 여전히 열악하다.

Chapter V

주요사안

2020년 조사에서는 한국과의 통화, 한국 영화 시청, 마약, 인신매매, 북한 실상 녹화물을 외국으로 유포하는 경우 등 과거와 비슷한 이유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는 사례가 수집되었다. 또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인식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들어보기만 했다는 증언부터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 등의 구체적인 이미지를 가진 증언자도 있었다. 다만, 정치범수용소 수용자들의 생활 실상에 관련된 증언은 수집되지 않고 있다. 결국, 기존의 상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가정한다면 수용자들은 자유권규약에서 인정되는 여러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

북한 당국은 탈북을 막기 위해 국경통제 및 탈북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탈북 과정에서 적발되거나 강제송환된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2018년에 이어 2019년 조사에서도 탈북하다 적발된 북한 주민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 거액의 뇌물을 지불했다는 증언이 다수 수집되었다. 2020년 조사에서도 해외 파견 노동자의 탈북 관련한 처벌도 강화된 것으로 수집되었으며, 탈북자의 가족들에 대한 감시 및 단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해외 파견 노동자는 토대가 좋고 뇌물을 바칠 수 있는 자들에게 선발기회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해외 파견 노

동자들은 현지에서 장기간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 중 상당 부분을 상납금 형태로 국가에 납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를 중간관리자에게 착복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파견과정에서 생긴 부채로 인해 해외 노동자 중 상당수가 강제노동에 처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는 국제인도법이 적용되는 인도주의 사안인 동시에 국제인권법이 적용되는 인권문제의 성격도 가진다. 2020년에는 이산가족 간의 교류와 상봉이 당국 차원에서는 전무하였고, 민간 차원에서 서신교환만 일부 이루어졌다. 이산가족 신청자는 대부분이 초고령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상봉행사가 어렵다면, 인도적 차원에서 화상상봉이나 서신교류를 할 수 있도록 남북한의 적극적인 합의와 대처가 필요하다.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1



Chapter I

발간목적 및 연구방법

1. 발간목적
 2. 연구방법
-

1

발간목적

북한은 세계에서 인권 상황이 가장 열악한 국가 중 하나이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구 유엔 인권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였고, 유엔 인권위원회를 승계한 유엔 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였다.¹ 유엔 총회에서도 2005년 이래 매년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함으로써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² 2013년 3월에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이하 'COI')가 설치되었다. 1년간의 조사활동을 통해 COI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북한에서 자행되어 왔으며, 이 같은 인권 침해는 많은 경우 인도에 반한 죄(crimes

1_유엔 인권이사회 2020. 6. 22., UN Doc. A/HRC/RES/43/25 (2020).

2_유엔 총회 2020. 12. 28., UN Doc. A/RES/75/90 (2020).

against humanity)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15년 6월에는 COI 보고서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의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서울에 설치되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연속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였고, 2020년 12월 11일 북한인권 문제를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하였다.³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논의는 향후 지속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객관적 실태조사와 분석은 필수적이다.

통일연구원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관련 자료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수집 및 관리하고 있으며 1996년부터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본 백서는 북한인권 상황을 객관적으로 조사 및 분석하고 북한인권 문제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룸으로써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3_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020.12.11., 북한인권을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

2

연구방법

본 백서는 국제인권규범의 틀에서 북한인권 상황을 조망한다. 북한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자유권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규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하 ‘아동권리협약’) 및 아동의 매매·성매매·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이하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이하 ‘장애인권리협약’)의 당사국이다.

표 | -1 북한의 국제인권조약 비준·가입 현황

조약명	상태	가입/비준일 (통보/기탁일 기준)	발효일	비고
자유권규약	가입 ⁴	1981.9.14.	1981.12.14.	
사회권규약	가입	1981.9.14.	1981.12.14.	
아동권리협약	비준	1990.9.21.	1990.10.21.	
아동의 매매·성매매· 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2014.11.10.	2014.12.10.	
여성차별철폐협약	가입	2001.2.27.	2001.3.29.	제29조 제1항 유보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2016.12.6.	2017.1.5.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에 따르면, 조약의 당사국은 조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제26조). 한편,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성과 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보편적 기준을 담고 있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은 유엔 총회의 결의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못한다. 그러나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이 오늘날 국제관습법으로 발전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국제인권조약들은 조약에 열거된 권리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과 사법은 법을 기초로 행해지기 때문에 입법은 조약의 이행 차원에서 취해지는 조치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각 조약에서 인정되는 개별 권리가 어느 정도로 존중되고 보장되고

4. 북한은 1997년 유엔 인권소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가 최초로 채택된 데 항의하여 자유권규약 탈퇴를 통고하였다. 그러나 유엔 사무총장은 1997년 9월 23일 북한에 보낸 비망록(aide-mémoire)을 통해 규약의 모든 당사국이 동의하지 않는 한 규약으로부터의 탈퇴는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후 자연스럽게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당사국으로서의 지위 및 의무를 인정하였다.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북한의 관련 법규를 검토한 후 관련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 법규상의 규정 자체가 조약상의 규정에 배치된다면 조약이 성실하게 이행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북한 법규상의 규정이 조약상의 규정과 부합하나 실제로는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조약이 성실하게 이행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 같은 분석은 북한이 조약의 당사국으로서 자신의 국제적 의무를 어느 정도 이행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제정한 법규를 어느 정도 준수하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특정 국가의 인권 실태는 기본적으로 해당 국가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통해 파악해야 한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북한 당국에 지속적으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아직까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의 인권 실태를 독립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내부 정보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 통일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여 『북한인권백서』를 작성하고 있다.

첫째, 통일연구원은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가장 중요한 실태 조사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인권백서 2021』은 북한이탈주민 중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적 배경(거주 지역, 구금시설 유경험자 등)을 고려하여 가장 최근까지 북한에 머물렀던 50명을 선정하여 심층면접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였다. 심층면접은 통일연구원에서 작성한 구조화된 질문지로 진행하였다. 심층면접 질문지는 국제인권규약에서 명시한 권리항목들과 유엔에서 채택하는 북한인권

결의에서 지적하는 인권침해 항목들을 참고해서 작성하였다.

이번에 심층면접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수는 전년도에 비해 줄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국내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일부 인권침해 조사 항목은 새로운 증언을 거의 수집하지 못했다. 새로운 증언을 확보하지 못한 권리항목은 2019년의 조사내용을 그대로 수록한다. 2020년 심층면접을 실시한 50명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I -2 2020년 심층면접대상자 인구학적 통계

항목	세부항목	사례수(명)	비율(%)
성별	남성	16	32
	여성	34	68
	소계	50	100
최종 탈북연도	2014년 이전	6	12
	2015년	1	2
	2017년	2	4
	2018년	1	2
	2019년	38	76
	2020년	2	4
	소계	50	100
남한 입국일자	2015년	1	2
	2016년	1	2
	2018년	1	2
	2019년	11	22
	2020년	36	72
	소계	50	100
연령대	10대(2011~2002년)	1	2
	20대(2001~1992년)	18	36
	30대(1991~1982년)	8	16
	40대(1981~1972년)	13	26
	50대(1971~1962년)	9	18
	60대 이상(~1961년)	1	2
	소계	50	100
도강 횟수	1회	46	92
	2회	4	8
	소계	50	100
최종 거주지	강원도	1	2
	남포특별시	1	2
	양강도	27	54
	평안남도	2	4
	평양직할시	5	10
	함경남도	4	8
	함경북도	8	16
	평안북도	0	0
	자강도	0	0
	황해남도	0	0
	황해북도	0	0
	무응답	2	4
	소계	50	100

통일연구원은 심층면접에 응한 북한이탈주민에게 고유번호(NKHR2020000000)를 부여하여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으며, 면접조사 내용을 『북한인권백서』에 인용할 경우 증언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고유번호로 명기하였다.⁵ 입국 초기 단계 심층면접과 별도로 특정 권리 또는 주제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면접조사가 필요할 경우 특별조사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면접조사는 “북한이탈주민 ○○○, 연월일, 서울에서 면접”으로 출처를 명기하였다. 이외에도 북한이탈주민의 수기 등도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둘째, 북한 법규 등 일부 입수한 북한의 공식 문건을 활용하였다.

셋째, 북한 당국이 유엔 인권기구에 제출한 보고서, 유엔 자유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및 사회권위원회(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의 일반논평(General Comment)과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관련 자료, COI 보고서 등 유엔의 북한인권 관련 문서를 활용하였다.

넷째,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 유엔난민기구(UHCR), 한국 통계청 등 각종 기구들의 조사 및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다섯째, 필요할 경우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등 북한의 주요 매체를 활용하였다.

5_ 또한 신원이 특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 중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으로 처리하였다.

여섯째, 국내외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 논문 등을 활용하여 비교·검증하였다.

일곱째, 필요할 경우 북한인권 관련 내용을 보도한 국내외 주요 매체를 활용하였다.

『북한인권백서 2021』의 집필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0년에 조사된 내용을 증점적으로 기술한다. 다만, 경향성을 제시하거나 실태 변화 추이를 제시하는 등 기존 조사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020년 이전 조사 결과를 그대로 유지한다. 또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주제를 다루는 경우에도 2020년 이전 조사 결과를 활용한다.

둘째, 최근의 북한인권 상황에 주목하기 위하여 조사년도 기준 5년 이내에 발생한 사건을 조사 및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즉, 2020년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북한인권백서 2021』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사건을 다룬다. 다만, 2016년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도 특히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포함시킨다.

셋째,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북한이탈 주민이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건에 대한 증언을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내용과 같이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증언은 예외적으로 이를 수록하되, 득문(得聞)사항임을 명시한다.

넷째, 북한 법규의 경우 입수된 것 중 가장 최근 법규를 인용한다. 다만,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 법규를 인용하되, 구 법규임을 명시한다.

다섯째, 북한 기관명의 경우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기재한다. 다만, 심층면접대상자가 변경 전의 기관명을 언급한 경우에는 그대로 기재하며, 일부 용어는 예외적으로 개편 전·후의 사항을 혼재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국가보위성이 공식명칭이지만 보위부를 같이 사용한다.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1

Chapter II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1. 생명권
2.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3. 강제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
4.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5. 피구금자의 권리
6. 이동 및 거주에 대한 자유에 대한 권리
7.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8.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9.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10.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2. 참정권
13. 평등권

1

생명권

생명권이 효과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인간의 모든 다른 권리들도 의미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생명권은 최고의 권리이며, 모든 인권의 기본이다. 이에 보편적 및 지역적 차원의 주요 국제인권문서들은 예외 없이 생명권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실체적 권리에 관한 규정 중 첫 번째 규정인 제3조에서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유권규약도 실체적 권리에 관한 규정 중 첫 번째 규정인 제6조에서 생명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표 II-1 자유권규약 제6조

제1항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2항	사형을 폐지하지 아니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 사형은 범죄 당시의 현행법에 따라서 또한 이 규약의 규정과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법률에 의하여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될 수 있다. 이 형벌은 권한 있는 법원이 내린 최종판결에 의해서서만 집행될 수 있다.
제3항	생명의 박탈이 집단살해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의 당사국이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의 규정에 따라 지고 있는 의무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위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한다.
제4항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누구나 사면 또는 감형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사형선고에 대한 일반사면, 특별사면 또는 감형은 모든 경우에 부여될 수 있다.
제5항	사형선고는 18세 미만의 자가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되며, 또한 임신부에 대하여 집행되어서는 아니된다.
제6항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사형의 폐지를 지연시키거나 또는 방해하기 위하여 원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이하에서는 생명권과 관련한 북한의 상황을 주요 쟁점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초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

자유권규약 제6조 제1항은 생명권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면서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자의적 생명 박탈로부터의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국가기관에 의한 생명의 박탈은 가장 심각한 문제이므로 이를 법률로써 엄격하게 통제하고 제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⁶ ‘자의적’의 의미는 다소 모호하나, ‘불법적’보다는 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당사국의 국내법 하에서는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생명 박탈의 경우라도 자유권규약 제6조 하에서는 ‘자의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결국 ‘자의적’ 생명 박탈의 금지는 생명이 불합리하게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자유권규약 제6조의 규정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자유권규약 제14조,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규정한 자유권규약 제15조에 따라 초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이 금지된다.

북한에서는 특히 구금시설 내에서 초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이 종종 이루어진다. 2019년 조사에서도 2016년 4월 함흥교화소에서 도주 중 검거된 수감자에 대해 (재판절차 없이) 공개총살을 집행하였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증언자는 처형

6_ 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6: Article 6(Right to Life)," April 30, 1982, para. 3.

목격을 원하지 않는 수감자들은 불참 시 출소일을 늦추겠다고 위협하였고, 총살 후에는 시체를 땅에 놓고 돌을 던지라 강요했으며, 이후 남성 수감자들이 시체를 화장했다고 한다.⁷ 북한이 탈주민 ○○○는 2013년 전거리교화소에서 남성 수형자 2명이 싸우다가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교화소 측이 모든 수형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떠한 재판절차도 없이 가해자를 총살하였다고 한다.⁸ 이런 식의 처형은 주로 피구금자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고 이들을 통제하려는 목적을 지니므로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한편, 교화소에서도 공개재판을 통해 사형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으나,⁹ 이러한 재판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재판 유무는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않을 수 있다.

구금 중 도주 등의 맥락이 아닌 일반적인 맥락에서 초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재판절차를 아예 거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형식적으로는 재판절차를 거치더라도 피고인에게 부여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장성택, 현영철, 리용호, 최영진, 김용진 등 고위급 인사에 대한 처형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러한 처형은 대체로 초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7_ NKHR2019000043 2019-07-01.

8_ NKHR2017000044 2017-07-03.

9_ NKHR2015000031 2015-02-10.

나. 범죄에 대한 광범위한 사형 적용

자유권규약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사형을 폐지하지 않고 있는 국가의 경우 사형은 범죄 당시의 현행법에 따라서, 그리고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부과될 수 있다. 여기에서의 ‘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장 중한 범죄”는 표현이 모호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생명권에 대한 일반논평에서 사형이 아주 예외적인 조치라는 의미를 지니도록 “가장 중한 범죄”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하였다.¹⁰ 또한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여러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반역, 해적행위, 강도, 유독하거나 위협한 물질의 거래, 마약 관련 범죄, 병역 회피, 재산범죄, 경제범죄, 간통, 부패, 정치범죄 등은 “가장 중한 범죄”가 아니므로 이러한 범죄들에 대해서 사형을 부과하는 것은 규약 제6조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고의적인 살인이나 살인미수, 고의적인 중상해 정도가 “가장 중한 범죄”에 해당할 것이다.

현행 북한 형법(2015)¹¹은 국가전복음모죄, 테로(테러)죄, 조국반역죄, 파괴·압해죄, 민족반역죄, 비법아편재배·마약제조죄, 마약밀수·거래죄, 고의적중살인죄에 대하여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사형대상범죄와 그 구성요건 및 법정형은 <표II-2>와 같다.

10_ 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6: Article 6(Right to Life)," April 30, 1982, para. 7.

11_ 2015년 7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78호로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이하 ‘형법’).

표 II-2 형법상 사형대상범죄와 그 구성요건 및 법정형

국가전복음모죄 (제60조)	반국가목적으로 정변, 폭동, 시위, 습격에 참가하였거나 음모에 가담한 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
테로(테러)죄 (제61조)	반국가목적으로 간부들과 인민들을 살인, 납치하였거나 그들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
조국반역죄 (제63조)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것과 같은 조국반역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
파괴, 암해죄 (제65조)	반국가목적 파괴, 암해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
민족반역죄 (제68조)	조선민족으로서 제국주의의 지배 밑에서 북한 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을 탄압하였거나 제국주의자들에게 조선민족의 이익을 팔아먹은 민족반역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
비법아편재배, 마약제조죄 (제206조)	대량의 아편을 재배하였거나 마약을 제조한 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마약 밀수, 거래죄 (제208조)	대량의 마약을 밀수·거래한 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고의적중살인죄 (제266조)	탐욕, 질투 그 밖의 비열한 동기에서 사람을 고의로 죽인 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특히, 2013년 형법부터 아편재배 및 마약제조 관련 범죄에 대하여 사형이 법정형으로 추가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 불법적으로 아편을 재배하거나 마약을 제조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II-3 아편재배 및 마약제조 관련 북한 형법 규정 변화

2012년 형법	제206조(비법아편재배, 마약, 독성물질제조죄) 비법적으로 아편을 재배하였거나 마약, 독성물질을 제조한 자는 1년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악행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2013년 형법	제206조(비법아편재배, 마약, 독성물질제조죄) 비법적으로 아편을 재배하였거나 마약, 독성물질을 제조한 자는 1년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아편을 재배하였거나 마약, 독성물질을 제조한 자는 5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아편을 재배하였거나 마약을 제조한 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항의 행위가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2015년 형법	제206조(비법아편재배, 마약제조죄) 비법적으로 아편을 재배하였거나 마약을 제조한 자는 1년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아편을 재배하였거나 마약을 제조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아편을 재배하였거나 마약을 제조한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항의 행위가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한편, 북한은 2007년 형법부칙(일반범죄)이라고 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일반범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였는데, 이 중 일부 범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으로 사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 형만이 규정되어 있었다. 더 나아가 형법부칙은 ‘한 범죄자가 범한 여러 범죄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겁거나 개준성이 전혀 없는 경우’¹²에도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

12_ 여기서 ‘개준성’은 ‘개전(改悛)’, 즉 행실이나 태도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고쳐먹는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2017년에 입수한 2010년 개정 형법부칙(일반범죄)에 따르면, 북한은 형법부칙상 사형대상범죄의 수를 축소하는 한편, 사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만 규정되어 있던 범죄에 대하여 무기노동교화형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된다.¹³ 사형대상범죄의 수가 줄고 사형과 자유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되었다는 점에서 다소나마 규정상의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2007년 형법부칙(일반범죄) 및 2010년 형법부칙(일반범죄)상의 사형대상범죄 및 법정형은 <표II-4>와 같다.

연도	범죄명	법정형
2007년 형법부칙	극히 무거운 형태의 전투기술기재·군사시설 고의적파손죄 (제1조)	사형
	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약취죄 (제2조)	사형 및 재산몰수형
	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강도죄 (제3조)	사형 및 재산몰수형
	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 고의적파손죄 (제4조)	사형
	극히 무거운 형태의 화폐위조죄 (제5조)	사형
	극히 무거운 형태의 귀금속·유색금속 밀수·밀매죄 (제6조)	사형 및 재산몰수형
	국가자원밀수죄 (제8조)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
	극히 무거운 형태의 마약 밀수·밀매죄 (제11조)	사형 및 재산몰수형
	특히 무거운 형태의 교화인 도주죄 (제14조)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13_ 2010년 10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52호 및 지시 제44호로 수정보충.

	특히 무거운 형태의 불량자행위죄 (제17조)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비법적인 영업죄 (제18조)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특히 무거운 형태의 고의적중상해죄 (제19조)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극히 무거운 형태의 유괴죄 (제20조)	사형
	특히 무거운 형태의 강간죄 (제21조)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극히 무거운 형태의 개인재산강도죄 (제22조)	사형 및 재산몰수형
	예외적으로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 (제23조)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2010년 형법부칙	극히 무거운 형태의 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군사시설 고의적파손죄 (제1조)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약취죄 (제2조)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
	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강도죄 (제3조)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
	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고의적파손죄 (제4조)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극히 무거운 형태의 화폐위조죄 (제5조)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극히 무거운 형태의 귀금속·유색금속 밀수·밀매죄 (제6조)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
	특히 무거운 형태의 교화인도주죄 (제7조)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극히 무거운 형태의 유괴죄 (제8조)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특히 무거운 형태의 강간죄 (제9조)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극히 무거운 형태의 개인재산강도죄 (제10조)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
	예외적으로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 (제11조)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북한에서 사형 관련 규정의 구체적 적용 실태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사형집행을 직접 목격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의 조사에서는 마약 거래, 한국 녹화물 시청·유포, 살인, 국가재산 약취·강도·파손, 인신매매, 강간 등을 이유로 사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증언들이 다수 있었다.

최근 몇 년간 미신행위, 마약 거래행위와 한국 녹화물 시청·유포행위에 대한 사형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조사에서도 관련 증언들이 수집되었다. 북한이탈주민 ○○○은 2018~2019년에 미신행위에 대한 정책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공개처형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득문했다고 증언하였다.¹⁴ 양강도 ○○시에서 거주하다 2018년 탈북한 50대 여성은 최근 빙두(마약, 이하 ‘빙두’) 때문에 총살되는 경우가 많으며, 공개 처형보다는 비공개처형으로 진행한다라고 증언하였다.¹⁵ 북한이탈주민 ○○○은 2014년 함경북도 청진시 광장에서 한국 드라마 유포 및 마약 밀매 죄목으로 1명이 공개총살되었으며, 본인은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학교에서 동영상으로 이를 돌려 보았다고 증언하였다.¹⁶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 ○○○은 2014년 양강도 혜산시 연봉동에서 남성 2명이 각각 한국 영화 유포와 성매매 장소 제공의 이유로 총살된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¹⁷ 마약이 북한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이 한

14_NKHR202000011 2020-06-15.

15_NKHR2019000022 2019-05-07.

16_NKHR2019000084 2019-10-05.

17_NKHR2019000103 2019-11-09.

국 녹화물을 시청·유포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북한 당국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5 마약 및 한국 녹화물 관련 사형 사례

증언내용	증언번호
2014년 함경북도 청진시 광장에서 한국드라마 유포 및 마약 밀매 죄목으로 1명이 총살되었음.	NKHR2019000084 2019-10-05
2014년 양강도 해산시 연봉동에서 남성 2명이 각각 한국 영화 유포와 성매매 장소 제공의 이유로 총살되었음.	NKHR2019000103 2019-11-09
2014년 10월 양강도 해산시 연봉동 비행장에서 남성 3명이 한국 녹화물 유포행위로 총살되었음.	NKHR2018000098 2018-10-01
2015년 3월 평안남도 평성시에서 30~40대 남성 5명이 한국 녹화물 시청과 마약 거래 혐의로 공개재판을 받은 후 총살되었음.	NKHR2017000083 2017-09-25
2017년 양강도 해산시 연봉동 비행장에서 남성 1명이 한국 녹화물 유포행위로 총살되었음.	NKHR2018000114 2018-10-13
2017년 2월 황해남도 벽성군에서 20여 명이 한국 녹화물 시청·유포행위와 마약 거래를 이유로 총살되었음.	NKHR2017000073 2017-08-28

구체적인 형 집행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나, 반국가범죄에 해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수집되었다. 북한이탈주민 ○○○은 2015년 대동강 자라공장 지배인과 당비서가 공개총살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하였다. 이들은 1,000여 명의 주민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반당적 행위, 수령의 유흔·교시 말살, 부정부패 등의 이유로 처형됐다고 증언하였다.¹⁸ 북한이탈주민 ○○○은 2015년 황해북도 길성포항에서 기독교 전파를 이유로 여성 2명이, 반체제 피라 유통을 이유로 여성 1명이 공개재판을 받은 후 처형되었다고 증언하였다.¹⁹ 증언자에 따르면, 당시 1,000명~2,000명 정도 군중이 모여 있었고, 황해북도의 주

18_NKHR2020000018 2020-07-04.

19_NKHR2019000054 2019-07-29.

변 군(軍)과 보안원, 보위원들이 올라왔으며, 인민반장이나 비서급, 공장기업소 및 인민반 인원 등은 모두 참석해야 했다고 한다. 또한 재판소 인원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재판 및 처형 전반을 국가보위성에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례는 초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에 해당할 수 있다. 이외에도 2018년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70세 여성이 미신행위 및 미신행위 전파를 이유로 수성천 다리 밑에서 총살당한 것을 득문했다는 증언,²⁰ 2018년 평안남도 평성에서도 성경 소지를 이유로 2명이 공개처형 당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²¹

사회일탈 및 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한 공개적인 사형집행에 대한 증언들도 지속적으로 수집되고 있다.²² 2019년 조사에서는 2014년 양강도 혜산시에서 아동납치사건에 연루된 범죄자가 공개총살되었다는 소식을 득문했다는 증언,²³ 2014년~2015년경 성매매 업소를 차려놓고 포주 역할을 했던 여성이 처형되었다는 소식을 득문했다는 증언,²⁴ 2017년~2018년경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살인죄로 공개처형이 이뤄졌다는 소식을 득문했다는 증언²⁵이 수집되었다. 2018년 1월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온성군당 책임비서 아들(6세)을 운전수 애인이 살해

20_NKHR2019000071 2019-08-26.

21_NKHR2019000024 2019-05-18.

22_2018년 조사에서는 2017년 양강도 혜산시에서 남성 1명이 한국과의 전화 사용 및 한국행 알선을 이유로 총살된 사례(NKHR2018000114 2018-10-13)와 2017년 12월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여성 1명이 옆집 아이를 살해하였다는 이유로 총살된 사례(NKHR2018000107 2018-10-01)가 수집되었다.

23_NKHR2019000047 2019-07-01.

24_NKHR2019000054 2019-07-29.

25_NKHR2019000038 2019-06-15.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가해 여성을 군중 10만 명 앞에서 총살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상당히 많은 사람 앞에서 해당 여성이 총살되었다.²⁶ 북한이탈주민 ○○○은 2018년 2~3월경 함경북도 온성군 종성구에 있는 장생이라는 군부대 마을에서 남성 1명이 살인죄로 총살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하였다.²⁷

최근에는 공개처형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도 수집되었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2012~2013년 공개총살을 목격한 이후 공개처형이 없었다고 증언하였다.²⁸ 또 북한이탈주민 ○○○은 2013년 이후부터 전국적으로 공개총살이 없어졌다고 증언하였다. 그는 공개처형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김정운의 명령으로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하였다.²⁹ 이러한 증언에도 불구하고, 2020년 조사에서도 2015년과 2018년에 공개처형이 이루어졌다는 증언을 확보하였다.

다.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사형선고와 임신부에 대한 사형집행

자유권규약 제6조 제5항은 18세 미만의 자가 범한 범죄에 대한 사형선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임신부에 대한 사형집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유의할 점은 미성년 범죄에 대한

26_NKHR2019000111 2019-11-18.

27_NKHR2019000118 2019-11-30.

28_NKHR2020000005 2020-05-15.

29_NKHR2020000032 2019-08-04.

사형선고 금지의 경우 사형선고 시가 아닌 범죄행위 시의 연령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북한 현행 형법(2015)은 제29조에서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살에 이르지 못한자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줄수 없으며 임신 여성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집행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법조치의 측면에서는 자유권규약 제6조 제5항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조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준수되지 않은 사례도 일부 확인되었으나, 최근 조사에서는 미성년자 범죄의 사형선고와 임신부의 사형집행 사례는 수집되지 않고 있다.

라. 기타 생명권 침해

자유권규약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고유한 생명권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생명권에 대한 일반논평에서 생명권이 지나치게 좁은 의미로 해석되는 경향에 대한 우려를 표한 후, “고유한 생명권”이란 표현은 제한적인 방법으로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으며 생명권의 보호는 각국의 적극적 조치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하였다.³⁰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북한 내에는 생명권과 관련한 여러 침해 사안들이 존재한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북한의 구금시설에서는 폭행 및 가혹행위, 열악한 영양·위생·의료 상황 등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II. 시

30_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6: Article 6(Right to Life)," April 30, 1982, para. 5.

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5. 피구금자의 권리’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마. 평가

북한에서는 여전히 주민들의 생명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 북한이 형법에 더해 형법부칙(일반범죄)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법에 의하여 사형대상범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에 따라 실제로 빈번하게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사형을 폐지하지 않은 국가에서의 사형은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선고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자유권규약 제6조 제2항에 반하는 것이다. 2020년 조사에서도 마약 거래행위와 한국 녹화물 시청·유포행위, 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한 사형 사례가 수집되었다. 구체적인 형 집행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성경 소지, 선전물 유통, 미신행위를 이유로 처형된 사례도 수집되었다. 수집된 사례가 초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북한 형법상 사형대상범죄의 폭넓은 규정과 빈번한 집행은 자유권규약에 명시된 당사국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2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5조는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적·정신적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해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권규약의 경우 제7조에서도 세계인권선언과 유사하게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자유권규약 제7조는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고 규정한 자유권규약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보완된다.

표 II-6 자유권규약 제7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

인권의 보편적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적·정신적 완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와 관련한 북한의 상황을 주요 쟁점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의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고문방지협약’)에 따르면, 고문은 공무원이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라고 정의한다. 특정한 목적, 고의, 극심한 고통과 같은 고문의 핵심 요소 중 일부가 결여되어 고문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의 가혹한 고통의 부과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에 해당한다. ‘고문’과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 간 개념 구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나, 어느 경우이든지 자유권규약 제7조 위반임이 분명하다.

북한은 형법(2015) 및 형사소송법(2016)³¹에서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북한 형법 제242조는 “법일군이 비법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심문하였거나 사건을 과장, 날조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고 규정 한 후, 이러한 행위를 공모하였거나 사람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부당한 형사책임을 추궁받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

31_2016년 8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45호로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이하 ‘형사소송법’).

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제6조에서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제37조에서 “강압, 유도의 방법으로 받은 피심자, 피소자의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66조에는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강제적인 방법으로 범죄를 인정시키거나 진술을 유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25조에서는 증인은 심문에서 위협이나 강제로부터 보호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2019년 제3차 UPR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서 북한은 “과학적 정확성, 객관성 및 공평성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한다고 밝히고 있다.³²

그러나 북한에서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피의자 심문기간에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조사방식 중 하나로 고문이 확립되어 있을 만큼 고문이 만연해 있다.³³ 전년도에 이어 2020년 조사에서도 구금시설 내 구타와 가혹행위와 관련하여 고정자세 강요 및 구타를 경험 내지 목격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³⁴ 사회안전성³⁵ 산하의 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및 구류장 등에서의 구타 및 가혹행위 증언이 나타나고 있어, 여전히 보위성-안전성 산하 시설 모두 구타와

32_ UN Doc. A/HRC/WG.6/33/PRK/1 (2019), para. 27.

33_ 한동호 외, 『북한 내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서울: 통일연구원, 2016), p. 8.

34_ NKHR2020000032 2020-08-04; NKHR2020000035 2020-09-05; NKHR2020000020 2020-07-04.

35_ 2020년 5월 인민보안성에서 사회안전성으로 개칭함. 이하에서는 개정명칭을 반영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민보안성, 보안원의 명칭 표기를 유지한다.

가혹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³⁶

반면, 최근 구류시설에 수감되었지만 구타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증언도 수집되었으며 검찰소에서는 구타를 할 수 없고, 보안서의 인권유린 상황을 감시한다는 증언도 있었다.³⁷ 2017년 5월 양강도 헤산시 보위성 구류장에 있었던 증언자는 당시 인권유린으로 북한이 타격을 받았을 때라 가혹행위를 경험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³⁸

표 II-7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의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사례

증언내용	증언번호
2015년 함경북도 온성군 거주 시 한국 북한물 유포 관련 조사를 받았는데, 예심원이 잠도 재우지 않았으며, 고정자세를 강요하였고, 직각자 등으로 다리를 때렸음.	NKHR2017000042 2017-07-03
2015년 송금브로커를 하다 감청에 걸려 양강도 헤산시 보위부에서 조사를 받은 20대 여성은, 조사 과정에서 심한 구타를 당하였음.	NKHR2018000049 2018-06-04
2015년 2월 인신매매 혐의로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 과정에서 수시로 구타를 당하였음. 몽둥이로 맞아 온몸이 멍이 들고 살이 다 썩어서 나간 사람들도 있었다고 증언함.	NKHR2018000074 2018-07-30
2015년 10월 양강도 헤산시 보위부에서 불법 휴대전화 사용을 이유로 15일간 조사를 받았는데, 4명의 보위원이 주먹, 발 등으로 수시로 폭행을 가하였음.	NKHR2018000127 2018-11-19
2016년 1월 평안남도 평성시 보위부에서 딸의 탈북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사원이 머리채를 잡아 벽에 찰고 다리를 발로 찼음.	NKHR2017000059 2017-07-31
2016년 5월 양강도 삼지연시 보위부 집결소에서 8일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한국행 기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하였음. 아버지는 폭행을 당한 정도가 더 심각해 치아가 다 나가고 눈이 터질 정도였음.	NKHR2018000129 2018-11-19
2016년 8월 양강도 삼지연시 보위부에서 5일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비법월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3일 동안 죽도록 맞았음.	NKHR2017000057 2017-07-31
2016년 9월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에서 15일간 조사를 받았으며, 실토하고 인정할 때까지 보위원에게 구타를 당하였음. 당시 의자에 족쇄가 채워진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진술을 거부하면 보위원이 의자를 발로 걷어차 의자와 함께 넘어졌다고 증언함.	NKHR2018000109 2018-10-06

36_NKHR2020000020 2020-07-04.

37_NKHR2020000024 2020-07-06; NKHR2020000032 2020-08-04.

38_NKHR2020000027 2020-07-06.

증언내용	증언번호
2016년 11월 함경북도 회령시 보위부에 30일간 수용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몽둥이, 직각자 등으로 심한 폭행을 당하였음.	NKHR2017000054 2017-07-31
2016년 11월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에 20일간 수용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시로 구타를 당하였음. 보위부 사람들은 빙두를 한 상태에서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음.	NKHR2017000099 2017-10-23
2018년 탈북 시도 중 검거되어 2019년 초 약 4개월 반 정도 집결소와 구금시설에 수용되었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을 잘 하지 않는다 고 매를 맞고 고정자세를 했음.	NKHR2020000020 2020-07-04
2019년 4월부터 구금시설에서 근무한 한 증언자는 재판 전 구금시설에 수감된 사람은 '형 대기 중인 사람'으로서 죄수와 같은 대우를 받고, 고정행위 등의 가혹행위가 행해진다고 발언함.	NKHR2020000035 2020-09-05

나. 공개적 사형집행

사형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에도 어떠한 사형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자유권규약 제7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 금지에 대한 일반논평에서 국가들이 사형 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³⁹ 이와 관련하여, 사형을 공개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사형집행을 당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제7조 위반에 해당하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형벌에 해당할 수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⁴⁰ 여기서의 ‘공개적 사형집행’은 형법에 규정되어

39_ 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20: Article 7(Prohibition of Torture, or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March 10, 1992, para. 6.

40_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북한을 비롯한 몇몇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권해에서 공개적인 사형집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UNHRC, Concluding Observations: Islamic Republic of Iran, UN Doc. CCPR/C/IRN/CO/3 (2011);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CCPR/CO/72/PRK (2001); Nigeria, UN Doc. CCPR/C/79/ Add.65 (1996). 고문 및 기타 잔혹한·비인도적·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역시 공개적 사형집행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Note by Secretary-General, Interim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UN Doc. A/67/279 (2012).

있는 범죄를 대상으로 사형 판결을 하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사형을 집행하되 그러한 사형을 공개적으로 집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만일 초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을 하면서 이를 공개적으로 한다면 이는 자유권규약 제6조와 제7조를 모두 위반하는 것이 된다. 한편, 사형집행이든지 초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이든지 간에 이를 공개적으로 하면 그러한 장면이 일반 주민들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를 목격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제7조 위반에 해당하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에 해당할 수 있다.⁴¹

북한은 형사소송법과 판결, 판정 집행법에서 사형의 집행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두고는 있으나,⁴² 사형의 공개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2018년까지 조사에서는 공개적 사형집행 사례가 수집되었으나, 최근에는 공개처형이 없어졌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2012~2013년경 공개처형을 목격한 이후로는 공개처형이 없었다고 증언하였고, 같은 해 탈북한 ○○○은 공개처형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김정은의 명령으로 내려왔다고 증언하였다.⁴³

41_ COI도 상세보고서에서 “특히 어린 아이들이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있어 [공개처형을 목격하는 것은] 매우 끔찍한 것이기 때문에 공개처형의 목격자들 또한 자유권규약 제7조 위반에 해당하는 비인도적이고 잔인한 취급의 피해자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OHCHR,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25/CRP.1 (2014), para. 830.

42_ 북한 형사소송법 제421조에서는 사형판결의 집행은 중앙재판소가 발급한 사형집행지휘문건과 판결서등본을 받은 형벌집행기관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결, 판정 집행법 제32조 역시 형사소송법과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사형은 “총살 같은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3_ NKHR2020000005 2020-05-15; NKHR2020000032 2020-08-04.

다만, 정치사상적 이유, 미신행위 등을 죄목으로 공개처형된 경우가 있었다는 것은 수집되었다. 2015년 대동강 자라공장 지배인과 당비서가 정치사상적인 죄목으로 공개총살되었는데, 반당적 행위, 수령의 유훈교시 말살, 부정부패 등의 처형사유가 공표되었으며 1,000명 정도가 참관하여 집행되었다고 증언하였다.⁴⁴ 또한, 북한이탈주민 ○○○은 2018~2019년에 미신행위에 대한 정책적 통제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공개처형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하였다.⁴⁵ 제한된 정보로 인해 북한의 공개처형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어렵지만, 과거에 비해 공개처형이 줄고 있으며 정치사상적 죄목과 미신행위에 대한 공개처형은 있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공개적 사형집행을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인민반에서 사형집행 시간과 장소를 미리 공지하기는 하나 참석을 강제하지는 않는다는 증언,⁴⁶ 학교나 직장에서 동원되어 보러 간다는 증언,⁴⁷ 대학교에서 불량분자로 간주되는 학생들(이른바 ‘애로생들’)을 별도로 모아서 사형집행을 보게 한다는 증언⁴⁸도 수집되었다. 다만, 과거에 비해 사형집행 현장에 나가는 주민들의 수는 대체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4_NKHR202000018 2020-07-04.

45_NKHR202000011 2020-06-15.

46_NKHR2018000060 2018-07-02.

47_NKHR2018000098 2018-10-01.

48_NKHR2018000114 2018-10-13.

표 II-8 공개총살 사례

증언내용	증언번호
2015년 황해북도 길성포항에서 여성 3명이 공개총살되었음.	NKHR2019000054 2019-07-29
2015년 2월 평안남도 평성시 경기장에서 남성 5명이 공개총살되었음.	NKHR2017000083 2017-09-25
2015년 여름 양강도 해산시에서 시당간부가 공개총살되었음.	NKHR2016000158 2016-09-20
2016년 10월 양강도 해산시 연봉동 비행장에서 남성 3명과 여성 4명이 공개총살되었음.	NKHR2017000073 2017-08-28
2017년 양강도 해산시 연봉동 비행장에서 남성 2명이 공개총살되었음.	NKHR2018000114 2018-10-13
2017년 2월 황해남도 벽성군에서 20여 명이 공개총살되었음.	NKHR2017000073 2017-08-28
2017년 12월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여성 1명이 공개총살되었음.	NKHR2018000107 2018-10-01
2018년 평안남도 평성에서 2명이 공개총살되었음.	NKHR2019000024 2019-05-18
2018년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여성 1명이 공개총살되었음.	NKHR2019000071 2019-08-26
2018년 1월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여성 1명이 공개총살되었음.	NKHR2019000111 2019-11-18
2018년 2~3월경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남성 1명이 공개총살되었음.	NKHR2019000118 2019-11-30

제한된 정보로 인해 수집된 사례들을 공개적으로 사형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와 공개적으로 초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이 이루어진 경우로 명확하게 분류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부여되어야 하는 재판절차와 같은 최소한의 법적 권리 보장 여부를 떠나 자유권규약 제7조 하에서는 총살 같은 장면을 ‘공개’하는 것의 비인도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상기 사례들은 적어도 자유권규약 제7조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2018년에 이어 2019년 조사에서도 최근 들어 공개적 사형집행이 줄

어 들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⁴⁹ 특정 시점 이후 공개처형이 없어졌다는 답변도 일부 있었으나,⁵⁰ 2018년까지 구체적인 목격 사례가 수집된 것으로 볼 때 이는 개인적인 경험에 한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공개적 사형집행 감소 추세가 비공개로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밀리에 즉결처형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음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의 통일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양강도 혜산시에서의 공개적 사형집행 목격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피면접자들의 절반 이상이 양강도에서 거주하였던 것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공개적 사형집행은 내륙지역보다는 국경지역에서, 그리고 시골지역보다는 도시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경지역 및 도시지역에서 불법 활동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공개적 사형집행을 통해 주민들에게 경각심 및 공포심을 심어주고자 하는 북한 당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 강제실종 및 구금시설 내 사망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강제실종이 강제실종된 자와 그 가족에 대한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

49_ NKHR2018000115 2018-10-22; NKHR2019000063 2019-07-29; NKHR2019000083 2019-09-25; NKHR2019000086 2019-10-19; NKHR2019000097 2019-10-21; NKHR2019000112 2019-11-18.

50_ NKHR2019000021 2019-05-07; NKHR2019000033 2019-06-03; NKHR2019000069 2010-08-26; NKHR2019000070 2019-08-26; NKHR2019000078 2019-09-25; NKHR2019000082 2019-09-25; NKHR2019000087 2019-10-05.

다.⁵¹ 강제실종된 자는 오랜 기간 가족과 격리되어 구금상태에 놓여 있게 되고, 그 가족은 강제실종된 자의 행방과 생사를 알지 못한 채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 고문 및 비인도적인 처우의 피해자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추가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II.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4.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7.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V. 주요사안, 1. 정치범수용소, 5.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참조).

라. 평가

북한에서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 규정과는 다르게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가 여전히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조사에서도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가 있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구류시설에 수감되는 기간 동안 여전히 구타 및 가혹행위가 자행된다고 증언하였다. 반면에 북한 당국이 구류시설 내에서 구타를 근절하고 있으며, 인권유린 상황을 감시한다는 증언이 수집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제한된 정보와 증언으로 인해 공개처형 자행의 정확한 확인은 힘들지만, 2020년 조사에서는 공개적 사형집행과 사형집행 과정 강제 목적이 최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치

51_ 예컨대, Committee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ommunications 950/2000, *Sarma v. Sri Lanka*, July 31 2003, para. 9.5; 1295/2004, *El Alwani v. Libyan Arab Jamahiriya*, July 11 2007, paras. 6.5, 6.6; 1327/2004, *Grioua v. Algeria*, July 10 2007, paras. 7.6, 7.7.

사상적 죄목이나 미신에 대한 공개처형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사형집행을 당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형벌에 해당되고, 사형집행을 목격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에 해당할 수 있다.

3

강제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

세계인권선언은 제4조에서 어느 누구도 예속상태에 놓이지 않으며 모든 형태의 노예제 및 노예매매는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권규약은 제8조에서 노예제 및 노예매매 금지, 예속상태 금지, 강제노동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노예제 및 노예매매 금지, 예속상태 금지의 경우와는 달리 강제노동 금지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표 II-9 자유권규약 제8조

제1항	어느 누구도 노예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제2항	어느 누구도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제3항	<p>(a) 어느 누구도 강제노동을 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p> <p>(b) 제3항 "(a)"의 규정은 범죄에 대한 형벌로 중노동을 수반한 구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에서, 권한있는 법원에 의하여 그러한 형의 선고에 따른 중노동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p> <p>(c) 이 항의 적용상 "강제노동"이라는 용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p> <p>(i) "(b)"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작업 또는 역무로서 법원의 합법적 명령에 의하여 억류되어 있는 자 또는 그러한 억류로부터 조건부 석방 중에 있는 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p> <p>(ii) 군사적 성격의 역무 및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국민적 역무</p> <p>(iii) 공동사회의 존립 또는 복지를 위하여 긴급사태 또는 재난시에 요구되는 역무</p> <p>(iv) 시민으로서 통상적인 의무를 구성하는 작업 또는 역무</p>

강제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와 관련한 북한의 상황을 주요 쟁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020년 조사에서도 북한에서 강제노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수감자에게 노동을 시키지는 않는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가. 경범죄에 대한 노동단련형의 부과

자유권규약 제8조 제3항 (a)는 강제노동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8조 제3항 (b)는 범죄에 대한 형벌로 중노동을 수반한 구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국가에서, 권한 있는 법원에 의하여 그러한 형의 선고에 따른 중노동을 시키는 것은 금지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제8조 제3항 (c)는 합법적 역류 또는 조건부 석방 중에 있는 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작업 또는 직무, 군사적 직무, 긴급사태 또는 재난 시에 요구되는 직무, 통상적 시민의 의무를 구성하는 작업 또는 직무는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합법적 역류’는 재판 전 역류를 포함하여 법원의 합법적인 명령의 결과로서 부과된 모든 유형의 역류를 의미하며, ‘역류 중에 있는 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작업 또는 직무’는 구금 시설에서의 일상적인 일과와 수형자들의 사회복귀를 촉진시키는 작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북한 형법에서는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고 징역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로서 노동교화형(무기노동교화형, 유기노동교화형)과 노동단련형을 규정하고 있다(제27조). 무기노동교화형과 유기

노동교화형은 범죄자를 교화소에 넣어 노동을 시키는 형벌로, 유기노동교화형 기간은 1년부터 15년까지이다(제30조). 노동단련형은 범죄자를 일정한 장소에 보내어 노동을 시키는 형벌로, 기간은 6개월부터 1년까지이다(제31조). 상기 자유권규약 제8조 제3항 (b)에 따르면, 법원에서 노동교화형 또는 노동단련형을 선고받은 자를 교화소나 일정한 장소에 수용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것은 금지되는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중노동을 수반한 구금형은 경범죄에 부과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바, 북한 형법에 따르면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도 ‘중노동을 수반한 구금형’에 해당하는 노동단련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8조 제3항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수형자들에게 과도한 노동을 부과하는 것은 수형자에 대한 처우를 규정하고 있는 자유권규약 제10조 제3항에 부합되지 않을 수 있다(II.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5. 피구금자의 권리).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인신매매나 탈북으로 인해 강제 복송된 이후 교화소를 가지 않은 사람들은 노동단련형 처벌을 받았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노동단련형은 1개월부터 6개월까지 다양하였으며, 뇌물을 고여 조사만 받고 석방되는 사례도 조사되었다. 또한, 2019년 9월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000은 탈북자 처벌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으며, 두만강을 건너려다 잡혔을 경우 노동단련대 6개월을 받고, 중국에서 1년 정도 체류한 경우 노동교화형 1년을 받는다고 증언하였다.⁵²

이번 조사에서 탈북 외의 이유로 단련대를 간 경우는 밀수,

52_NKHR2020000030 2020-08-03.

무단결근, 빙두 등이었다고 증언하였고, 노동단련형을 받으면 건설 별목 등에 투입되며 노동강도가 높은 것으로 수집되었다.⁵³ 북한이탈주민 ○○○은 2017년 노동교양대에 수감되었다가 1,100위안을 바치고 노동을 하지 않은 채 석방되었는데, 당시 삼지연시 건설이 한창이었기 때문에 다른 노동자들은 시멘트 상하차를 했으며 노동강도는 매우 고달프고 힘들다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⁵⁴

표 II-10 노동단련형 사례

증언내용	증언번호
2015년 탈북 시도 중 중국에서 검거되었는데, 단련대 형을 받았지만 보위성과 사회안전성에 각각 2,000위안씩을 고이고 풀려났음.	NKHR2020000024 2020-07-06
2018년 탈북 시도 중 중국에서 검거되었는데, 어머니가 뇌물로 7,000~7,500위안을 고여 재판을 받지 않고 풀려났음.	NKHR2020000020 2020-07-04
2016~2017년경, 직장동료가 무단결근으로 단련대 6개월 처벌을 받았다고 증언함.	NKHR2020000021 2020-07-06
2019년 9월 탈북한 한 증언자는 단련대 수감사유를 구타, 무직, 절도, 중국과의 중개 등으로 설명함. 특히 중국과의 중개일은 단련대 6개월 정도임.	NKHR2020000030 2020-08-03
2018년에 사촌언니의 형부가 빙두를 하다가 구속되었는데, 원래 교화를 가야 하지만 돈을 요구받아 어느 정도 뇌물을 고이자 노동단련대 6개월로 형이 낮아졌다고 증언함.	NKHR2020000042 2020-10-31

나. 노동교양처벌

자유권규약 제8조 강제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와 관련하여 보다 주목을 요하는 부분은 행정처벌법(2017)이다.⁵⁵ 행정처벌법

53_ NKHR2020000022 2020-07-06.

54_ NKHR2020000027 2020-07-06.

55_ 2016년 12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63호로 수정보충 후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이하 ‘행정처벌법’).

제15조는 행정처벌의 종류 중 하나로 노동교양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제17조에서는 “노동교양처벌은 무거운 위법행위를 한 공민을 노동교양대에 보내어 노동을 시키는 행정법적제재이다. 노동교양처벌 기간은 5일 이상 6개월 이하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행정처벌법은 161개의 행위에 대하여 노동교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노동교양처벌은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검찰기관, 재판기관, 인민보안기관에 의하여 부과될 수 있다(제333조, 제335조, 제336조, 제337조).

표 II-11 행정처벌법상 노동교양처벌기관 관련 규정

제333조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행정처벌권한)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일군 또는 개별적공민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 경고, 엄중경고처벌, 무부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 강직, 해임, 철직처벌, 벌금처벌, 중지, 변상처벌, 몰수처벌, 자격정지, 자격강급, 자격박탈처벌을 줄수 있다.
제335조 (검찰기관의 행정처벌권한)	검찰기관은 검찰감시과정에 적발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로동교양처벌, 벌금처벌, 변상처벌, 몰수처벌, 중지처벌을 줄수 있다.
제336조 (재판기관의 행정처벌권한)	재판기관은 재판심리에서 확증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로동교양처벌, 벌금처벌, 변상처벌, 몰수처벌을 줄수 있다.
제235조 (인민보안기관의 행정처벌권한)	인민보안기관은 인민보안단속과정에 발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로동교양처벌, 벌금처벌, 변상처벌, 몰수처벌, 중지처벌을 줄수 있다.

행정처벌법뿐만 아니라 인민보안단속법(2007)⁵⁶도 인민보안기관과 책임일군협의회가 범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노동교양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57조).

56_2007년 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44호로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안단속법」(이하 ‘인민보안단속법’).

노동교양처별은 앞에서 살펴본 강제노동 금지의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다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양강도 출신의 한 20대 여성은 2016년 8월 삼지연시 보안서에서 노동단련대 1개월 처분을 받고 삼지연시 노동단련대에 수용되어 도배, 보안서 건물 담장 쌓기, 삼지연시 경기장 땅 다지기, 김매기 등 다양한 일에 동원되었다고 증언하였다.⁵⁷ 이 증언자에 따르면 외부로 일을 나갈 때에는 감독관이 동행한다고 한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마다 생활총화가 있었으며, 매일 저녁마다 10대 원칙과 노동단련대 생활준칙을 암송시켰다고 한다.

표 II-12 노동교양처별 사례

증언내용	증언번호
2015년 7월 양강도 삼지연시 노동단련대에 수용되어 하루 12시간씩 농사일을 하였음.	NKHR2016000015 2016-01-26
2016년 8월 함경북도 회령시 노동단련대에 수용되어 건설일, 식당일, 간부 집 도배 등의 일을 하였음.	NKHR2017000086 2017-09-25
2016년 8월부터 9월까지 양강도 보천군 보천읍 노동교양대에서 벌목일과 부역일을 하였음. 어린 딸이 집에 혼자 있어야 하는 상황인 점이 고려되어 집에서 출퇴근을 할 수 있었음.	NKHR2018000120 2018-10-22
2016년 11월 무단결근을 이유로 보안서 사람들과 정치위원이 노동교양처별 6개월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양강도 해산시 노동단련대에 수용되었음. 해산시 중등학교원 건설현장에 투입되어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을 하였음.	NKHR2017000095 2017-10-23

다. 집결소 수용자의 노동력 착취

집결소는 여행구역 이탈자, 여행기일 경과자, 부랑아, 사건 계류자, 강제송환 탈북자 등을 조사하고 수용하는 곳이다. 집결

57_NKHR2018000129 2018-11-19.

소 측에서 수용자의 거주지 담당 보안서 또는 보위성에 통보하여 해당 지역 보안원 또는 보위원이 집결소에 도착하면 수용자는 거주지로 이송된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일부 집결소에서는 수용자들에게 노동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결소에서 거주지 보안서로의 통보시점에 따라 수용자들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 집결소에 있게 되는데, 집결소 측에서 수용자들에게 노동을 시키기 위하여 수용자 거주지 보안서 통보를 일부러 늦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2017년에 함경북도 청진시 집결소에 20일간 수용되었다는 북한이탈주민 ○○○은 가을철 수확작업과 공장 담장 쌓는 일에 동원되었는데, 원래는 집결소에서 3개월 정도 붙잡아 두고 노동을 시키지만 자신의 경우에는 가족들이 노력을 하여 빨리 나올 수 있었다고 증언하였다.⁵⁸ 이 증언자에 따르면, 가족들이 거주지의 담당 보안원에게 ‘사업’을 얼마나 잘하는지 여부에 따라 집결소 수용 기간이 달라진다고 한다. 2015년 5월부터 7월까지 함경북도 청진시 라남구역 집결소에 있었다는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보도블럭 찍는 일에 동원되어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⁵⁹ 이 증언자에 따르면, 집결소 측이 수중에 돈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거주지 담당 보안서로 바로 연락을 하는 편이지만 돈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소장과 관리원이 그 돈을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거주지 담당 보안서로 바로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증언자의 경우 중국에서

58_NKHR2018000098 2018-10-01.

59_NKHR2018000074 2018-07-30.

송환되면서 가지고 온 금품과 옷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오래 집결소에 있었다고 한다.

2019년 조사에서는 함경북도 청진시 집결소의 노동 강도에 관한 구체적 증언이 수집되었다. 2018년 7월부터 8월까지 함경북도 청진시 집결소에 수감되었던 북한이탈주민은 조사는 받지 않고, 농사일, 건설장일, 축사일 등을 새벽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했다고 증언하였다.⁶⁰ 이 증언자는 건설장에서 블록을 등에 지고 나르는 노동을 했으며,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가는 더운 날씨에 물을 마시려 하자 관리원으로부터 구타를 당했다고 증언하였다. 2017년 8월부터 12월까지 함경북도 청진시 라남구역 농포집결소에 있었다는 북한이탈주민은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집결소 내에 있는 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를 마대에 담는 노동을 하였으며, 배추심기, 고추심기 등 농사일도 했다고 증언하였다.⁶¹ 2015년 함경북도 청진시 라남구역 집결소에 수감되었던 북한이탈주민은 하루에 시멘트 20톤 생산, 보도블록 3,000장 생산 등의 노동에 동원되었으며, 하루 15~16시간 정도 작업을 했다고 증언하였다.⁶² 증언자에 따르면, 전기가 끊기는 날이면 보도블록을 찍는 기계를 수동으로 돌려야 했고, 그때 사용하는 시약으로 인해 손끝이 갈라지고 피가 심하게 났지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작업을 해야 했다고 한다.

60_NKHR2019000010 2019-04-08.

61_NKHR2019000075 2019-08-26.

62_NKHR2019000089 2019-10-19.

표 II-13 집결소 강제노동 사례

증언내용	증언번호
2015년 함경북도 청진시 라남구역 집결소 수용 당시 시멘트 및 보도블럭 생산 노동에 동원됨.	NKHR2019000089 2019-10-19
2015년 9월 함경북도 라선특급시 용산집결소 수용 당시 건설작업에 동원되었음.	NKHR2018000001 2018-03-12
2016년 12월 함경북도 청진시 청암구역 여행자 집결소 수용 당시 인분으로 비료를 만드는 작업을 하였음.	NKHR2017000054 2017-07-31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함경북도 청진시 송평집결소에 수용되어 있었는데, 축구공을 만드는 작업과 나무를 해오는 작업에 동원되었음.	NKHR2017000099 2017-10-23
2017년 8월부터 12월까지 함경북도 청진시 라남구역 농포집결소 수용 당시 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를 마대에 담는 노동에 동원되었으며, 배추심기, 고추심기 등 농사일에도 동원됨.	NKHR2019000075 2019-08-26
2018년 7월부터 8월까지 함경북도 청진시 집결소에 수용 당시 농사일, 건설장일, 축사일 등에 동원되었음.	NKHR2019000010 2019-04-08

이처럼 단순 구류장소인 구류장, 집결소 등에서도 강제노동이 이루어진다는 증언들이 2020년 이전까지의 조사에서 수집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조사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수감자에게 노동을 시키지는 않는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2019년 4월부터 한 구금시설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 ○○○은 재판 전 구금시설에 수감된 사람은 ‘형 대기 중인 사람’이며 이 구금시설에서는 노동을 시키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⁶³ 2017년 말부터 2018년도 4월 초까지 보위성 산하 구금시설에 수감되어 조사를 받았던 한 증언자도 노동력 착취가 없었다고 한다.⁶⁴

63_NKHR2020000035 2020-09-05.

64_NKHR2020000004 2020-05-15.

라. 평가

북한에서는 자유권규약 제8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강제노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중노동을 수반한 구금형에 해당하는 노동단련형을 부과하는 것, 행정처벌법과 인민보안단속법에 따라 노동교양처벌을 부과하는 것, 그리고 집결소에 임시적으로 수용되어 있는 자들에게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2019년 조사에서 관련 사례들이 수집되었다. 특히 국경지역 집결소에서는 수용자들에게 매우 강도 높은 노동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수감자에게 노동을 시키지는 않는다는 증언이 나왔다. 추후 이에 대한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세계인권선언은 실체적 권리에 관한 규정 중 첫 번째 규정인 제3조에서 생명권과 더불어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신체의 자유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가 아니라 신체가 제한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며, 신체의 안전은 심신에 대한 상해로부터의 자유 또는 신체적·정신적 완전성을 의미한다. 자유권규약은 제9조에서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총 5개 항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체포 또는 억류가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이지 않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의 일부와 제3항은 형사절차와 관련해서만 적용되는 반면 나머지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표 II-14 자유권규약 제9조

제1항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2항	체포된 사람은 누구든지 체포 시에 체포이유를 통고받으며, 또한 그에 대한 피의 사실을 신속히 통고받는다.
제3항	형사상의 죄의 혐의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된 사람은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신속히 회부되어야 하며, 또한 그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에 회부되는 사람을 억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석방은 재판 기타 사법적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출두 및 필요한 경우 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출두할 것이라는 보증을 조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제4항	체포 또는 억류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은 누구든지 법원이 그의 억류의 합법성을 지체 없이 결정하고, 그의 억류가 합법적이지 아닌 경우에는 그의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에 절차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제5항	불법적인 체포 또는 억류의 희생이 된 사람은 누구든지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와 관련한 북한의 상황을 주요 쟁점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에서는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체포·억류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조사에서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북한의 변화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의미한 증언은 수집되지 않았다.

가. 자의적·불법적 체포·억류

자유권규약 제9조 제1항은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체포 또는 억류를 금지하고 있다. 불법적 체포·억류는 법에 근거가 없거나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행한 체포·억류이다.⁶⁵ 자의성은 불법성보다는 좀 더 넓은 개념으로, 부적절성, 부당성,

65_UNHRC, “General comment No. 35, Article 9(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December 16, 2014, para. 11.

예측가능성의 결여, 적법절차의 결여, 합리성의 결여, 필요성의 결여, 비례성의 결여와 같은 요소를 포함한다.⁶⁶ 따라서 자의적 체포·억류 금지와 불법적 체포·억류 금지는 중첩될 수 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일반논평에 따르면, 억류된 자의 처우 문제는 주로 자유권규약 제7조와 제10조에서 다루어질지라도 억류된 자가 억류된 목적과 무관한 처우를 당한다면 자의적 억류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⁶⁷ 그리고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등 자유권규약에서 보장되는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한 것에 대한 처벌로서 체포·억류, 차별적으로 이루어진 체포·억류,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억류도 자의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강제실종은 자유권규약의 여러 실체적·절차적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특히 심각한 형태의 자의적 억류에 해당한다.⁶⁸

북한 헌법(2019)⁶⁹은 공민은 인신의 불가침을 보장받는다고 규정하는 한편,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제79조). 북한 형사소송법은 범죄자 및 범죄사실 적발을 위한 수사절차와 범죄자 및 범죄사실 확정을 위한 예심절차를 구분하고 있는데, 체포, 구속 등의 강제처분은 예심단계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사단계에서는 일정한 경우에만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에 대한 체포가

66_ *Ibid.*, para. 12.

67_ *Ibid.*, para. 14.

68_ *Ibid.*, para. 17.

69_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회의에서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하 ‘헌법’).

예외적으로 인정된다(제142조). 북한 형사소송법은 예심 단계에서의 체포 및 구속과 관련해서는, “예심원은 피심자가 예심 또는 재판을 회피하거나 범죄사건의 조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심자를 체포하거나 구속처분을 할 수 있다”고 체포 및 구속의 목적을 규정한 후(제175조),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서는 사람을 체포 및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76조). 그리고 체포 및 구속의 시기, 체포 및 구류구속의 사유, 체포 및 구류구속의 절차, 구류의 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177조부터 제190조까지). 한편, 북한 형법은 법 일군이 불법적으로 사람을 체포, 구속, 구인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하고, 이 같은 행위를 여러 번 하였거나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241조).

상기 북한 형사소송법상의 체포 및 구속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다면 이는 불법적 체포·억류에 해당하게 된다.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여전히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체포·억류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북한 당국이 체제를 비판하거나 수령을 모독한 사람, 한국행을 기도한 사람, 종교활동을 한 사람 등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치범수용소에 수용하는 것은 자의적일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체포·억류에 해당한다. 출국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비법적으로 국경을 출입한 자’를 체포하여 구금하는 것, 주민들로 하여금 거주하고 있는 시·군을 벗어날 경우 여행증을 소지하도록 하고 여행구역 이탈 또는 여행기

일 경과 시 체포하여 집결소에 수용하는 것(II. 시민적·정치적 권리실태, 6. 이동 및 거주에 대한 권리), 한국 녹화물을 시청·유포하였다고 하여 체포하여 구금하는 것(II. 시민적·정치적 권리실태, 10.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은 모두 자의적 체포·억류에 해당한다. 북한 법규상으로는 단속 및 처벌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유권규약에서 보장되는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한 것에 대한 처벌로써 체포·억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한편, 상기 북한 형사소송법상의 체포 및 구속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다면 이는 불법적 체포·억류에 해당하게 되는데, 2016년 대한변호사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대부분의 범죄혐의자에 대하여 체포 또는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며, 규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구금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⁷⁰ 구속처분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법에 입각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 자비를 베푼 것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6년 8월 탈북한 양강도 혜산시 거주 여성은 2015년 2월 탈북 기도 혐의로 국경경비대에 붙잡혀 도 보위부에서 5개월간 조사를 받았는데, “99퍼센트 죄가 있어도 1퍼센트 양심이 있으면 살려주는” 것이 김정은의 방침이라고 하면서 석방을 하였고 문건에도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⁷¹

2020년 조사에서 북한 형사소송법의 준수 여부에 대한 최근 5년 내의 증언은 수집되지 않았다. 다만, 2013년까지 검찰소

70_대한변호사협회, 『2016 북한인권백서』 (서울: 대한변호사협회, 2016), pp. 142~152.

71_NKHR2017000001 2017-04-10.

검사로 근무했던 북한이탈주민 ○○○에 의하면 검찰소 억류실에는 구금처벌을 받은 자만이 수용되고 10일간의 조사기간을 둘 수 있으며, 10일이 지나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고 증언하고 있다.⁷²

나. 신체적 자유와 안전에 대한 절차적 보장 미흡

자유권규약 제9조 제2항은 체포 시 체포의 이유와 피의사실 고지를 규정하고 있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예심단계에서는 체포 및 구속의 통지를 규정하고 있으나(제182조), 수사단계에서는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자유권규약 제9조 제2항에 따른 피체포자의 통고 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강도 혜산시에 거주하였던 한 50대 여성은 2016년 1월 자신의 아들이 신원을 밝히지 않은 남성 1명에 의해 끌려가 며칠 동안 조사를 받은 후 풀려났다고 증언하였다.⁷³ 이 증언자에 따르면, 나중에 보니 자신의 아들을 끌고 간 사람은 도 보위원이었다고 한다. 2016년 12월 자신의 남편이 보위원에게 체포되어 보름 정도 조사를 받았다는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당시 체포이유 등은 전혀 고지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⁷⁴

한편, 자유권규약 제9조 제3항은 체포되거나 억류된 형사피의자는 신속히 법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권한

72_ NKHR2020000032 2020-08-04.

73_ NKHR2018000089 2018-08-27.

74_ NKHR2018000099 2018-10-01.

을 부여받은 기타 관헌에게 회부되어야 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거나 석방될 권리를 가지며, 재판 전 억류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것임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법관에 의한 영장실질심사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수사단계에서 예외적으로 체포된 경우 48시간 내에 검사의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10일 내에 범죄자라는 확인이 없으면 즉시 석방하도록 하고 있고(제143조), 예심단계에서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구속처분결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85조). 자유권규약위원회에 따르면 사법권을 행사하도록 법률상 권한이 부여된 관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검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⁷⁵ 또한, 북한 형사소송법은 수사, 예심, 기소 각 단계별 기간과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예심을 위한 구류기간만도 최장 5개월에 이르는 등 재판 전 구금 기간이 지나치게 길게 설정되어 있다(제186조, 제187조). 그나마 법에 정해진 기간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양강도 출신의 30대 남성은 2015년에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았는데 그 전에 구류장에서 9개월을 있었다고 증언하였다.⁷⁶ 그러나 구류장에 있었던 기간은 교정기간에서 제외되었다고 한다.

75_UNHRC, “General comment No. 35, Article 9(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December 16, 2014, para. 32.

76_NKHR2018000034 2018-05-07.

표 II-15 수사·예심·기소기간 및 피의자 구속기간

수사 단계	형사소송법 제143조	수사원은 이 법 제142조에 따라 체포한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를 구금하였을 경우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안으로 구금결정서를 만들어 검사의 승인을 받고 체포한 날부터 10일안으로 조사하여 예심에 넘긴다. 검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거나 체포한 날부터 10일안에 범죄자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내놓는다. (이하 생략)
	형사소송법 제150조	예심은 범죄사건의 예심을 시작한 날부터 2개월안으로 끝낸다. 노동단련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은 10일안으로 끝낸다. (이하 생략)
예심 단계	형사소송법 제151조	이 법 제150조 1항의 기간에 예심을 끝낼 수 없는 특별히 복잡한 범죄사건의 예심은 이 법 제187조 1, 2항의 규정에 따라 예심을 시작한 날부터 5개월까지 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노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은 이 법 제150조 2항에 규정된 기간에 끝낼 수 없을 경우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 5일간 연장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86조	예심을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2개월을 넘을 수 없다. (이하 생략)
기소 단계	형사소송법 제187조	이 법 제150조 1항에 규정된 기간에 예심을 끝낼 수 없는 복잡한 범죄사건은 시(구역), 군 예심원과 도(직할시) 예심원은 도(직할시) 검찰소 소장, 중앙예심원은 중앙검찰소의 승인을 받아 피심자의 구류기간을 1개월 늘일 수 있다. 구류기간을 더 늘여야 할 복잡한 범죄사건은 최고검찰소 소장의 승인을 받아 피심자의 구류기간을 2개월 늘일 수 있다. 노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으로서 이 법 제150조 2항에 규정된 기간에 예심을 끝낼 수 없는 복잡한 범죄사건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 피심자의 구류기간을 5일간 늘일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61조	예심원으로부터 사건기록을 접수한 검사는 사건검토결정을 하고 10일안으로 검토처리한다. 그러나 10일안에 검토처리할 수 없는 특별히 복잡하거나 중대한 사건인 경우에는 5일간 연장할 수 있다. 노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범죄의 사건기록은 5일안으로 검토처리한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기소를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10일이다. 그러나 특별히 복잡하거나 중대한 사건인 경우에는 5일간 연장할 수 있다. 노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5일이다.

자유권규약 제9조 제4항은 체포 또는 억류의 적부 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불법적 체포 또는 억류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체포·구속 적부심사청구는 북한에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형사

보상청구는 대외적으로 공개된 법규에서는 관련 규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 손해보상법(2005)⁷⁷은 인신(人身)의 불법적 침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제8조). 특히 사람의 자유를 구속한 경우에 대한 손해보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제40조). 그러나 손해보상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사이의 관계에 적용되며(제8조), 사법기관에 의한 불법적인 인신침해는 규율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은 2000년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한 제2차 자유권규약 이행보고서에서 형사보상규정(Regulation on Criminal Compensation)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⁷⁸ 북한은 보고서에서 동 규정 제2조에 “국가는 수사, 예심 또는 사법기관에 의하여 무고하게 체포 및 구속되거나 처벌을 받은 개인의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재산 손실을 보상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2016년 유엔에 제출한 공통핵심문서(common core document)에서도 권리를 침해 받은 주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제도를 언급하고 있다. 민사보상제도뿐만 아니라 형사보상제도도 존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⁷⁹ 그러나 일반 북한 주민들은 형사보상제도의 존재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활용도 되지 않고 있다.⁸⁰

77_ 2005년 4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083호로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손해보상법」 (이하 ‘손해보상법’).

78_ Second Periodic Repor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n Its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UN Doc. CCPR/C/PRK/2000/2 (2000), para. 17 (d).

79_ Common Core Document Forming Part of the Reports of State Partie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HRI/CORE/PRK/2016 (2016), para. 52.

80_ 대한변호사협회, 『2018 북한인권백서』 (서울: 대한변호사협회, 2018), p. 85.

다. 평가

북한에서는 자유권규약 제9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체포·억류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치범의 수용은 자의적일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체포·억류의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개별 권리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북한에서는 자유권규약에서 보장되는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한 것에 대한 처벌로서의 체포·억류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자의적인 체포·억류에 해당한다. 신체적 자유와 안전에 대한 절차적 보장 또한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수사단계에서는 체포의 이유와 피의사실 고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법관에 의한 영장실질심사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예심을 위한 구류기간만도 최장 5개월에 이르는 등 재판 전 구금 기간이 지나치게 길게 설정되어 있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북한에서는 체포·구속 적부심사청구도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2020년 조사에서는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북한의 변화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의미한 증언은 수집되지 않았다.

5

피구금자의 권리

자유권규약은 제10조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에 대한 인도적 처우,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 수형자에 대한 처우를 규정하고 있다.

표 II-16 자유권규약 제10조

제1항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
제2항	(a) 피고인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결수와 격리되며, 또한 유죄의 판결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로서의 지위에 상응하는 별도의 취급을 받는다. (b) 미성년 피고인은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에 회부된다.
제3항	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한다. 미성년 범죄자는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그들의 연령 및 법적 지위에 상응하는 대우가 부여된다.

이하에서는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 미결수용자, 수형자들에게 가해지는 비인도적 처우와 관련한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주요 쟁점별로 분석한다.

가.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

자유권규약 제10조 제1항은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당사국의 법과 권력에 의해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들, 즉 감옥, 병원(특히, 정신병원), 구치소, 교정시설, 기타 장소에 감금된 사람들에게 적용된다.⁸¹ 자유권규약 제10조 제1항은 당사국에 대하여 자유가 박탈당한 상황으로 인해 취약한 상태에 있는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자유권규약 제7조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 금지 규정을 보완한다.⁸² 따라서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은 자유권규약 제7조에 위배되는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자유의 박탈에 수반되는 결과 이외의 다른 어떠한 곤경이나 압력에도 놓이지 않아야 한다.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그 존엄성을 보장 받으며, 제한된 환경 속에서의 불가피한 제약들을 조건으로 자유권규약에서 정한 모든 권리를 향유한다.⁸³

(1) 구금시설 현황

북한에는 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구류장 등의 구금시설과 관리소(정치범수용소)가 있다. 관리소는 다른 구금시설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V. 주요사안, 1. 정치범수용소’에서 별도로 살펴본다.

81_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21: Article 10(Humane Treatment of Persons Deprived of Their Liberty),” April 10, 1992, para. 2.

82_ *Ibid.*, para. 3.

83_ *Ibid.*

(가) 교화소

교화소는 국무위원회 직속의 인민보안성 교화국에서 관할하는 교정시설로, 재판소에서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은 자를 수용하는 곳이다.⁸⁴ 북한이탈주민의 증언과 위성사진 판독 등을 통해 추정된 결과 2015년 당시 북한에는 <그림 II-1>과 같이 총 19개의 교화소가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된다.⁸⁵

그림 II-1 교화소 위치



84_ 북한 형법에 따르면, 노동교화형은 범죄자를 교화소에 넣어 노동을 시키는 형벌로, 무기노동교화형과 유기노동교화형으로 구분된다(제30조). 현행 북한 형법은 총 8개 범죄(국가전복음모죄, 테러죄, 조국반역죄, 파괴·암해죄, 민족반역죄, 비법아편재배·마약제조죄, 마약 밀수·거래죄, 고의적중살인죄)에 대하여 무기노동교화형을 규정하고 있다(제60조, 제61조, 제63조, 제65조, 제68조, 제206조, 제208조, 제266조). 그리고 대부분의 일반범죄에는 유기노동교화형이 규정되어 있다. 유기노동교화형의 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로 되어 있고, 범죄를 병합하거나 형기를 합산할 경우에도 1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유기노동교화형 1일로 산입하도록 되어 있다(제30조). 무기노동교화형과 유기노동교화형의 집행기간에는 국민의 권리가 일부 정지된다(제30조).

85_ 한동호 외, 『북한 교화소』 (서울: 통일연구원, 2015), p. 12.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은 전거리교화소와 개천교화소에 관한 것이다. 탈북 후 강제송환된 북한 주민이 북한 형법상 ‘비법국경출입죄’⁸⁶로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은 후 주로 수용되는 곳이 전거리교화소와 개천교화소이기 때문이다.

- 전거리교화소

전거리교화소는 함경북도 인민보안국 소속의 교화소로, 함경북도 회령시 무산리에 소재하고 있다(북위 42.2103/동경 129.7536).

그림 11-2 위성사진으로 본 전거리교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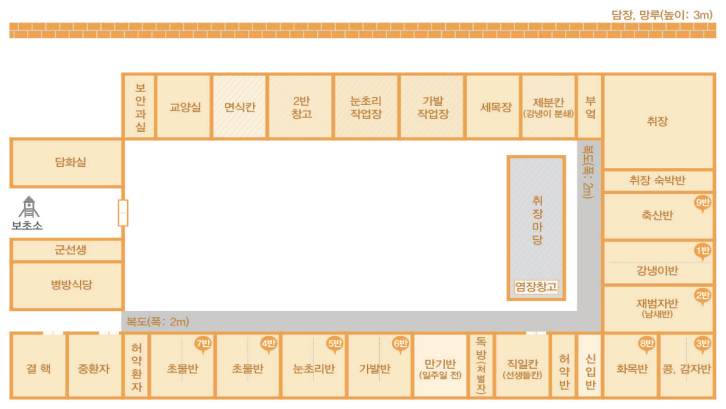
전거리교화소는 1과부터 5과까지 수형자를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남성 수형자는 1, 2, 4, 5과에 편성되어 있고, 여성 수형자는 3과에 편성되어 있다.⁸⁷ 각 과는 다시 반

86_ 북한 형법은 제221조에서 불법적으로 국경을 출입한 자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하고, 그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87_ NKHR2013000046 2013-03-05 외 다수의 증언.

으로 분류되는데, 1과는 12개 반 정도, 2과와 3과는 각 10개 반 정도, 4과는 4개 반 정도, 5과는 3개 반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⁸⁸ 전거리교회소 수용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다수가 여성이기 때문에 이들의 증언을 통하여 여성 수용동인 3과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파악이 가능하였다. 증언에 따르면, 3과에는 과장, 비서, 의사선생, 여자 관리선생 3명이 있다고 한다.⁸⁹ 그리고 3과는 감자반, 남새반, 콩반, 강냉이반, 돌축반, 가밭·눈초리반, 화목(火木)반, 축산반, 구내반, 허약자반으로 분류된다고 한다.⁹⁰ 증언을 토대로 재구성한 전거리교회소 3과 내부는 <그림 II-3>과 같다.⁹¹

그림 II-3 전거리교회소 3과 내부



88_NKHR2012000185 2012-09-11.

89_NKHR2014000048 2014-05-13.

90_NKHR2011000248 2011-12-20; NKHR2014000048 2014-05-13.

91_NKHR2014000031 2014-04-15; NKHR2014000040 2014-04-29; NKHR2015000036 2015-02-10.

- 개천교화소

개천교화소는 평안남도 인민보안국 소속의 교화소 중 하나로, 평안남도 개천시 약수동에 소재하고 있다(북위 39.7083/동경 125.9233).

그림 11-4 위성사진으로 본 개천교화소



개천교화소는 남자동과 여자동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여자동은 다시 무기노동교화형을 받은 수형자들이 있는 무기동과 유기노동교화형을 받은 수형자들이 있는 유기동으로 구분된다.⁹² 여자 무기동과 유기동은 별도의 건물에 있다.⁹³ 무기노동교화형을 받은 여성 수형자가 수용되는 것으로 볼 때 개천교화소는 중범죄자 수용시설인 것으로 보인다. 증언에 따르면, 개천교화

92_ NKHR2014000175 2013-10-21; NKHR2015000186 2015-12-15.

93_ 위의 증언.

소 여성 수형자의 경우 농산반, 축산반, 뜨개반, 남새반, 과수반, 밭갈이반 등에 속해 노동을 한다고 한다.⁹⁴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농산반, 축산반, 과수반 등의 경우 각각 단층집에서 수형생활을 하고, 뜨개반의 경우 관리원들 건물 가까이에 있는 2층짜리 건물에서 수형생활을 하는데, 뜨개반은 무기노동교화형을 받은 수형자들과 비법국경출입 및 인신매매 등 도주 위험자들로 구성된다고 증언하였다.⁹⁵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개천교화소 수감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따르면, 일의 강도가 높은 남새반에는 재범자들이 배치된다고 한다.⁹⁶ 개천교화소 남성 수형자의 경우 벽돌반, 포화반(신발, 허리띠, 권총집, 군화, 단화 등을 만드는 반)에서 노동을 하거나, 교화소 인근의 탄광에서 석탄을 캐는 작업을 한다고 한다.⁹⁷ 2015년 개천교화소 수감 경험이 있는 한 30대 남성은 형기가 짧은 사람들, 즉 도주 위험성이 없는 사람들이 탄광 일에 배정된다고 증언하였다.⁹⁸

(나) 노동단련대

노동단련대는 재판소에서 형벌로서 노동단련형(6개월 이상 1년 이하)을 선고 받거나 인민보안기관 등에 의하여 행정처벌로서 노동교양처벌(5일 이상 6개월 이하)을 부과 받은 자를 수용하

94_NKHR2013000156 2013-08-20.

95_NKHR2013000121 2013-06-25; NKHR2016000014 2016-01-26.

96_NKHR2017000130 2017-12-18.

97_NKHR2013000115 2013-06-11; NKHR2013000195 2013-10-29.

98_NKHR2018000034 2018-05-07.

는 곳이다. 노동단련형을 선고 받은 자는 인민보안성(현 사회안전성) 관할의 노동단련대에 수용되고, 노동교양처벌을 받은 자는 인민위원회 노력동원부 관할의 시·군·구역 단위 노동단련대에 수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강원도 원산시 노동단련대, 평안남도 증산군 노동단련대가 인민보안성 관할의 노동단련대라는 증언이 있다.⁹⁹ 노동단련형을 선고 받고 개천교화소 내 노동단련대에 수용되었다는 증언들에 비추어 볼 때,¹⁰⁰ 개천교화소 내에도 인민보안성 관할의 노동단련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군대에서도 자체적으로 노동단련대를 운영한다고 한다.¹⁰¹

(다) 집결소

집결소는 여행구역 이탈자, 여행기일 경과자, 부랑아, 사건계류자, 강제송환 탈북자 등을 조사하고 수용하는 곳이다. 집결소 측에서 수용자의 거주지 담당 보안서에 통보하여 해당 지역 보안원이 집결소에 도착하면 수용자는 거주지로 이송된다. 인민보안성 관할의 집결소가 전국적으로 있으며, 국경지역에는 국가보위성 관할의 집결소가 있다. 국경지역에 있는 국가보위성 관할의 집결소는 중국행 및 한국행을 시도한 탈북자, 즉 비법월경자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협소한 장소에 많은 인원이 구금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이탈주민 ○○○의 증언에 따르면 2017년 수감 당시 국가보위성 관할

99_NKHR2014000065 2014-06-03; NKHR2015000121 2015-09-08.

100_NKHR2016000026 2016-03-08; NKHR2017000005 2017-04-10; NKHR2018000049 2018-06-04; NKHR2018000080 2018-07-30.

101_NKHR2015000119 2015-09-08.

의 청진 집결소는 2평 남짓한 공간에 30명이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¹⁰²

(라) 구류장

구류장은 범죄혐의자가 재판을 받기 전에 구금되어 조사를 받는 곳이다. 북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사건의 수사 및 예심은 안전보위기관의 수사원 및 예심원이 담당하며, 행정경제사업과 관련이 있는 일반범죄와 법기관의 법 준수집행정형감시과정에 제기되는 일반사건의 수사과 예심은 검차기관의 수사원과 예심원이 한다. 그 밖의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과 예심은 인민보안기관의 수사원 및 예심원이 담당하므로 (제46조 및 제48조), 구류장은 국가보위성 구류장과 인민보안성 구류장으로 구분된다. 국가보위성 조직은 중앙, 도, 시·군 단위로 구분되는데, 각각의 단위별로 구류장이 마련되어 있다. 인민보안성 조직은 중앙, 도, 시·군, 동·리 단위로 구분되며, 역시 각각의 단위별로 구류장이 마련되어 있다.

(2) 구금시설 내 처우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의 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구류장에서는 폭행 및 가혹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영양·위생·의료 상황이 열악하여 많은 피구금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같은 비인도적 처우로

102_NKHR2019000075 2019-08-26.

인하여 수용자가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아래에서는 구금시설 내에서의 폭행 및 가혹행위, 영양·위생·의료 실태에 대해 살펴본다.¹⁰³

(가) 교화소

교화소 내 폭행 및 가혹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9년 조사에서도 관련 사례가 수집되었다. 2016년 함경남도 함흥시 교화소에 수감되었던 북한이탈주민 ○○○은 종아리를 3일 동안 맞아 살이 새까맣게 되었고 세 번째 날에는 부은 살이 터졌다고 한다.¹⁰⁴ 교화소 내 폭행 및 가혹행위가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다는 증언도 있다. 2008년과 2015년 두 차례 개천교화소 수감 경험이 있다는 북한이탈주민 ○○○은 2008년에 비해 2015년에는 교화소 내 폭행 및 가혹행위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증언하였다.¹⁰⁵ 수형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비판서를 써야 하고 처벌을 받기 때문에 보안원 등이 가급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증언자는 이것이 교화소 수형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방침이 떨어진 데 따른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103_ 구금시설 내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강제낙태에 대해서는 'IV. 취약계층, 1. 여성' 참조.

104_ NKHR2019000043 2019-07-01.

105_ NKHR2018000034 2018-05-07.

표 II-17 교화소 내 폭행 및 가혹행위 관련 증언

증언내용	증언번호
2014년 전거리교화소 수감 당시 수시로 구타가 이루어졌음. 구둣발로 때리고 사람이 먹던 국사발을 얼굴에 던지기도 하였음.	NKHR2017000044 2017-07-03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전거리교화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일을 잘 못하거나 생활규정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경우 보안원들이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였음. 그 후유증으로 지금까지도 고통을 겪고 있음.	NKHR2016000184 2016-12-13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개천교화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노동과제를 채우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경우 담당선생이 “교양 좀 해라”라고 말을 하면 동료 수감자들이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폭행하였음.	NKHR2016000114 2016-07-12
2016년 개천교화소 수감 당시 구둣발로 찌거나 손바닥으로 때리고 주먹질을 하는 등의 구타가 일상적으로 있었으며, 말을 잘 듣지 않거나 실수를 하면 밥을 굶기거나 잠을 재우지 않았음.	NKHR2017000122 2017-11-20
2016년 함경남도 함흥시 교화소 수감 당시 계호원이 구타를 하였음. 종아리를 3일 동안 맞아 살이 새까맣게 되었고 세 번째 날에는 부은 살이 터졌음.	NKHR2019000043 2019-07-01

교화소 내 영양·위생·의료 상황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2008년과 2015년 두 차례 개천교화소 수감 경험이 있다는 북한이탈주민은 교화소 내 폭행 및 가혹행위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영양·위생·의료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었다고 증언하였다.¹⁰⁶ 옥수수과 콩 한 덩어리 정도가 식사로 나왔기 때문에 가족이 면회식을 넣어줘야 버틸 수 있는데, 가족이 면회를 오지 않는 수형자들이 많았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은 2016년 함흥교화소 복역 중 질병으로 사망한 수형자 2명을 목격했다고 증언하였다. 수형자 2명은 자궁암, 척추결핵을 앓고 있었는데 교화소에서 진료를 봐주지 않아 치료를 못 받고 사망하였다고 한다.¹⁰⁷ 열악한 영양상태와 강도 높은 노동으로

106_ 위의 증언.

107_NKHR2019000043 2019-07-01.

인해 수형자들이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사망하기도 한다.¹⁰⁸ 수형자들이 사망한 경우 교화소 측이 시신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가족들에게 사망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수집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14년 12월 개천교화소에 수감 중이던 어머니가 질병으로 사망하였는데 교화소 측은 시신을 가족에게 인계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하였다고 한다.¹⁰⁹

표 II-18 교화소 내 영양·위생·의료 상황 관련 증언

증언내용	증언번호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개천교화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였는데, 하루 과제를 끝내지 못하면 '미결밥(정량이 아닌 아주 적은 밥)'이 나왔음. 썩은 강냉이를 삶아줘서 탈이 나는 경우도 많았음. 배가 고프면 나머지 쥐나 곤충을 잡아먹기도 하였음. 수형자들이 허약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교화소 측이 시신을 그냥 태워버리고 가족들에게 사망사실을 통보하지도 않았음.	NKHR2017000047 2017-07-03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개천교화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였는데, 하루 식사로 강냉이 450그램, 단지 밥, 콩 30그램을 주었으며, 수형자의 80% 정도가 허약 상태였음. 폐렴, 허약, 간염 등으로 거의 사망에 이를 정도의 사람만 병동생활이 가능하였음.	NKHR2016000114 2016-07-12
2014년 12월 개천교화소에 수감 중이던 어머니가 질병으로 사망하였음. 교화소 측은 시신을 가족에게 인계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하였음.	NKHR2018000073 2018-07-30
2015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전거리교화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였는데, 수형자들이 허약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음. 시신은 불망산에서 화장을 하였음. 협소한 화장시설에 가능한 한 많은 사체를 넣기 위하여 시신을 다 꺾었음.	NKHR2017000047 2017-07-03
2016년 함흥교화소 복역 중 질병으로 수형자 2명이 사망하였음. 수형자 2명은 자궁암, 척추결핵을 앓고 있었는데 교화소에서 진료를 봐주지 않아 치료를 받지 못하였음.	NKHR2019000043 2019-07-01

108. “북, 교화소 수감자 인권유린 행위 심각,” 『자유아시아방송』, 2019.6.18.

109. NKHR2018000073 2018-07-30.

(나) 노동단련대

노동단련대 내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2019년 조사에서도 관련 사례가 수집되었다. 북한이탈주민 ○○○은 2014년 10월 황해남도 옹진군 노동단련대에서 지도원들이 몽둥이로 다른 수용자를 구타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¹¹⁰ 한편, 노동단련대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가 줄고 있다는 증언들도 수집되고 있다. 2016년 8월 양강도 삼지연시 노동단련대 수용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은 노동단련대 생활준칙에 ‘인권유린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서로 싸움질을 하지 말아야 한다’,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지 말아야 한다’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¹¹¹ 이 증언자에 따르면, 노동단련대에서는 서로 말을 심하게 하거나 구타를 하면 그것이 ‘인권유린행위’가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노동단련대에 있는 동안 욕설을 듣거나 구타를 당한 적은 없다고 한다. 2015년 3월부터 2개월간 함경북도 온성군 노동단련대에 있었다는 북한이탈주민도 구타나 폭행을 하지 말라는 김정은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노동단련대 보안원들이 수용자들을 때리지는 않았다고 증언하였다.¹¹²

110_NKHR2019000011 2019-04-20.

111_NKHR2018000129 2018-11-19.

112_NKHR2018000074 2018-07-30.

표 II-19 노동단련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 관련 증언

증언내용	증언번호
2014년 함경북도 회령시 노동단련대 수용 당시 수용자들이 잘못을 했을 때는 운동장을 돌게 하지 때리지는 않았음.	NKHR2017000093 2017-10-23
2014년 3월 양강도 혜산시 노동단련대 수용 당시 작업감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따귀를 세게 맞아 고막이 손상되었음.	NKHR2016000108 2016-07-12
2014년 3월 양강도 삼지연시 노동단련대에 수용된 적이 있는데, 노동단련대는 노동으로 단련을 하라는 곳이어서 일을 제대로 못하면 매일 벌을 주고 때렸음. 노인들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음.	NKHR2016000114 2016-07-12
2014년 10월 황해남도 용진군 노동단련대에서 지도원들이 몽둥이로 수용자를 구타하였음.	NKHR2019000011 2019-04-20
2016년에 노동단련형을 선고 받고 개천교화소 내에 있는 노동단련대에 있었는데, 폭행이나 가혹행위는 없었음.	NKHR2018000049 2018-06-04
2016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양강도 혜산시 노동단련대 수용 당시 일을 제대로 못할 경우 지도원들이 욕을 하기는 했으나 때리지는 않았음.	NKHR2017000095 2017-10-23

한편, 노동단련대 내 영양·위생·의료 상황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8월 양강도 삼지연시 노동단련대 수용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은 노동단련대에서 세 끼 식사를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삶은 통강냉이와 시래기국이 전부였기 때문에 버티기가 매우 힘이 들었다고 증언하였다.¹¹³ 다만, 아픈 사람들이 있을 경우 노동단련대 측에서 약을 주거나 병원에 데리고 가기도 하였다고 한다. 2015년 3월부터 2개월 간 함경북도 온성군 노동단련대에 있었다는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도 강냉이밥, 장국, 염장시래기국 등이 식사로 제공되었다고 증언하였다.¹¹⁴ 이 증언자에 따르면,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외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도망을 갈 수도

113_NKHR2018000129 2018-11-19.

114_NKHR2018000074 2018-07-30.

있기 때문에 일을 시키지 않는 대신 밥을 매우 조금만 주었다고 한다. 현지에서 범죄로 잡혀 들어온 사람들의 경우에는 면회를 온 가족들을 통해 면식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외부에서 일도 하기 때문에 먹을거리가 상대적으로 넉넉한 편이었다고 한다.

표 II-20 노동단련대 내 영양·위생·의료 상황 관련 증언

증언내용	증언번호
2014년 함경북도 회령시 노동단련대 수용 당시 50명 정도의 여성들이 한 방에서 지냈으며, 강냉이밥과 소금국이 식사로 제공되었음.	NKHR2017000093 2017-10-23
2016년 평안남도 개천시 개천교화소 내 노동단련대 수용 당시 강냉이 밥과 양배추 염장국이 식사로 제공되었음.	NKHR2018000049 2018-06-04
2016년 8월 함경북도 회령시 노동단련대에 한 달간 있었는데, 50~60 명이 한 방에서 지냈으며, 130그램 정도의 강냉이밥과 소금국이 식사로 제공되었음. 배가 너무 고파서 도망치는 사람도 있었음. 가족이 면회를 와서 '속도전 가루(옥수수를 가열해 만든 식품)'를 넣어 주거나 본인이 미리 준비해 오는 경우에는 사정이 좀 나아졌음.	NKHR2017000086 2017-09-25
2016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양강도 해산시 노동단련대에 있었음. 식사로 통강냉이가 제공되었는데, 집에서 면회를 오는 경우에는 사정이 좀 나아졌음. 한겨울임에도 나무를 조금 때는 수준이었지만,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 보니 크게 춥다고 느끼지는 않았음. 군역라는 사람이 있어 이들이 진단을 내리면 집에서 약을 조달해 왔음.	NKHR2017000095 2017-10-23

(다) 집결소

집결소 내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4년 11월 양강도 해산시 집결소 수용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은 집결소에서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구타를 당하였다고 증언하였다.¹¹⁵ 2013년 7월 평안북도 신의주시 집결소 수용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역시 집결소 수용자들 대부분이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구타를 당하였다고 증언

115. NKHR2018000080 2018-07-30.

하였다.¹¹⁶ 한편, 2019년 조사에서는 집결소 내 폭행 및 가혹 행위가 감소하였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2018년 양강도 보위부 집결소에 수감된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은 고정자세를 강요받았는데 간지러운 곳을 긁는 정도의 움직임도 허용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¹¹⁷ 다만, 이 증언자는 예전에 비해 구타가 많이 줄었다고 한다.

표 II-21 집결소 내 폭행 및 가혹행위 관련 증언

증언내용	증언번호
2014년 3월부터 6월까지 함경북도 청진시 집결소에 있었는데, 구두발에 갈비뼈가 채이고, 총 쇠줄로 손등을 맞는 등 구타를 당하였음. 옆방에서 각목에 맞는 소리가 났으며, "너도 저렇게 맞고 싶나?"라며 협박당하기도 하였음.	NKHR2017000093 2017-10-23
2014년 5월 양강도 해산시 집결소에 15일간 있었는데, 일을 잘 못하거나 게호원과 눈이 마주치면 몽둥이나 삽자루로 때리거나 발로 찼음.	NKHR2018000077 2018-07-30
2014년 11월 양강도 해산시 집결소에 40일간 있었는데, 고정자세를 강요받았으며, 수용자 한 명이 잘못하면 그 방 수용자 전체가 발을 받았음. 같은 방에 있던 한 여성은 지속적인 구타로 머리와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나갈 당시 걷기도 어려운 정도였음.	NKHR2016000094 2016-06-14
2015년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양강도 해산시 시 보위부 집결소에 수용되어 있었는데, 지도원들한테 간단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심하게 구타를 당하였음.	NKHR2017000001 2017-04-10
2015년 9월 함경북도 라진 웅산집결소에 20일간 있었는데, 일을 잘 못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타를 당하였음.	NKHR2018000001 2018-03-12
2018년 양강도 보위부 집결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고정자세를 강요받았음. 간지러운 곳을 긁는 정도의 움직임도 허용되지 않았음. 예전에 비해 구타가 많이 감소하였음.	NKHR2019000069 2019-08-26

집결소 내 영양·위생·의료 상황도 열악한 것으로 파악된다. 2015년 5월부터 7월까지 함경북도 청진시 라남구역 집결소에

116_ NKHR2018000023 2018-04-09.

117_ NKHR2019000069 2019-08-26.

있었다는 북한이탈주민 ○○○은 하루 12시간씩 일을 하였는데 식사로 제공되는 것은 강냉이밥, 염장국, 염장시래기가 전부였다고 증언하였다.¹¹⁸ 2014년 4월부터 한 달간 양강도 혜산시의 집결소에 있었다는 북한이탈주민 ○○○은 식사로 통강냉이가 제공되었으며, 고열로 힘든 상태에서도 계속 일을 해야만 했다고 증언하였다.¹¹⁹ 2014년 혜산시 집결소에 구금되었던 다른 북한이탈주민 ○○○도 통강냉이와 시래기국이 식사로 제공되었는데 양이 많지 않아 수감자 모두 배고파했다고 증언하였다.¹²⁰ 이 증언자는 혜산시 집결소는 소독약을 뿌리는 등 위생상태가 괜찮은 편이었다고 증언하였다.

표 II-22 집결소 내 영양·위생·의료 상황 관련 증언

증언내용	증언번호
2014년 혜산시 집결소 구금 당시 통강냉이와 시래기국이 식사로 제공되었는데 양이 많지 않아 수감자 모두 배고파하였음. 혜산시 집결소는 소독약을 뿌리는 등 위생상태가 괜찮은 편이었음.	NKHR2019000047 2019-07-01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양강도 혜산시 집결소 수용 당시 식사로 통강냉이와 배춧국이 제공되었으며, 난방은 각자 집에서 빨감을 보내면 가능하였음.	NKHR2015000170 2015-12-01
2015년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양강도 혜산시 시 보위부 집결소 수용 당시 식사로 통강냉이와 배춧국이 제공되었으며, 면식(면회음식)이 가능하였음.	NKHR2017000001 2017-04-10
2015년 9월 함경북도 라진 웅산집결소 수용 당시 식사로 국수가 제공되었는데, 젓가락을 주지 않아 손으로 먹어야 했음. 일을 하러 밖에 나간 기회에 나무를 꺾어 젓가락을 만들어 사용하였음.	NKHR2018000001 2018-03-12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함경북도 청진시 송평집결소 수용 당시 식사로 강냉이밥 200그램 정도와 무시래기국, 김치가 제공되었고, 이때끔씩 콩비지가 나왔음. 화목(火木)장 일에 동원되어 나무에 발이 채이면서 발목과 발을 다쳤지만 치료는 전혀 받지 못하였음.	NKHR2017000099 2017-10-23

118_NKHR2018000074 2018-07-30.

119_NKHR2018000010 2018-03-12.

120_NKHR2019000047 2019-07-01.

(라) 구류장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 구류장과 양강도 혜산시 보위부 구류장을 중심으로 관련 사례가 수집되고 있다. 2015년 2월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 구류장 수용 경험이 있는 40대 북한이탈주민 여성은 당시 새벽부터 밤까지 고정자세를 유지하는 일과를 반복하였다고 증언하였다.¹²¹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벽을 바라보고 3시간 정도 벌을 받았다고 한다. 2015년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 구류장에 수감되었던 북한이탈주민 ○○○은 계호원 1명이 몽둥이로 머리를 지속적으로 구타해 흑이 심하게 나서 제대로 누울 수도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증언자가 중국 감옥에서 오래 생활하다보니 북한말의 억양과 발음이 불량하다는 것이 구타의 이유였다고 한다.¹²² 북한이탈주민 ○○○은 탈북기도 혐의로 체포되어 2017년 7월 12일부터 8월 1일까지 양강도 혜산시 보위부 구류장에 수용되어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데, 고정자세를 유지하지 않는 등 규정을 어긴 수용자는 각자로 맞았다고 증언하였다.¹²³ 이 증언자에 따르면, 같은 방에 있던 한 여성은 구뚝발로 머리를 맞아서 흑이 나고 눈 밑까지 파란 멍이 들었다고 한다. 2017년 온성군 보위부 구류장에서 매일같이 심한 구타를 당했던 한 증언자는 허리와 등에 상처가 심하게 났으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파상풍이 생겨 열이 심하게 나고 고름이 났었다고 한다.¹²⁴ 2016년 양강도 혜산시

121_NKHR2018000074 2018-07-30.

122_NKHR2019000089 2019-10-19.

123_NKHR2018000089 2018-08-27.

124_NKHR2019000075 2019-08-26.

구류장 수용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은 고정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들어 차라리 매를 맞는 게 낫다고 표현하였다.¹²⁵ 2016년 10월 양강도 혜산시 보위부 구류장에 수감된 북한이탈주민 ○○○은 아침부터 밤까지 고정자세를 강요 받았다. 계호원들은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감시를 하다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폭력을 행사하였다.¹²⁶

한편, 2019년 조사 결과 구류시설에서 구타를 해서는 안 된다는 방침이 내려와 폭행 및 가혹행위가 줄었다는 증언들이 다수 수집되었다.¹²⁷ 2014년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 구류장에 수감되었던 북한이탈주민 ○○○은 최근에는 인권침해라고 하여 심하게 구타하지는 않으며 1~2시간 동안 고정자세로 기합을 주었다고 증언하였다.¹²⁸ 보안기관이나 검찰기관에서 고문하고 구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 2019년 1월 보안서 구류장에 수감된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은 이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¹²⁹

125_NKHR2018000058 2018-07-02.

126_NKHR2018000109 2018-10-06.

127_NKHR2019000033 2019-06-03; NKHR2019000069 2019-08-26; NKHR2019000079 2019-09-25.

128_NKHR2019000026 2019-05-18.

129_NKHR2019000106 2019-11-09.

표 II-23 구류장 내 폭행 및 가혹행위 관련 증언

증언내용	증언번호
2014년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 구류장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인권침해라고 하여 심하게 구타하지 않음.	NKHR2019000026 2019-05-18
2015년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 구류장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계호원 1명이 몽둥이로 머리를 지속적으로 구타해 혹이 심하게 나서 제대로 누울 수도 없었음. 중국 감옥에서 오래 생활하다보니 북한말의 억양과 발음이 불량하다는 것이 구타의 이유였음.	NKHR2019000089 2019-10-19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양강도 혜산시 보위부 구류장에 구금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고정자세를 강요받았으며 조금이라도 움직였을 경우 뽕부 5,000개 등의 벌을 받았음. 허약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벌을 받다가 기절하는 사람들도 많았음. 또한, 수시로 구타를 당하였는데, 컷구멍에서 고름이 나올 정도로 구타가 심했음.	NKHR2016000051 2016-04-19
2015년 12월 양강도 혜산시 보위부 구류장에서 고정자세를 강요받았음. 계호원들이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감시를 하다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쇠창살 밖으로 머리카락이나 손을 내밀라고 한 후 참나무 몽둥이로 수시로 때렸음. 심하게 구타를 당한 날은 졸도를 하기도 하였음.	NKHR2016000078 2016-05-31
2016년 양강도 혜산시 보위부 구류장에서 고정자세를 강요받았음. 방안에 24시간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계호원들이 물구나무 서기와 같은 벌을 주었음. 몽둥이로 손바닥을 100~200대씩 때리기도 하였음. 구류장에서 너무 고생을 해서 10kg 이상 체중이 빠지고 6개월을 앓았음.	NKHR2017000001 2017-04-10
2016년 10월 양강도 혜산시 보위부 구류장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고정자세를 강요받았음.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감시를 하다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폭력을 가하였음.	NKHR2018000109 2018-10-06
2016년 12월 함경북도 회령시 보위부 구류장에서 고정자세를 강요받았음.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폭력을 가하고 '뽕부질'을 천 번씩 시켰음.	NKHR2017000054 2017-07-31
2019년 1월 보안서 구류장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보안기관이나 검찰기관에서 고문하고 구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NKHR2019000106 2019-11-09

구류장 내 열악한 영양·위생·의료 상황에 대한 증언도 지속적으로 수집되고 있다. 구류장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열악하고, 겨울철에 난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2015년 10월 혜산시 보안국 구류장에 수감되었던 북한이탈주민 ○○○은 통강냉이 가루에 콩을 섞은 식사를 받았고, 2017년~2018년까지 양강도 보위부 구금시설에서는 강냉이에 메주콩을 식사로 제공

받았다고 증언하였다.¹³⁰ 2015년 2월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 구류장 수용되었던 40대 여성은 당시 식사로 누룽지, 김치, 콩나물이 제공되었으며, 숟가락을 별도로 주지 않아서 비닐로 숟가락을 만들어 사용했다고 증언하였다.¹³¹ 2017년 5월 양강도 혜산시 보위부 구류장에 구금되어 조사를 받았다는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곰팡이 냄새가 나는 강냉이 50알 정도가 한 끼 식사였다고 증언하였다.¹³²

2018년 초~2019년 4월 사이에 구류장에 수감되었던 북한이탈주민 ○○○은 식사로 한 줌 정도의 옥수수를 소금물과 함께 받았고, 식사수준은 개도 안 먹을 정도라고 증언하였다. 기름도 못 먹고, 강냉이 같은 것만 먹어서 10kg 정도가 빠졌고, 허약으로 인한 어혈로 죽는 사람도 있었다. 수감자들은 허약에 걸릴까봐서 한 달에 한 번씩 체중을 재지만 수치를 알려주지는 않았다고 한다. 식수는 큰 물통에 담긴 것을 3~4명이 사용하는 데, 화장실 처리, 세수, 청소를 모두 그 물로 해결해야 해서 물이 모자랐으며, 겨울에는 방이 매우 추웠다고 한다. 갈아입을 옷이 허용되지 않아서 수감당시에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지내야했으며, 나중에 담당자에게 얘기해서 집에서 옷을 받았다. 수감자 치료를 위한 군의가 1명 있지만 지급되는 약이 좋지 않고, 그나마 심하게 아프지 않으면 약도 얻지 못하며 구류장 생활은 짐승과도 같았다고 증언하였다.¹³³

130_NKHR2020000004 2020-05-15.

131_NKHR2018000074 2018-07-30.

132_NKHR2018000091 2018-08-27.

133_NKHR2020000020 2020-07-04.

2017년 온성군 보위부 구류장에서 매일같이 심한 구타를 당했던 한 증언자는 허리와 등에 상처가 심하게 났으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파상풍이 생겨 열이 심하게 나고 고름이 났었다고 한다.¹³⁴ 2017년 보위부 구류장에 수감되었던 한 증언자는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추워서 떨었다고 증언하였다.¹³⁵ 2015년 2월 함경북도 온성군 보위부 구류장 수용 경험이 있는 40대 여성은 겨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난방이 전혀 되지 않아 발이 다 얼 정도였으며, 환자라고 해도 특별히 봐주는 것은 없었다고 한다.¹³⁶

표 II-24 구류장 내 영양·위생·의료 상황 관련 증언

증언내용	증언번호
2015년 5월 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양강도 삼지연시 보안서 구류장에 있었는데, 식사로 소금을 살짝 친 통강냉이 100그램 정도가 제공되었음. 싹이 나고 벌레 먹은 강냉이를 제대로 씻지도 않고 줘서 사람들이 탈이 나고 하였음. 일요일 한 끼 정도는 가족이 가져다준 면식가루로 식사를 하였는데, 면식이 가능하려면 계호원에게 담배 한 갑씩을 바쳐야 했음.	NKHR2017000005 2017-04-10
2015년 12월 양강도 해산시 보위부 구류장에 있었을 당시 식사로 곰팡이가 낀 싹은 통강냉이와 시래기국이 제공되었음. 한 겨울에도 난방이 제공되지 않아 매우 추웠으며, 작은 방에 10명에서 15명 정도가 수용되어 있어 잠을 잘 때 몸을 제대로 펼 수 없었음.	NKHR2016000078 2016-05-31
2016년 양강도 해산시 보안서 구류장에서 통강냉이와 시래기국이 식사로 제공되었는데, 이마저도 양이 적어 사람들이 힘들어 하였음.	NKHR2017000125 2017-11-20
2016년 6월 양강도 해산시 보위부 구류장에 있었을 당시 한 끼 식사로 삶은 통강냉이 한 줌과 멸건 장물이 제공되었음. 구류장 안에 변소는 있는데 수도가 없어 아침마다 30리터짜리 통에 물을 길어다가 썼음. 하루 종일 그 물을 가지고 변소용으로도 쓰고 먹은 그릇도 씻어야 해서 늘 물이 부족하였음. 물을 많이 쓰는 경우 욕을 먹고 벌을 서야 했음.	NKHR2017000108 2017-11-20

134_ NKHR2019000075 2019-08-26.

135_ NKHR2020000027 2020-07-06.

136_ NKHR2018000074 2018-07-30.

증인내용	증언번호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 함경북도 회령시 보위부 구류장에 있었는데, 식사로 곰팡이 냄새가 나는 옥수수밥과 소금물 또는 된장물이 제공되었음.	NKHR2017000054 2017-07-31
2017년 온성군 보위부 구류장 수감 당시 허리와 등에 상처가 심하게 났으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음. 파상풍이 생겨 열이 심하게 나고 고름이 났었음.	NKHR2019000075 2019-08-26
2017년 10월 함경북도 경원군 보위부 구류장에 있었을 당시 한 끼 식사로 옥수수밥, 염장 고추와 오이가 제공되었음.	NKHR2018000098 2018-10-01

나.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 문제

자유권규약 제10조 제2항 (a)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을 기결수와 격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결수용자로서의 지위에 상응하는 별도의 취급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자유권규약 제14조 제2항에 규정된 것과 같이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를 향유하는 미결수용자의 지위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¹³⁷

북한 법규를 살펴보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미결수용자와 수형자의 구분수용과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별도의 규정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¹³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 노동단련처벌이 확정된 사람이 수용되는 시설과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

137. 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21: Article 10(Humane Treatment of Persons Deprived of Their Liberty),” April 10, 1992, para. 9.

138.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를 보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미결수용자와 수형자의 구분수용 및 구분수용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고, 미결수용자 처우의 원칙, 참관금지, 사복착용, 이발,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 조사 등에서의 특칙, 작업과 교화 등 미결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인이 수용되는 시설이 구분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미결수용자와 수형자의 구분수용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결수용자가 수형자와 구별되는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일부 집결소의 경우 수용자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는 점(II.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패, 3. 강제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 변호인 접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않은 점(II.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패, 7.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고려할 때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 보장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수형자에 대한 처우 문제

자유권규약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르면, 교정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수형자에 대하여는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교정·교화를 도모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처우하여야 한다.

우선 북한 법규상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¹³⁹ 북한 형법상 형벌 관련 규정을 보면 형식적으로는 교화소 등에서의 노동을 통한 수형자의 교양개조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이 증언한 북한 내 구금시설의 비인도적 노

139.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를 보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수형자 처우의 원칙, 분류심사, 교육과 교화프로그램, 작업과 직업훈련, 귀휴 등 수형자의 처우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동환경과 과도한 노동 부과는 수행자의 교정과 사회복지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노동의 강도가 매우 강하여 수행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노동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거나 작업 속도가 더딜 경우 폭언과 폭행이 뒤따른다는 증언이 다수 수집되었다. 2014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개천교화소에 수감된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여성은 눈초리반과 뜨개반에서 각각 5개월씩 일을 하였는데, 할당된 일을 완성하지 못하면 반장들이 혼이 나기 때문에 반장들은 수감자들이 잠을 자지 못하게 하였다고 증언하였다.¹⁴⁰ 2015년 6월 개천교화소 수감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당시 점심시간 30분을 제외하고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탄광에서 일을 하였는데, 노동 강도가 매우 센 편이었다고 증언하였다.¹⁴¹ 2016년 함경남도 함흥교화소에 수감되었던 북한이탈주민 ○○○은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작업반에서 눈초리 작업을 하였는데 계획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계호원이 구타를 하였다고 한다.¹⁴²

140_NKHR2018000081 2018-07-30.

141_NKHR2018000034 2018-05-07.

142_NKHR2019000043 2019-07-01.

표 II-25 교화소 내 과도한 노동 실태

증언내용	증언번호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개천교화소 수감 당시 노동과제가 너무 많아 하루에 14시간씩 일을 해야 했음. 일을 제대로 못하였을 경우에는 무자비하게 때리고 잠도 재우지 않았음.	NKHR2016000114 2016-07-12
2015년 5월부터 8월까지 개천교화소 수감 당시 남새반에 속해 하루에 7시간 정도 노동을 하였음.	NKHR2018000080 2018-07-30
2015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전거리교화소 수감 당시 허약에 걸린 상태에서 3미터가 되는 나무를 끌고 내려오는 작업을 하였음. 산에 올라가는 데 2시간 반, 산에서 내려오는 데 6시간이 소요되었으며, 할당된 노동량을 채우지 못하면 참나무 지팡이로 구타를 당하였음. 허약에 걸린 상태에서 나무를 끌고 내려오다가 나무에 깔려 즉사한 수감자도 있었음.	NKHR2017000047 2017-07-03
2016년 개천교화소 수감 당시 탄광에서 탄을 깨는 작업, 농사일, 돌 나르기, 석회 칠, 철대 세우는 일 등 다양한 작업을 하였음.	NKHR2017000122 2017-11-20

라. 미성년 미결수용자·수형자에 대한 처우 문제

자유권규약 제10조 제2항 (b)는 미성년 피고인은 성인과 격리되며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에 회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유권규약 제10조 제3항 후단은 미성년 수형자는 성인과 격리되며 그들의 연령 및 법적 지위에 상응하는 대우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0조에서는 미성년자의 연령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일반논평에서 최소한 형사사법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권규약 제6조 제5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18세 미만의 자를 미성년자로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¹⁴³

현행 북한 법규상으로는 미성년 미결수용자 또는 수형자에 대한 규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집결소에서 아동이 작업에 동원

143. 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21: Article 10(Humane Treatment of Persons Deprived of Their Liberty),” April 10, 1992, para. 13.

된 것을 목격하였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는데,¹⁴⁴ 추후 미성년 미결수용자 또는 수형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 평가

북한에서는 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구류장 등 모든 종류의 구금시설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가 일상화되어 있다. 특히 강제송환자들이 구금되어 조사를 받는 국경지역 보위부 집결소와 구류장에서의 폭행 및 가혹행위 실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구금시설 내 영양·위생·의료 상황도 여전히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된다. 구금시설에서의 폭행 및 가혹행위와 열악한 영양·위생·의료 상황은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에 대한 인도적 처우를 규정하고 있는 자유권규약 제10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구금시설에서의 폭행 및 가혹행위는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자유권규약 제7조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으며, 구금시설에서의 사망은 생명권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자유권규약 제6조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미결수용자와 수형자를 구분하여 수용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 보장이 미흡하며, 수형자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도 과도한 노동 부과 등 교정제도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구금시설 내 폭행 및 가혹행위가 과거에 비해 감소하고

144_NKHR2017000130 2017-12-18; NKHR2018000010 2018-03-12.

있다는 증언이 수집되고 있다. 2017년과 2018년 조사 결과 교화소와 노동단련대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가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다는 증언에 이어 2019년 조사에서는 집결소와 구류장 내 폭행 및 가혹행위가 감소하였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보안기관이나 검찰기관에서 고문하고 구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 또한 구금시설 내 영양·위생·의료 상황도 일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9년 조사 결과 혜산시 집결소의 위생상태가 괜찮은 편이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이 같은 실태 변화는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 구금시설 내 인권 상황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는 북한 구금시설 내 인권 개선에 대한 요구를 계속해서 촉구할 필요가 있다.

6

이동 및 거주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이동 및 거주자의 자유는 자유롭게 이동하고 정착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적 권리 중 하나이다. 거주지 선택과 이주를 포함한 이동의 자유 확보를 통해 인권 전반이 더욱 확실히 보장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요 국제인권기준에서는 이동의 자유에 대한 당위성을 언급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3조는 “모든 사람은 각국의 영역 내에서 이전과 거주자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자유권규약 제12조는 이동 및 거주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다.

표 II-26 자유권규약 제12조

제1항	합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역 내에서 이동의 자유 및 거주자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제2항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
제3항	상기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또한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기타 권리와 양립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제4항	어느 누구도 자국에 돌아올 권리를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이하에서는 이동 및 거주 자유와 관련한 북한의 상황을 주요 쟁점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여행증을 통한 주민단속 및 이동제한

자유권규약 제12조 제1항은 “합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역 내에서 이동의 자유 및 거주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은 자국민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영토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포함한다. 북한은 이동 및 거주 자유와 관련하여 1998년 9월 헌법 개정을 통해 “공민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제75조). 하지만 이러한 법제도적 변화와는 별개로 북한 당국은 여행증 발급을 통해서 주민이동 제한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은 여행증을 발급받아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북한 당국은 평양이나 국경지역으로 이동을 더 엄격하게 관리·통제한다.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법인 인민보안단속법 제30조는 “인민보안기관은 여행질서, 걸어 다니는 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처벌법 제282조에서는 “여행질서를 어긴자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벌금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고 규정한다.

공민증이 발급되지 않은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고 여행증을 발급받은 보호자와 동행해야 한다. 공무원 출장의 경우 출장증명서를 발급받아 북한 내 여행을 할

수 있다. 군인, 공무원, 기업소 일군(일꾼)이 소속단위에서 발급하는 출장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으면 전국적 범위로 출장, 파견을 이유로 하는 여행이 가능하다. 환자가 진단서를 소지하는 경우 치료를 위해 도 소재지나 간병을 해줄 직계가족의 거주지까지 이동하는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여행증은 도내에서 이동할 때는 해당 지역 보안서에서 발급하지만 도 밖으로 이동할 때는 인민위원회 2부에서 여행증명서를 발급한다.¹⁴⁵ 합법적으로 발급받을 경우 비용은 무료이고 기간도 5~7일 정도 걸린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담배나 뇌물을 지불하여 즉시 발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¹⁴⁶

지역에 따라 여행증에 그려지는 줄의 색깔이 다르며, 당국이 위조를 막기 위해서 수시로 색을 변경한다. 평양과 국경연선 지역 등 특수구역을 제외하고는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¹⁴⁷ 여행증을 발급받은 여행자는 여행지에 도착하면 그 지역 인민반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숙박등록부에 등록하고 인민보안성으로부터 여행증 뒷면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여행증이 없는 여행자의 경우 인민반장이 담당 보안원에게 신고한다.

145_ NKHR2017000069 2017-08-28; NKHR2017000092 2017-09-25; NKHR2018000041 2018-06-04; NKHR2018000058 2018-07-02; NKHR2018000096 2018-08-27; NKHR2018000110 2018-10-06; NKHR2018000114 2018-10-13.

146_ NKHR2017000127 2017-12-18; NKHR2018000050 2018-07-02; NKHR2018000096 2018-08-27; NKHR2019000003 2019-04-08; NKHR2019000009 2019-04-08; NKHR2019000079 2019-09-25 외 다수의 증언.

147_ NKHR2016000001 2016-01-12; NKHR2016000029 2016-03-08. 물론, 수월하다는 것은 상대적 인식이다. 증언자에 따라서는 합법적으로 발급받을 시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여행증 발급 자체를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로 보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이 증언은 뇌물수수율 전제로 한 내용일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은 이동의 자유에 대한 당국의 통제가 심하다보니 뇌물을 주고 여행증을 발급받는다. 북한이탈주민 ○○○은 2019년 6월 평안남도 북창군에서 양강도 혜산시로 이동하면서 북한돈 3만 원을 주고 여행증을 2번 발급받았다. 여행증이 있어야 기차표를 구할 수 있다.¹⁴⁸ 도내 지역에서 이동할 경우 여행증 없이 공민증만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단속에 걸리면, 대개 뇌물을 주고 처벌을 피한다.¹⁴⁹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도내를 이동할 때도 일일증명서가 필요하지만, 공민증만 있어도 이동이 가능했다고 증언하였다. 일일증명서를 떼는 사람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공민증이 일일증명서를 대체했다고 한다. 도내 이동은 돈만 있으면 단속을 피할 수 있지만 도 외 이동은 증명서를 떼야한다. 단속할 때는 벌이차(서비스차)에 자전거를 실어서 초소를 통과하고, 초소를 통과한 후에 자전거를 타는 식으로 모면한다고 증언하였다.¹⁵⁰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가족의 탈북으로 인한 감시대상자라 여행증은 물론 공민증도 발급받지 못했지만 여행을 다닐 수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은 단속에 걸리면 담배 한 갑이나 5,000원 정도를 주고 무마하였으며, 여행증을 발급

148_NKHR2020000042 2020-10-31.

149_NKHR2016000017 2016-01-26; NKHR2016000033 2016-03-22; NKHR2016000049 2016-04-19; NKHR2016000137 2016-08-23; NKHR2016000098 2016-06-14; NKHR2017000052 2017-07-03; NKHR2018000004 2018-03-12; NKHR2018000064 2018-07-11; NKHR2018000092 2018-08-27; NKHR2019000012 2019-04-20; NKHR2019000062 2019-07-29.

150_NKHR2020000016 2020-07-04.

받겠다고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보다 그때그때 뇌물을 고이고 가는 것이 더 빠르다고 하였다. 또한 여행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공식절차를 밟는 경우보다 뇌물로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으며, 청진에 가기 위한 뇌물로 북한돈 10,000원 정도가 들었다고 한다. 열차원, 승무원, 보위원, 보안원 등에게 가서 '증명서를 못 떼었는데 여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자리까지 앉혀준다고 증언하였다.¹⁵¹

북한 당국은 여행증 제도를 통해서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그러나 지역 간 이동과정에서 뇌물이 만연하면서 주민들의 이동성이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북한주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할 경우에 여행증을 발급받지 않고 공민증으로 신분을 증명하고 단속에 걸리면 열차원, 승무원, 보위원, 보안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다.

일반 주민이 아닌 조선노동당(이하 '노동당') 간부는 이러한 여행증 제도와는 별개로 당도장이 찍힌 신입장을 발급받아 우선적으로 여행할 수 있다.¹⁵² 또한 뇌물을 지불할 경제적 여력이 되는 사람만이 북한 당국의 통제를 비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 주민에게 이동의 자유는 여전히 차별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1_NKHR2020000021 2020-07-06.

152_NKHR2016000013 2016-01-26.

표 II-27 여행증 관련 사례

증언내용	증언번호
2015년 양강도 김정숙군에서 여행증을 발급받았음. 국경지대나 평양·나선시는 여행증 발급이 제한되나 보안서 2부에 담배 1~5갑을 내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음. 평양·나선시의 경우, 보통 담배 2막대기를 내면 여행기간 15~30일 확보가 가능했음. 기간 연장도 뇌물로 가능했음.	NKHR2015000142 2015-10-06
2015년 양강도 해산시에서 함경남도까지 여행증 없이 여행함. 열차 안 내원들과 인면이 있어 차표, 증명서 없이 이동했으나 결국 단속되어 벌금 1만 원을 냈음.	NKHR2016000081 2016-05-30
2015년 남한에 있는 언니가 보내주는 돈을 받으러 국경지역으로 가기 위해 뇌물을 주고 여행증을 발급받음.	NKHR2017000063 2017-07-31
2015년 평양에 있는 병원에 가기 위해 여행증을 2회 발급받음. 고마움의 표시로 담배와 8위안을 냈음.	NKHR2018000016 2018-04-09
2015년 큰아버지가 사망하여 함경남도 신포로 가기 위해 20위안을 주고 여행증을 발급받음. 1~2일 만에 여행증이 나옴.	NKHR2018000098 2018-08-27
2015년 1월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청진시로 가기 위해 담배 1갑을 주고 여행증을 발급받음.	NKHR2017000092 2017-09-25
2015년 3월, 양강도 해산시에서 동생 면회로 기재 후 함경북도 청진시까지 가는 여행증을 발급받았음. 보안서 2부에서 신청했고, 합법적 절차인 경우 수수료가 없으며 1달 소요되었음.	NKHR2016000171 2016-11-01
2015년 10월,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함경북도 온성군에 있는 친척집 방문을 위해 회사를 통해 합법적으로 증명서(부대, 출장명령서, 위임장)를 받았음.	NKHR2016000155 2016-09-20
2017년 봄 아버지가 평양 소재 병원에 검진을 받기 위해 여행증을 발급받음. 3~5만 원 가량을 뇌물로 주었음. 여행증에는 사선으로 빨간 두 줄이 그려져 있었음. 여행증에는 신청인 이름, 평양 주소, 여행 이유, 기간 등이 적혀 있었음.	NKHR2019000071 2019-08-26
2017년 4월 평양에 사는 지인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여행증을 발급받음. 100위안을 인민위원회 2부 담당자에게 주었고 이틀 만에 여행증이 나옴. 평양여행증에는 대각선으로 빨간 줄이, 나머지 지방여행증은 파란 줄이 그려져 있음.	NKHR2018000058 2018-07-02
2017년 6월 양강도 해산에서 함경북도 김책으로 친척집에 다녀오기 위해 담배 한 갑을 주고 여행증을 발급받음. 도착 이후 해당 지역 인민반장에게 숙박등록을 하였음.	NKHR2017000126 2017-12-18
2018년 들쭉장사를 하기 위해 양강도에서 여행증을 발급받음. 평양에 가는 것은 100위안, 함흥에 가는 것은 50위안을 주어야 함.	NKHR2019000026 2019-05-18
2018년 평양 9·9절 70돌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여행증을 발급받음. 총 6명에게 뇌물을 주었고 신청 당일 발급받음. 뇌물을 주지 않았다면 당일에 처리되지 않았을 것임.	NKHR2019000021 2019-05-07
2018년 11월 양강도에서 평성으로 장사를 하러 가기 위해 여행증을 발급받음. 구체적인 비용을 요구받지는 않았지만 빠른 처리를 위해 담배 한 갑을 주었고 24시간 만에 발급받음.	NKHR2019000024 2019-05-18
여행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행선지에 따라 뇌물 액수가 달라짐. 일반지역은 20~50위안, 승인번호가 필요한 특수지역은 100위안임.	NKHR2018000110 2018-10-06

나. 특정지역 접근제한 및 강제추방

자유권규약 제12조 제3항은 이동 및 거주 의 자유권에 대하여, “상기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또한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기타 권리와 양립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일반논평에서 이동 및 거주 의 자유권에 대한 제한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제한의 조건이 국내법상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단순히 국가기밀 보호를 위해 개인이 국가를 떠날 수 없다거나 혹은 특정한 허가증이 없다는 이유로 국내이동을 금지하는 것 등은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¹⁵³ 자유권규약 제12조 제3항은 이동 및 거주권이 국가정책상 타당하고 합리적 이유가 있을 시에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제약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조항이 자의적·임의적으로 해석되는데 문제가 있다. 북한은 수도인 평양, 국경연선지대, 전연지대(휴전선 접경지역), 나진·선봉 등 자유무역지대를 승인번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일반 주민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 지역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함경북도, 자강도, 양강도, 평안북도, 평양시 등) 도 인민위원회 2부의 승인번호가 찍힌 여행증을 거주지역 도에서 발급받아 소지해야 한다. 승인번호구역 출입증명서의 경우 여러 가지 색깔의 줄이 그어져 있고 국가보위

153. 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27: Article 12(Freedom of Movement),” November 2, 1999, paras. 12, 16.

성 암호가 적혀있기 때문에 여타 증명서와 확연히 구분된다.¹⁵⁴

평양여행증은 일반 여행증보다 발급이 더 까다롭고 뇌물의 액수가 크며, 심지어 뇌물 없이는 발급이 불가능하다.¹⁵⁵ 평양에 큰 행사가 예정돼 있거나 정세가 어지러울 때는 평양여행증이 아예 발급되지 않지만, 병원 진료를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¹⁵⁶ 평양은 보안원에게 뇌물을 주고 여행증 없이 공민증으로만 여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여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¹⁵⁷ 국경지역은 평양보다 통제가 더 심한 편인데,¹⁵⁸ 국경지역에서 내륙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내륙에서 국경지대로 가기 위한 여행증을 발급받는 것이 더 어렵다.¹⁵⁹

이러한 여러 특별구역에 대한 광범위한 출입조치 제한은 이동 및 거주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 북한 당국은 이들 지역 통제에 대해 국가안보적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합리적 상식에 호소하기에는 매우 불충분하다. 단적인 예로, 자국민이 수도를 방문할 때 국가가 이를 통제하고 규제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까다로운 여행증 발급 절차를 통한 특정지역 출입제한과 강제추방이 이동 및 거주에 대한 침해 행위이다. 자유권위원회는 일반논평에서 거주에 대한 권리와 관련해, 이 권

154. 한동호·김수경·이경화, 『북한 내 이동의 자유』 (서울: 통일연구원, 2017), pp. 21~22; NKHR2018000058 2018-07-02; NKHR2019000071 2019-08-26.

155. NKHR2018000058 2018-07-02; NKHR2018000110 2018-10-06.

156. NKHR2018000016 2018-04-09.

157. NKHR2018000092 2018-08-27.

158. NKHR2018000041 2018-06-04.

159. NKHR2014000127 2014-08-26; NKHR2018000003 2018-03-12.

리가 ‘모든 형태의 강제적 이전’으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하고, 동시에 ‘특정지역에 대한 출입금지 및 제한에 대한 방지’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¹⁶⁰ 북한 당국에 의해 시행되는 강제추방은 국가에 의한 강제적 이전의 대표적 예에 해당한다.

북한 당국은 정치적으로 불순한 세력 및 반체제 인사, 그리고 그 가족 등에 대해 강제추방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했고, 특히 특수계층이 사는 지역에서 성분불량자들을 지방으로 대거 이주 시켰다. 먼저, 김정은 정권은 평양의 인구를 줄여 식량배급 등 평양시민들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체제불만자를 색출하여 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전과자나 무직자를 평양 밖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¹⁶¹ 또한 양강도 삼지연시에서도 유사한 이유로 강제추방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고향인 삼지연시는 ‘혁명의 성지’, ‘제2의 평양’으로 불리는 곳으로, 교화자(전과자)와 그 가족들은 이 지역에서 강제 이주시키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특히 삼지연시는 국경지역이라 교화자의 대부분이 탈북 경험자이므로 이들이 다시 탈북하지 못하게 추방시키는 것이라는 증언도 수집되었다.¹⁶²

김정은 시대 들어서는 탈북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국경연선 지역의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켰다는 사실이 보고되고 있다. 국경지대 중 양강도 삼지연시는 강 근처 집 뒤로 수풀이 우거져 있어 혜산시나 보천군 등에 비해 도강이 상대적으로 용이

160_UNHRC, General Comment, No. 27 (1999), para. 7.

161_한동호·김수경·이경화, 『북한 내 이동의 자유』, p. 34.

162_NKHR2017000122 2017-11-20.

하다. 당국은 탈북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2015년경 삼지연시 근처 국경지대의 200세대 정도를 강제 이주시켰고, 기존의 집들은 다 허물기도 했다.¹⁶³ 정치적 보복의 차원에서 시행되어 온 강제이주 정책이 전통적 차원의 강제추방 형태라면, 국경지역 통제를 위해 시행되어 온 강제이주는 새로운 차원의 강제추방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탈북과정에서 붙잡혔거나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비법일경자를 강제추방하는 사례는 예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¹⁶⁴ 특히 2019년 조사에서는 가족의 탈북을 이유로 추방당했다는 증언은 수집되지 않았다. 이는 탈북에 대한 처벌이 약화된 결과라기보다는, 탈북자가 급증하면서 탈북자와 그 가족들을 모두 추방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경지역이라 탈북이 많이 발생하는 양강도의 경우, 도내에서 국경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추방지로 정해야 하다 보니 한정된 공간에 너무 많은 추방자가 몰리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한다.¹⁶⁵

2019년에는 성매매, 마약, 사기 등 사회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비사회주의’ 범죄에 대해 범죄자 본인을 처벌하고 가족을 추방시키는 경우가 증언으로 수집되었다. 2017년 탈북한 북한 이탈주민 ○○○은 2014~2015년경 아들의 사기범죄 때문에 어머니가 황해북도 곡산으로 추방당한 사례를 목격했다고 증언

163_NKHR2016000025 2016-03-08.

164_NKHR2017000011 2017-04-10; NKHR2017000060 2017-07-31; NKHR2018000040 2018-05-08.

165_한동호·김수경·이경화, 『북한 내 이동의 자유』, p. 36.

하였다.¹⁶⁶ 이 증언자는 또 같은 시기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던 여성이 처형당하고 아들은 추방당한 사례를 득문했다고 증언하였다.¹⁶⁷ 2016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2014~2015년 경 유괴범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가족이 모두 추방당하는 사례를 본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다.¹⁶⁸

표 II-28 강제추방 관련 사례

증언내용	증언번호
2014~2015년경, 아들이 경제범죄(사기)를 저질러 교화소에 가고 그 어머니는 황해북도 곡산으로 추방당한 것을 목격함.	NKHR2019000054 2019-07-29
2014~2015년경,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여성이 처형당하고 사업을 도운 아들이 강제추방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득문함.	NKHR2019000054 2019-07-29
2015년 당일군이 이혼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추방 명령을 받고 탈북함.	NKHR2017000033 2017-06-05
2015년 은하수악단 단원 2명이 평양에서 양강도 풍서군 귀북리로 강제 추방온 것을 목격함.	NKHR2017000097 2017-10-23
2015년 봄 양강도 삼지연시 리명수 노동자구에서 약 10세대가 중국과의 밀수가 발각되어 가족 전체가 추방되었음. 주로 풍서, 백암 지역으로 추방됨.	NKHR2016000063 2016-05-03
2015년 9월 아내의 범법행위로 양강도 보천군에서 양강도 풍서군 신창리로 추방되었음. 집행기관은 인민보안성 군 보안서였고, 새벽에 갑자기 차가 들어닥쳐 보안원들이 집에 있는 가구를 모두 차에 싣고 이동시킴.	NKHR2016000194 2016-12-27
2016년 10월 양강도 도당 간부가 양강도 운흥군으로 강제추방당함. 김정은이 칭찬한 예술소조원 공연을 벌였다고 말한 것이 화근이 됨.	NKHR2017000126 2017-12-18

166_ NKHR2019000054 2019-07-29.

167_ 위의 증언.

168_ NKHR2019000063 2019-07-29.

다. 국경출입 제한 및 자유로운 퇴거 금지

자유권규약 제12조 제2항은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자국’이란 본국을 포함하여 넓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자유로운 퇴거’란 그 국가를 떠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 및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유엔 자유권 위원회는 자유권규약 제12조 제2항과 관련하여, 이 조항이 국가가 자국을 떠나려는 개인에 대하여 여권 등 필요한 서류를 적절하게 제공해야 할 의무를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다.¹⁶⁹

그러나 북한 당국은 출입국에 필요한 서류 발급을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북한에서 퇴거와 다른 나라로 이동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북한주민들은 거의 대부분 다른 나라로 이동할 수 있는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다. 출입국법(2013)¹⁷⁰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공무 또는 사사용무를 위해 여권 및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제11조). 여권에는 외교여권, 공무여권, 여행자여권 등 세 종류가 있는데 외교관은 외교여권을, 당 기관이나 공작부서 공무원은 공무여권을, 친척 방문 등을 위해 국외로 나가는 주민들은 여행자여권을 발급받는다.

여행자여권의 경우 친척방문 대상 국가는 중국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주민의 개인문건에 중국에 있는 친척의 이름, 거주지 등 기본 정보가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여권발급의 연령을 50세

169. UNHRC, General Comment, No. 27 (1999), para. 9.

170. 2013년 7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249호로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입국법」(이하 ‘출입국법’).

이상으로 제한하는 국가보위성 외사과 내부규정이 존재한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¹⁷¹ 그러나 뇌물을 바쳐 규정을 피해가는 사례가 많아 실제로는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다.¹⁷² 여권 발급을 위해서는 중국에서 초청장이 와야 하고 기업소나 기관의 지배인, 담당 보안원과 보위원 등의 확인을 거쳐 시 보위성 외사 지도원이 최종 검토한다. 이후 국가보위성 부부장이 최종 결재하여 여권이 발급되는데, 다른 나라에 가서 공화국의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제 날짜에 돌아오겠다는 서약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실상 여권은 외교관 및 공무원, 해외 노동자, 유학생과 같은 특수한 계층에게 발급되며 일반주민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다만 화교와 그 가족의 경우 중국 방문을 위한 여권 발급이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남편이 화교였는데, 화교 가족은 비교적 쉽게 여권을 받을 수 있어 네 차례나 여권을 발급받았으며 공식적인 체류 허가기간은 2개월이지만 화교는 기한을 넘겨도 2년까지는 봐준다고 증언하였다.¹⁷³

북한에는 여권 이외에도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라는 서류가 존재한다.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친척방문이나 소규모 교역 등을 위해 단기로 국외(중국)에 나갈 경우에 발급받는다. 출입국법 제13조에 따르면 북한 주민은 공무 또는 사사용무를 위해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친척

171_NKHR2015000043 2015-02-24.

172_ 북한이탈주민 ○○○은 여권 발급 당시 35세였기 때문에 담당 보위원에게 뇌물을 주고 여권을 발급받았다고 증언하였다. NKHR2015000070 2015-04-07.

173_NKHR2019000054 2019-07-29.

방문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여행자유권과 마찬가지로 중국으로부터 초청통지서 수속을 밟아야 한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2015년 국경통행증을 신청해 4년 만에 발급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뇌물 1만 5,000위안 이상을 지불하였다.¹⁷⁴ 양강도와 같은 국경지역의 경우 적법하게 국경통행증을 발급받아 중국으로 넘어간 사람 중에 돌아온 사람이 거의 없어 국가보위성이 통행증 발급을 제한한다고 한다.¹⁷⁵

국경무역 종사자들은 ‘도강증’이라고 불리는 국경통행증을 발급받는데 이 경우에는 중국으로부터 초청장이 없어도 발급이 가능하다. 도강증은 24~48시간 동안 국경출입을 허용하는 초단기 국경통행증으로 알려져 있다.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가 여권과 한 가지 다른 점은,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는 여권과 달리 국가보위성 중앙조직이 아닌 시·도 보위부에서 발급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볼 때 국경지역 출입국증명서는 여권보다 발급이 다소 수월한 것으로 보인다.

적법한 출입국 서류를 발급받지 않고 무단으로 국경을 넘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거나 출국금지 조치가 가해지고(출입국법 제55조),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북한 형법 제221조(비법국경출입죄)는 불법적으로 국경을 출입한 자를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 국경출입 금

174_ NKHR2019000035 2019-06-03.

175_ 위의 증언.

지 및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탈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국경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차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불법적 도강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는데, 중국에 간 북한 주민은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기간을 체류하며 돈을 벌고 이 과정에서 불법체류자로 중국에 남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한다. 국가는 자국을 떠나려는 개인에게 출입국에 필요한 적법한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저버리는 북한 당국의 이러한 국경출입 통제는 이동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할 수 있다.

라. 평가

2020년 조사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북한 주민들의 이동 및 거주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실제로 여행증 제도과 구간별 단속을 통해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다. 당국이 규정하는 불순세력에 대한 강제추방, 특정지역 접근제한 및 금지 등의 조치도 유지되었다. 다만 탈북에 대한 처벌로 이뤄지던 탈북자 및 탈북자 가족의 강제추방은 다소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기보다 추방자를 수용할 수 있는 당국의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탈북자에 대한 사후처벌로서의 강제추방이 줄어든 것은 결국 탈북을 사전에 방지하는 국경이동 통제의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주민의 이동의 자유는 여전히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국경출입을 철저히 제한한다.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합법적인 여권이나 국경통행증을 발급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설령 여권을 받더라도 절차가 까다롭고 제한이 많아 뇌물을 제공해야 한다. 이동 및 거주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일 뿐만 아니라 외부세계와의 접촉을 통해 의식의 전환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는 북한 내 이동 및 거주 자유 신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7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세계인권선언은 제10조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의 혐의를 결정함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에서 완전히 평등하게 공정한 공개 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권규약도 제14조에서 당사국들이 각국의 사법제도를 통해 공정한 재판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인권 보호에 있어 핵심 요소이며 법치(rule of law)를 수호하는 절차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¹⁷⁶ 제14조 제1항에서는 재판상의 평등권, 모든 종류의 소송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 제14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는 형사재판 절차상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부여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들이 규정되어 있다.

176. UNHRC, “General comment no. 32, Article 14, Right to equality before courts and tribunals and to fair trial,” August 23, 2007, para. 2.

표 II-29 자유권규약 제14조

제1항	모든 사람은 재판에 있어서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의 결정 또는 민사상의 권리 및 의무의 다툼에 관한 결정을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권한 있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 의한 공정한 공개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하 생략)
제2항	모든 형사피의자는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항	모든 사람은 그에 대한 형사상의 죄를 결정함에 있어서 적어도 다음과 같은 보장을 완전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a) 그에 대한 죄의 성질 및 이유에 관하여 그가 이해하는 언어로 신속하고 상세하게 통고받을 것 (b) 변호의 준비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편의를 가질 것과 본인이 선임한 변호인과 연락을 취할 것 (c) 부당하게 지체됨이 없이 재판을 받을 것 (d) 본인의 출석하에 재판을 받으며, 또한 직접 또는 본인이 선임하는 자의 법적 조력을 통하여 변호할 것 (이하 생략) (e)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받도록 할 것과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기를 위한 증인을 출석시키도록 하고 또한 신문받도록 할 것 (f) 법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료로 통역의 조력을 받을 것 (g)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 또는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것
제4항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절차가 그들의 연령을 고려하고 또한 그들의 생활을 촉진하고자 하는 요망을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제5항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법률에 따라 그 판결 및 형벌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상소할 권리를 가진다.
제6항	어떤 사람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그 후 새로운 사실 또는 새로 발견된 사실에 의하여 오심이 있었음을 결정적으로 입증함으로써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파기되었거나 또는 사면을 받았을 경우에는 유죄판결의 결과 형벌을 받은 자는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이하 생략)
제7항	어느 누구도 각국의 법률 및 형사절차에 따라 이미 확정적으로 유죄 또는 무죄선고를 받은 행위에 관하여는 다시 재판 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북한은 헌법과 재판소구성법(2011)¹⁷⁷에 따라 재판소를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재판은 공정하지 않다. 이하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한 북한의 상황을 주요 쟁점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177. 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판소구성법」 (이하 '재판소구성법').

가. 재판의 독립 부인

자유권규약 제14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헌법과 재판소구성법에 따라 재판소를 설치하고 있다. 북한의 재판소에는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군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있다(헌법 제159조). 특별재판소로는 군사재판소, 철도재판소, 군수재판소가 설치되어 있다(재판소구성법 제3조, 형사소송법 제52조). 북한의 재판은 3급 2심제로 운영되고 있다. 북한의 판사는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중앙재판소 소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헌법 제91조 제12호), 그 외 중앙재판소의 판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선거하고, 도(직할시)재판소와 인민재판소의 판사는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재판소구성법 제4조). 또한, 중앙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 중에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헌법 제168조).

그런데 북한에서는 당 우위 및 중앙집권제 원칙에 따라 노동당이 명목상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를 포함하여 모든 기관을 실질적으로 통제한다. 결국 북한의 사법기관은 그 상급 기관, 즉 최고인민회의와 노동당의 관리·감독을 받는 제한적 수임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¹⁷⁸ 북한은 “재판소는 재판에서 독자적이며 재판활동을 법에 의거하여 수행한

178. 이규창·정광진,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 49.

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나(헌법 제166조, 형사소송법 제271조), 이는 개별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소 단위의 조직체계로서의 독립만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여 진정한 의미의 재판 독립이라고 할 수 없다.¹⁷⁹ 2013년까지 도 검찰소 검사로 근무했던 북한이탈주민 ○○○은 재판에서 판사의 역할은 크지 않고, 항상 검찰소 검사가 재판감시를 한다고 증언하였다. 재판은 검사들 중심으로 진행하며, 뇌물도 판사보다 검사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검사는 재판 준비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뇌물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검사라는 직업은 뇌물을 받을 여지가 많기 때문에 별이가 매우 좋다. 검사는 형량을 낮추기 위해 변호사와 판사에게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의자에게 뇌물을 요구하며, 검사는 피의자가 준 금액에서 일부를 착복한다. 재판은 형벌을 과소 또는 과다하게 받는 경우가 많고 제도와 규율이 너무 흐트러져 있다고 한다.¹⁸⁰

한편, 북한은 인민참심원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참심제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 하여금 직업판사와 합의재판부를 이루어 재판하는 제도로서, 일반인인 참심원도 재판부의 어엿한 구성원으로 직업판사와 함께 재판에 전면적으로 참여하여 직업판사와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고 다수결에 따라 재판내용을 결정한다. 북한은 제1심 판결에 인민참심원을 참가시키고 있다(재판소구성법 제9조). 판결 및 판정은 재판에 참가한 판사, 인민참심원의 다수결로 채택하도록 한다(재판소구성법 제17조).

179_ 위의 책, pp. 49~53.

180_ NKHR2020000032 2020-08-04.

인민참심원도 판사와 마찬가지로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다. 중앙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선거하고, 도(직할시)재판소와 인민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재판소구성법 제4조). 실질적으로 당성이 강한 자들만이 인민참심원으로 선출될 수 있고 선출된 인민참심원은 당의 지시를 받지 않을 수 없는 북한의 현실에서 인민참심원제도는 당에 의한 재판소 통제를 제도적으로 가능케 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¹⁸¹

나. 불공정한 재판

자유권규약 제14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재판에 있어 평등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재판은 공정하지 않다. 이는 형식적인 재판에서 잘 드러난다. 또한 재판과정에서의 부정부패도 공정한 재판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수사와 기소 사이에 예심이라는 특이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심의 임무는 피심자를 확정하고 범죄사건의 전모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다(형사소송법 제147조). 그러나 법 규정과는 달리 재판에 들어가기 전 단계인 예심단계에서 판사와 인민참심원이 배제된 채 예심원에 의해 형이 결정된다는 증언들이 있다. 2010년 3월부터 7월까지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예심 및 재판과정을 겪은 북한이탈주민 ○○○은 보안

181_이규창·정광진,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p. 54.

서 예심원이 대부분 형을 확정하며, 예심이 끝날 때쯤 재판소에서 검사가 와서 예심과정 중 폭행 여부, 위생환경 보장 여부, 억울한 부분이나 다른 제기할 내용이 있는지 등을 물어봤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실제 재판소에서 검사가 오기 전 이미 계호원이 엄포를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어떠한 사항에 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고 증언하였다.¹⁸²

제1심 재판은 재판심리시작, 사실심리, 논고와 변론, 피소자의 최후진술, 판결 선고의 5단계로 진행된다(형사소송법 제300조). 일반적으로 북한에서의 형사재판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0년 3월부터 7월까지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예심 및 재판과정을 겪은 북한이탈주민 ○○○은 재판시간은 총 15분이 걸려 노동교화형 5년이 확정되었으며, 항의를 하려 했으나 계호원이 이를 저지했다고 증언하였다.¹⁸³ 재판을 경험한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은 판사, 검사, 변호사, 인민참심원이 재판에 참석은 하였으나 이들의 역할은 매우 소극적이었다고 대답했다.¹⁸⁴ 그러나 이와 다른 증언도 일부 수집되었는데, 2011년 12월 양강도 김정숙군에서 경제사범으로 재판을 경험한 북한이탈주민 ○○○은 판사의 역할이 가장 적극적이었고, 변호사와 인민참심원은 적극적, 검사의 역할은 보통이었다고 대답했다. 예심에서는 노동교화형 5년을 받았으나 재판을 통해 노동단련형 1년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다.¹⁸⁵ 2012년 8월 양강도 혜

182_ NKHR2016000102 2016-06-28.

183_ 위의 증언.

184_ NKHR2017000005 2017-04-10; NKHR2017000103 2017-10-23.

185_ NKHR2016000113 2016-07-12.

산사에서 비법월경죄로 재판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은 판사의 역할은 보통이었으나, 검사, 변호사, 인민참심원은 매우 적극적이었다고 대답했는데, 증인이 참석해 증언이 이뤄졌으며, 1년 6개월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하였다.¹⁸⁶ 이는 비법국경출입죄의 경우 법정 최고형이 5년의 노동교화형임을 고려할 때(형법 제221조), 재판과정에서의 논의가 선고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은 공개재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개재판제도는 군중을 각성시키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지에서 조직되는 재판제도를 말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 대표는 범죄자의 행위를 폭로규탄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85조). 공개재판은 정치적 선전용 또는 주민교양을 위한 선전도구로 이용된다.¹⁸⁷

공개재판제도는 현지에서 재판을 조직함으로써 재판의 편의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가능하다. 그러나 북한의 현지 공개재판제도는 순수한 재판제도라기보다는 범죄를 폭로규탄하게 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공포를 조장하는 주민통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같은 점에서 공개재판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공개폭로모임’으로 불리기도 한다.¹⁸⁸

어떤 범죄에 대해 공개재판이 적용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최근에는 빙두, 아편과 같은 마약류 거래 등에 대한 공개재판이

186_NKHR2016000189 2016-12-27.

187_NKHR2018000099 2018-10-01; NKHR2018000102 2018-10-01; NKHR2019000050 2019-07-20.

188_NKHR2019000013 2019-06-07.

시행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¹⁸⁹ 한국 영화나 드라마 시청을 비롯한 불순녹화물에 대한 공개재판도 다수 목격되고 있다.¹⁹⁰ 이 밖에 비법월경,¹⁹¹ 살인,¹⁹² 인신매매¹⁹³ 등에 대해서도 공개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마약 관련 공개재판이 너무 많이 열린다고 증언하였다.¹⁹⁴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공개재판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린다고 증언하였다. 공개재판 대상은 마약 사용자, 불순 녹화물 시청자, 중국 비법월경자, 중국 또는 한국과 전화하다 검거된 사람 등이다.¹⁹⁵

공개재판제도는 공정한 재판의 원칙에 반한다. 현지공개재판에 판사, 검사, 변호사, 인민참심원의 참석 여부에 대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이 공개재판에 참석하더라도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¹⁹⁶ 북한이탈주민 ○○○은 공개재판에 검사와 변호사는 형식적으로 참석하며, 변호사는 피고인 변호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방어하지도 못한다.¹⁹⁷

189_ NKHR2019000021 2019-05-07; NKHR2019000045 2019-07-01; NKHR2019000062 2019-07-29; NKHR2019000097 2019-10-21.

190_ NKHR2019000063 2019-07-29; NKHR2019000021 2019-05-07; NKHR2019000064 2019-08-17; NKHR2019000104 2019-11-09; NKHR2019000116 2019-11-30.

191_ NKHR2019000064 2019-08-17; NKHR2019000096 2019-10-21; NKHR2019000110 2019-11-18.

192_ NKHR2019000024 2019-05-18.

193_ NKHR2019000082 2019-09-25.

194_ NKHR2020000035 2020-09-05.

195_ NKHR2020000005 2020-05-15.

196_ NKHR2018000014 2018-04-09; NKHR2018000095 2018-08-27.

197_ NKHR2020000035 2020-09-05.

북한이탈주민 ○○○은 판사와 검사는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증언하였다.¹⁹⁸ 북한이탈주민 ○○○은 사안이 엄중한 경우, 검찰소, 도 보위부, 시 보위부 등에서 사람이 나온다고 증언하였다.¹⁹⁹

또한 공개재판 과정에서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공개재판 중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람들은 총살되기도 한다.²⁰⁰ 2014년 양강도 삼지연시 포태구 문화회관 앞에서 비법일경 죄목으로 공개재판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은 공개재판을 받기 전 보위성 구류장에서 20일간 죽도록 매를 맞은 뒤 예심도 받지 않고 판사, 검사, 변호사, 인민참심원 없이 공개재판을 받았다.²⁰¹ 공개재판 중 죄질이 무거운 사람들은 공개처형으로 이어져 생명권 침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한 예로 북한이탈주민 ○○○은 2018년 1월에 함경북도 온성군 군당 책임비서 아들을 살해한 범인이 공개재판을 받은 직후에 공개처형 당했다고 증언하였다.²⁰² 공개처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II.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2.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의 공개적 사형집행에서 살펴보았다.

198_NKHR2020000022 2020-07-06.

199_NKHR2020000005 2020-05-15.

200_NKHR2018000009 2018-03-12; NKHR2018000095 2018-08-27; NKHR2018000124 2018-10-27.

201_NKHR2018000081 2018-07-30.

202_NKHR2019000111 2019-11-18.

다. 유사사법제도의 운영

자유권규약 제14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이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재판소에 의한 공식 재판제도가 아닌 유사재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동지심판, 국가보위성 정치범 재판이 여기에 해당되며, 재판기관 이외의 여러 기관들이 행정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북한의 유사재판제도 운영은 자유권규약 위반에 해당된다.

(1) 동지심판제도

북한에는 정규재판조직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회적 기관으로서 북한 주민을 통제하는 독립적이고 독특한 형태의 재판제도인 동지심판제도가 있다. 북한은 한국전쟁 시기에 일시적으로 시행하였던 군중심판제도를 폐지한 뒤 1972년경부터 각 지역단위별로 동지심판제도를 실시하였다. 동지심판제도의 법적 근거는 검찰감시법(2012)²⁰³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법 제40조 제3호는 범죄자를 예심에 넘기거나, 법을 어긴 자를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또는 동지심판회에 넘기거나, 노동단련 또는 구금 처벌을 할 경우 검사가 범위반 행위를 바로잡거나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지심판 대상은 경제범 및 과오로 인한 손실, 김일성 유일사

203. 2012년 4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46호로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검찰감시법」 (이하 ‘검찰감시법’).

상에 저해되는 행위 중 경미한 사건, 기타 사범 등이다. 동지심판에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무보수노동처분, 경제적 탐오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그 액수의 10배 내지 20배 정도 되는 벌금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행정벌금제도, 행정적 권리행사중지처분, 강직(降職)처분, 자아비판처분, 엄중경고, 경고 등을 내릴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불복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²⁰⁴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함경북도 연사군에서는 2015년부터 정기적으로(10일) 장날마다 동지심판을 했으며, 이러한 결과로 대부분이 노동단련대(90%)로 갔으며, 일부는 교화소(10%)로 갔다고 한다.²⁰⁵

동지심판제도는 주로 군대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파악된다.²⁰⁶ 2019년 조사에서는 강원도 천내군에 있는 부대에서 군복무를 하던 중 3년 동안 탈영했다가 붙잡힌 군인이 2019년 2월 동지심판을 받았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²⁰⁷ 북한이탈주민 〇〇〇는 동지심판에 대해 “군대 내에서의 군사복무를 잘못된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²⁰⁸ 군대 내에서의 동지심판은 대대급부터 진행된다. 군대 동지심판은 항상 한 단계 높은 직급에 있는 상관이 있을 때 진행한다. 심판결과는 상급부서에서 미리 결정하고 본보기로 동지심판을 진행한다. 동지심판은 대부분 교양이나 비판으로 끝나지만 심할 경우 생활제대로 이어

204. 법원행정처, 『북한사법제도개관』(서울: 법원행정처, 1996), pp. 630~637.

205. NKHR2016000188 2016-12-27.

206. NKHR2016000029 2016-03-08; NKHR2017000073 2017-08-28; NKHR2018000107 2018-10-01; NKHR2019000012 2019-04-20.

207. NKHR2019000115 2019-11-30.

208. NKHR2016000001 2016-01-12.

지기도 한다.²⁰⁹ 북한 주민들은 생활제대를 불명예스럽게 생각하며 큰 벌로 인식하고 있다.²¹⁰ 생활제대를 당하면 본인과 가족은 탄광이나 농촌에 배치된다.²¹¹ 동지심판 현장에서는 형벌이 부과되지 않는다. 동지심판 이후 예심절차가 진행되고, 이후 형법상의 형벌이 부과된다.²¹² 예를 들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군대에서 강제 퇴소시키고 교화소에 보낸다.²¹³

(2) 안전보위기관에 의한 정치범 재판

북한에서는 범죄에 대해 정치범죄와 일반범죄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처벌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북한 형사소송법에서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의 경우 안전보위기관이 수사와 예심을 담당하도록 하고 도(직할시) 재판소를 제1심 관할로 정하는 등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을 일반범죄사건과 구분하여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제46조, 제48조 및 제51조).

그런데 형사소송법상의 규정과는 달리 재판도 안전보위기관에서 담당한다는 증언이 있다. 보위원 출신 북한이탈주민 ○○○에 의하면 도 보위부 피의자 심문 등 예심을 거쳐 사실이 정확하다고 판단하면 국가보위성 검찰국에 보고한다고 한다. 검찰국에서 범죄행위가 확실하다고 결정할 경우 예심기관이 있는

209_NKHR2018000107 2018-10-01; NKHR2019000115 2019-11-30.

210_NKHR2019000012 2019-04-20.

211_NKHR2015000069 2015-04-07.

212_NKHR2015000119 2015-09-08; NKHR2015000131 2015-09-22; NKHR2015000172 2015-12-01.

213_NKHR2016000001 2016-01-12.

현지에서 재판을 실시하는데, 국가보위성 검찰국 검사가 판사로서 중앙재판소 명의로 판결하며 비공개로 재판이 진행되고 형법에 따라 형량을 정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 가족을 모두 수용하는 것이 좋을지의 여부와 평생 수용 여부도 국가보위성이 판단하는데, 판단기준으로 삼는 기준문건은 없다고 한다.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관련 간부들이 사건협의회를 개최하여 수용범위, 수용기간 등을 결정한다는 것이다.²¹⁴ 마찬가지로 국가보위성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했던 북한이탈주민 ○○○은 예심이 끝나면 국가보위성 검찰국에서 검사가 내려와 최종적으로 판결한다고 한다. 결국, 정치범의 경우 정식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한다.²¹⁵ 2010년 강제송환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은 중국에서 복송된 이후 신의주 보위부에서 조사를 통해 정치범과 일반범을 구분한다고 설명하였다. 한국, 미국, 일본행을 기도한 사람, 기독교 관련 단체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우 정치범으로 구분되어 일반범과 같은 재판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치범수용소로 가게 된다.²¹⁶

(3) 여러 기관의 행정처벌 부과

북한에서 형법상의 형벌을 적용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벌이 적용된다. 위법행위는 국가의 법 질서를 어긴 행정처벌을 적용할 정도의 위협한 행위이다(행정

214. 북한이탈주민 ○○○, 2005년 4월 19일, 서울에서 면접.

215. 북한이탈주민 ○○○, 2005년 10월 10일, 서울에서 면접.

216. NKHR2016000102 2016-06-28.

처벌법 제8조). 행정처벌로는 경고·엄중경고처벌, 무보수노동 처벌, 노동교양처벌, 강직·해임·철직처벌, 벌금처벌, 변상처벌, 몰수처벌, 중지처벌, 자격정지·자격강급·자격박탈처벌 등 다양한 종류의 행정적 제재가 가해진다(행정처벌법 제15조). 그런데 행정처벌은 재판기관뿐만 아니라 각급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와 내각, 검찰기관, 중재기관, 인민보안기관, 검열감독기관, 자격수여기관에 의하여 부과될 수 있으며, 기관, 기업소, 단체도 법이 정한 범위에서 해당하는 행정처벌을 줄 수 있다(행정처벌법 제332조). 행정처벌은 인민보안단속법과 검찰감시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인민보안기관과 책임일군협의회는 법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노동교양,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 중지, 몰수 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인민보안단속법 제57조). 검사는 노동단련을 부과할 수 있다(검찰감시법 제40조 제3호).

북한에서 행정처벌법과 인민보안단속법 및 검찰감시법에 의한 다양한 행정처벌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강력한 사회통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행정처벌 가운데 특히 무보수노동과 노동교양, 노동단련은 북한 주민들에게 과도한 노동을 가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행정적 제재로 보기 어려우며, 형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라. 변호권 침해

북한 헌법은 제164조에서 “재판은 공개하며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피심자,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제58조). 형사소송법은 또한, “피심자, 피소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조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0조). 판사는 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피심자가 기소된 경우 변호사회에 변호인 선임을 의뢰해야 한다(제63조). 아동권리보장법(2014)²¹⁷도 14세 이상 아동은 변호인의 방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0조).

북한이탈주민들은 변호인이 재판에 참석한다고 증언한다. 변호인들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발언을 하였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 특히 피의자의 토대가 좋은 경우나 피의자 측에서 뇌물을 주는 경우 변호인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3년까지 도 검찰소 검사로 근무했던 북한이탈주민 ○○○은 법 규정상 변호인이 없이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증언하였다. 재판에 참석하는 변호사는 사선변호와 공선변호 두 가지가 있다. 중앙변호사회에 소속된 변호사가 공선변호이고, 법률을 전공한 법률전문가가 무직인 상태에서 수행하는 것이 사선변호이다. 변호사는 재판에서 범죄자의 개준성 정도를 이야기 하며 변호를 한다.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도 있고, 변호를 통해 무죄를 받아낼 때도 있다. 다만 살인이나 무기징역감인 사건은 사선변호를 인정하지 않는다. 재판 과정에서 살인을 한 것이 확정되면 변호인은 변호를 그만두고 물러나야 한다고 한다.²¹⁸

중국에서 강제 복송되어 2015년 재판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은 재판과정에서 사선변호인의 변론을 받았다고 증언하

217. 2014년 3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601호로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동권리보장법」(이하 ‘아동권리보장법’).

218. NKHR2020000032 2020-08-04.

였다. 변호인은 증언자가 속아서 중국에 갔다는 점을 강조하며 용서해달라고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으며, 검사의 구형보다 적은 형량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다.²¹⁹ 북한이탈주민 ○○○은 2016년 7월 비법월경으로 잡혔는데 본인 집안이 좋았고 “사업”도 조금 해서 노동교화형을 가지 않고 풀려날 수 있었다. 당시 변호인은 피의자가 사회와 집단을 위해 헌신했다고 변호해주고 국가지원 증서도 가져와 판사에게 보여주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이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²²⁰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재판과정에 변호사가 배석하는 경우에도 변호사들이 피소자를 위해 조력을 제공하거나 실질적인 변호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5년 양강도 삼지연 시에서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은 변호인이 검사와 함께 거짓 증언자를 섭외하였다고 증언하였다.²²¹ 이 증언자는 북한에서 변호인은 어디까지나 국가편이며 피고인을 위해 나서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2018년 3월 형제가 살인 혐의를 받아 형은 중국으로 도망가고 동생은 붙잡힌 사건에서 교화 5년이 선고되었는데 재판과정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미미하였고 피고인의 감형을 위한 노력은 없었다고 한다.²²²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형식적 운영은 공개재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공개재판에 변호사가 참석하더라도 변호사가 피소자를 위한 적극적인 변론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

219_NKHR2019000043 2019-07-01.

220_NKHR2017000125 2017-11-20.

221_NKHR2017000005 2017-04-10.

222_NKHR2018000107 2018-10-01.

다.²²³ 북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변호사의 임무는 “법에 따라 형사사건이 정확히 취급처리되고 피심자, 피소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다(제59조). 변호사법(1993)²²⁴ 또한 “변호사는 피심자, 피소자의 신청이나 재판소의 의뢰에 따라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나서는 경우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밝히고 옳게 분석·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게 하며, 피심자, 피소자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여야 한다”며 변호사의 권리이자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제12조). 그러나 북한의 변호사는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기보다는 국가나 노동당의 정책을 옹호하고 관철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변호사가 피의자의 변호보다는 범죄혐의 사실을 실토하도록 설득하거나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성격이 강하다.

변호인의 조력을 위해서는 변호인 접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선정된 변호인은 피심자, 피소자를 만나 담화할 수 있다. 예심원, 판사, 재판소는 변호인, 피심자, 피소자가 요구할 경우 만나게 해준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9조). 또한, 북한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피심자, 피소자와 담화하거나 서신거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조 제1항). 변호인 접견권이 일부 이행되고 있으나, 형식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이탈주민 ○○○은 2016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평안남도 내 보안서 구류장에 구금되어 예심

223. NKHR2018000014 2018-04-09; NKHR2018000095 2018-08-27; NKHR2019000020 2019-05-07; NKHR2019000097 2019-10-21.

224. 1993년 12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3호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이하 ‘변호사법’).

을 받을 당시 보안원이 변호사를 만나보라고 하면서 “너 만나서 개수작 하면 죽어”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다.²²⁵ 이 북한이탈주민은 재판 열흘 전에 변호인을 만났고, 변호인이 자신에게 보안서에서 구타를 하거나 밥을 주지 않은 일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자 변호인은 재판할 때 이런 부분을 다 넣어서 형을 줄여 주겠다고 하면서 가족을 통해 뇌물을 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 집이 그럴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더니 실제 재판에서는 변호인이 검사의 편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마. 상소권 보장 미흡 및 상소제도의 형식적 운영

자유권규약 제14조 제5항은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상급법원에 상소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형사판결에 대해 상소가 가능하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제1심 재판소의 판결 또는 판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소자, 변호사, 손해보상청구자는 상급재판소에 상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56조). 그러나 상소는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된다. 상소가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있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가장 큰 문제는 형사소송법 제53조에서 중앙재판소는 “필요에 따라 어느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제1심 사건이든지 직접 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58조에서 중앙재판소가

225_NKHR2017000096 2017-10-23.

제1심 재판에서 채택한 판결과 판정은 상소나 항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점이다. 필요한 경우 최고재판소는 어떤 사건이든 1심으로 재판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상소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2012년 5월 양강도 삼지연시에서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은 상소절차가 있는 것을 알고는 있었으나, 상소를 하면 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서 포기했다고 증언하였다.²²⁶ 2014년 양강도 삼지연시에서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은 억울해도 상소는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²²⁷

상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구류장 생활을 견디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상소를 포기했다는 증언도 있다. 2014년 8월 양강도 삼지연시에서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은 상소과정이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고, 식사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구류장에 오래 있으면 영양실조에 걸려 더 힘들어질 거라는 생각에 상소를 포기했다고 한다.²²⁸ 2014년 4월 양강도 김정숙군에서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은 상소를 할 경우 3~4개월 동안 구금되어야 하며, 이를 견뎌내지 못할 것 같아 상소를 포기했다고 증언하였다.²²⁹ 이로 인해 실제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 주민들이 상소를 해도 무의미한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²³⁰

226_NKHR2016000014 2016-01-26.

227_NKHR2017000058 2017-07-31.

228_NKHR2016000114 2016-07-12.

229_NKHR2016000104 2016-06-28.

230_NKHR2015000031 2015-02-10; NKHR2016000055 2016-05-03.

탈북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상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상소 자체가 불가능한 것인지, 상소의 실익이 없어 상소를 하지 않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불법월경자는 상소할 수 없다는 증언이 있는 반면,²³¹ 불법월경의 경우 혐의 인정과 관련하여 애매한 부분이 없어 다룰 여지가 없으므로 하 루라도 빨리 형기를 마치기 위하여 상소를 하지 않는다는 증언도 있다.²³²

바. 외국인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

2020년 12월을 기준으로 북한에서 형사재판을 받은 외국인은 미국 국적의 유나 리(Euna Lee), 로라 링(Laura Ling), 아이잘론 말리 고클(Aijalon Mahli Gomes), 케네스 배(Kenneth Bae, 한국명: 배준호), 매튜 토드 밀러(Matthew Todd Miller), 오토 프레데릭 워비아(Otto Frederick Warmbier), 김동철, 한국 국적의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그리고 캐나다 국적의 임현수 등 9건에 11명이다.

231_NKHR2012000184 2012-09-11.

232_NKHR2014000151 2014-09-23.

성명	국적	체포 일시	재판 일시	적용 범죄	형벌	집행
유나 리, 로라 링	미국	2009.3.17.	2009.6.4.	조선민족적대죄 비법국경출입죄	노동교화형 12년	재판 후 특별 사면으로 석방 (2009.8.)
아이잘론 말리 곰즈	미국	2010.1.25.	2010.4.6.	조선민족적대죄 비법국경출입죄	노동교화형 8년 벌금 7,000만 원	재판 후 특별 사면으로 석방 (2010.8.)
케네스 배	미국	2012.11.3.	2013.4.30.	국가전복음모죄	노동교화형 15년	복역 중 특별 사면으로 석방 (2014.11.)
김정욱	한국	2013.10.8.	2014.5.30.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국경출입죄	무기 노동교화형	복역 중
매튜 토드 밀러	미국	2014.4.	2014.9.14.	반공화국 적대행위	노동교화형 6년	복역 중 특별 사면으로 석방 (2014.11.)
김국기	한국	2014.10.1.	2015.6.23.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파괴음해죄 비법국경출입죄	무기 노동교화형	복역 중
최춘길		2014.12.				
임현수	캐나다	2015.2.2.	2015.12.16.	국가전복음모죄	무기 노동교화형	복역 중 특별 사면으로 석방 (2017.8.)
오토 프레데릭 웬비어	미국	2016.1.22.	2016.3.16.	국가전복음모죄	노동교화형 15년	복역 중 특별 사면으로 석방, 6일 후 사망 (2017.6.)
김동철	미국	2015.10.2.	2016.4.29.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노동교화형 10년	복역 중 특별 사면으로 석방 (2018.5.)

북한의 외국인 재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북한 당국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형식상으로는 알려 주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북한 변호인들이 자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유나 리의 경우 재판에 앞서 북한

관리가 그녀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북한 변호인이 자신의 편에 서서 변호해줄 리가 만무하다고 판단하여 변호인 선임을 포기하였다.²³³ 케네스 배도 본인이 변호를 거절하였다.²³⁴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관련 내용이 발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다. 외국인들의 변호인 선임을 사실상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자유권규약 제14조 제3항 (b)에 명시된 변호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권리를 침해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전반을 침해한다.

둘째, 외국인 구금기간 중 영사접견권의 임의적 제한이다.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제36조 제1항은 파견국 국민이 영사관할권 내에서 체포, 구금, 유치 또는 구속되었을 때, 그 국민이 통보를 요청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영사기관에 통보하고, 영사기관에 보내는 어떠한 통신도 동 당국에 지체 없이 전달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조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영사접견권은 개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영사접견권은 국제관습법상 인정되는 개인의 권리인 동시에 국가의 권리이다.²³⁵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는 영사협약이 영사관계에 관한 기존의 국제관습법규를 성문화한 조약이라고 판시하였다.²³⁶

233. Euna Lee, *The World is Bigger Now* (New York: Broadway Books, 2010), p. 187.

234. 『조선중앙통신』, 2013.5.9.

235. ICJ, “LaGrand Case(Germany v. U. S. A.),” *Judgement of 27 June 2001*, paras. 89, 128(3).

236. “Case Concerning United State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ran(USA v. Iran),” *ICJ Reports 1980* (24 May 1980), p. 24 (para. 45).

제36조
제1항

파견국의 국민에 관련되는 영사기능의 수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 (a) 영사관은 파견국의 국민과 자유로이 통신할 수 있으며 또한 접촉할 수 있다. 파견국의 국민은 파견국 영사관과의 통신 및 접촉에 관하여 동일한 자유를 가진다.
- (b) 파견국의 영사관할권내에서 파견국의 국민이 체포되는 경우 또는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구금 또는 유치되는 경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구속되는 경우에, 그 국민이 파견국의 영사기관에 통보할 것을 요청하면,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체포, 구금, 유치 또는 구속되어 있는 자가 영사기관에 보내는 어떠한 통신도 동 당국에 지체 없이 전달되어야 한다. 동 당국은 관계자에게 본 세항에 따른 그의 권리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북한은 2014년 억류된 미국인 관광객 매튜 토드 밀러와 제프리 에드워드 포울레(Jeffrey Edward Fowle)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영사 접촉, 대우 등은 유관국 법들에 부합된다고 밝혔다.²³⁷ 미국은 북한과 영사관계가 체결되어 있지 않아 이익대표국인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자국민의 영사접견권을 행사한다. 북한은 2009년 3월 30일, 5월 15일, 6월 1일과 6월 23일 미국 여기자들에 대한 스웨덴 대사와의 면담을 허용하였다. 아이잘론 말리 고프즈도 스웨덴 대사관 대표들이 재판에 참관하였다.²³⁸ 케네스 배의 경우에도 스웨덴 대사관에 구금 사실이 전달되었으며, 영사를 면담할 수 있었다고 한다.²³⁹ 그러나 케네스 배는 평양주변에 있는 외국인 교화소에 구금된 채 송환 협상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대사관을 통해 보내는 서신교환이 제한된 적이 있었으며, 일정 기간 통보 없이 면담이 제한

237_ 『조선중앙통신』, 2014.6.30.

238_ 『조선중앙통신』, 2010.4.7.

239_ 『미국의소리』, 2013.6.1.

된 시기도 있었다.²⁴⁰ 2017년 6월 사망한 오토 프레데릭 월버어는 2016년 3월 2일 스웨덴 대사관 관계자와 한 차례 면담을 하였으나, 이후 접견이 불허되었다. 캐나다 국적의 임현수 목사는 무기노동교화형이 선고되고 이를 뒤인 2015년 12월 18일에 캐나다 외교관과의 첫 면담이 이루어졌다. 케네스 배 이후 영사접견이 장기간 차단되는 등 외국인들의 영사접견권 실현이 장애를 받고 있다.²⁴¹ 한국 국민에게는 영사접견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영사접견권의 제한은 궁극적으로는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보장되어야 하는 자유권규약 제14조에 명시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셋째, 외국인들에 대한 재판은 모두 중앙재판소의 제1심으로 마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들 사안이 북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1심으로 판결을 마치는 것은 외국인의 재판받을 권리에 반한다. 상소할 수 있는 권리는 모든 개인에게 인정되기 때문이다(자유권규약 제14조 제5항).

한편,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전반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5년 5월 12일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에게 전화나 서신교환 등 외부와 통신할 기회를 허용하고, 한국 정부가 선임한 변호인의 조력을

240_ 케네스 배, 2016년 11월 7일, 서울에서 면접.

241_ “북한 억류 미국인 처우 악화…영사 접견 차단 최장기화,” 『미국의소리』, 2016.8.8; “국무부 ‘북한 억류 미국인 소재 파악 안돼…영사접견 1년 3개월 차단,’ 『미국의소리』, 2017.6.3.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나,²⁴² 아직까지 북한 당국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2015년 10월 9일 국제인권단체인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들의 재판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억류된 한국인들이 간첩활동과 전복음모 등의 반국가 범죄를 자백하는 모습만을 보여준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²⁴³ 2020년 12월 현재 북한에는 대한민국 국민 6명이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 평가

북한은 규정상으로는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재판의 독립을 허용하지 않는다. 사법기관은 그 상급기관, 즉 최고인민회의와 노동당의 관리·감독을 받는 제한적 수임기관에 불과하다. 이는 ‘독립적인’ 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재판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판사, 검사, 변호사, 인민참심원의 역할이 소극적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재판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현지공개재판제도도 공정한 재판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동지심판제도, 국가보위성 정치범 재판,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등 유사사법제도 운영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법원에서’ 재판 받을 권

242.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에 억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2015.5.12.

243. 『미국의 소리』, 2015.10.9.

리 침해를 야기한다. 상소제도의 형식적 운영도 지속되고 있다. 한편, 외국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북한은 변호사 선임을 형식적으로만 제공할 뿐, 자유권규약 제14조 제3항에 명시된 자유롭게 선임한 변호인에 의해 조력을 받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구금기간 중 영사접견권의 임의적 제한을 통해 자유권규약 제14조에 명시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의 재판은 상소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제14조 제5항에 명시된 개인의 상소할 권리를 침해한다. 한국 국민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전반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2020년 조사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에 대한 증언은 수집되지 않았다.

8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모든 인간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개인의 생활은 물론 개인의 공간과 정보를 타인으로부터 간섭받거나 침해받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를 포괄한다. 세계인권선언 제 12조는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자유권규약 역시 제17조에서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표 II-32 자유권규약 제17조

제1항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제2항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 또는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와 같이 국제인권규범은 자신의 공간에 타인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권리, 자신이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을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 자신의 정보가 누출되어 함부로 돌아다니는

것을 막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의 개념은 소극적으로는 사생활을 함부로 공개당하지 아니하고 사생활의 평온과 비밀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보장으로, 적극적으로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통제할 수 있는 법적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주민들은 일상적으로 체계적이며 중첩적으로 사생활을 침해받고 있다. 북한에도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법률들이 존재하지만 현실에서 관련 법률들은 쉽게 무력화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북한 주민 감시제도, 불법 가택수사, 통신 간섭 등을 중심으로 사생활 침해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주민 감시제도를 통한 사생활 침해

자유권규약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와 관련해 어느 누구도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제17조). 이러한 사생활 보호 권리 전반이 보장받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조직 및 제도를 통한 주민 감시제도의 존재 및 운용 여부이다. 국가조직 및 제도를 통한 사생활 침해는 국가에 의한 물리적 폭력 행사 이상의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있다. 인간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내밀한 사생활이 국가를 통해 조직적·제도적으로 감시받고 있다는 것은 개개인의 독립성, 자율성, 고유한 인격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감시에 대한 자기검열을 가져오는 심리적 폭력에 해당한다.

북한은 헌법 제79조에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

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생활 침해의 불가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일군의 불법적인 살림집 수색을 형사처벌 대상 범죄로 규정하고(형법 제241조), 압수·수색은 검사의 승인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16조). 또한 통신의 자유와 관련하여 우편통신, 전기통신을 법적으로 보장하고(체신법(2001)²⁴⁴ 제5조, 제11조),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벌, 형사처벌로 다스리고 있다(행정처벌법 제153조, 형법 제158조). 하지만 이러한 법률적 보장과 달리 실제 현실에서는 국가에 의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주민 일상생활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져 왔다. 대표적으로 주민의 사생활 감시와 통제 기능을 하는 것으로는 5호담당제, 인민반, 생활총화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주민 사생활 감시제도로 첫째, ‘5호담당제’, 가 있다. 5호담당제는 5세대를 1개 단위로 묶어 그 중 열성당원인 세대주를 5호 담당선전원으로 배치하여 나머지 세대의 부부 간 애정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를 포함한 가정생활 일체를 간섭·통제하는 제도이다. 5호담당제는 1958년 7월 초 김일성이 평북 창성군 약수리 민주선전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유급 간부 한 사람이 5호씩만 책임지고 교양사업과 경제과업 등 일체를 지도하도록 해서 리사업을 추켜세우라고 하시면서 리당위원장회는 그들을 모아 놓고 과업을 주고 그 집행정형을 총화하면 일이 잘 된다”고 말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 제도는 1960년대

244. 2001년 9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93호로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신법」(이하 ‘체신법’).

이후 이른바 ‘붉은 가정 창조운동’이라는 이름 아래 북한 전역에 걸쳐 실시되었다. 1974년 초부터는 연대책임단위를 5호에서 10호로 늘린 ‘인민반 분조담당제’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 5호 담당제는 노력착취뿐만 아니라 사생활에 대한 국가 개입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인민반 제도를 들 수 있다. 2010년에 제정된 주민행정법(2010)²⁴⁵ 제9조에서 인민반은 “국가사회생활의 기층단위이며, 주민생활의 거점”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북한의 인민반은 1946년 토지개혁 초기에 인민위원회의 사회적 협조단위로서 전국적으로 조직된 것이 그 시초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거주 등록된 모든 주민들은 예외 없이 인민반에 자동 소속된다. 인민반의 세대수는 주민행정법 제9조에 따라 내각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한 개의 인민반은 30~40세대로 묶이는데, 대도시의 아파트 경우 1동에 70~80세대가 거주할 경우 모든 세대들이 한 개의 인민반에 묶이기도 한다.

인민반은 주민생활의 거점이자 가장 말단의 행정조직이다. 특히, 김정은 정권에서 인민반의 감시 역할이 더욱 강화되었다. 인민반은 소속 주민들의 생활지도, 사상동향 파악, 외부 방문자 감시 등을 수행한다. 인민반 안에는 인민반장과 부반장, 세대주반장, 위생반장, 선동원, 담당지도원(보안원, 보위원)을 둔다.²⁴⁶

245. 2010년 7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44호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행정법」(이하 ‘주민행정법’).

246. ‘주민행정법’ 제10조에 의하면 인민반장과 부반장은 인민반회의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인민반장은 인민반 전체 주민의 동태 감시를 맡는다. 세대주반장은 당에서 직접 임명하며 남편들만 별도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데, 남편들만을 상대로 회의, 인원 동원, 강연 등을 주최하기도 하고 선거 행사 때 인민반 통제와 퇴근 후 동태까지 파악하는 임무가 주어진다. 위생반장은 인민반의 환경 책임자이고 선동원은 반원들의 사상교양을 담당하며 인민반의 당원들로 구성된 당분조의 책임자이기도 하다. 담당지도원(보안원, 보위원)은 사회안전성과 국가보위성에서 배치한 감시원이다.

인민반은 생활총화 등을 거쳐 양육문제, 노력동원, 청소, 공공 질서 유지, 사건·사고 전파 등 해당 거주지역 내의 각종 문제를 처리하고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²⁴⁷

주민행정법 제30조는 “주민은 인민반 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며 가정생활을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에 맞게 건전하고 검박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의 인민반 생활과 가정생활은 긴밀하게 연계된다. 보통 인민반장은 불시에 가정을 방문하여 각 가정에 대한 위생 검열, 초상화 검열, 김일성가게 관련 도서 검열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불법적인 가택수색에 해당한다. 또한 인민반은 각종 회의를 통해 각 가정의 비위 사실을 공개 비판토록 강요하고, 사상동향이나 가정의 내밀한 사정을 감시·통제할 뿐만 아니라 도로청소, 농촌 노력동원, 군대 지원 등 각종 과제를 부과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인민반은 주민들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생활총화 제도가 있다. 생활총화는 주민의 사생활을 철저하게 장악하고 통제하는 수단이다. ‘생활총화’란 북한 주민들이 당이나 근로단체와 같은 소속 조직에서 주, 월, 분기, 연별로 각자의 업무와 공·사생활에 대해 자아비판과 상호비판을 하는 모임을 말한다.²⁴⁸ 1967년 김정일이 재정립한 ‘새로운 당생활총화제도’는 주민의 사생활을 철저하게 장악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안되었다. 북한은 1974년 선포한 「당의 유일사상체

247_NKHR2015000014 2015-01-27.

248_통일부 통일교육원 편, 『북한지식사전』 (서울: 통일교육원, 2016), pp. 416~417.

계 확립의 10대 원칙」(이하 ‘유일사상 10대 원칙’)에서 생활총화에 적극 참가하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이러한 주민통제는 더욱 강화되었다. 소학교 2학년 이상의 북한 주민이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생활총화에 무조건 참여해야 한다.²⁴⁹ 생활총화는 자아비판과 상호비판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비판하고 반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주일 동안 있었던 조직생활이나 인민반 생활을 자기검열하여 자아비판하고 상대방의 과오를 지적하는 생활총화는 개인 사생활을 공개하고 비판하도록 강요하는 제도이다. 생활총화 직후에는 그날의 비판 내용을 ‘김일성·김정일 말씀’을 통해 정리하는 ‘생활총화수첩’을 작성하도록 한다.²⁵⁰ 불참 시에는 당세포 비서 앞에서 1대 1로 ‘개별총화’를 받기도 한다.²⁵¹

1990년대 식량난 이후 생활총화가 일부 형식화되거나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주민생활을 통제하는 강력한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특히, 군수업 관련 직장을 다니는 경우 일반 노동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활총화가 세계 이뤄지고 있다.²⁵² 북한 주민들은 평생을 생활총화를 통해 사생활을 자기검열하고 공개하여 비판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이 밖에 주민을 비밀리에 감시하는 ‘안전소조원’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있다. 북한에는 모든 조직에 비밀리에 활동하는 일명 ‘안전소조원’이 있어 일상생활에서 소속 조직의 동료나

249_ 위의 책, p. 415.

250_ NKHR2015000102 2015-05-19.

251_ NKHR2015000053 2015-03-10.

252_ NKHR2019000070 2019-08-26.

주민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들을 ‘스파이’ 또는 ‘통보원’으로 부른다.²⁵³ 안전소조원은 보통 국가기관, 공장·기업소, 농장, 인민반 등에 소속된 사람들 중 비밀리에 선발한다. 모든 조직에 보통 20~30명 중 한 명이 안전소조원이다. 안전소조원으로 비밀리에 발탁되면 해당 소속 조직의 모든 비리에 대해서 빠짐없이 보고하겠다는 서약서 작성 또는 구두 서약을 한다. 이들을 통해서 보름에 한 번 정도씩 A4 용지 반 쪽 분량의 정책자료, 동향자료 등이 비밀 접선을 통해 상부에 보고된다. 가령 누가 농촌 동원기간에 무슨 말을 했다, 누가 장사해서 폭리를 보았다, 담당 과장이나 위원장이 위로부터 내려온 보조금을 사취했다는 등 주민 언행 속에 나타나는 모든 동향을 비밀리에 보고한다. 이들 안전소조원들은 보이지 않는 체제유지의 강력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들을 통해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 사생활 전반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민반, 생활총화 등을 통한 주민 감시와 사생활 침해는 김정 은 집권 이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같은 증언은 2020년 조사에서도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행방불명자·탈북자·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이 있는 주민, 밀수하는 주민, 해외파견자에 대한 감시와 도청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재북 시 탈북자 가족이었던 증언자들의 경우 공통적으로 인민반장과 인민반원 등 이웃의 감시가 일상적으로 이뤄졌고, 보

253. 안전소조원은 서약서를 쓰고 활동하는 스파이와 구두로 서약하고 활동하는 스파이로 구분된다고 한다. NKHR2015000040 2015-02-24.

안원과 보위원의 직접 감시도 노골적으로 이뤄졌다.²⁵⁴ 중국을 자주 다니는 주민들도 감시의 대상에 포함된다. 한 증언자는 양강도 보천군에서 중국과 밀수를 하며 사는데 보위부로부터 항상 감시를 받았으며, 식사시간에 무엇을 먹는지, 장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사는지 등까지 감시를 당했으며, 심지어 밀수하는 사람들에게 감시자를 붙여 상호 감시하게 했다고 증언하였다.²⁵⁵ 해외파견 노동자의 경우도 감시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는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러시아에 파견되었던 한 증언자는 가족과 주고받는 편지가 모두 백퍼센트 보위부의 검열을 받기 때문에 편지에 구체적인 내용을 쓰지 않았고 전화도 일체 하지 않았다고 한다.²⁵⁶

표 II-33 주민감시 및 사회통제 사례

증언내용	증언번호
2017년 2월에 탈북한 언니에게서 편지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보위성에서 미리 검열하여 개봉된 상태로 도착함.	NKHR2019000021 2019-05-07
잘 아는 사람과도 관계가 나빠지면 고발을 당할 수 있어 불안하고, 인민반장 외에도 보위성이나 보안서에서 나온 감시원들이 있어 그들이 참석한 자리에서는 말을 더 조심함.	NKHR2019000020 2019-05-07
고급중학교 1학년부터 의무적으로 청년동맹에 가입하여 매주 세포별로 모여 생활총화를 하여 자아비판과 상호비판을 하였음.	NKHR2019000060 2019-07-29
어머니가 한국에 있어 계속 감시를 받았음. 어머니가 돈을 보내는 것을 당국이 알고 있었고, 누구와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돈을 어떻게 쓰고 하루 일과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을 주변 사람들이 감시함.	NKHR2019000068 2019-08-26

254_ NKHR2020000006 2020-05-15; NKHR2020000014 2020-06-15; NKHR2020000028 2020-07-06; NKHR2020000024 2020-07-06.

255_ NKHR2020000006 2020-05-15.

256_ NKHR2020000050 2020-11-28.

증언내용	증언번호
사회통제를 위한 감시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여맹위원장과 인민반장을 비롯해 보위성, 보안서의 스파이들이 많으며, 청년동맹 생활총화도 매주 진행됨.	NKHR2019000084 2019-10-05
가족이 없다면 보이지 않게 감시가 붙는데, 움직임 하나하나 감시를 받고 비법행위를 찾아내려고 함.	NKHR2019000110 2019-11-18
중국과 밀수를 하며 사는데 보위부에서는 중국에 다니는 사람을 항상 감시하며, 식사 음식, 장에서 구입한 물건 등도 감시하며, 보위지도원들은 밀수꾼들에게 감시자를 붙여 서로 상호 감시하게 함.	NKHR2020000006 2020-05-15
탈북자 가족인 증언자는 보위부의 감시를 받았으며, 보위원이 교체될 때마다 집을 방문하여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감.	NKHR2020000012 2020-06-15
이모의 탈북으로 증언자는 인민반장이나 인민반원들로부터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감사를 받았으며, 보위지도원이 직접 감시를 하는데 밭에서 농사 중에도 와서 얼굴을 보고 가기도 함.	NKHR2020000014 2020-06-15
2017년 딸이 한국 입국 후 감시가 많아졌는데, 옆집 이웃 주민이 증언자의 집을 수시로 감시, 도청하여 시 보위부에 보고함. 하루는 시모상을 당해 하룻밤 집을 비우자 그 이웃이 증언자가 중국으로 도망갔다고 소문을 내 그 일로 보위지도원이 방문함.	NKHR2020000028 2020-07-06
2018년 남편이 행방불명되자 보위부에서 감시하기 시작. 증언자가 집을 비우면 인민반장이 자주 집을 찾아와 동향 파악을 하였고, 보위원도 남편 소식을 묻고 자수하라는 말을 하기도 함.	NKHR2020000026 2020-07-06
아들의 한국 입국을 도운 브로커가 검거되어 증언자도 2019년 4월까지 보위부의 감시를 받음.	NKHR2020000024 2020-07-06
2013~2019년에 러시아에 파견된 증언자는 집에서 오는 편지를 보위부에서 검열하기 때문에 본인도 집으로 보내는 편지에 구체적인 사항을 쓰지 않고 전화도 일체 하지 않음.	NKHR2020000050 2020-11-28

나. 불법 가택수사 및 통신 간섭을 통한 사생활 침해

자유권규약 제17조 제1항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에 대해 규정하면서 어느 누구도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자신의 공간에 타인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권리는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가 된다. 특히 국가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가

택 수색은 개인 주거공간에 대한 불가침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북한 헌법 제79조는 개인 주택의 불가침과 법에 근거하지 않은 가택수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거공간 불가침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다양한 증언을 통해 확인되는 북한 현실은 법적 규정과 큰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에서는 사회안전성(舊 인민보안성), 국가보위성(舊 국가안전보위부), 검찰소, 상설·비상설 검열조직(일명 ‘그루빠’) 등 사법 및 치안일군의 불법 가택수사가 오랫동안 관행화되어 왔다.

북한이탈주민의 다양한 증언에서 불법적인 가택수색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 가택수색은 원래 검찰소의 검사장을 통해 수색영장을 발급받아서 해당 지역 안전위원회를 통과해야만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불순 녹화물이나 밀수 등을 검열한다는 이유로 보안원이나 보위원, 109상무 등이 영장 없이 집 안에 불시에 들어와서 수색하는 사례가 많다.²⁵⁷ 김정은 정권에서는 가택수색 후 뇌물이나 식사 제공을 통해 단속이 무마되는 사례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

한 증언자는 2017년에 예고 없이 가택수색을 당했는데, 단속원들이 허가가 안 된 중국 영화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며 돈이나 휘발유 20kg를 요구하였으나 강아지 2마리를 주는 것으로

257_ NKHR2019000013 2019-05-07; NKHR2019000044 2019-07-01; NKHR2019000045 2019-07-01; NKHR2019000046 2019-07-01; NKHR2019000052 2019-07-20; NKHR2020000011 2020-06-15; NKHR2020000023 2020-07-06; NKHR2020000030 2020-08-03; NKHR2020000048 2020-11-28 외 다수의 증언.

무마되었다.²⁵⁸ 다른 증언자 역시 2018년 10월에 단속원들이 훔친 농작물 소지 여부를 검사한다며 가택수색을 하였는데 불순 녹화물(인도 영화와 중국 영화)이 적발되어 3만 원을 주고 무마하였다.²⁵⁹ 2018년 5월에 가택수색을 당한 한 증언자 역시 컴퓨터에 한국노래가 있어 적발되었는데 식사와 담배를 주고 109상무원들을 돌려보냈다.²⁶⁰

2019년에 탈북한 한 증언자는 단속원들이 뇌물로 생계를 유지하고 기관에서 떨어지는 과제(숙제)를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가택수색에서 문제 사항이 생기더라도 사업(뇌물 제공)을 하면 어떤 일도 해결된다고 설명했다.²⁶¹ 2015년을 전후하여 불법 가택수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영장을 보여주지 않거나 수색항목에 없는 것을 수색할 경우 강하게 항의하면 단속반이 수색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 ○○○은 2017년과 2018년에 109상무원으로부터 가택수색을 당한 적이 있는데 영장 제시가 없었으며, 수색 대상의 경우에도 집주인이 먼저 보여주어야만 단속단원이 볼 수 있다는 규정을 알고 있었는데 단속반원들이 마구잡이식으로 수색하여 항의하였다.²⁶² 다른 증언자 역시 2018년 11월에 보위원 6명으로부터 갑자기 가택수색을 당했는데, 밀수를 한다며

258_NKHR2019000052 2019-07-20.

259_NKHR2019000045 2019-07-01.

260_NKHR2019000071 2019-08-26.

261_NKHR2020000030 2020-08-03.

262_NKHR2019000085 2019-10-05.

손전화기를 내놓으라고 요구받았으나 그들이 담당보위원의 수표, 인민반장의 동행, 수색 영장 없이 가택수색을 하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손전화기가 없다며 강하게 항의하였다.²⁶³

표 II-34 불법 가택수사를 당한 사례

증언내용	증언번호
2015년 보위부에서 전화기를 찾기 위한 가택수색을 하였음.	NKHR2019000013 2019-05-07
2017년에 예고 없이 가택수색을 당했는데 허가 안 된 중국영화와 문제가 된 북한가수의 노래를 소지하고 있다며 돈이나 휘발유 20kg를 요구 받았으나 강아지 2마리(50위안의 가치)로 대체함.	NKHR2019000052 2019-07-20
2018년에 가택수색을 당해 불순 녹화물 소지가 적발되었으나 3만 원을 주고 무마됨.	NKHR2019000045 2019-07-01
2018년 5월 가택수색을 당했는데, 109상무가 들어와서 컴퓨터와 USB가 있는지 검사하여 컴퓨터에 반주음악으로 한국노래가 있다며 적발하여 식사 대접과 담배를 주어 돌려보냄.	NKHR2019000071 2019-08-26
2018년 11월 보위원 6명이 와 가택수색을 하였는데 밀수에 사용한 손전화기를 내놓으라고 하였으나 끝까지 부인하고 500위안을 주고 식사 대접을 함. 그 뒤로는 가택수색을 당하지 않았음.	NKHR2019000095 2019-10-21
양강도 보천군은 밀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담당 보안원이 종종 가택수색을 하는데 수색에 걸리면 밀수품을 모두 압수당함.	NKHR2019000044 2019-07-01
어머니와 함께 밀수 거간을 하였는데 이모가 없어진 이후 영장 없이 가택수색을 당함.	NKHR2019000110 2019-11-18
109상무가 영장 없이 가택수색을 해도 항의할 수 없고, 수색을 나오면 TV가 달궈져 있는지, 메모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손전화기 보이면 함께 단속함.	NKHR2020000023 2020-07-06
109상무가 외국 녹화물 단속을 위해 불시에 집집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긴장해 있었으며, 문을 안 열어서 문을 두드리거나 담을 넘어오기도 함.	NKHR2020000026 2020-07-06
109상무가 영장 없이 집에 들어와 컴퓨터와 책 등을 검열하는데 가택수색을 당해 문제사항이 발견되더라도 단속원이 집을 나가기 전에 사업(뇌물 제공)을 하여 무마가 가능하며, 단속원들은 뇌물로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사업을 하면 해결됨.	NKHR2020000030 2020-08-03
숙박검열, 불순녹화물 단속하러 보안원들이 불시에 집에 오는데 한번도 영장을 본 적이 없으며, 인민반장이 문을 두드리고 보안원들이 단속하는 것인데 인민반장 동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NKHR2020000048 2020-11-28

263. NKHR2019000095 2019-10-21.

다. 평가

북한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민 사생활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국경지역의 감시 강화는 물론 일상적 사회통제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도망자 색출, 불법 녹화물 적발, 비법적 경제활동 단속 등을 이유로 불법적 가택수색, 임의적인 통신 간섭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사생활에 대한 국가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감시와 통제가 오랫동안 이루어지고 있어, 사생활 침해의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 ‘5호담당제’, ‘인민반제도’, ‘생활총화제도’ 등 제도적인 차원의 사생활 감시제도가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특히 불법적 가택수색에 대한 다수의 증언은 주민들의 주거 공간에 대한 불가침의 권리가 실제 생활에서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다수의 증언자들은 김정은 정권에서 불법적 가택수색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가택수색이 공안기관 종사자들의 금품 편취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등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에 이어 제8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적 현상” 및 “사회주의생활양식에 어긋나는 현상”에 대한 강력한 대중적 투쟁 전개와 사법검찰, 사회안전, 보위기관의 역할 강화가 강조되었는데 전 사회적으로 준법기풍과 사회주의생활양식을 확립한다는 명분 하에 공권력 기관에 의한 사생활 침해 현상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9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내면세계의 자유와 관련된 권리로서 가장 기본적인 인권 중 하나이다. 자유로운 신념의 표명,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자유 등 민주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요건이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8조는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자유권규약 제18조는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언급하고 있다.

표 II-35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2항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제3항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
제4항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정 후견인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이하에서는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관련한 북한의 상황을 주요 쟁점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수령유일지배체제 및 10대 원칙 지숙

자유권규약 제18조 제2항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어느 한 국가의 공식신념이 존재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국민에 대한 어떠한 손해나 차별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²⁶⁴ 국가 대 개인의 관계에서 개인은 고유한 사상적 자유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국가의 공식신념은 인정하지 않, 이러한 공식신념의 존재 자체가 개인의 사상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현재 북한은 당국의 공식사상인 주체사상 외에 그 어떠한 사상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뿐 아니라, 1974년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제정한 이래, 국가의 주요 신념을 제외하고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음으로 개인의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북한 헌법에는 사상·양심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기본개념조차 부재한 상황이다. 북한에서 사상·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핵심적 요인은 수령유일 지배체제에서 비롯된 개인숭배 문화로 볼 수 있다. 수령이 중심이 된 국가사상인 주체사상 외에 다른 어떠한 사상을 용납하는

264. UNHRC, “CCPR General Comment No. 22: Article 18(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or Religion),” July 30, 1993, para. 10.

것은 수령유일지배체제를 흔드는 치명적인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북한 헌법은 주체사상만이 국가운영의 ‘기본담보’이며(서문), 주체사상을 국가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제3조).

북한에서 수령유일지배체제를 공고화하고 숭배하는 행위는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김일성에게 무조건 충성하고 김일성의 교시만을 절대적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이 이 문서에 명문화되어 있다. 유일사상 10대 원칙이 발표된 1974년부터 유일사상 10대 원칙은 ‘위대한 지도자’인 김일성에 대한 신격화와 더불어 어떤 법과 규범보다도 북한 주민들의 행동을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은 2013년 6월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개정하였다. 이는 1974년 4월 14일 제정 이후 39년 만의 개정으로, 명칭을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하 ‘10대 원칙’)으로 변경하였다. 10대 원칙은 북한에서 헌법이나 노동당규약보다 상위에서 작동하면서 김정은의 유일 독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통치규범으로, 북한체제를 사상적으로 지지하는 통치의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 있다.²⁶⁵

개정된 10대 원칙은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에 초점을 맞췄다. 유일적 영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영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全黨)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제6원칙). 김정은은 2013년 6월 19일 노동당과 군, 내각 등의 고위간부들을 모아놓고 유일적

265_ 이기우, 『북한의 선전선동과 로동신문』 (서울: 패러다임, 2015), p. 80.

영도체계 확립에 대해 직접 연설을 하였으며, 노동당출판사는 연설 내용을 묶어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 령도 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발간하였다.²⁶⁶ 10대 원칙의 개정은 북한 주민에 대한 사상통제 강화라는 차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II-36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

제1원칙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 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제2원칙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셔야 한다.
제3원칙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권위, 당의 권위를 절대화하며 결사옹위하여야 한다.
제4원칙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노선과 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한다.
제5원칙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유훈, 당의 노선과 방침관철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제6원칙	영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제7원칙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따라 배워 고상한 정신도덕적 풍모와 혁명적 사업방법, 인민적 사업작풍을 지녀야 한다.
제8원칙	당과 수령이 안겨준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당의 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 자각과 사업실적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제9원칙	당의 유일적 영도 밑에 전당·전국·전군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율을 세워야 한다.
제10원칙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이끌어오신 주체혁명 위업, 선군혁명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 완성하여야 한다.

266. 김정은은 이 책자에서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의 10대 원칙」을 계승하고 심화발전시켜 새롭게 '제정'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13), pp. 5~6.

10대 원칙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정치적으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정치범·사상범으로 지목하여 처벌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이를 적극 이용하고 있다. 예컨대 소학교 2학년의 어린 학생이 교과서에 있는 김 부자의 얼굴에 연필로 낙서를 했다는 죄로, 또는 나이 많은 할머니가 김 일성이나 김정일의 사진이 실린 노동신문을 도배지로 사용했다는 죄로 전 가족이 행방불명되는 사례도 10대 원칙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북한 당국은 10대 원칙에 따라 김일성·김정일의 초상화를 간직하기 위해 생명까지 버리도록 강요하는 등 사상 교양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10대 원칙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회에서 당원이 아닌 이상 10대 원칙을 체계적으로 교육 받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집권 이후 새롭게 바뀐 10대 원칙에 대해서는 특별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증언도 있었다.²⁶⁷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10대 원칙은 학교·기업소나 생활총화 시간에 배웠으나 자세한 내용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하였다.²⁶⁸

하지만 10대 원칙은 북한주민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초상화 검열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 ○○○은 2019년부터 초상화 단속이 심해졌다고 증언하였다. 규찰대가 거리에서 초상화 배지를 달지 않은 사람들을 단속하고, 간부들이 내려와서 한두 가구를 선

267_ NKHR2019000014 2019-05-07; NKHR2019000016 2019-05-07.

268_ NKHR2019000008 2019-04-08; NKHR2019000012 2019-04-20; NKHR2020000005 2020-05-15; NKHR2020000026 2020-07-06 외 다수의 증언.

정해서 가정집의 초상화를 검열한다고 한다.²⁶⁹ 초상화 검열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다. 2018년도에 검열이 있을 때는 검열을 미리 공지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때맞춰 잘 관리했다고 한다.²⁷⁰ 2019년에 탈북한 ○○○은 인민반에서 초상화 검열 공지를 몇 번 하였지만 실제로 받아본 적이 없거나,²⁷¹ 과거와 같이 처벌하지는 않는다고 증언하였다.²⁷²

북한주민들은 실생활에서 10대 원칙을 의식하면서 생활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실생활에서 10대 원칙을 지키는 경우가 없다는 증언이 많기 때문이다.²⁷³ 반면에 군대는 사회와 다르다. 북한이탈주민 ○○○은 군대에서 10대 원칙을 암기한다고 증언하였다.²⁷⁴ 해외에 파견되는 북한 주민들도 사상통제 차원에서 10대 원칙에 대한 교육을 강도 높게 받는다. 예를 들어 북한이탈주민 ○○○은 오만에 파견되기 전에 10대 원칙을 통달하도록 외웠다고 한다.²⁷⁵

269_NKHR2020000022 2020-07-06.

270_NKHR2020000024 2020-07-06.

271_NKHR2020000013 2020-06-15.

272_NKHR2020000021 2020-07-06.

273_NKHR2020000021 2020-07-06; NKHR2020000022 2020-07-06; NKHR2020000026 2020-07-06; NKHR2020000048 2020-11-28.

274_NKHR2020000035 2020-09-05.

275_NKHR2018000113 2018-10-13.

표 II-37 10대 원칙 관련 사례

증언내용	증언번호
10대 원칙을 학교에서 배우지 않고, 군대나 노동단련대에서 학습했음.	NKHR2016000167 2016-11-01
10대 원칙을 군대에서 입당 전에 암송했음.	NKHR2016000178 2016-11-29
10대 원칙을 잘 기억하지 못함. 다만 1년에 두 번씩 학습총화를 조직하여 문답식으로 학습하였음.	NKHR2017000053 2017-07-31
10대 원칙 개정 이후 여맹에서 학습하긴 했음. 하지만 기억나지 않음. 실제 생활에서 10대 원칙들을 인식하지는 않음.	NKHR2017000060 2017-07-31
생활총화 시 10대 원칙을 인용했음.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였음. 군대에서는 열심히 하는 편임.	NKHR2017000087 2017-09-25
직장에서 10대 원칙에 대한 책을 배포한 적이 있으나 내용은 거의 기억나지 않음.	NKHR2018000056 2018-07-02
10대 원칙을 문답식으로 교육받으며 힘들게 암송했지만 기억나는 것이 별로 없음.	NKHR2018000070 2018-07-14
김정은 시대 들어 바뀐 10대 원칙을 읽어본 적도 없으며, 입당 대상자들만 입당하기 전에 교육받음.	NKHR2019000013 2019-05-07
바뀐 10대 원칙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음.	NKHR2019000014 2019-05-07
과거에는 10대 원칙에 대한 교육이 세계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자녀들이 학교에서조차 배우지 않음.	NKHR2019000016 2019-05-07

나. 종교의 자유 제한

자유권규약 제18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 헌법은 제68조에서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고 부연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

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해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북한은 사실상 모든 종교 관련 행위를 체제전복 행위로 간주한다. 북한 주민들이 종교를 가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2020년 조사에서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서 종교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다고 증언하였다.²⁷⁶

북한 당국은 주민들이 종교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한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보위부에서 중국에 다니는 사람들을 항상 감시하고, ‘이상한 것’을 알리면 바로 신고를 당한다고 증언하였다.²⁷⁷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강연대회에서 ‘어디에서 성경책이 나왔다’, ‘어떤 처벌을 받는다’, ‘보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²⁷⁸

특히 종교 중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심한 편인데, 성경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정치범에 해당되어 수용소에 보내지거나 처형당하기도 한다.²⁷⁹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2018년 평안남도 평성에서 성경 소지를 이유로 2명이 공개 처형 당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²⁸⁰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기독교를 전파하지 않더라도 개인적인 신앙생활만으로도 정치범으로 처벌받는다고 증언하였다.²⁸¹

276_ NKHR2020000014 2020-06-15; NKHR2020000021 2020-07-06; NKHR2020000023 2020-07-06; NKHR2020000040 2020-10-31.

277_ NKHR2020000006 2020-05-15.

278_ NKHR2020000023 2020-07-06.

279_ NKHR2019000054 2019-07-29; NKHR2019000051 2019-07-20; NKHR2019000021 2019-05-07.

280_ NKHR2019000024 2019-05-18.

281_ NKHR2019000020 2019-05-07.

북한에서의 종교의 자유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평양 이외 지역에는 교회와 성당 등 종교시설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북한 내 종교의 자유가 사실상 제한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북한 당국이 존재를 주장하는 가정 예배처소의 경우에도 실제로 지방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지금까지 면접을 실시한 북한이탈주민들 중 가정예배처소를 알고 있는 경우는 없었다.

이렇게 북한에서 종교 활동이 제한된 이유는 건국 이래 북한 당국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종교 탄압을 꾸준히 실시해 온 사실에 기인한다.²⁸² 북한은 종교를 계급사회에서 지배계급의 착취를 옹호하는 ‘제국주의적 침략 도구’로 설명하고 있다. 북한의 『철학사전』은 “종교는 역사적으로 지배계급의 수중에 장악되어 인민을 기만하며 착취억압하는 도구로 리용되었으며 또 근대에 들어와서는 제국주의자들이 후진 국가 인민들을 침략하는 사상적 도구로 리용되었다”고 명시하고 있다.²⁸³

이러한 종교에 대한 기본인식에 따라 많은 종교인들이 성분 불량자로 간주되어 고문을 받거나 처형되었다. 종교인들은 대부분 반민족적·반혁명적 적대의 대상으로 간주되어 탄압을 받았고, 특히 기독교는 제국주의 침략의 정신적 도구로 간주되어 많은 기독교인들이 숙청당하였다. 또한, 북한은 한국전쟁을 통한 반미 정서를 이용하여 종교탄압을 본격화하였고, 주민들의

282. “종교는 반동적이며 비과학적인 세계관입니다. 종교는 아편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저작선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2), p. 154.

283.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1985), p. 490.

성분조사를 통해 종교인과 그 가족들을 ‘반혁명 요소’로 규정하고 탄압하였다.

둘째, 종교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 당국은 교회, 성당, 사찰을 해외 종교인 및 관광객 등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목적의 대외선전용 시설로 활용해 왔다. 새로이 신축된 종교시설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출입이나 접근은 엄격히 통제되고 있고, 인근 주민들은 종교시설을 ‘외국인 참관지’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 1988년 9월에 세워진 평양 봉수교회의 경우, 평상시에는 관리원 가족만 거주하고 있으나, 외국인 참관 시에는 만경대구역 내 동사무소 근무자 등 노동당에서 엄선한 40~50대의 남녀 수백 명이 위장예배를 보고 있다고 한다. 북한을 방문한 외국 기독교인들이 부활절 일요일에 사전 협의 없이 교회를 방문했다가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많은 외국방문객들은 교회활동이 연출된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셋째, 개인 차원에서의 신앙생활을 철저히 탄압한다는 것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일치된 증언이다. 실제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기 어려운 근본적인 원인은 헌법에 나와 있듯이 종교가 외세침탈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사회질서를 해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특히 1990년대에 식량난으로 주민들의 이동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북한은 기독교가 북한의 체제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기독교의 포교를 강력히 억제하였다.

종교의 자유가 사실상 제한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종교행위와 관련해 주민 및 강제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처벌에서도 나타나

고 있다. 김정은 체제 들어 탈북현상에 대해 통제를 강화하는 이면에는 외부사조의 유입으로 인한 체제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특히 중국 등지에서 기독교를 접촉하거나 남한 사람을 접촉한 경우는 그 처벌이 더 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000과 000은 북한 내에서 종교를 접해본 적은 없지만 탈북 시기 즈음에 종교생활이 발각되면 처벌이 심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한다.²⁸⁴

표 II-38 종교의 자유 침해 사례

증인내용	증인번호
2013년 동료의 아버지가 남한에서 불교를 전파 받아 10년 정도 믿었고, 주위에도 이를 소개시켰음. 직원 1,200명 중 70%가 동료의 집에서 절을 하고 기도를 하러 밤마다 찾았으며, 점이나 관상을 봐주기도 하였음. 불교책도 본 적이 있으며, 동료의 아버지는 2013년에 노동교화형 1년을 선고 받고 원산교화소에 갔으나, 돌아온 후에도 여전히 불교를 믿었음.	NKHR2016000056 2016-05-03
2015년 양강도 김형직군에서 컴퓨터 파일 형태로 성경책 같은 내용이 돌기도 했으며, 종교는 '하나님을 따르는 단체' 로 이해했음.	NKHR2015000091 2015-05-12
2015년 12월 양강도 삼지연시에서 가택수색 반던 중 성경책이 발견되어 도 보위성에 체포되는 것을 목격했음. 이후 소식을 듣지 못하여 관리소로 간 것으로 추정함.	NKHR2017000012 2017-04-10
2018년 황해북도 길성포항에서 기독교 전파 혐의로 2명이 공개처형되는 것을 목격함. 공개재판과 공개처형을 동시에 진행했고 정치범 재판의 주회는 국가보위성이었음.	NKHR2019000054 2019-07-29
2018년 4월 사촌이 중국에서 성경책을 받아 선교용으로 주민들에게 배포하다가 보위성에 적발되어 관리소에 보내졌음.	NKHR2019000051 2019-07-20
밀수를 하는 경우, 성경책 같은 것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이 적발되면 대부분 교화를 보냈음.	NKHR2015000067 2015-04-07
보위성 심문과정을 거치면서 종교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음. 복송되어 보위성 심문을 받을 때, '기독교' 를 이유로 체포되어 온 경우가 많았음.	NKHR2015000122 2015-09-08

284_NKHR2017000106 2017-11-11; NKHR2017000109 2017-11-20.

다. 미신행위에 대한 처벌

북한 내에서 종교의 자유가 사실상 제한됨에 따라 일반 주민들 사이에서는 미신이 성행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점을 보는 것과 같은 미신행위가 증가하였다고 증언하였다.²⁸⁵ 북한 형법은 미신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하고, 미신행위를 배워주었거나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그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 노동교화형에 처하고 있다(형법 제256조).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 당국이 미신행위를 여타 종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북한 주민 혹은 탈북자가 미신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 대부분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을 받는 것으로 파악된다.²⁸⁶ 이마저도 뇌물을 주면 무마되기도 한다.²⁸⁷

그러나 미신행위를 직접 행한 사람에게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기도 한다. 북한이탈주민 ○○○은 미신행위단속에서 점을 본 사람들보다 점쟁이들에 대한 처벌이 더 심하다고 증언하였다. 단속이 심하기 때문에 친한 경우가 아니면 잘 무마되지 않고, 심하면 총살을 당한다. 2019년 혜산에서 점쟁이 여러 명이 검거되었고, 그 중 여자 2명이 총살되었다고 증언하였다.²⁸⁸ 북한이탈주민 ○○○은 2019년부터 미신행위 단속이 심해졌다고

285_NKHR2020000013 2020-06-15; NKHR2020000021 2020-07-06; NKHR2020000028 2020-07-06.

286_NKHR2017000040 2017-06-05; NKHR2018000094 2018-08-27 외 다수의 증언.

287_NKHR2017000046 2017-07-03; NKHR2017000133 2017-12-18; NKHR2018000107 2018-10-01.

288_NKHR2020000024 2020-07-06.

증언하였다. 점을 봐준 사람들이 잡혀가서 교화소에 갔고, 점을 보러간 사람들도 심하지는 않지만 처벌을 받았다고 말했다.²⁸⁹

북한이탈주민 ○○○은 2017~2018년경부터 미신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다고 증언하였다. 미신행위는 교화까지 보내기 때문에 점쟁이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한다. 처벌받은 사람들은 3년형을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뇌물을 고이고 석방되었다는 사람도 있다. 미신행위는 점을 보러간 사람도 법적 처벌 대상이라고 한다.²⁹⁰ 북한이탈주민 ○○○은 2015년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한국의 사주팔자 책을 사촌 시누이에게 빌려주었다가 109상무 단속에 걸려서 한 달을 갇혀 있다가 뇌물을 바치고 석방되었다.²⁹¹ 북한이탈주민 ○○○은 2017년에 미신행위를 하다 적발된 2~3명이 공개재판을 받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들은 각각 교화형 5년과 8년을 받았고, 점을 보러 갔던 사람들은 노동단련형을 받았다고 한다.²⁹²

미신행위자에 대한 처벌사례에 대한 증언은 매우 많다. 대표적인 사례는 2018년 점쟁이들이 공개재판을 받고 교화에 갔다는 증언,²⁹³ 2018년 70대 여성이 미신행위를 20명의 제자들에게 전수 해주다 적발돼 총살당했다는 증언,²⁹⁴ 2018년 방토(귀신 쫓기) 등 미신행위를 해주던 사람이 무기교화를 갔다는 증언²⁹⁵ 등이다.

289_ NKHR2020000013 2020-06-15.

290_ NKHR2020000005 2020-05-15.

291_ NKHR2020000024 2020-07-06.

292_ NKHR2020000022 2020-07-06.

293_ NKHR2019000033 2019-06-03.

294_ NKHR2019000071 2019-08-26.

295_ 위의 증언.

라. 평가

북한 주민들의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이 신봉하는 주체사상과 10대 원칙은 자유로운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양립될 수 없는 근본적 한계를 가진다. 나아가 헌법상 사상·양심의 자유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북한의 법제현실에서 알 수 있듯이 주민들 사이에 사상 및 양심의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종교의 자유의 경우, 헌법에 법적 권리로 명시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주민이 종교란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는 등 종교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 종교의 자유에 관한 한 북한 당국은 지속적 통제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특히 기독교와 같이 특정 종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엄격한 통제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북한에서는 점이나 굿과 같은 미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며, 미신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10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표현의 자유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와 한 인간의 완전한 발전에 있어서 필수조건이 되는 권리로서²⁹⁶ 모든 권리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의 하나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 및 국경과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취득, 전달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자유권규약 제19조에서도 의견 및 표현의 자유가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표 II-39 자유권규약 제19조

제1항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제2항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3항	이 조의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제한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된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b)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공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296. UNHRC, “General comment No. 34, Article 19: Freedoms of opinion and expression,” September 12, 2011, para. 2.

이하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관련한 북한의 상황을 주요 쟁점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정치적 의견 형성 및 표명에 대한 제한

자유권규약 제19조 제1항은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과학적·역사적·도덕적·종교적 성격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의견이 보호되며, 의견을 가지거나 가지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어떠한 형태의 시도도 금지된다.²⁹⁷ 통상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의지에 반하거나 적어도 묵시적 동의 없이 의견 형성에 영향을 받을 때, 그리고 이것이 강압이나 협박 또는 다른 유사한 수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일 때 의견을 가질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²⁹⁸

북한은 헌법 제67조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조선인권연구협회보고서』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불가결한 요소이며 정치적 권리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어디에서나 자기의 견해와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²⁹⁹ 그러나 북한 헌법은 제10조와³⁰⁰ 공

297_ UNHRC, General Comment, No. 34 (2011), paras. 9~10.

298_ Manfred Nowak, *U.N.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CPR Commentary*, 2nd revised ed (Kehl am Rhein: N. P. Engel, 2005), p. 442.

299_ 조선인권연구협회, “조선인권연구협회보고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자료집 (2014.9.13.), p. 49.

300_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동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

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제63조,³⁰¹ 제81조,³⁰² 제85조³⁰³에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 ‘혁명적 경각성’, ‘국가의 안전’을 강조하고 있어서 자유권규약 제19조 제1항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열려 있다. 주민들의 생활을 감시하고 지도하는 인민반 제도가 일상생활에 깊이 침투되어 있어 가족들에게도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말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두려움까지 갖는다.³⁰⁴

실제로 당국의 입장과 다른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거나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일가에 관한 부정적 언급, 남한에 관한 호의적 언급은 모두 금지되어 있다. 수령이나 정치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면 모두 정치범수용소에 간다는 인식이 있다.³⁰⁵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공포가 있어서 항상 신중하게 말한다.³⁰⁶ 북한 사회에서 정치범수용소가 가지는 통제력에 비추어 볼 때, 북한 주민의 정치적 의견 표명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 형법 조항은 정치적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발언이나 행위를 범죄화하여 가혹한 형을 내릴 수 있도록 모호하게 작성되어 있다. ‘민족반역행위’에 속할 경우 무기노동교화형이나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질 수 있다는 불안이 커서 국가나 국가정책을 비판한다고 볼 만한 발언이

301_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

302_ “공민은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견결히 수호하여야 한다.”

303_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304_ NKHR2015000123 2015-09-08.

305_ NKHR2019000020 2019-05-07.

306_ NKHR2019000020 2019-05-07; NKHR2019000104 2019-11-09; 외 다수의 증언.

나 행위를 자기검열하는 문화가 확산되어 있다.³⁰⁷ 또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한국에 전화를 하거나 탈북을 증개하는 등 한국과 연관되면 더 엄하게 처벌한다는 증언이 있다.³⁰⁸ 중국과의 통화도 감청대상이며, 국제전화가 되는 전화기 단속이 심하기 때문에³⁰⁹ 전화사용으로 정치범이 된다는 증언이 있었다.³¹⁰ 북한 사회에서 체제비판 등 정치적 발언은 근본적으로 용인되지 않으며,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개인의 의사 표현조차 심각하게 통제되는 상황이다.

나. 언론 및 출판물의 임의 검열·규제

자유권규약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표현의 수단이 되는 언론·출판 및 기타 매체는 자유로워야 하며 검열과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출판물과 언론 및 방송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우상화 및 주체사상 확립을 위한 주민선동에 활용되고 있다.

북한의 신문은 모두 기관지로서 당과 내각, 각종 단체나 문화 예술 선전 조직에서 발간하는 공식 매체다. 노동당 내 선전선동부 신문과의 감시·감독을 받는 동시에 내각의 출판총국 신문과의 행정지도를 받아 제작·발간된다.³¹¹ 모든 기사의 내용은 주

307_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UN Doc. A/75/271 (2020), para. 20.

308_ NKHR2019000043 2019-07-01.

309_ NKHR2020000026 2020-07-06.

310_ NKHR2020000010 2020-05-16.

311_ 통일부 통일교육원, 『2020 북한 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2019), pp. 297-298.

민들에게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주지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노동당에 대한 비판이나 기본적 문제에 관한 토론은 전무하다. 물론 주민들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한 정보 제공이나 비판적 사고를 증진시킬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엄격히 금지된다.

북한의 방송도 신문과 마찬가지로 당 정책과 국내외 정세를 대내외에 선전·보도하며, 내각 소속 조선중앙방송위원회의 지도하에 운영되고 있다.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방송업무 일체를 계획·총괄하는 기관으로서 방송기능과 규제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으며, 방송 내용에 관해서는 노동당 선전선동부와 통일선선부의 지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³¹²

북한 출판법(1999)³¹³은 “공민은 저작 또는 창작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제6조), 그 목적을 “혁명적출판전통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위업을 고수발전시키는데 복무”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제2조). 출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출판사업자가 내각 또는 출판지도기관에 등록해야 하며(제12조) 등록하지 않고 이용한 인쇄설비는 몰수된다(제49조). 출판법은 “출판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출판물을 통하여 기밀이 새여 나가거나 반동적인 사상과 문화, 생활풍조가 퍼지지 않도록 하며 인쇄설비를 등록하고 그 리용을 감독통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출판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다(제47조). 또한, “기밀을 누설시키거나 반동적인 사상과 문화, 생활풍조를 퍼뜨릴 수 있는 출판물은 생산, 발행, 보급과 반출입을 중지시키고 회

312. 위의 책, p. 304.

313. 1999년 1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72호로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판법」(이하 ‘출판법’).

수한다”고 규정하여(제48조) 사실상 출판물에 대한 당국의 임의 검열 및 규제를 허용하고 있다.

출판법상의 규정을 위반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일군과 개별 공민은 정상에 따라 행정 책임 또는 형사책임에 처해진다(제50조). 행정처벌법은 출판, 인쇄, 보급질서를 위반한 자에게 행정처벌을 가하고 있다(제194조 및 제195조). 북한 형법은 출판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14조). 따라서 어떤 작품을 쓰든지 최종적으로 노동당 선전선동부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만일 북한 주민이 이와 같은 검열기준에 위배되는 것을 출판할 경우, 북한 당국은 형법 제62조의 ‘반국가선전, 선동죄’ 조항을 적용하여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고,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고 있다. 결국 언론이나 출판물을 통해서 노동당이나 최고지도자를 비판하는 글을 게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편, 2019년 제3차 UPR 당시 북한은 주민들의 저작물 출판물의 종류와 수가 현저히 늘어나 문화적 수준이 향상되었으며 창의적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각종 행사가 매년 수차례 개최되어 국가 표창과 기타 인센티브가 수여되어 창작 활동에 대한 대중의 열정이 고무되었다고 보고하였다.³¹⁴ 그러나 실제 주민이 접할 수 있는 출판물은 국가가 인정한 도서로서 인증도장이 찍혀 있

314_UN Doc. A/HRC/WG.6/33/PRK/1 (2019). para. 32.

으며, 그 외의 출판물은 단속대상이다.³¹⁵ 경연대회 참가자들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 참여자들은 국가와 당에 충실한 내용을 담아 ‘나팔수’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 요건이기 때문에,³¹⁶ 당사국이 법적으로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보장한다는 표현의 자유는 제약받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속을 피해서 개인이 운영하는 도서대여점을 통해 미국, 중국, 러시아 책 등 외국서적을 몰래 대여해서 보는 경우도 있고,³¹⁷ 북한 내 휴대전화가 보급·확산됨에 따라 한국 도서 파일을 전자책 형태로 보관하여 읽었다는 증언도 있다.³¹⁸ 외부 출판물 접촉 경험은 대개 지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³¹⁹ 북한 주민들은 당국의 통제로 인해 출판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자유롭게 책을 접할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으나, 동시에 다양한 비법적 방식으로 한국서적을 비롯한 외국서적을 접하는 경우도 확인된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기 중심으로 정보가 유입됨에 따라 출판물 접촉과 이에 대한 검열 및 단속의 사례는 줄어드는 추세이다.

315_ NKHR2015000141 2015-10-06.

316_ “당사상전선의 화선나팔수·방송선전차 방송원들,” 『로동신문』, 2020.10.28.

317_ NKHR2014000219 2014-12-30 외 다수의 증언.

318_ NKHR2014000098 2014-07-15; NKHR2014000148 2014-09-23.

319_ NKHR2016000023 2016-01-26; NKHR2016000064 2016-05-03; NKHR2016000186 2016-12-13.

표 II-40 한국·외국 출판물 접촉 및 단속 사례

증언내용	증언번호
2015년 한국의 사주팔자 책을 사촌시누이에게 빌려줬다가 109그루바에 단속되었음. 한 달을 갇혀 있다가 뇌물을 바치고 나옴. 책 한 권을 통으로 단속당했다면 살기 힘들었을 테지만, 몇 장을 남겨둔 것만 단속되어 해결할 수 있었음.	NKHR2020000024 2020-07-06
양강도 해산시 거주 시 개인이 여는 도서관에서 외국서적을 대여하였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와 같은 미국서적, 일본 탐정소설, 중국, 러시아 책들이 구비되어 있었음. 단속이 심하지 않았음.	NKHR2014000219 2014-12-30
강원도 원산시에서 USB를 활용, 전자책 형식으로 외국도서를 많이 봄. 『대부』와 정주영 자서전 등이 유행하였음.	NKHR2015000137 2015-09-22
양강도 해산시 거주 시 지인을 통해 한국 및 외국 서적, 미술/음악작품을 접하였음. 비사그루바 단속에 걸렸지만 뇌물을 써서 처벌을 면하였음.	NKHR2016000048 2016-04-19

다. 외부정보 차단을 통한 주민의 알 권리 통제

자유권규약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는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자유권규약 당사국인 북한의 주민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각종 정보와 사상을 추·취·전·달할 수 있다. 2019년 제3차 UPR에서 북한은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에 대한 공민의 권리가 관련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소개하였다.³²⁰ 또한 북한은 IT 이용 환경에 투자를 지속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가 모든 종류의 정보를 검색하고 공유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³²¹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외부정보를 자유롭게 접하지도 못할 뿐더러 당국이 허용하지 않는 정보와 사상(녹화물 포함)을 취득하고 전달했을 때 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320_UN Doc. A/HRC/WG.6/33/PRK/1 (2019), para. 4.

321_ *ibid.*, para. 33.

이러한 환경에서 북한 주민이 외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다. TV와 라디오는 북한의 공영방송인 조선중앙방송에 채널과 주파수가 고정되어 있고, 고정시켜 놓은 봉인의 개봉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열받는다.³²² 북한 주민이 방송과 라디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란 주로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우상화 프로그램, 현지지도, 기록영화, 남한 비방 선전에 대한 내용뿐이어서 외부정보를 취득하기가 쉽지 않다. 북한 주민들은 불법 녹화물과 휴대전화를 통해 제한적으로 외부세계와 소통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당국의 통제와 감시 속에 자유롭지 않다.

(1) 녹화물 단속 및 처벌

북한 당국은 불법 녹화물 등 영상을 통한 정보 유통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 북한 형법은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음악, 춤, 그림, 사진, 도서, 녹화물, 전자매체 등을 허가 없이 외국에서 반입하거나 생산, 유포, 보관한 행위(제183조)와 반국가 목적이 없이 적들의 방송을 들었거나 적지물을 수집, 보관하였거나 유포한 행위(제185조)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 퇴폐적인 문화 반입 및 이용, 유포행위는 행정처벌법에 의해서도 처벌된다(제208조). 범법자는 대부분 노동단련형 혹은 노동교화형의 처벌을 받는다. 외부문화 반입 관련 2013년 형법은 제183조(퇴폐적인 문화반입, 류포죄)에서 최대

322. NKHR2015000123 2015-09-08; NKHR2015000133 2015-09-22; NKHR2015000137 2015-09-22; NKHR2015000145 2015-10-06.

노동교화형 10년까지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2년 형법에서는 관련 조항이 최대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이었다는 점을 미루어 보면, 김정은이 최고지도자가 된 2013년 이후 외부 문화 반입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가 전반적으로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II-41 퇴폐적인 문화 반입 및 유포 관련 북한 형법 규정 변화

2012년 형법	제183조(퇴폐적인 문화반입, 유포죄)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그림, 사진, 도서, 록화물과 전자매체 같은 것을 허가없이 다른 나라에서 들여왔거나 만들었거나 류포하였거나 비법적으로 보관하고있는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013년 형법	제183조(퇴폐적인 문화반입, 유포죄)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그림, 사진, 도서, 록화물과 전자매체 같은 것을 허가없이 다른 나라에서 들여왔거나 만들었거나 류포하였거나 비법적으로 보관하고있는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의 록화물, 전자매체 같은 것을 여러번 반입, 류포하였거나 많은 량을 보관하고있는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015년 형법	제183조(퇴폐적인 문화반입, 유포죄)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그림, 사진, 도서, 노래, 영화 같은 것을 허가없이 다른 나라에서 들여왔거나 만들었거나 류포하였거나 비법적으로 보관하고있는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대량을 반입, 제작, 류포, 보관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북한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콘텐츠를 ‘비사회주의 퇴폐적 문화’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검열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외부문화 콘텐츠를 반입하고 생산, 유포, 보관하는 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형법과 행정처벌법 조항을 두고 있다. 게다가 해외언론 및 출판물을 규제하기 위해 별도로 구성된 109상무는 사전 공지나 영장 없이 가택수색을 할 수 있다.³²³ 북한이탈주

323_UN Doc. A/75/271 (2020), para. 18.

민 ○○○은 모든 신경이 단속에 가 있을 정도로 109상무가 자주 가택을 수색한다고 증언하였다.³²⁴ 인민반장이 문을 두드리고 보안원들이 불시에 집에 와서 숙박검열, 불순녹화물 단속을 한다는 증언이 있었다. 영장을 본 적이 없으며, 인민반장을 동행하지 않는 불시 단속이 일상적일 정도로 자주 발생한다는 증언이 다수 있었다.³²⁵

북한 당국은 불법 녹화물을 단속하기 위해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였다. 처음에는 인민보안성, 국가보위성, 검찰, 노동당, 각 산하 행정기관으로 구성된 5개 그루빠가 합동 검열을 하였으나 녹화물에 대한 불법시청이 증가하자 ‘109상무’라는 별도의 조직이 구성되어 상주하면서 검열을 하였다.³²⁶

일반적으로 단속조직은 109상무(그루빠)로 알려져 있다. 한국 녹화물(일명 ‘적색’)이 적발될 경우 사건이 국가보위성으로 넘겨지고 보통 노동교화형 8년에서 10년까지 받는다는 증언이 있었다.³²⁷ 최근에 109상무의 녹화물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처벌도 강력해졌다고 한다.

109상무는 전파를 탐지하는 기계를 들고 다니며 그 기계로 전파를 탐지하면 화면에 어떤 영상물을 봤는지 다 나오기 때문에 이에 걸리면 꼼짝없이 단속된다고 한다.³²⁸ 그러나 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은 한국 드라마, 영화 등 영상물들을 몰래 보는 행

324_NKHR2020000029 2020-07-05.

325_NKHR2020000029 2020-07-05; NKHR2020000048 2020-11-28.

326_NKHR2017000054 2017-07-31.

327_NKHR2016000069 2016-05-17.

328_NKHR2019000089 2019-10-19.

위가 확산되고 있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 특히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보유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에 따른 단속 빈도도 높아지는 추세이다. 중국에서 나오는 값싼 녹화기를 구입하여 영상물을 몰래 팔기도 하며 돌려 보기도 한다는 것이다. 대체로 한국 녹화물을 접한 북한 주민들의 반응은 한국에 대한 동경과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며,³²⁹ 한국의 경제적 부유함과 일상생활에서의 자유로움에 대한 부러움이 탈북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³³⁰

한국 녹화물 시청 및 유포행위의 경우 노동단련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지만 노동교화형을 선고받는다라는 증언은 형법이 개정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노래나 녹화물은 단련대 형을, 한국 드라마는 교화형을 받는다는 증언이 다수 있었다.³³¹ 단속에 걸려 잡혀들어가면 심문을 통해 반드시 유포자에 대한 자백을 받아낸다고 한다.³³² 한국 영화를 보는 것이 빙두를 하다 단속된 것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는데, 교화형·강제추방을 받거나 정치범수용소에 가게 된다는 증언이 있었다.³³³ 북한이탈주민 000의 이웃은 한국 녹화물을 대량 생산, 판매하여 노동교화형 3년을 선고받았다.³³⁴ 특히 음란물이 적발되면 최대 교화 10년형을 받기도 하고³³⁵ 추방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329_NKHR2015000009 2015-01-13 외 다수의 증언.

330_NKHR2015000090 2015-05-12.

331_NKHR2020000026 2020-07-06; NKHR2020000029 2020-07-06 외 다수의 증언.

332_NKHR2020000013 2020-06-15.

333_NKHR2020000021 2020-07-06.

334_NKHR2018000060 2018-07-02.

335_NKHR2019000016 2019-05-07.

한다.³³⁶ 한국 녹화물을 시청·유포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는 포고문이 게시되었다는 증언과³³⁷ 적발되면 총살한다는 증언도 있었다.³³⁸ 2018년에 형사법이 바뀌어서 한국 드라마나 녹화물을 보면 5년 징역형이 주어진다는 증언도 있었다.³³⁹

하지만 당국의 녹화물 차단을 위한 통제 강화와 별개로 여전히 인맥과 뇌물을 통해 처벌을 면제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녹화물 시청이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된다.³⁴⁰ 북한이탈주민 ○○○은 녹화물 단속을 당했을 때 현장에서 돈을 낼 수 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고 증언하였다. 교화에 갈 사안도 며칠이나 몇 달 만에 풀려나오기도 하며, 돈이 많은 집은 걸려도 돈으로 무마할 수 있다고 한다.³⁴¹ 휴대전화에 이색적인 노래가 있었는데 100달러를 내고 무마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증언도 있었다.³⁴² 반면에 한국 녹화물이나 음악이 발각되는 경우 노동교화소에 가게 되므로 고여야 하는 뇌물의 액수가 편당 2천 달러 또는 1만 위안 정도로 매우 높다는 증언이 다수 있었다.³⁴³ 미국영화 1건 적발 시 교화 1년 등 사안에 따라 처벌 크기가 다르나 보통 뇌물을 주면 풀려날

336_NKHR2019000003 2019-04-08.

337_NKHR2015000099 2015-05-19.

338_NKHR2019000084 2019-10-05.

339_2018년에 개정되었다는 형사법은 현재 입수되지 않아 정확한 법령 구문을 확인할 수 없으나 일부 개정 내용은 언론에서 소개된 바 있다. “북, 인신매매법 처벌에 관한 형법 일부 개정,” 『자유아시아방송』, 2019.6.26.

340_NKHR2020000005 2020-05-15; NKHR2020000022 2020-07-06 외 다수의 증언.

341_NKHR2020000014 2020-06-15.

342_NKHR2020000048 2020-11-28.

343_NKHR2020000005 2020-05-15; NKHR2020000013 2020-06-15; NKHR2020000022 2020-07-06; NKHR2020000030 2020-08-03 외 다수의 증언.

수 있으며, 그 뇌물의 양도 일반화되어 있다고 증언하였다.³⁴⁴ 2019년에 109상무의 갑작스런 텔레비전 검열로 알판과 메모리카드가 적발되어 담배 한 보루를 단속원 3명에게 주어 처벌을 면했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³⁴⁵ 한국 드라마나 영화는 뇌물로 해결되지 않으며, 시청하다가 단속될 경우 돈을 아무리 쥐도 교화소나 관리소에 보내진다고 한다.³⁴⁶ 관련 내용은 부정부패사안을 다루는 ‘V. 주요사안, 2. 부정부패’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표 II-42 녹화를 시청 및 처벌 실태

증언내용	증언번호
2016년 한국 노래를 메모리에 담아서 듣다가 노동단련형 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했음.	NKHR2018000028 2018-05-08
2016년 사촌언니가 친구들과 모여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다 걸렸는데 4명 중 2명이 미성년자였지만 교화 2년을 갔음.	NKHR2018000102 2018-10-01
2016년 5월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한국 노래 청취 및 불순 녹화물을 시청한 죄로 유기교화형 6년형을 선고 받고, 전거리교화소에 수감 중인 사람을 목격함.	NKHR2017000006 2017-04-10
2017년에 학생 8명이 한국 음란물을 보다가 단속되어 추방당함.	NKHR2019000003 2019-04-08
2017~2018년경 중국영화로 단속을 당했지만 인맥과 뇌물을 통해 처벌을 면했음. 중국영화라서 가볍게 넘어갈 수 있었음. 한국 영화일 경우 뇌물로 1,000위안을 내야 하고, 돈을 많이 내도 결국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음. 또한 한국드라마 25부작, 영화 5개가 걸린 사람은 30,000위안을 바쳤다고 들음. 단속에 걸린 현장에서 바로 뇌물을 고이면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도 무마가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나 뒷선에 보고된 이후에는 뇌물을 고일 대상도 많아지고 금액도 커짐.	NKHR2020000005 2020-05-15
2018년 10월 가택수색에서 불순녹화물(인도영화, 중국영화)이 적발되었으나 30,000원으로 무마했음.	NKHR2019000045 2019-07-01

344_NKHR2019000026 2019-05-18.

345_NKHR2019000093 2019-10-21.

346_NKHR2019000076 2019-08-26; NKHR2019000089 2019-10-19; NKHR2019000097 2019-10-21.

증언내용	증언번호
2018년 지인이 한국 영화를 보다가 녹화물 가택수색에 단속되었음. 6개월 정도 보위부에 들어가 있었으며, 돈을 많이 고이고 단련대에 가는 것을 면했음. 한국 영화가 단속되면 자칫 노동교화소에 가게 되므로 대략 2,000달러 정도로 많이 고여야 함.	NKHR2020000022 2020-07-06
2019년 2월에 방침이 떨어져서 한국 녹화물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소련의 녹화물도 보지 못하게 단속을 강화함. 109상무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단속을 했음. 양강도 해산시에 거주하던 여성이 한국 녹화물을 보다가 이웃의 고자질로 불시에 109상무에 단속을 당해 뇌물로 20,000위안을 건넸는데도 무마되지 않고 붙잡혀 갔다는 소식을 전해 들음. 중국영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처벌이 약하지만 한국 드라마는 뇌물로도 해결되지 않고 교화소나 관리소에 보내진다고 함.	NKHR2019000076 2019-08-26
2019년에 남편의 사촌동생이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단속되어 자신의 집으로 도주해 왔음. 드라마를 100회 가까이 보았고, 최근 드라마였음. 증언자도 친척을 보호해줬다고 해서 단련대에 갈 뻔함. 친척은 심문을 받았지만 뇌물을 10,000위안 정도 고이고 법적 처벌과 퇴학을 면했음. 돈이 없으면 무조건 교화소를 가는데, 시동생이 무마되어서 증언자 가족도 처벌을 면함.	NKHR2020000030 2020-08-03
2013년부터 2019년 말까지 러시아에 파견되었는데, 회사에서 스마트폰은 쓰지 못하게 했지만 노동자들이 막대기형 전화를 암암리에 사용했음. 관리자가 보지 못하도록 몰래 사용하면서 유튜브를 많이 보았음. 2018년 남북정상회담도 유튜브에서 보고, 한국노래도 들었음. 전화를 검열하지는 않았음.	NKHR2020000050 2020-11-28
2019년 탈북한 한 증언자는 청년동맹에서 길 가던 사람들의 손전화 단속을 하는데, 한국 영화가 단속되면 1편에 10,000위안 정도를 고여야 무마가 가능하다고 증언함.	NKHR2020000013 2020-06-15

(2) 휴대전화 단속 및 처벌

휴대전화는 북한 주민들 간에 외부정보가 유입·전달되는 주요 수단이다. 북한의 무선통신 가입자 수는 2010년 50만 명, 2012년 100만 명, 2013년 300만 명 수준에 이른 후 2017년 370만 명을 넘어섰고,³⁴⁷ 2020년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약 600만 명 수준으로, 이집트·태국 합작사 등 3개 통신사가 3G

347_ 박영자 외,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사회 8대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18), p. 149.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마당 종사자 등 1인이 다수의 휴대전화를 보유한 것을 감안할 때 실제 사용자는 전체 주민의 약 20%에 해당하는 450만 명 수준으로 파악된다. 일방적인 정보 전달 도구로 스마트폰이 활용되고 있으나, 정보통제 차원에서 인터넷 연결은 불가능한 상황이다.³⁴⁸

또한, 휴대전화에도 도청 및 보안체크 기능을 삽입하여 정보 유출 방치를 조치하는 등 정보통제 차원의 제약을 가하고 있다.³⁴⁹ 중국에서 생산한 기기를 수입해 북한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체계를 바꿔 재판매하고,³⁵⁰ 이로 인해 비법적인 것이 모두 막혀 단속이 없었다는 증언도 있었다.³⁵¹

북한 내 휴대전화의 보급량은 증가하였으나 주로 국내 통화에 한정되고 있다. 북한은 2019년 8월을 전후해 외부와의 전화통화를 원천차단하는 감청장비와 방해전파 설비를 국경 일대에 새로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³⁵²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³⁵³ 또한 휴대전화 감시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청년동맹이나 규찰대가 길거리에서 복장을 단속하면서 휴대전화를 검사하는 일이 흔하며,³⁵⁴ 109상무가 가택수색을 왔을 때 휴대전화가 보이면 함께 단속

348. 김민관, “최근 북한 스마트폰 이용 현황 및 시사점,” 『북한포커스』, 2020.8.10.

349. 위의 글.

350. NKHR2020000048 2020-11-28.

351. NKHR2020000044 2020-10-31.

352. “북한 외부 전화 통화자에 거액의 벌금 부과,” 『자유아시아방송』, 2019.10.8.

353. NKHR2020000026 2020-07-06; NKHR2020000030 2020-08-03.

354. NKHR2020000005 2020-05-15; NKHR2020000023 2020-07-06; NKHR2020000029 2020-07-06 외 다수의 증언.

하고,³⁵⁵ 도끼리 교차검열 하거나 지운 데이터도 복원해서 검사하는 등 단속이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³⁵⁶

북한 주민들이 단속을 회피하는 방식도 다양해졌다. 평소에 숨겨놓았다가 산이나 아파트 꼭대기에 올라가 짧게 통화하거나,³⁵⁷ 중국산 스마트폰 위챗으로 채팅하거나, 문자메시지만 주고받은 후 바로 삭제한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³⁵⁸

휴대전화 사용 단속 항목은 문자메시지 내용, 통화 내용, 메모리 등이다. 한국노래나 드라마, 게임, 문자메시지의 남한말투 뿐만 아니라 중국게임이나 각종 콘텐츠, 중국과의 통화도 단속 대상이다. 북한노래와 영화라도 탈북 연예인의 것은 보지 못하게 하며, 노랫말이 들어가면 남한노래인지 알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남한반주만 가지고 다니기도 한다.³⁵⁹ 2020년에 자녀를 학교에 보낸 북한이탈주민 ○○○은 휴대전화를 소지한 학생들이 늘어남에 따라 학교에서 매일 아침 학생들의 전화에 불순속 화물, 남한노래 등이 있는지 검사한다고 증언하였다.³⁶⁰

단속에 걸렸을 경우 상황에 따라 처벌이 다르지만, 뇌물을 통해 형기를 낮추거나 처벌을 면했다는 증언이 다수 있었다. 뇌물 금액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해산시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355_NKHR2020000023 2020-07-06; NKHR2020000001 2020-05-15.

356_NKHR2020000030 2020-08-03.

357_NKHR2020000017 2020-07-04; NKHR2020000026 2020-07-06; NKHR2020000028 2020-07-06.

358_NKHR2020000013 2020-06-15; NKHR2020000024 2020-07-06.

359_NKHR2020000010 2020-05-16; NKHR2020000029 2020-07-06; NKHR2020000030 2020-08-03.

360_NKHR2020000038 2020-09-26.

많은 액수를 고여야 단속을 해결한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³⁶¹ 단속에 걸린 현장에서 1만 위안 정도 고이면 바로 무마할 수 있고, 교화소에 가더라도 뇌물을 고이면 무마가 가능하다는 증언도 있었다.³⁶²

표 II-43 휴대전화 단속 및 처벌 실태

증언내용	증언번호
2016년 중국에 간 딸과 통화하다가 감청기에 걸려 보위성에서 20일간 조사받음.	NKHR2018000058 2018-07-02
2016년에 길에서 통화 중 보안원에게 단속을 당함. 메시지로 주고받은 유머 이야기가 불순하고 부르주아사상이라 단속 당한 후에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바로바로 삭제함.	NKHR2019000071 2019-08-26
2017년 아들이 남한에 있는 친척에게 전화하다가 군대에 검거되어 보위성으로 넘겨졌음. 6,000위안을 보위부의 3명에게 나누어 주어 13일 만에 석방되었고, 전화기는 몰수당함.	NKHR2019000033 2019-06-03
2017년 12월 전화하다가 단속에 걸림. 노래파일 중에 한국 창법이나 한국 스타일로 편곡된 전주가 있는 음악은 북한 노래라고 해도 단속대상임.	NKHR2018000076 2018-07-30
2017년 5월 산에 올라가 중국산 전화기로 한국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하려고 했지만, 미처 통화하기도 전에 주위를 살피는 것을 수상하게 본 발갈이 하는 사람들이 신고해서 잡혔음. 이후 2017년 5월 5일~15일까지 혜산시 시 보위부 구류장에서 조사받고, 시 안전부에 이관되어서 22일간 구류되며 조사받았음. 같이 갔던 손전화 주인도 함께 보위부 구류장에 갔음. 시 안전부에서 노동교양대 3개월 처분을 받아 숙식을 하며 강제노동을 했음. 병이 있어서 1,100위안을 내고 나왔음.	NKHR2020000027 2020-07-06
2018년에 길에서 통화하던 중 109상무들에게 단속 당함. 109상무라면 무조건 손전화를 보여줘야 하지만, 수색 시 보위지도원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면 보여줌. 한국말, 외래어, 이모티콘 등이 단속 대상임. 단련대 3달 처벌을 받았지만, 보위지도원 남자친구와 돈으로 무마하여 그날로 석방됨.	NKHR2019000068 2019-08-26
2018년 3월 단속원의 검열에 걸렸는데 한국 노래 '곰 세 마리'가 있었음. 그 자리에서 10만 원을 뇌물로 주었음.	NKHR2018000117 2018-10-22
2018년 4월 어머니가 중국에 있는 딸과 통화하다가 보위성에 20일 정도 구금되어 딸의 소재를 취조 당함.	NKHR2019000047 2019-07-01

361_ NKHR2020000006 2020-05-15.

362_ NKHR2020000019 2020-07-04.

증인내용	증인번호
2018년 9월 한국에 있는 딸에게서 전화를 받다가 감시도청에 걸려 보위지도원 4명이 현장을 덮쳐 현행범으로 체포됨. 도 집결소에서 15일 동안 조사받은 결과, 딸이 엄마 걱정하는 내용, 아버지 산소를 잘 보살펴 달라는 내용밖에 없어서 큰 처벌은 면하고 노동단련대 3개월형을 받음. 아들이 1,500위안을 뇌물로 주어 실제로 단련대 일을 하지는 않았음.	NKHR2019000069 2019-08-26
2019년에는 1,500~2,000위안을 고여야 손전화 단속을 해결할 수 있었음. 다만 뇌물 액수가 지역마다 다른데, 해산시라면 5,000위안은 고여야 함. 2015년에 손전화 단속에 걸렸을 때는 500위안으로 해결했음.	NKHR2020000006 2020-05-15
2019년에 시동생이 손전화 단속에 걸렸음. 손전화는 길거리나 시장에서 강하게 단속됨. 시·구역 청년동맹, 109상무가 검열하며, 도끼리 교차 검열하기도 함. 이미 지운 데이터도 복원해서 검사함. 하지만 손전화 처벌은 단속한 사람이 펜을 늘리는 데 따라서 증감됨.	NKHR2020000030 2020-08-03
2020년까지 자녀를 학교에 보냈는데, 매일 아침 담임선생과 사로청 지원이 들어와서 학생들의 손전화에 불순녹화물, 한국 노래 등이 있는지 확인함.	NKHR2020000038 2020-09-26

라. 평가

북한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가 규정되어 있고 당국도 주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북한 주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북한이탈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정치적 의견 표명의 위험성에 대해 증언해 주었다. 또한, 다양한 의견 표현의 수단이 되어야 할 언론 및 출판물은 당국의 임의 검열 및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외부문화 콘텐츠를 저장하는 컴퓨터와 휴대전화와 같은 디지털 기기에 대한 단속과 검열 및 처벌 또한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 2015년 형법 개정으로 국경지역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2020년 조사결과 이는 실제 증언으로도 나타났다. 특히 외부문화 유입으로 인해 발생할 체제 이완을 막기 위해 비사회주의 퇴폐문화로 규정되는 각종 콘텐츠 가운데 한국 방송 및 녹화물 시청,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더욱 강화되었다.

당국의 강력한 통제와 검열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정보접근에 대한 욕구와 수요는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Chapter I
법정문서 및 연구방법

Chapter II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

Chapter III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태

Chapter IV
취업개황

Chapter V
주요사안

11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결집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다.

주요 국제인권규범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언급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0조는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를 가질 권리를 가지며 어떤 결사에 가입하도록 강요받아서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자유권규약 제21조 및 제22조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다.

표 II-44 자유권규약 제21조, 제22조

제21조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제22조	제1항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제2항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이 조는 군대와 경찰의 구성원이 이 권리를 행사하는데 대하여 어떠한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3항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1948년의 국제노동기구협약의 당사국이 동 협약에 규정하는 보장을 저해하려는 입법 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를 저해하려는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할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서 보장하는 평화적 집회와 노동조합 혹은 이익집단에 소속될 수 있는 기회는 자발적 집회 및 결사에 대한 법제도적 보장 및 실질적 보호로 이어져야 한다. 노동조합 관련 내용은 노동권을 다루는 ‘Ⅲ.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태, 3. 노동권’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이 하에서는 평화적 집회의 권리와 조직생활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평화적 집회의 권리 부재

자유권규약 제21조는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에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국가 전체가 국가안보 및 애국주의 우선정책을 추구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내적으로 어떠한 평화적 집회의 권리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는 개인이 집단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사회 형성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개인이 자율성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한다. 이를 존중하고 보장하지 않는 것은 억압의 표시이다.³⁶³ 그러나 북한에서 열리는 집회는 대부분 군중집회에 해당하며, 북한 주민들의 사상교양, 정치교양 및 애국심 고취를 위한 사회동원에 해당한다.

북한은 형법은 제209조에서 반국가적 목적이 없다 해도 “국가기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소동을 일으킨 자”는 형사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여 북한 내에서의 시위를 봉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행정처벌법도 국가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하의 노동교양이나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노동교양을 시킨다고(제252조)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는 경우’로 대변되는 이러한 법조항들은 개인에 대한 국가의 관할권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법 조항은 개인이 합법적으로 집회하거나 시위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당국이 허용하는 관제집회 및 군중동원 외에 어떠한 형태의 집회도 허용되지 않을 뿐더러 생각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

363.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No. 37, Article 21: Right of Peaceful Assembly, Advance Unedited Version. UNHRC Doc. CCPR/C/G/37 (27/July/2020), paras. 1, 2, 9.

다.³⁶⁴ 이는 집단주의 원칙과 수령유일지배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에 있어 집회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체제를 부정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평화적 집회 및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라는 인식 자체가 거의 생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결사의 자유 부재 및 조직생활 강제 부과

자유권규약 제22조 제1항은 결사의 자유와 관련해,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이에 가입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 헌법은 제67조에서 “공민은 (...) 집회·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노동당의 필요에 의한 집회나 결사만 허용될 뿐 일반 주민의 자유의사에 의한 집회나 결사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인해 일반 북한 주민들에게는 결사의 자유라는 인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2020년 조사에서 북한 내에서 북한 주민의 의사나 이익을 대변하는 결사체에 대한 증언은 수집되지 않았다.³⁶⁵ 국가에 대한 항의집회는 본 적도 없으며, 항의를 하면 죽는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2018년

364_ NKHR2016000001 2016-01-12; NKHR2016000047 2016-04-19; NKHR2016000063 2016-05-03.

365_ NKHR2019000008 2019-04-08; NKHR2019000011 2019-04-10; NKHR2019000020 2019-05-07; NKHR2019000055 2019-07-29; NKHR2019000068 2019-08-26; NKHR2019000078 2019-09-25.

양강도 도보위국 출입국에 빚을 내서라도 자금지원을 많이 했지만 중국으로 가는 도강증과 여권 발급이 지연되자 화가 난 사람들이 출입국사무소 앞에서 시위를 하였고, 이 사건으로 평양의 중앙보위성에서 검열이 내려왔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³⁶⁶ 최근에 철도 정리 동원령에 주민들이 농사일이 바빠 집단으로 불참하자 당국이 이를 선동한 불순분자를 조사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³⁶⁷ 우발적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허용하지 않는 집회나 결사는 엄격한 검열을 받고 있으며, 집단행위를 집단저항으로 규제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개인이나 집단의 자유의사에 의한 결사체가 일절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에 대해 조직생활이 강제 부과된다. 모든 북한 주민들은 만 6세부터 정년퇴임 시까지 유치원, 소년단, 각종교육기관, 청년동맹, 직업총동맹, 농업근로자동맹, 여성동맹, 노동당 등 어느 조직에라도 가입해 조직생활을 하게 되어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이러한 단체에서의 활동 및 임무가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는 결사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자율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일관되게 증언하였다.³⁶⁸

2019년 UPR 실무그룹 보고서는 북한의 모든 기혼 여성이 여성동맹에 가입해야 하는 관행을 폐지하라는 권고사항을 북한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³⁶⁹ 그러나 집단주의를 지향하

366_NKHR2019000091 2019-10-21.

367_“북 양강도서 노력 동원 집단불참사태 발생,” 『자유아시아방송』, 2019.6.24.

368_NKHR2015000133 2015-09-22 외 다수의 증언.

369_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42/10 (2019), para. 127.47.

는 북한이 사회와 가정, 일터 등 모든 부문에서 구축해온 조직 생활의 관행은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와 당에서 독립적인 단체와 조직의 결성이 성립되기 어려운 북한에서 당국이 주민들에게 강제하는 조직생활을 결사의 자유와 연관시켜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표 II-45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침해 사례

증언내용	증언번호
공개재판이나 관제집회 불참 시 인민반에 내려온 할당량의 상당 부분이 부과되는 등 사회적 제재가 이루어지기도 했음.	NKHR2015000112 2015-06-02
관제집회 중 1호행사와 같이 중요행사에 불참 시 관리소행이었음.	NKHR2015000119 2015-09-08
강제집회의 경우 주민총회, 생활총화, 군중집회가 있으며, 군중집회의 경우 남북관계에서 특정 사건 발생 시 소집되었음. 불참할 경우 사상을 의심받게 되는 불이익이 있음. 주민총회나 생활총화의 경우, 큰 불이익은 없었음.	NKHR2015000133 2015-09-22
고급중학교 1학년부터 의무적으로 청년동맹에 들어가는데, 집회에는 다 참가해야 함. 의무로 가는 것일 뿐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며, 웬만한 사람은 다 입을 다물고 구호 외치는 것을 흉내 냄.	NKHR2019000053 2019-07-29
미사일을 쏘거나 실험을 하면 당비서가 중대방송이라고 모이게 해서 즉각 상황을 알려줌. 군중대회는 시에 조직별로 모여서 하는데,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직장 일도 쉽. 일에 차질이 생겨서 직원들이 당비서에게 항의해서 대회 동원에서 빼주기도 함. 그러나 한두 번 빠지면 본인에게 불리해짐.	NKHR2019000060 2019-07-29
정치행사는 학교에 다닐 땐 무조건 가야 하고, 사회 기업소에 다닐 때도 필수 참석해야 함. 북한의 체제 특성상 참석은 응당 해야 하는 일로 생각했음.	NKHR2020000017 2020-07-04
청년동맹은 형식상으로만 참여함.	NKHR2020000029 2020-07-06
청년동맹에서는 감자동원을 주로 나가고, 선거할 때도 동원됨. 여행에서 동원이 있을 때는 여행위원장에게 1년에 100~150위안을 내고 빠짐.	NKHR2020000038 2020-09-26

여러 증언을 종합해 볼 때, 북한 사회 내 조직생활 관련 통제 는 지속되고 있으나 한편에서는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청년동맹이나 여맹에 부과되는 노동동원은 뇌물을 주고 빠진다는 증

언이 있었다.³⁷⁰ 정치행사는 필수 참여하지만, 경제력으로 무마할 수 있는 경우엔 회피하고 있어 북한 주민들을 결속하는 조직 및 집단의 장악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평가

북한 주민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자유권규약 제21조와 제22조에 따라 북한 주민은 평화적 집회의 권리가 있고, 이익 증대를 위한 자발적 결사체를 구성하고 가입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북한의 현실에서는 이러한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당국이 허용하는 집회에 참여하고, 제도화된 단체에 참가할 것이 강요된다. 국가 차원에서 사회통제가 가해지는 북한의 현실에서 주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회피하는 이완 현상이 발생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장기간 국가 차원의 통제를 받고, 집단생활과 조직생활에 익숙한 북한 주민들에게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370_NKHR2020000038 2020-09-26; NKHR2020000044 2020-10-31.

12

참정권

참정권은 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중요한 시민적 권리이다. 세계인권선언 제21조는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유권규약 제25조에서도 참정권에 있어 직접·보통·평등·비밀 투표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표 II-46 자유권규약 제25조

모든 시민은 제2조에 규정하는 어떠한 차별이나 또는 불합리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다음의 권리 및 기회를 가진다.

- (a)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
- (b) 보통, 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 투표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선거인의 의사의 자유로운 표명을 보장하는 진정한 정기적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피선되는 것
- (c) 일반적인 평등 조건하에 자국의 공무에 취임하는 것

북한은 법제상으로는 주민의 민주적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참정권의 핵심인 선거참여와 관련하여 일반, 평등, 직접 그리고 비밀 투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 헌법 제4조는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또한, 제6조는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 투표로 선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의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2010)³⁷¹도 선거의 원칙으로 일반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그리고 비밀선거를 규정하고 있다(제2조~제5조). 이렇듯 북한의 선거법과 헌법은 민주선거원칙을 통해 북한의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도·시·군 인민회의 대의원을 선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³⁷² 그러나 북한의 헌법은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가 노동당의 통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 헌법 제5조는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11조에서는 국가기관들이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당이 모든 국가기관을 통제하는 일당독재라는 북한의 정치현실에서 북한 주민의 자유민주주의 참정권 행사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하에서는 북한의 참정권과 관련한 상황을 주요 쟁점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2019년 3월과 7월에 각각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와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 조사에서는 북한의 참정권과 관련된 다양한 다수의 증언들이 있었다.

371. 2010년 5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35호로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이하 ‘선거법’).

372. 최고인민회의 선거는 5년에 한 번씩,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4년에 한 번씩 실시된다(각급 선거법 제8조).

가. 민주선거 본질의 왜곡

자유권규약 제25조 (a)에 의하면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자유로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 민주선거의 본질은 유권자가 자신이 선출하는 대표자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획득 및 배포할 수 있음을 전제한다. 일부 증언자들은 투표하기 며칠 전부터 선거장의 벽보에 후보 사진과 이름이 붙어 있어서 미리 알 수 있었다고 하였지만,³⁷³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자신이 선출하는 대표자가 누구지도 모른 채 투표를 하고 있다.³⁷⁴ 근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후보자와 선거에 대한 정보에 자유로운 접근과 공유가 제약되고 있다. 다시 말해 선거과정에 필수적인 후보자와 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정치의사형성과정이 부재하다.

민주국가에서 선거는 다양한 견해와 요구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할 대표자를 선출하는 절차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선거는 노동당이 원하는 인사를 승인하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 그리고 당의 정책과 목표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정치적 동원 수단일 뿐이다. 특히 북한은 대의원 선거를 김정은과 백두혈통의 세습, 노동당이 이끄는 정권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절대적인 충성을 확인하는 절차로 이용해

373_ NKHR2019000016 2019-05-07; NKHR2019000069 2019-08-26; NKHR2019000072 2019-08-26.

374_ NKHR2019000049 2019-07-01 외 다수의 증언. 북한 당국이 대의원 후보자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측면도 있지만 유권자 역시 정치 무관심으로 후보자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아 후보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에 참여한 경우들도 포함됨.

왔다. 그리고 정권수립 이후 지금까지 당 후보의 100% 득표율을 북한 주민의 절대적 지지라고 선전해오고 있다. 이는 복수후보가 출마하는 자유경쟁 선거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선거결과는 선거가 유권자가 정치적 대리인을 자유로이 선택하는 절차가 아니라 북한 노동당의 통치를 강화하고 정당화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북한에서 대표적인 참정권인 선거참여가 국민의 의사를 정부에 전달하는 절차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양한 후보와 정책을 선택할 자유와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북한 주민의 참정권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

나. 비밀 및 직접선거 원칙 위반

자유권규약 제25조 (b)는 모든 시민은 보통, 평등 그리고 비밀선거의 원칙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선거에 자유로이 의사표현을 하는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도 헌법에서 일반, 평등, 직접 원칙에 의한 비밀 투표를 보장하고 있어 제6조에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 투표로 선거한다”라고 규정하여 법제도 차원에서는 자유권규약이 정의하는 참정권의 성격과 크게 다르지 않다.

2020년 조사에서는 북한에서 2019년에 개최된 두 차례의 대의원 선거에 대한 다수의 증언들이 수집되었다. 주민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행정 권력이 적극적으로 동원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TV와 신문을 통해 선거 일정과 투표 장소가 공지되

고,³⁷⁵ 인민반장이 가가호호 방문하여 선거일을 알려주며 공민증 분실자는 미리 재발급 받으라고 안내하기도 한다.³⁷⁶ 사망 처리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는 선거 때 사망처리를 하기도 한다.³⁷⁷

공민증은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임을 증빙하고 유권자의 수를 파악하는 중요한 근거로 사용한다. 선거를 앞두고 공민증을 분실한 자는 비교적 수월하게 공민증이 재발급된다. 선거일을 며칠 앞두고 인민반장은 가구별로 방문해 공민증을 모두 수거하고, 선거 당일에 공민증을 돌려주는데 공민증 위에 일련번호가 적혀 있다. 이 일련번호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명부에 기재된 번호와 일치된다.³⁷⁸

북한에서는 선거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투표를 해야 하고 투표가 개인의 선택이 아닌 의무로 인식되고 있다.³⁷⁹ 투표를 하지 않았을 때는 법적 처벌을 받거나 정치범(또는 역적)으로 몰릴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³⁸⁰ 선거 당일 유권자가 개인사정으로 직접 선거장에 나와 투표를 하지 못할 경우에도 이동투표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선거법 제67조에는 “중병, 년로, 신체장애 같은 사정으로 선거자가 선거장에 나올수 없을 경우에는 분구(구)선거위원회의 성원이 선거표와 봉인된

375_NKHR2019000105 2019-11-09.

376_NKHR2019000072 2019-08-26.

377_NKHR2019000073 2019-08-26.

378_NKHR2019000072 2019-08-26.

379_NKHR2019000047 2019-07-01 외 다수의 증언.

380_NKHR2019000037 2019-06-15; NKHR2019000070 2019-08-26; NKHR2019000073 2019-08-26.

이동투표함을 가지고 가서 투표하게 할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실제로 여러 증언자들을 통해 북한주민들이 이동투표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프거나 장애가 있어 투표장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이 이동투표함을 직접 들고 와 투표를 하게 하고,³⁸¹ 다른 지역에 출장을 간 경우에도 이동투표증을 받아 해당 선거구에 가서 투표를 한다.³⁸²

북한의 선거법 역시 비밀 투표를 보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선거법 제5조는 “선거자는 찬성 또는 반대투표의 자유를 보장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증언자들은 공통적으로 실제 해당 후보에 반대를 표시하는 사람이 전혀 없을 뿐더러 반대를 할 경우 받게 될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³⁸³

실제 비밀 투표는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지만 투표 과정 곳곳에 비밀 투표 원칙을 위반하는 사례들도 다수 확인된다. 유권자는 선거장에 나가 공민증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여주고 비치되어 있는 선거 명부에 있는 본인의 이름을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받는다. 투표용지에는 ‘선거표’라고 적혀 있고 후보자의 이름도 적혀 있다. 투표자는 흰색 천의 가림막이 있는 곳으로 들어간 후 벽에 걸려있는 수령의 초상화에 인사한 후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다.³⁸⁴ 투표함은 대개 한 개만 설치되어 있고

381_ NKHR2020000011 2020-06-15; NKHR2020000021 2020-07-06; NKHR2020000028 2020-07-06 외 다수의 증언.

382_ NKHR2019000073 2019-08-26; NKHR2019000085 2019-10-05.

383_ NKHR2020000028 2020-07-06; NKHR2019000086 2019-10-05 외 다수의 증언.

384_ NKHR2019000072 2019-08-26; NKHR2019000073 2019-08-26.

투표용지에는 선거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일련번호가 적혀 있기 때문에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지 않을 경우 누가 넣지 않았는지 알 수 있게 되어 있다.³⁸⁵

대체로 가림막 안에는 감시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증언들이 다수이나 가림막 안에 감시하는 사람이 앉아있었다는 증언들이 일부 있었다.³⁸⁶ 일부 투표 장소에서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증언들이 있다.³⁸⁷

특이 사례의 하나로 복수의 후보자들이 출마한 선거구에서는 복수의 후보자들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찬반 투표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보통 하나의 선거구에는 단일 후보자가 출마하고 유권자들은 찬반 투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 증언에 의하면 2019년 3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해당 선거구에는 3명의 대의원 후보가 출마했는데 세 명의 이름이 적힌 투표함에 찬성표만을 넣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³⁸⁸

반대 투표함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투표용지에 반대 표시를 할 수도 없으며, 감시체계가 작동하기 때문에 사실상 유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다.

요약하면, 제도적으로는 일반, 평등, 직접 그리고 비밀 선거

385_ NKHR2019000071 2019-08-26; NKHR2019000095 2019-10-21.

386_ NKHR2019000068 2019-08-26.

387_ 위의 증언; NKHR2019000086 2019-10-05.

388_ NKHR2019000069 2019-08-26.

제도가 명시되어 있으며 대다수 주민들은 정기적으로 선거에 참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당국이 이미 정해놓은 후보자에게 무조건 찬성표를 던져야 하고 반대표를 던질 경우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팽배하여 사실상 반대의사를 행사할 수가 없다.

게다가 대부분의 주민들은 후보자(각급 인민위원회 대의원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거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에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여러 증언들을 종합해보면 선거장 주변의 벽보에 후보자의 사진과 이름이 게시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선거자들은 후보자에 대한 관심도 없고 이름도 모르는 채 투표에 참여한다.³⁸⁹

또한 북한 주민들은 선거참여 여부에 대한 자율 결정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투표를 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법적·정치적으로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팽배하다. 출장이나 병 또는 장애 등으로 선거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동투표제도’가 적용되는데 한편으로는 투표의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선거참여의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자유가 존재한다.³⁹⁰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북한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비밀 및 자유 선거의 원칙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389. NKHR2020000005 2020-05-15; NKHR2020000021 2020-07-06; NKHR2020000024 2020-07-06; NKHR2020000048 2020-11-28 외 다수의 증언.

390. 이동투표제도는 병, 장애, 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투표행위를 하지 못하는 주민의 경우 사실상 대리투표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선거법 제67조(이동투표)에서는 “직접 투표할수 없는 선거자는 다른 사람을 지정하여 자기 의사에 맞게 투표하도록 할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 피선거권의 제한적 적용

자유권규약 제25조 (c)에서는 “일반적인 평등 조건하에 자국의 공무에 취임하는 것”을 참정권의 주요한 내용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모든 시민은 공무에 취임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이러한 권리가 노동당의 추천을 받는 사람에게 제한되어 있다. 그 결과 일반 주민들은 자신이 피선거권을 가진다는 인식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

일반 주민들에게 대의원 후보자는 “국가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³⁹¹ 한 북한이탈주민이 “당원이더라도 최고지도자가 선택하지 않는 이상 대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³⁹²고 증언한 것처럼 참정권이 온당히 실현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북한 헌법은 17살 이상의 모든 공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보장하고 있지만 일반 주민들에게는 선거할 권리는 있으나 선거받을 권리, 즉 피선거권은 거의 부재하다고 할 수 있다.

선거법 제35조에 의하면,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는 선거자들이 직접 추천하거나 정당,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추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대부분 당에서 후보자를 정한다. 또한 추천받은 대의원후보자는 선거위원회에 등록하기에 앞서 1백 명 이상의 선거자회의(북한이탈주민은 ‘유권자회의’라고 부름)에서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선거자회의는 법적

391_NKHR2019000085 2019-10-05.

392_NKHR2019000037 2019-06-15.

으로는 주민 거주지역 혹은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 학교, 군부대 등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대부분의 주민들은 선거자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꺼려한다고 한다.³⁹³

표 II-47 참정권 침해 사례

증언내용	증언번호
2019년 선거 경험이 있는데 후보자에 대해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고, 감사하는 사람과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반대표시를 전혀 할 수 없었음.	NKHR2019000086 2019-10-05
2019년 3월 10일에 투표했는데 찬성이나 반대를 표시하는 것 없이 받은 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것으로 끝남.	NKHR2019000052 2019-07-20
2019년 3월 10일에 투표를 했는데 보위지도원들이 감사하고 있어 선거에 대해 말을 전혀 하지 못하고 행동을 조심함.	NKHR2019000064 2019-08-17
2019년 3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에 투표를 하였는데 후보자에 대해 모르는 채 찬성과 반대가 표시되어 있지 않는 1개의 투표함에 선거표를 넣었음. 기표소 옆에 보안원이 서있고, 선거명부의 수와 투표함의 선거표 개수가 맞지 않으면 색출당함.	NKHR2019000071 2019-08-26
2019년 3월 10일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에 참여했는데 투표용지에 번호가 적혀 있어 누가 선거했고 찬성을 했는지 모두 확인되고 투표에 불참하는 것은 불가능함.	NKHR2019000095 2019-10-21
해당 선거구에 대의원 후보가 3명 출마했으나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각 후보의 이름이 적힌 투표함에 세 개의 선거표를 넣어 찬성표시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됨.	NKHR2019000069 2019-08-26
2019년 3월과 7월에 선거에 참여하였으며, 선거장(동사무소) 앞에 후보 사진이 미리 부착되어 있음. 선거에서 찬성만 해야 하고 반대라는 것은 없음. 가림막 1미터 옆에 동에서 차출한 한 사람이 지키고 있어 가림막에 들어가더라도 선거표에 반대표시는 하지 않음.	NKHR2020000005 2020-05-15
선거 전에 대의원후보자 자격 심사를 위한 유권자회의(선거자회의)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가려고 함.	NKHR2020000011 2020-06-15
선거장에 보위지도원이 나와 있지만 투표는 가림막 안에서 혼자 진행하고, 선거에 참여 여부가 중요하지 찬성과 반대의 의미는 없으며, 선거에 참여한다는 것은 곧 찬성을 의미함.	NKHR2020000013 2020-06-15
2019년 3월과 7월 선거에 참여했으나 후보자의 이름이나 얼굴을 전혀 모르는 채 투표했음.	NKHR2020000021 2020-07-06
2019년 대의원 선거에 참여했는데, 후보를 반대할 경우 투표용지에 X 표시를 해 투표함에 넣으면 되지만 반대할 경우 나쁜 사람으로 몰릴지 모르기 때문에 모두 찬성표를 던짐.	NKHR2020000028 2020-07-06

393. NKHR2020000011 2020-06-15.

라. 평가

북한 주민들은 헌법과 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과 선거법이 규정한 직접·보통·평등·비밀 투표의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자신의 의지만으로 피선거권을 획득하기 어려우며,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후보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당국의 강압적 동원으로 투표에 참여한다. 그리고 당이 추천한 후보에게 찬성 투표만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다수 북한 주민들은 민주선거의 원칙이 존재하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민주사회에서 시민은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와 자유 경쟁을 통해 피선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북한에 선거는 정치과정에서 주민을 대신할 대리인을 뽑는 것이 아니라 정권 강화와 체제 정당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2019년 조사에 이어 2020년 조사에서는 3월(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과 7월(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개최된 두 선거들에 대한 다수의 증언들이 수집되었다. 기표소 안에는 감시자가 없었지만 투표소 주변에 보안원이 배치되고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강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다수의 증언들이 있었다. 공식매체와 인민반장을 통한 적극적인 투표 독려가 이뤄지고, 선거 전에 후보자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언들과 후보자 자격심사를 위한 선거자회의(또는 유권자회의)가 개최된다는 증언은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에서는 개인의 자유 의지에 의한 입후보가 불가하고, 선거 참여의 자율적 선택이 보장되지 않으며, 후보자에 대한 찬반의 의사 표시를

위한 자유로운 환경이 보장되지 않아 참정권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13

평등권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고 아무런 차별 없이 동등하게 법률의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조). 사회권규약과 자유권규약은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평등권은 차별금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비차별(non-discrimination)은 법 앞의 평등 및 법에 의해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와 함께 인권보호의 기본원칙을 구성한다.³⁹⁴ 이 장에서는 북한 체제적 특성에 해당하는 성분 및 계층 분류에 따른 차별 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성분 및 계층 분류는 북한 주민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 은밀한 차별 제도로 입당, 입대, 진학, 취업, 승진, 결혼, 주거 등 북한주민의 생애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394_ UNHRC, General Comment, No. 18 (1989), para. 1.

표 II-48 차별금지에 관한 국제인권규범

세계인권선언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떠한 차별이나 그러한 차별의 선동에 대하여도 평등한 보호를 받는다.
사회권규약 제2조 제2항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선언된 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자유권규약 제2조 제1항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자유권규약 제26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가. 성분 및 계층에 따른 근본적 차별제도 지속

자유권규약 제2조에서는 규약 당사국 영토 내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권규약 역시 제2조에서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인권규범에서는 누구나 어떤 종류의 차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출신, 출생, 신분 등 자의적이고 관습적인 사회적 구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북한은 헌법 제65조에서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제도

상으로는 차별 없는 평등한 권리 향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성분 혹은 토대라고 불리는 독특한 사회계층 분류 제도가 존재하며 계층 분류에 따라 전 주민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 북한은 해방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주민등록사업을 실시하여 주민들을 3대 계층 및 56개 부류로 분류하고 별도로 25개 성분으로 구분해 놓았다.³⁹⁵ 북한은 성분을 “그가 출생할 당시의 경제적 조건, 가정의 계급적 토대와 그로부터 영향관계, 본인의 사회정치적 생활경위, 그리고 우리나라 력사 발전의 특수성과 계급관계, 혁명의 매 시기 우리 당이 실시한 계급정책들을 깊이 연구하고 그에 기초하여 정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³⁹⁶ 성분은 크게 출신성분과 사회성분으로 구분되며, 성분은 계층을 판단하는 기초자료의 성격을 갖는다.³⁹⁷ 계층은 기본균중, 복잡한 균중, 적대계급잔여분자의 3대 계층으로 분류되며 3대 계층 밑에는 세부적으로 56개의 부류가 존재한다.

395_ 과거 북한의 계층은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국내에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1993년 사회안전부(현 사회안전성) 출판사에서 발간한 「주민등록사업참고서(절대비밀)」에 따르면 북한의 계층 및 성분 분류는 기본균중, 복잡한 균중, 적대계급잔여분자의 3대 계층과 그 밑으로 56개 부류, 그리고 별도의 25개 성분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문건에 기초하여 다음의 논문이 발표된 바 있다. 현인애, “북한의 주민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석사학위논문, 2008.

396_ 현인애, 위의 글, p. 25.

397_ 출신성분은 본인이 출생한 때로부터 사회적 직업을 가질 때까지 부모가 가지고 있던 직업 가운데 가장 오랜 직업에 따라 규정하며, 부모가 가졌던 직업이 여러 가지이고 그 연한이 비슷한 경우에는 자녀들의 세계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직업에 따라 출신성분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사회성분은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직업 가운데서 연한이 가장 오래된 직업에 따라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여러 가지 직업을 가졌는데 그 연한이 비슷할 경우에는 본인의 세계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직업에 따라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표 II-49 북한의 주민 계층 및 성분 분류

계층 및 성분	부류(총 56개)
기본 군중	1. 혁명가 2. 혁명가 가족 3. 혁명가 유가족 4. 영예군인 5. 영예전상자 6. 점건자 7. 영웅 8. 공로자 9. 제대군인 10. 전사자 가족 11. 피살자 가족 12. 사회주의 애국희생자 가족 13. 기타(당이 맡겨 준 혁명초소에서 오랫동안 변함없이 우리 당을 받들어 충실하게 일하면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롯한 핵심군중과 계급적 토대·가정주위환경과 사회정치생활이 견실한 노동자·농민·병사·지식인)
3대 계층 복잡한 군중	1. 인민군대 입대기피자 2. 인민군대 대렬도주자 3. 귀환군인 4. 귀환시민 5. 반동단체 가담자 6. 일제기관 복무자 7. 해방전사 8. 건설대 제대자 9. 의거입북자 10. 10지대 관계자 11. 금강학원 관계자 12. 정치범 교화출소자 13. 종교인 14. 월남자 가족 15. 처단된 자 가족 16. 체포된 자 가족 17. 정치범 교화자 가족 18. 포로되었다가 돌아오지 않은 자의 가족 19. 해외도주자 가족 20. 지주 가족 21. 부농 가족 22. 예속자본가 가족 23. 친일파 가족 24. 친미파 가족 25. 악질종교인 가족 26. 종파분자 가족 27. 종파연루자 가족 28. 간첩 가족 29. 농촌십장 가족 30. 기업가 가족 31. 상인 가족
적대계급 잔여분자	1. 지주 2. 부농 3. 예속자본가 4. 친일파 5. 친미파 6. 악질종교인 7. 종파분자 8. 종파연루자 9. 간첩 10. 농촌십장 11. 기업가 12. 상인
성분 (총 25개)	1. 혁명가 2. 직업혁명가 3. 노동자 4. 군인 5. 고농 6. 반농 7. 농민 8. 농장원 9. 중농 10. 부유중농 11. 농촌십장 12. 부농 13. 지주 14. 사무원 15. 학생 16. 수공업자 17. 십장 18. 중소기업가 19. 애국적 상기업가 20. 기업가 21. 소시민 22. 중소상인 23. 상인 24. 종교인 25. 일제판리

출처: 현인에, “북한의 주민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pp. 31~35 참조.

이러한 계층 및 성분 분류에 따라 북한 당국은 주민들을 철저히 관리한다. 계층 간 이동도 매우 폐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가령 탁월한 공적을 세웠을 경우 적대계급잔여분자 계층에서 복잡한 군중 계층으로 상승할 수는 있어도 적대계급잔여분자 계층이나 복잡한 군중 계층에서 기본군중 계층으로의 상승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적대계급잔여분자나 복잡한 군중 계층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직업·교육·주거·군복무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 문제는 이러한 차별적 대우가 수평적 그리고 수직적 연좌제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에서 연좌제에 의한 신분차별은 주로 해방 이후 치안대

경력, 한국전쟁 당시 국군포로 가족, 귀국자 가족, 가족 중 한 국행 이력 등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북한은 이산가족들을 ‘월남자’ 또는 ‘월남자 가족’으로 분류하여 복잡한 군중으로 취급하고 있다. 특히 가계 조상들의 과오, 일제 때나 한국전쟁 때 있었던 과오 등을 구실로 아직도 후손들의 기본권을 박탈하거나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다. 가족 중 한국전쟁 당시 치안대 가담 사실이 있거나³⁹⁸ 국군포로였던 경우에 오지로 추방하거나 신체적으로 힘든 노동을 하도록 한다. 한 증언자의 경우 해방 이전에 할아버지가 지주 출신이란 이유로 원래 살던 강원도에서 함경북도 온성군으로 가족이 추방되었다.³⁹⁹

북한의 중요한 정치적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도 연좌제에 의한 차별이 심각하다. 한 증언자의 경우는 1960년대 갑산과 사건에 아버지가 연루되어 30년 넘게 감시를 받으며 살았으며 대학 진학도 할 수 없었다.⁴⁰⁰ 다른 증언자 역시 1960년대 ‘김창봉 사건’이라는 종파사건에 연루되어 가족 전체가 양강도로 강제 추방당하였고 반동분자 집안으로 몰려 태어날 때부터 심한 차별을 받았으며 1970년대 초에 누명을 벗고 전쟁영예군인으로 복권되었지만 사무원 정도의 일밖에 할 수 없었다.⁴⁰¹

그 밖에도 당간부나 보위성 또는 사회안전성과 같은 권력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만 별도로 이용하는 의료시설이 따로 있거나

398_NKHR2015000053 2015-03-10.

399_NKHR2014000015 2015-01-27.

400_NKHR2019000069 2019-08-26.

401_NKHR2019000074 2019-08-26.

일반 주민들과는 다른 차별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는다.⁴⁰² 이처럼 성분과 토대에 따른 차별은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2019년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UPR 보고서에서도 성분제도에 의한 차별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보고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⁴⁰³

나. 성분 및 계층에 따른 사회생활에서의 차별

최근의 증언들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이후 사회생활에 경제력이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토대에 의한 차별은 과거에 비해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판단된다.⁴⁰⁴ 하지만, 성분 및 계층에 의한 차별은 부정할 수 없는 북한의 현실이며, 간부 등용, 입당, 대학 진학, 직장배치 등 공적 영역에서의 차별은 물론 결혼과 같이 사적 영역에서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첫째, 당조직이나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등의 권력기관에 간부로 등용되기 위해서는 성분 및 계층이 매우 중요하다. 한 증언자는 아버지가 재외 귀국자여서 김일성종합대학을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고, 보위성 계통에 들어갈 수도 없었으며, 당 일군은 될 수 없고 행정일군만 가능했다고 말했다.⁴⁰⁵ 반면에 북한이탈주민 ○○○은 할아버지가 한국전쟁에 군관으로 참전

402_ NKHR2020000014 2020-06-15 외 다수의 증언.

403_ UNHRC, "Compilation o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Thirty-third session, 6-17 (May 2019), p. 3.

404_ NKHR2020000011 2020-06-15 외 다수의 증언.

405_ NKHR2019000011 2019-04-20.

했기 때문에 토대가 좋았으며 친척들 중에 교화소에 가거나 남한으로 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호위사령부에서 복무할 수 있었다.⁴⁰⁶ 또 다른 증언자는 시댁의 경우 중국에 친척이 있다는 이유로 남편과 시누이가 중앙당 간부 선발에서 탈락되었다고 한다.⁴⁰⁷ 이처럼 토대는 평소 생활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지만 간부등용 과정에서 토대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변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⁴⁰⁸

둘째, 2000년대 중·후반 이후부터 성분 및 계층이 좋지 않더라도 경제력이 좋으면 입당, 대학 진학, 하급 간부 선발 등은 가능해졌다는 증언들이 다수 수집되었다. 한 증언자는 예전에는 토대의 영향력이 100%였다면, 지금은 50% 정도로 줄어든 것 같다고 증언하였다.⁴⁰⁹ 토대의 영향력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할 수 없지만, 대학 진학이나 직장배치, 그리고 결혼할 때 토대가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는 증언들이 다수 수집되었다.⁴¹⁰ 대신 대학 진학에서 뇌물이 가장 중요하며, 당 간부의 경우는 8촌까지 토대를 보지만 지금은 토대의 영향력이 약해져 하급일군이나 행정일군의 경우 토대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었고 말한다.⁴¹¹ 또 다른 증언자의 경우 시아버지가 1960년대 갑산파 사건에 연루되어 남편의 토대가 매우 좋지 않았는데 고난의 행군시기였던 1997년에 돼지 350kg을 내고 입당할 수

406_NKHR2019000086 2019-10-05.

407_NKHR2019000035 2019-06-03.

408_NKHR2020000011 2020-06-15.

409_NKHR2020000011 2020-06-15.

410_NKHR2020000035 2020-09-05 외 다수의 증언.

411_NKHR2019000011 2019-04-20.

있었다.⁴¹² 다른 증언자는 평양 출신인 아버지가 할아버지와 큰 아버지의 과오로 양강도로 강제 이주하여 살았는데 군대, 대학 졸업, 지배인 근무 등에서 토대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⁴¹³

대학 진학 시 성분 및 계층에 의한 차별은 중앙대학이나 아니면 지방대학이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김일성종합대학, 인민경제대학, 평양외국어대학 등과 같은 중앙대학과 도급·시급 단위의 지방 일반대학 사이에도 차이가 있다. 지방의 일반대학의 경우 토대가 좋지 않더라도 본인의 능력으로 진학이 가능지만 중앙대학은 본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토대가 나쁘면 갈 수 없다.⁴¹⁴ 직장배치에서도 점차 토대의 중요성이 약화되고 있다. 이처럼 토대와 출신에 의한 차별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북한 사회에서 출신성분은 개인의 생애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김정은 정권에서도 여전히 토대가 좋아야 도당 또는 시당에 들어갈 수 있고, 교원이 되려고 해도 토대가 좋아야 하며, 토대가 좋지 않은 사람은 스스로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한다고 증언하였다.⁴¹⁵ 다른 증언자 역시 성분이나 계층으로 인한 차별은 흔하게 나타나며, 입당, 간부 등용은 물론 해외파견 등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하였다.⁴¹⁶ 김정은 정권에서는 개인회사가 많이 허용되었는데 무역업 관련해서

412_NKHR2019000069 2019-08-26.

413_NKHR2019000044 2019-07-11.

414_NKHR2014000015 2015-01-27.

415_NKHR2019000016 2019-06-07.

416_NKHR2019000031 2019-06-03.

도 토대가 나쁜 사람은 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⁴¹⁷ 가족 중 일부가 정치범수용소로 간 경우에도 남은 가족들은 출신성분이 나쁜 것이 되어 입당, 발전, 승진, 결혼 등에 있어 차별을 당한다. 심지어 한 증언자는 할아버지가 자살을 했는데, 그 이유로 아버지와 남동생의 사회생활이 힘들었다고 증언하였다.⁴¹⁸

셋째, 토대나 성분은 여전히 결혼과 같은 사적인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경제력의 영향력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귀국자 자녀였는데 평소 학교생활에서 성분에 의한 차별은 느끼지 못했지만 결혼할 때 많은 장애를 느꼈고, 특히 보위성 가족들은 절대로 귀국자 자녀와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⁴¹⁹ 다른 증언자는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배우자의 성분이나 가족 이력을 보지만 돈(경제력)도 중요하게 본다고 말하였다.⁴²⁰ 또 다른 증언자 역시 이제는 결혼할 때 성분보다는 경제력을 먼저 본다고 말하였다.⁴²¹

다. 성분 및 계층에 따른 거주지역 차등배치

북한은 주민들의 성분 및 계층분류에 따라 거주지역을 차등화하거나 강제이주 조치를 하고 있다. 북한에서 성분 및 계층이 나쁜 사람들은 주로 남한 출신자이거나 과거 지주, 자본가 계급이었던 사람들인데, 북한 당국은 이들이 한국에 대한 동경심을

417_NKHR2019000108 2019-11-18.

418_NKHR2020000028 2020-07-06.

419_NKHR2019000021 2019-05-07.

420_NKHR2019000048 2019-07-01.

421_NKHR2019000011 2019-04-20.

갖고 있기 때문에 탈출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이러한 사람들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지역에 제한을 두고 있다. 예컨대 성분이 나쁜 사람들에 대해서는 평양시, 남포시, 해변가, ‘전연지대(적과 접경하고 있는 지대라는 뜻의 북한어)’ 등에서의 거주를 제한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평양시 거주에서는 보다 엄격하게 성분 및 계층에 의한 차별을 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평양시를 중심지역과 주변지역으로 나누고, 주변지역을 다시 보호지대, 위성도시, 농촌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평양시관리법(2014)⁴²² 제7조). 북한 주민이 평양시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내각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거주등록을 해야 한다(제30조). 또한 평양의 주변지역에서 중심지역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거주승인을 받아야 한다(제31조). 같은 평양이라고 해도 중심지역에 사는 주민들과 주변지역에 사는 주민들 사이에 차별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용성구역 등 일부 주변지역은 중심지역으로 통행은 할 수 있으나 취직은 불가능하다고 한다.⁴²³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성분 및 계층을 엄격히 심사하여 평양시 거주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평양시에 거주하는 주민이라 하더라도 성분 및 계층에 따라 세 부류로 분류해 차별적인 대우를 한다. 1, 2부류는 평양시 거주에 성분상 큰 문제가 없는 사람들로서 80~90%를 차지하고 있으며, 3부류는 북송교포, 남한 출신자, 친인척 중 행불자가 있는 사람 등으로 전체의 10~20% 정도이다.

422. 2014년 10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1호로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관리법」(이하 ‘평양시관리법’).

423. NKHR2018000037 2018-05-08.

또한 평양과 지방의 차별도 심하다. 첫째, 거주 및 이전의 자유에 있어서 차별이 존재한다. 지방에 사는 북한 주민이 평양시에 살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거주승인을 받아야 한다(평양시관리법 제31조). 둘째, 평양 시민에게만 평양시민증을 발급함으로써 특별한 위상을 부여하여 지방과 차별적 대우를 한다. 평양 시민증은 평양시에 거주하는 17세 이상의 북한 국민에게 발급된다(공민등록법(2015)⁴²⁴ 제7조). 평양 이외의 도시나 지방에 사는 주민이 평양에 가는 것은 까다로운 절차와 제한이 있어 사실상 차별적으로 평양 출입이 허용되고 있다. 반면 평양 시민들의 여타 도시나 지방으로의 이동은 자유로운 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식량배급에도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련 내용은 식량권을 다루는 'Ⅲ.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태, 1. 식량권'에서 살펴본다.

한편 김정은 집권 이후 도시와 농촌 출신 사람들의 지역적 이동을 보다 엄격하게 차단하고 있다는 증언들이 수집되고 있다. 과거 대학에 가서 교원을 하거나 군대에 가는 경우 농촌 출신도 도시로 진출이 가능했다고 한다. 또한 농촌 출신 여성이 도시의 남자와 결혼을 하면 도시로의 이주가 가능했다. 그러나 현재는 도시 남자가 농촌 여자와 결혼할 경우 남자가 농촌에 와서 살아야 한다.⁴²⁵ 또 지방사람이 평양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출신성분 때문에 5~6개 기관을 거치는 복잡한 과정을 겪어야 하며, 직장 배치에서도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도 있다.⁴²⁶

424_ 2015년 10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50호로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등록법」(이하 '공민등록법').

425_NKHR2015000052 2015-03-10.

426_NKHR2016000054 2016-04-19.

라. 화교 및 귀국자에 대한 차별

북한 사회에서는 이전에 화교와 재일동포 귀국자들이 북한 주민보다 우월한 경제력을 갖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에 연고가 있어 상대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북일 교역이 중단되고 재일동포 귀국자들이 일본과의 연고가 끊어지면서 이들의 생활형편이 나빠지고 이들을 보는 사회적 시선도 변하고 있다.⁴²⁷

화교의 처우에 대한 증언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화교들은 경제력이 있어 풍족한 생활을 누리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사회적 인식이 있는 반면,⁴²⁸ 화교들이 돈이 있다고 잘난 체하는 측면이 있다며 인식이 좋지 않다는 증언도 있었다.⁴²⁹ 화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에 대해서는 상반된 증언들이 존재한다. 일부 증언자들은 화교로서 학교에서나 생활하는 데서 차별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반면,⁴³⁰ 다른 증언자는 입당이나 대학 진학, 간부 선발, 결혼, 심지어 소년단 입단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한다.⁴³¹

북한이탈주민 ○○○은 외할머니가 중국인, 외할아버지가 조 선족이고, 어머니의 사촌형제들이 중국에 거주 중이었다. 증언자는 이러한 중국과의 연고 때문에 학교 졸업 후 직장과 군대

427_NKHR202000011 2020-06-15; NKHR202000021 2020-07-06.

428_NKHR201900011 2019-04-20; NKHR202000021 2020-07-06.

429_NKHR201900011 2019-11-18.

430_NKHR201900011 2019-04-20; NKHR2019000107 2019-11-18; NKHR201900011 2019-11-18.

431_NKHR2019000054 2019-07-29.

문제 등에서 출신으로 인해 차별과 업신여김을 당했다.⁴³² 또한 북한이탈주민 ○○○은 부모가 1960년대에 북한으로 이주한 중국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자녀가 입당을 하지 못했다.⁴³³ 일부 증언에서는 김정은 집권 이후 중국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남편이 화교인 한 증언자는 과거에는 대학을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과 관계가 좋지 않아 자녀들이 대학에 가지 못했다고 한다.⁴³⁴ 또 다른 증언에 따르면 김정일 집권 시기에는 중국 연고자의 4촌까지가 차별 대상이었으나, 김정은 집권 이후는 6촌까지로 차별 범위가 확대되었다. 중국 연고자들은 국경연선에서 군사복무를 하지 못하고 후방에 배치되었다.⁴³⁵ 이 사례는 중국 연고자들이 탈북 및 밀수 등에 연루되기 쉽다는 인식하에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는 북한 당국의 차별적 인식을 보여준다.

한편, 재일동포 귀국자 혹은 일본 연고자에 대한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는 증언도 있다. 이전에 이들은 상당히 좋은 대우를 받는 계층이었다. 부친이 귀국자인 증언자의 경우 그의 부친은 대학을 졸업하고 중학교 교원이 되어 함경북도 무산군 직장에 배치 받았으며 입당도 허가받는 등 상당히 좋은 대우를 받았다고 한다.⁴³⁶ 그러나 귀국자에 대한 대우는 최근 나빠지고 있는데, 이들이 일본과의 연결이 끊어지면서 경제력이 약화

432_NKHR2015000101 2015-05-19.

433_NKHR2018000017 2018-04-09.

434_NKHR2019000054 2019-07-29.

435_NKHR2016000146 2016-09-06.

436_NKHR2016000023 2016-01-26.

되는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⁴³⁷ 또 다른 증언에 따르면 아버지가 재외 귀국자라는 이유로 자녀는 당일군이나 법 일군이 될 수 없었다.⁴³⁸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남한으로 갔을 경우 입당, 대학 추천, 간부 선발 등에 모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한다.⁴³⁹

귀국자였던 한 증언자의 아버지는 직장 내 차별, 일본으로 보내는 편지 내용 검열, 주변사람들의 불편한 시선 및 고발 등을 경험했다.⁴⁴⁰ 다른 증언자는 처가가 귀국자 집안이었는데, 귀국자의 경우 높은 직위의 당일군으로 승진은 힘들지만, 다른 것은 가능하다고 증언하였다.⁴⁴¹ 비슷한 경우로, 귀국자 자녀인 남자친구를 사귀었던 북한이탈주민 ○○○에 따르면, 남자친구는 귀국자라는 신분 때문에 8년간이나 군복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당이 거부되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 또한 김책공대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 후 귀국자라는 이유로 취직을 하지 못해 장사를 했다고 한다.⁴⁴²

마. 평가

북한 사회에는 여전히 성분 및 계층 분류에 의한 차별이 주민 생활의 다양한 부분에서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핵심적 요소

437_NKHR2016000061 2016-05-03; NKHR2016000111 2016-07-12; NKHR2017000113 2017-11-20.

438_NKHR2019000021 2019-05-07.

439_NKHR2019000031 2019-06-03.

440_NKHR2016000127 2016-08-09.

441_NKHR2014000212 2014-12-30.

442_NKHR2014000085 2014-07-01.

로 작용하고 있다. 성분 및 계층 분류에 의한 차별은 입당, 직장배치, 간부 등용 및 승진, 진학, 군입대, 거주지 배치 등에서 지속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성분 및 계층 분류의 기초가 되는 '토대'에 의해 작동하던 차별 제도가 일부 완화되고 있으나 부정부패 및 빈부격차, 그리고 불공정이 심화되고 있는데 경제력에 의한 또 다른 차별이 부상하고 있다. 또한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여전히 평양과 지방 간에 이동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고, 화교 및 귀국자들에 대한 감시와 차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토대와 성분에 따른 기존의 차별이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경제적 요소에 의한 새로운 차별과 불평등이 증첩되어 나타나고 있다.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1



Chapter III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태

1. 식량권
 2. 건강권
 3. 노동권
 4. 교육권
 5. 사회보장권
-

1

식량권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과 의료 및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25조 제1항). 또 사회권규약은 식량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1조 제2항).

표 III-1 사회권규약 제11조

제2항 이 규약의 당사국은 기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한다.

북한은 양정법(2015)⁴⁴³ 제7조에서 “양곡을 책임지고 공급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시책”이며, “국가는 인민들에게 식량을 제때에 공급”하도록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적으로는 식량권을 국가가 보장하며 공식적으로는 식량배급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이 적절히 보호되지 않고 있다. 이하에서는 식량 부족 상황이 충분

443. 2015년 2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89호로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량정법」(이하 ‘양정법’).

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 농업생산방식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식량배급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북한 주민들의 식량권 실태에 대해 살펴본다.

가. 만성적인 식량 부족 상황 지속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의 식량 수급 상황은 대량의 아사자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식량위기를 겪었던 ‘고난의 행군’ 시기 뿐만 아니라 2000년대와 비교해서도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유엔아동기금(UNICEF)이 실시한 『2017 북한 다중지표군집조사』(DPRK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이하 ‘MICS 조사’) 결과와 2012년 영양 실태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김정은 집권 이후 영유아의 영양상태가 빠르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향후 북한의 식량 사정에 대한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2020년 8월 13일 미국 농무부 산하의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연례보고서 『국제 식량안보 평가 2020-30』에 의하면, 2020년 북한 주민의 59.8%인 약 1천530만 명이 식량부족 상태일 것으로 전망하였다.⁴⁴⁴

사회권규약 제11조 제2항(a)은 “천연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제도를 발전시키거나 개혁함으로써 식량의 생산, 보존 및 분배의 방법을 개선할 것”을 규정함

444. USDA, *International Food Security Assessment, 2020-30*, (Washington DC: USDA, 2020), p. 50.

으로써, 식량 부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식량의 가용성(availability)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북한 당국도 식량 생산을 증대하기 위한 법적·정책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포전담당책임제를 도입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북한은 2012년 협동농장의 생산단위 규모를 분조(10~25명) 안에 2명 이상의 소규모 생산단위를 조직하여 일정 규모의 토지(포전)를 담당하도록 하는 ‘분조관리제 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시범 도입하였다. 이후 2013년, 2014년, 2015년 연이어 농장법(2015)⁴⁴⁵을 개정하여 포전담당책임제를 제도화하였다. 2015년에 개정된 농장법은 “농장은 분조관리제 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와 유상유벌제를 정확히 실시하여 분조별, 농장원별로 토지관리와 영농공정수행, 생산계획수행, 수매계획수행에 대한 과업을 정확히 주고 그에 대한 총화를 제때에 실속있게 하며 알곡 생산물에 대한 분배와 처리를 바로 하여야 한다”(제22조 제2항)라고 명시하고 있다.

북한은 2019년 제3차 UPR에서 2015년에 포전담당책임제를 도입함으로써 농장원들에게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농장 경영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생산과 관리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독려했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매년 곡물 생산이 꾸준히 증가하여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였다.⁴⁴⁶

또한 북한 당국은 포전담당책임제를 도입하면서 국가생산계

445. 2015년 6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55호로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장법」(이하 ‘농장법’).

446. UN Doc. A/HRC/WG.6/33/PRK/1 (2019), para. 49.

획 달성 시 수확한 농작물 가운데 국가에서 종자나 비료, 농기
 재 등을 제공한 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국가에 납부하면, 그
 나머지 부분은 농민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
 는 등⁴⁴⁷ 농민들에게 생산 증대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
 지 정책도 추진하였다. “농장들은 국가적인 생산 계획을 달성하
 여 나라에서 부여받은 토지, 보장받은 관개, 영농물자, 비료 등
 의 대금에 상응하는 몫만 바치면 그 외 남은 농작물들을 모두
 농장의 결심에 따라 처리할 수 있게”⁴⁴⁸ 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식량의 가용성을 높이기 위한 북한 당국의 조치
 들이 실제 생산 증대로 이어지고 있는가 여부다. 일단 북한이탈
 주민들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포전담당책임제는 대다수의 협
 동농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⁴⁴⁹ 이전 조사에서는
 생산성이 향상되어 식량사정이 좋아졌다는 증언도 일부 있었지
 만 2020년 조사에서는 포전담당제 실시 이후 농장원에게 분배
 되는 양이 더 적어졌다는 증언들이 지배적이었다.⁴⁵⁰ 포전의 불
 공정한 분배 및 불충분한 영농자재의 공급, 과도한 수매량 등
 다양한 요인들로 포전담당제의 실시가 식량 사정을 개선하는데
 별로 기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농장에서 포전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과도하게 높은 생산계획 때문이다. 농장원
 으로 일한 북한이탈주민 ○○○은 배분받은 포전에서 얼마를

447_ 『조선신보』, 2013.6.7.

448_ 『조선신보』, 2013.4.19.

449_NKHR2020000022 2020-07-06 외 다수의 증언.

450_NKHR2019000029 2019-06-03; NKHR2020000022 2020-07-06 외 다수의 증언.

수확할 것인지 당국에서 계획을 미리 정하는데 그 계획량이 너무 높게 책정되니까 국가에 바치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거나, 어떤 경우에는 수확량이 계획에 못 미쳐 본인이 다른 방식으로 부족량만큼의 비용을 지불했다고 한다.⁴⁵¹ 불공정한 포전 분배와 비료 등 영농물자의 불충분한 공급도 포전담당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다. 한 증언자는 좋은 땅은 인민반장이나 분조장이 가져가고 일반 농장원에게는 척박한 땅을 준다고 불만을 토로했으며,⁴⁵² 국가에서 공급되는 비료를 간부들이나 운송업자들이 횡령하여 팔아먹기 때문에 실제로 농장원 개인에게 분배되는 비료의 양이 적을 뿐만 아니라 일부 농장원의 경우는 돈이 필요할 때 공급받은 비료를 팔아 돈을 마련하거나 개별 농사에 비료를 전용하기도 했다.⁴⁵³

이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 당국의 지도부도 포전담당제 운영에서 나타나는 결함들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2월 25~26일 동안 평양에서 열린 제4차 전국농업부문열성자회의에서 박봉주 내각총리는 포전담당책임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결함들을 지적한 바 있다.

나. 국가의 과도한 수취로 인한 농민들의 식량 부족

포전책임담당제도가 농민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데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증언들을 통해 확인된다. 농

451_NKHR2020000003 2020-05-15.

452_NKHR2019000023 2019-05-18.

453_NKHR2019000057 2019-07-29.

장원 출신의 한 증언자는 포전담당제가 수확량의 30%를 농장원이 가져갈 수 있게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농장원은 1%의 수확량을 가져가기도 힘든 사정을 토로했다. 비료, 기름, 노력비(국가에서 보내준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농장원이 일부 내야 함) 등을 제하고 나면 사실상 농장원이 가져가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⁴⁵⁴

다른 증언자도 생산량이 매우 적어 약 3~4개월 정도만 먹을 수 있는 양밖에 분배받지 못했다고 하였으며,⁴⁵⁵ 또 다른 증언자도 포전담당제 시행 이후 농장원에게 분배되는 게 거의 없어 농사가 잘되지 않은 지역은 먹고 살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하였다.⁴⁵⁶

포전담당제의 운영으로 개인의 분배량이 많아져 일의 능률이 올랐다는 증언들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고,⁴⁵⁷ 상당수의 농장들에서는 포전담당제가 원칙대로 실행되지 않아 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농장원의 식량 사정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는 데는 균량미, 애국미, 원호미, 돌격대 지원 등의 다양한 명목으로 공출하는 행태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 ○○○의 증언에 따르면, 생산계획을 100% 달성하지 못해도 균량미는 무조건 걷어가는데 균량미를 내고 나면 남는 식량이 거의 없었다고 한다.⁴⁵⁸ 또 다른 증언자는 공동

454_NKHR2020000040 2020-10-31.

455_NKHR2019000046 2019-07-01.

456_NKHR2019000072 2019-08-26.

457_NKHR2019000057 2019-07-29; NKHR2019000077 2019-09-25.

458_NKHR2019000025 2019-05-18.

경작한 농장의 수확에서는 균량미를 떼고 나면 개인 농장원들에게 배분되는 것이 거의 없으며, 공동경작하여 수확한 양으로도 균량미를 채우지 못하면 개인 농장원이 분담하여 전체 할당량을 무조건 채워야 했다고 한다.⁴⁵⁹ 다른 증언자의 경우도 국가의 토지를 사용할 경우 40%를 균량미로 내야 하고, 토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애국미를 내야 했다.⁴⁶⁰ 북한이탈주민 ○○○은 자식의 이름으로 강냉이 15kg를 냈는데, 부유한 집의 경우 강냉이 1~2톤을 내고 국가에서 상장을 받기도 한다고 증언하였다.⁴⁶¹

농민들은 균량미, 애국미 외에도 ‘지원’ 명목으로 다양하게 식량을 공출당하고 있다. 군대, 학교, 마을 지원을 명목으로 농장원 한 명 당 10~20kg 정도의 곡물을 공출당하기도 하고,⁴⁶² 4.15 지원 사업으로 쌀과 화목(딸감)을 내야 하기도 했다.⁴⁶³ 2019년에 탈북한 한 증언자는 백두산 삼지연 건설 등 국가적인 건설이 있으면 세대별로 얼마씩 내라고 ‘포치’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돈을 못 내면 노동으로 대신해야 했다고 한다.⁴⁶⁴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는 2018년 한 해에 북부수해지원금으로 강냉이 2kg, 김일성·김정일기금사업으로 5,000원, 균량미로 강냉이 80kg, 애국미로 콩 2kg, 005(군수품을 만들기 위해

459_NKHR2020000040 2020-10-31.

460_NKHR2019000032 2019-06-03.

461_NKHR2019000057 2019-07-29.

462_NKHR2019000027 2019-06-03.

463_NKHR2019000041 2019-07-01.

464_NKHR2020000002 2020-07-04.

파철을 내는 과제)로 파철을 한 달에 2kg씩 냈으며, 파철이 없는 경우에는 1,000원의 현금을 냈으며 그 밖에도 개가죽(30,000원)과 토끼가죽(4~5,000원)을 매년 한 번씩 내기도 했다.⁴⁶⁵ 김정은 정권에서는 대규모 건설 사업에 지원하는 공출 빈도가 증가하였다. 위연건설지구 살림집건설, 삼지연지구 건설지원 등으로 직장, 인민반, 여맹, 학교 등에서 중과의 공출이 이루어지고 있다.⁴⁶⁶

한편, 최근에는 식량공출이 거의 없고 강제적이지 않다는 증언도 일부 수집되었다. 2019년에 탈북한 한 증언자는 애국미, 수도미를 내라고 하지만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고 낼 수 있는 사람은 내라고 호소하는 차원이며, 증언자는 내지 않았다고 한다.⁴⁶⁷ 또 다른 증언자 역시 식량 공출 경험은 없었으나 소소하게 내는 돈들이 있었다고 했다.⁴⁶⁸

국가의 과도한 수취에 시달리는 농장원들은 텃밭, 폐기밭, 소토지 등에서 별도로 농사를 짓는 등 개인 농사를 통해 부족한 식량을 확보하기도 하고 일부 농산물을 팔아 생필품을 구입하고 현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⁴⁶⁹ 그런데 최근 김정은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복구사업으로 개인 농사땅이 줄어들었고, 나무를 심지 않으면 밭을 회수하거나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여 식량 조달이 어려워졌다는 증언들도 다수 있었다.⁴⁷⁰

465_NKHR2019000045 2019-07-01.

466_NKHR2019000039 2019-07-01 외 다수의 증언.

467_NKHR2020000044 2020-10-31.

468_NKHR2020000022 2020-07-06.

469_NKHR2020000025 2020-07-06 외 다수의 증언.

470_NKHR2020000026 2020-07-06 외 다수의 증언.

다. 차별적인 식량 배급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배급제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관련 통계를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보건대 북한의 식량 배급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직업군에 차등적이고 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공급량도 실질적인 수요량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북한 주민의 식량사정은 배급으로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배급량이 부족하여 시장 활동이나 소토지 경작 등을 통해 보충해야 하거나, 배급을 거의 받지 못해 전적으로 자급자족하는 등 편차가 크다. 그리고 배급을 받는 경우에도 본인 몫만 받는가 하면, 가족 몫까지 받는 경우도 있고, 주기적으로 받는가 하면, 비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도 있는 등 배급량과 배급 주기에서 편차가 있으며, 배급되는 식량도 입쌀, 강냉이, 감자, 밀가루 등 차이가 크다. 특히, 최근년도에는 많은 직장에서 1년에 한 번 감자 배급을 한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⁴⁷¹

471_NKHR202000019 2020-07-04 외 다수의 증언.

표 III-2 최근 식량수령 실태

증언내용	증언번호
어머니가 의사였지만 식량배급이 없어서 몰래 주사를 놔주며 돈을 벌었음.	NKHR2020000001 2020-05-15
영예군인공장에서 일했는데 감자 배급이 나왔지만 질이 안 좋고 씹이 난 감자를 줘서 배급을 포기함. 아들은 역무원으로 근무했는데 배급으로 감자와 강냉이가 조금 나왔음.	NKHR2020000019 2020-07-04
두 직장을 다녔는데 무역국 산하 광산을 다닐 때 배급이 잘 나오고, 콩기름 15~25kg, 오리, 계란, 쌀 등을 받았음. 군 소속 식료공장에서 일할 때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생일에 줄 선물을 제작하는 곳이었는데, 두 식구가 먹고 실만큼 충분히 배급이 나왔음.	NKHR2020000021 2020-07-06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간호사로 일했는데 배급이 전혀 없었고, 의사들도 배급이 없었음.	NKHR2020000023 2020-07-06
2000~2009년까지 양강도 ○○시에서 고등중학교 교원으로 일했는데 6개월의 식량을 한 달 56kg로 계산해서 가을에 한번 감자 배급 336kg를 받음.	NKHR2020000027 2020-07-06
아버지가 중학교 교원이었지만 배급이 없었음.	NKHR2020000035 2020-09-05
남편이 보위지도원이었는데 2014년 남편이 사망하기 전까지 남편 본인과 가족배급을 합쳐 백미 50kg 정도 받았고 명절 부식물도 매우 잘 나왔음.	NKHR2020000038 2020-09-26
2017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탄광 식량공급소에서 일했는데 배급으로 쌀 23.25kg 받았으나 식량을 운송하는 기간에 날아가는 수분량과 가공되어 사라지는 양을 제하면 보름치 식량밖에 안되었음.	NKHR2020000042 2020-10-31
남편이 의사였는데 직장(병원)에서 쌀표를 주면 동배급소에서 강냉이, 밀가루 등을 배급으로 받았음. 배급은 15일마다 한번씩 나왔는데 한번 줄 때 일주일치 식량 정도만 받았음. 그런데 대북제재가 시작되면서 배급이 되지 못한 적도 많았음.	NKHR2020000047 2020-11-28
평안남도 ○○시 관리소 보위대로 근무했는데, 매월 1인당 옥수수 15kg를 정량대로 배급받았고, 관리소 내 농장원도 배급을 줬음.	NKHR2020000048 2020-11-28

(1) 직업별로 차별적인 배급

북한의 배급 시스템은 대체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부는 작동하고 있는데, 그 혜택은 주로 엘리트 계층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엘리트 중에서도 특정 집단에 우선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당간부와 지배인, 보안원, 보위원 등에게는 일반 노동자나 농장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집단들 중 일부는 배급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일부는 배급만으로는 부족하여 별도의 경제활동을 통해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⁷² 당, 법, 행정기관 등은 배급 ‘뽀트(할당량)’를 받아서 농장으로부터 직접 식량을 실어다 배급한다.⁴⁷³ 한 증언자의 설명에 따르면, 당간부가 배급을 가장 많이 받고, 그 다음으로는 보위성, 사법 검찰, 보안서 순이다. 이들의 배급량은 의사나 교원이 받는 양의 3~5배 정도이며, 또한 주식뿐만 아니라 부식까지 공급을 받는다.⁴⁷⁴ 엘리트 집단들은 주로 백미로만 공급받는다는 점도 차별적이다.⁴⁷⁵ 2019년에 탈북한 한 증언자는 남편이 보위지도원이었는데 식량배급이 남편 본인 및 가족분까지 포함하여 백미로 50kg씩 받았고, 명절 부식물도 매우 잘 나왔다고 한다.⁴⁷⁶

한편, 일반적으로 전문직 종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의사, 교원, 연구원 등의 경우에는 비록 엘리트 집단에 속하지만 권력기관의 종사자들에 비해 배급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년도에 탈북한 증언자들 중에서 부모가 교원이었거나 의사였는데 배급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증언들이 다수 수집되었다.⁴⁷⁷ 일부 증언자들 가운데 본인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양강도

472_NKHR2020000048 2020-11-28 외 다수의 증언.

473_NKHR2018000006 2018-03-12.

474_NKHR2019000029 2019-06-03.

475_NKHR2019000041 2019-07-01.

476_NKHR2020000038 2020-09-26.

477_NKHR2020000001 2020-05-15 외 다수의 증언.

○○사에서 중학교 교원으로 일했다는 증언자는 가을에 6개월분의 식량을 몰아서 감자 배급 336kg(1개월 56kg로 계산)을 받았으며,⁴⁷⁸ 아버지가 교원이었던 한 증언자도 2017년까지 1년에 감자 1톤을 받았다고 한다.⁴⁷⁹ 병원의 준의사로 근무한 증언자의 경우 가을에 감자 배급이 나왔으나 운임비 등을 자가 부담해야 하고 감자의 질이 나빠 배급을 받지 않았다고도 한다.⁴⁸⁰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간호사로 일했던 증언자는 배급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의사들도 배급이 없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⁴⁸¹

(2) 기업소별로 상이한 배급

국가배급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기업소 등 기관에서 자력으로 식량을 마련하여 배급하는 현상이 확산되었다. 그 결과 기업소의 역량에 따라 노동자들이 받는 배급 규모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제대로 가동되고 있거나 형편이 나은 기업소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배급을 받는 반면, 그렇지 못한 기업소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적은 양의 배급을 받거나, 배급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정은 정권에서는 외화벌이, 수출, 무역 등과 관련된 기업소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배급 실태가 좋은 것으로 보인다.⁴⁸² 하지만 최

478_NKHR2020000027 2020-07-06.

479_NKHR2019000079 2019-09-25.

480_NKHR2019000029 2019-06-03.

481_NKHR2020000023 2020-07-06.

482_NKHR2020000021 2020-07-06 외 다수의 증언.

근년도에는 대북제재의 강화로 배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던 기업소들의 경우도 배급 사정이 갑자기 나빠진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다.⁴⁸³

광산 노동자들의 경우, 배급 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북한은 에너지를 해소하기 위해 석탄 증산을 강조해오고 있으며, 무연탄, 철광석 등을 수출 주력상품으로 삼아왔던 까닭에 광산 경영 상태가 상대적으로 괜찮아 노동자들에 대한 배급 상황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9년에 탈북한 한 증언자는 도 무역국 산하 광산에서 일했는데 배급이 매우 잘 나왔으며, 한 달 노임이 북한돈 30~50만 원 정도였고 물품 배급도 콩 기름 15~25kg, 백미, 오리, 계란 등이 나왔다고 한다.⁴⁸⁴ 다만 무산광산의 경우 배급이 이루어졌으나 대북제재로 인해 2017년부터 철광석 수출이 막히면서 배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언이 있다.⁴⁸⁵

483_ NKHR2019000035 2019-06-03 외 다수의 증언.

484_ NKHR2020000021 2020-07-06.

485_ NKHR2019000057 2019-07-29.

표 III-3 대북제재 이후 기업소 배급이 악화된 사례

증언내용	증언번호
남편이 다이아(타이어)공장 ○○사에서 근무했는데 제재 때문에 통나무 무역을 하지 못해 밑수로 돈을 벌며 노동자에게 식량을 배급했음. 탈북 직전인 2019년까지 매월 55kg의 현미를 받음.	NKHR2019000035 2019-06-03
대외건설소에서 근무했는데 매월 쌀10kg씩 받았으나 2015년부터는 배급의 품질이 나빠져 옥수수나 감자를 받았으며 일부는 썩은 것들이 섞여있었음.	NKHR2019000050 2019-07-20
무산광산에서 근무했는데 2017년부터 대북제재로 철광석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해 배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NKHR2019000057 2019-07-29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세관이 닫히고 기름(연료)이 들어오지 않아 무산광산 운영이 되지 않았으며 2017년 겨울 이후 노동자 배급이 전혀 이뤄지지 않음.	NKHR2019000065 2019-08-17
2017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탄광 식량공급소에서 일했는데 장성택 생전에는 탄광이 석탄 수출로 잘 살았으나 지금은 수출이 안되어 배급식량의 질과 양이 점점 나빠짐.	NKHR2020000042 2020-10-31
해산시에 거주했다 2019년에 탈북한 증언자는 중국과의 무역이 막히면서 회사들 사정이 많이 안좋아져 영업을 정지한 회사도 생기고, 공장 기업소가 돌아가지 않아 생활이 악화됨.	NKHR2020000020 2020-07-04

일부 특수 분야의 기업소나 공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배급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 탈북한 한 증언자는 군 소속 식료공장에서 일했는데 이 공장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생일에 줄 선물을 제작하는 곳으로 가족들이 먹고 살 만큼 충분한 양의 식량배급이 나왔다고 한다.⁴⁸⁶ 2018년까지 ○○시에 있는 잣채종사업소에서 근무한 증언자의 경우 비록 1년에 한 번 10월에 배급을 받았지만 배급량이 1,500위안 정도의 양으로 따로 장사하지 않고 배급만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했다고 증언하였다.⁴⁸⁷ 또 다른 증언자 역시 남편이 국가 기업소에서 근무했는데 2018년 9월까지 매

486_NKHR2020000021 2020-07-06.

487_NKHR2019000043 2019-07-01.

월 쌀 10kg과 콩기름 2kg, 맛내기(조미료) 1봉지, 세수비누와 세탁비누 1개씩을 받았다고 한다. 그 밖에도 가을에 감자 250kg을 받았다.⁴⁸⁸

몇 년 전만 해도 군수품 공장의 배급이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으나,⁴⁸⁹ 최근에는 일부 군수공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배급이 나빠진 것으로 파악된다. 군수공장에서 근무한 한 증언자는 매월 강냉이 14kg씩을 공급받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최근년에는 젓은 강냉이를 주는데 말린 강냉이 기준으로 5~6kg 정도에 불과했다고 한다.⁴⁹⁰

표 III-4 기업소(공장)의 배급이 양호한 사례

증언내용	증언번호
2014년까지 관광지도국에서 근무했는데 매월 백미 21kg, 돼지고기 8kg, 수산물 냉동 1팩, 기름, 맛내기, 소금 등을 공급받음.	NKHR2019000014 2019-05-07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에 있는 잿채종사업소에서 근무했는데 배급이 1년에 한 번 10월에 나왔지만 1,500위안 정도의 양으로 따로 장사하지 않고 배급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했음.	NKHR2019000043 2019-07-01
남편이 국가 기업소에서 근무했는데 2018년 9월까지 매월 쌀 10kg, 콩기름 2kg, 맛내기(조미료) 1봉지, 세수비누와 세탁비누를 한 개씩 받았으며, 명절마다 명태, 돼지고기 등을 받았고, 과일철에는 과일을, 큰명절에는 맥주 12개짜리 1박스, 가을에는 감자 250kg을 받았음.	NKHR2019000002 2019-04-08
해산에 있는 수출회사에 다녔는데 매월 강냉이 15kg과 기름을 받았음.	NKHR2019000058 2019-08-26
초물사업소의 총반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쌀 50kg을 공급받았음.	NKHR2019000079 2019-09-25
도 무역국 산하 광산에서 일할 때 한달 노임으로 북한돈 30~50만 원 정도를 받았고 배급도 쌀, 오리, 계란 등이 나왔음. 또 군 소속 식료공장에서 일할 때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생일 선물 제작하는 곳이어서 가족들이 먹고 살 만큼 충분한 양의 배급을 받았음.	NKHR2020000021 2020-07-06

488_ NKHR2019000002 2019-04-08.

489_ NKHR2018000083 2018-08-11.

490_ NKHR2019000070 2019-08-26.

하지만 일반 기업소(공장)에 근무한 대다수의 노동자들의 경우는 배급을 거의 받지 못했거나 1년에 한 번 가을철에 감자 배급이나 명절 때 특별공급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남편이 전신전화국에 근무한 증언자의 경우 1년에 한 번 가을에 감자 배급 350kg을 받았는데 양강도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소들이 그렇게 감자 배급을 받으며, 그 외에 1월 1일, 설명절, 2·16, 4·15 때 기름, 고기 1kg 정도를 공급받았다고 한다.⁴⁹¹ 영예군인 출신인 아버지가 체신소에서 근무했던 북한이탈주민 ○○○의 경우 역시 2018년까지 명절 공급(설, 2·16, 4·15, 4·25)만 받았는데, 공급 품목은 2018년 기준으로 술 1병, 기름 1병, 돼지고기 500g, 콩나물 1kg 정도였다고 한다.⁴⁹² 영예군인 공장에서 일했던 또 다른 증언자의 경우는 감자 배급을 받았는데 질이 안좋고 싹이 난 감자를 줘서 배급을 포기하기도 했다.⁴⁹³ 한 증언자는 남편이 회령시에 있는 도급 기업소에서 근무했으나 탈북 직전인 2018년까지 배급을 받지 못했으며,⁴⁹⁴ 산림경영소에서 근무했던 북한이탈주민 ○○○, 아버지가 도로 설비대에서 근무했던 증언자, 설계연구소에서 근무했던 북한이탈주민 ○○○, 전기공장을 다녔던 북한이탈주민 ○○○, 아버지가 제지공장에서 근무했다는 증언자, 약초공장에 다녔던 북한이탈주민 ○○○ 모두 배급을 받은 적이 없었다.⁴⁹⁵

491_NKHR2019000079 2019-09-25.

492_NKHR2019000070 2019-08-26.

493_NKHR2020000019 2020-07-04.

494_NKHR2019000017 2019-05-07.

495_NKHR2019000027 2019-06-03; NKHR2019000042 2019-07-01; NKHR2019000047 2019-07-01; NKHR2019000062 2019-07-29; NKHR2019000059 2019-07-29; NKHR2019000077 2019-09-25.

설령 다른 기업소에 비해 배급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양이 충분치 않고 배급이 비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많은 노동자들은 소토지 농사를 짓거나 장마당에서 구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식량을 마련하고 있다. 부모님이 군부대 부업지 노동자였던 한 증언자는 직장에서 1년에 쌀 30kg, 강냉이 70kg이 배급으로 나왔지만 식량이 부족하여 2,500평 정도의 소토지를 경작하여 강냉이, 콩, 입쌀 등을 생산했다고 한다.⁴⁹⁶ 특히 많은 북한 주민들이 부족한 식량을 장마당에서 구입하여 충당하고 있는데, 기업소에서 보수가 거의 지급되지 않다 보니 식량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장마당 등에서 추가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⁴⁹⁷

(3) 군대 내 식량 배급에서 나타나는 차별

북한은 선군정치를 위해 군부를 이용해 왔다. 군에 우선적으로 식량을 배급하는 것도 그 방안의 하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군부의 식량 사정은 일반 사회보다 낫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군인이나 군부대가 식량을 공급받았다고 해서 모든 군인들이 충분한 배급을 받는 것은 아니다. 복무하는 부대와 계급에 따라 배급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국경경비대나 해안경비대, 호위사령부, 잠수부대, 공군비행사와 같이 특수 분야에서 복무하는 경우는 다른 부대의 군인들에 비해 배급 사정이 좋은 것으로 보이며, 군관은 사병과 달리 비교적

496_NKHR2019000118 2019-11-30.

497_NKHR2019000004 2019-04-08 외 다수의 증언.

배급이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동생 남편이 국경경비대 군관이었던 북한이탈주민 ○○○의 증언에 따르면, 가족구성원 4명의 배급이 정상적으로 나왔는데 군관인 본인은 백미로 매월 16kg(보름에 8kg씩), 나머지 가족구성원들 몫으로 1명당 잡곡 50~60kg이 공급되었다고 한다.⁴⁹⁸ 남편이 해안경비대 군관였다는 증언자도 남편몫으로 20kg, 나머지 가족몫으로 34kg의 식량이 지급되어 생활이 가능했다고 하였다.⁴⁹⁹

표 III-5 군부대 배급이 잘 이뤄진 사례

증언내용	증언번호
(2017년 탈북) OO부대는 군부대 중에서도 가장 배급이 잘 이루어지는 곳으로 식량사정에 문제가 없었음. 잠수함 부대, 공군 비행사 등이 특별 대우를 받고, 974 김정은 호위대도 좋은 대우를 받음.	NKHR2017000069 2017-08-28
(2017년 탈북) 남편이 해안경비대 군관이라 배급이 빠짐없이 나옴. 남편 몫으로 20kg, 아들과 아내몫으로 34kg, 3,000원의 노임이 나왔음.	NKHR2017000087 2017-09-25
2017년 남편이 군부대 군의관으로 복무했는데 가족 식량까지 매달 쌀 15kg, 강냉이 17kg을 배급받음.	NKHR2018000055 2018-07-02
여동생의 남편이 국경수비대의 군관이었는데 배급이 정상적으로 나왔으며 가족 구성원 4명의 배급이 모두 이뤄졌고, 본인은 매월 백미 16kg, 나머지 가족구성원은 1인당 잡곡(강냉이, 밀) 50~60kg씩 공급받음.	NKHR2019000003 2019-04-08
남편이 군관이었는데 군에서의 공급이 관참아 따로 장사를 하지 않아도 배급만으로 먹고 살 수 있었으며, 잡곡과 백미가 섞인 것을 받음.	NKHR2019000041 2019-07-01

하지만 대부분의 군부대에서는 식량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차 배급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일부 군인들은 자체적으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일탈행위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증언자에 따르면, 군인들이 민가에 나와 주민들에게 감자 등 식량을 달라고 하거나 짐승을 훔쳐가는 일이

498_NKHR2019000003 2019-04-08.

499_NKHR2017000087 2017-09-25.

있었으며,⁵⁰⁰ 군인이었던 북한이탈주민 ○○○는 1인당 600g의 배급을 받지만 배고파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 민가에 가서 식량을 훔치기도 하고, 특히 초급병 때는 식량배급을 거의 받지 못해 도둑질을 하거나 풀을 뜯어먹기도 하였다고 한다.⁵⁰¹ 또 다른 증언자는 군인이 군부대에서 생산한 금강석을 개인들에게 몰래 팔아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사 온다고 증언하였다.⁵⁰² 이 밖에도 군인들이 군복, 모자 등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가에서 절도를 하거나 약탈을 한다는 증언도 있었다.⁵⁰³

이처럼 사병에게 배급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데에는 군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도 한몫하는 것으로 보인다. 군관으로 복무했던 북한이탈주민 ○○○에 따르면, 하전사들의 경우 간부들이 식량을 빼돌리기 때문에 배급량이 줄어들고 품목이 변경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쌀 100kg이 공급되면 실제로 하전사들에게는 강냉이 50kg만 배급된다고 한다.⁵⁰⁴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군에서 1인당 1일 750g을 받아야 하지만 300g만 배급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분대장이 중간에 빼돌려서 팔아먹기 때문이었다고 말하였다.⁵⁰⁵ 군인들이 농사를 많이 짓지만, 군관들이 중간에 떼먹어서 실제로 군인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적다는 증언도 있다.⁵⁰⁶

500_NKHR2020000001 2020-05-15 외 다수의 증언.

501_NKHR2019000065 2019-08-17.

502_NKHR2020000013 2020-06-15.

503_NKHR2019000063 2019-07-29.

504_NKHR2019000049 2019-07-20.

505_NKHR2018000095 2018-08-27.

506_NKHR2018000118 2018-10-22.

라. 평가

김정은 시대 들어와 북한의 식량 사정이 다소 나아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실제로 국제기구의 조사 결과를 보면, 북한 주민의 영양 상태는 과거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선은 국내적으로 농업생산이 좋아지고 중국으로부터 식량자원(쌀, 옥수수, 밀가루 등)의 수입 증대가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 부족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북한 당국이 식량증산을 위해 포전담당책임제를 도입하는 등 개혁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생산 증대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포전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고, 비료나 농기계 등 영농물자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으며, 분배 과정에서 간부들의 횡령이 만연하고, 과도한 생산목표 설정과 수매, 다양한 형태의 공출 등으로 농장원의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있어 농민들의 식량권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포전담당책임제 운영에서 나타나는 결함들을 농장 실정에 맞게 고쳐나가면서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⁵⁰⁷

김정은 정권에서 배급은 직업, 기관·기업소, 지역에 따라 선택적이고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당 및 권력기관 종사자, 지배인, 군관, 군수공업 등 특수 집단에 종사하는 주민들을 제

507. 2019년 4월 황해남도 웅진군내 협동농장들을 방문한 박봉주 내각총리가 분조관리제 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정확히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비록 포전담당책임제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향후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서 농업부문의 곡물생산 목표를 2019년 국가의무수매계획 수준으로 정하고 농업근로자의 생산 열의를 높일 것을 제안한 것을 고려했을 때 포전담당책임제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외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더 이상 배급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사무원을 비롯해 의사 및 교원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외화벌이, 수출, 무역 등과 관련된 기업소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배급 상황이 좋았으나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이들 기업소의 배급도 나빠지고 있다.

따라서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기 위해 장마당에 나가거나 소토지 농사에 종사하는 등 개인적인 경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김정은 정권의 산림복구 사업이 추진되면서 산을 개간하여 농사를 짓는 주민들의 식량 확보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국경봉쇄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2021년 1월 개최된 제8차 당대회에서 향후 5년 동안 국가운영의 기본 노선으로 자력갱생이 채택된 점을 고려했을 때 북한주민들의 식량안보는 더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북한 주민의 식량권이 대내외의 여러 가지 요인들에 맞물려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주민의 식량안보 위기를 개선할 필요성과 더불어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북한과 개발협력을 추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접근도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농업개발협력과 함께 산림, 환경, 재난협력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북한주민의 식량권 증진에 실질적인 효과가 도출될 수 있다. 그리고 대북제재가 직간접적으로 북한주민의 식량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영양지원은 물론 농업개발협력에 필요한 물품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나 비료 및 각

종 영농물자의 수입이 대북제재로 인해 지연되거나 제약을 받을 경우 북한주민의 식량안보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의 식량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건강권

세계인권선언 제25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과 의료 및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권규약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건강권에 대해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WHO) 헌장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의 향유”가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과 경제적 또는 사회적 조건의 차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권리 중 하나이다”라고 보다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표 III-6 사회권규약 제12조

제1항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제2항	이 규약 당사국이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에는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 (a) 사산율과 유아사망률의 감소 및 어린이의 건강한 발육 (b) 환경 및 산업위생의 모든 부문의 개선 (c)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 치료 및 통제 (d) 질병 발생시 모든 사람에게 의료와 간호를 확보할 여건의 조성

북한 당국은 종래부터 무상치료제를 시행하고 예방의학을 강조하는 등 주민의 건강권 보호에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공중위생법(2014),⁵⁰⁸ 국경위생검역법(2007),⁵⁰⁹ 식료품위생법(2013),⁵¹⁰ 의료법(2012),⁵¹¹ 의약품관리법(1998),⁵¹² 인민보건법(2012),⁵¹³ 전염병예방법(2015),⁵¹⁴ 장애인보호법(2013)⁵¹⁵ 등 건강 관련 법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 관한 유엔의 2019년 UPR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보건분야발전 중기전략(2016-2020), 말라리아관리전략(2014-2017), 결핵관리전략(2014-2017) 등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등 주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⁵¹⁶

이처럼 북한 당국은 제도적 차원에서 주민의 건강권을 적극 보호하고, 여러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508_ 2014년 5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6호로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중위생법」 (이하 ‘공중위생법’).

509_ 2007년 9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66호로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 (이하 ‘국경위생검역법’).

510_ 2013년 4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04호로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식료품위생법」 (이하 ‘식료품위생법’).

511_ 2012년 11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08호로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료법」 (이하 ‘의료법’).

512_ 1998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1호로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약품관리법」 (이하 ‘의약품관리법’).

513_ 2012년 4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03호로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 (이하 ‘인민보건법’).

514_ 2015년 1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5호로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염병예방법」 (이하 ‘전염병예방법’).

515_ 2013년 11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47호로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인보호법」 (이하 ‘장애인보호법’).

516_ UN Doc. A/HRC/WG.6/33/PRK/1 (2019), p. 14.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 등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의 건강권은 적절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불균형, 사인(私人)에 의한 의료행위의 만연, 불충분한 예방의학 상황을 중심으로 북한의 건강권 실태를 살펴본다.

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불균형

북한에는 동·리 단위로 1차 의료기관인 진료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시·군·구역 단위로는 2차 의료기관인 인민병원이 설치되어 있다. 이로 보아 주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⁵¹⁷

그런데 무상치료제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개인이 의료서비스 비용을 거의 대부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로 인해 경제력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에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계층에 따라 의료 시설 및 서비스 접근성에 차별이 존재한다는 증언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하에서는 경제력 및 계층에 따른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불균형 실태를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무상치료제를 시행하며, 모든 주민이 무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무상치료제는 형식

517_NKHR2017000110 2017-11-20; NKHR2018000082 2018-07-30; NKHR2020000018 2020-07-04.

만 남아 있을 뿐이며, 실제로는 개인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⁵¹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진료, 입원, 수술, 약품 구매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가 아닌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초보적인 의약품은 병원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하지만 수술에 필요한 전문의약품은 대부분 환자가 부담하고 있다. 또 입원 시 본인이 먹을 식량과 침구류도 가지고 가야 하며, 난방비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2018년 4월 딸의 맹장수술을 위해 200위안을 지불하고 병원에 입원시켰으며, 병원에서 쓰는 거즈나 의료장갑 등을 환자가 직접 사서 바쳐야 했고, 난방을 위한 떨감도 스스로 마련하여야 했다고 말했다.⁵¹⁹ 양강도 혜산시에 거주했던 50대 여성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오라고 하며, 장마당에서 구입한 약을 가져다주면 의사들이 투약해 준다고 증언하였다.⁵²⁰

이와 함께 진료나 수술 시 수고비 명목으로 의료진에게 약간의 현금을 주거나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함경북도 청진시에 거주했던 10대 여성은 2019년 7~8월경 귀와 머리가 아파서 이비인후과를 두 번 방문했는데, 처음에는 치료비를 안 냈지만, 두 번째 진료 시 인사치레로 북한돈 3,000원을 냈으며, 의사가 먼저 인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하였다.⁵²¹

518_NKHR2020000004 2020-05-15; NKHR2020000028 2020-07-06 외 다수의 증언.

519_NKHR2018000115 2018-10-22.

520_NKHR2020000027 2020-07-06.

521_NKHR2020000029 2020-07-06.

환자가 내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8년까지 평양에서 의사로 있었던 한 남성은 환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대가를 받았었는데, 얼마나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은 없었으며, 돈이 없는 환자는 담배, 콩나물 등 물건으로 지불하기도 했다고 한다.⁵²² 이렇다 보니 의사들이 환자의 외모나 생활 형편을 보고 진료수준을 결정한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⁵²³ 2018년 탈북한 40대 초반 여성은 의료 차별이 존재하여 돈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치료해 주고 있으며, 돈이 없는 사람은 살릴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⁵²⁴

표 III-7 의료서비스 비용의 환자부담 사례

증언내용	증언번호
2017년 조카의 맹장수술 때문에 병원에 갔을 때 담배 1갑과 수술비 100위안을 의사에게 줌.	NKHR2019000050 2019-07-20
2018년 남편이 X-레이 촬영을 하는데 10위안과 담배 3갑을 진료비 명목으로 줌.	NKHR2019000006 2019-04-08
어떤 병인지를 가르쳐 주는 정도만 무상일 뿐, 실제 진료를 위해서는 약값부터 입원비까지 모두 개인이 부담함.	NKHR2017000026 2017-05-08
2017년 탈북한 20대 중반 여성은 병원에 1주일간 입원해 있었는데, 의사에게 인사치레를 해야 했으며 약뿐만 아니라 식사, 심지어 약솜까지도 개인이 부담해야 했다고 함.	NKHR2018000029 2018-05-08
2018년 탈북한 40대 후반 남성은 헤산시 2병원에서 맹장수술을 받았는데 50위안을 수술비로 냈음. 이외에도 모든 약값, 난방비, 식사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했음.	NKHR2018000124 2018-10-27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불충분하고, 의료인력이 제대로 임금이나 배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처럼 개인이 비용을 부

522_ NKHR2020000018 2020-07-04.

523_ NKHR2019000003 2019-04-08; NKHR2019000050 2019-07-20.

524_ NKHR2018000105 2018-10-01.

담하게 되는 현상은 불가피하다고도 볼 수 있다. 문제는 의료보험 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의료서비스 비용을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환자가 돈이 없을 경우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병이 깊어지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탈북한 40대 후반 남성은 같은 인민반에 속해 있던 40대 여성이 자궁암에 걸렸으나 돈(300위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였다고 증언하였다.⁵²⁵ 2018년 탈북한 30대 초반 여성도 이웃에 유방암에 걸린 환자가 있었지만 생계가 어려워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약도 쓰지 못해 앓다가 사망했다고 증언하였다.⁵²⁶

또한 계산시에 거주했던 20대 여성은 2017-2019년 사이 이웃집 아주머니가 간에 복수가 차서 배가 부풀었음에도 치료비를 낼 형편도 못되어서 미루다가 병원을 너무 늦게 갔고, 결국 사망했다고 증언하였다.⁵²⁷ 2019년 탈북한 20대 여성은 이웃이 맹장염을 앓았는데, 수술비용(북한돈 10만 원)을 바로 마련하기 어려워 돈이 없으니 일단 수술을 하고 이후에 돈을 내겠다고 했으나 거절당했고 결국 일주일 후에 돈을 마련하고서야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⁵²⁸

525_NKHR2018000124 2018-10-27.

526_NKHR2019000006 2019-04-08.

527_NKHR2020000005 2020-05-15.

528_NKHR2020000021 2020-07-06.

표 III-8 돈이 없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사례

증언내용	증언번호
2016년 탈북한 20대 초반 여성은 모친이 피를 토할 정도로 많이 편창으셨으나 병원에 내야 하는 비용 부담 때문에 병원 치료를 거의 받지 못하고, 결국 2014년 사망했다고 함.	NKHR2018000100 2018-10-01
2016년 봄, 병원에서 간경변에 걸린 노숙자를 보았는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대로 내보냈음.	NKHR2017000007 2017-04-10
2016년 유선염에 걸린 이모가 치료비 부족으로 사망했음. 아플 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사례는 흔한 편임.	NKHR2019000034 2019-06-03
암에 걸린 어머니가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의 치료를 받다가 사망함.	NKHR2016000073 2016-05-17
동네에 결핵환자가 있었는데, 병원에서 결핵 진단까지 받았지만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였음.	NKHR2017000003 2017-04-10
양강도 해산시에 거주했던 50대 여성은 2016년경 자궁근종으로 수술을 권유 받았지만, 약품 리스트와 기구 등을 따로 챙기는 데 500위안이 들어서 수술을 받지 않았다고 증언함.	NKHR2020000027 2020-07-06

한편, 북한에서는 계층에 따라서도 의료서비스 접근성에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 탈북한 50대 초반 여성은 특별방, 간부방이 과마다 따로 있었으며, 의사들도 ‘들어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 방에서는 서비스를 더 잘해주었다고 말했다.⁵²⁹ 또한 2018년 탈북한 30대 초반 여성은 간부 전용 참모 진료시설이 따로 있었으며, 여기 근무하는 의사나 간호사는 능력, 인물, 체격을 보고 뽑는다고 한다.⁵³⁰ 시·도 병원에는 간부들을 위한 특수입원실이 있다는 증언도 있었다.⁵³¹ 2019년 탈북한 20대 여성도 당간부가 이용하는 의료시설이 별도로 존재하며, 의사도 따로 배정해 둔다고 증언하였다.⁵³²

529_ NKHR2018000036 2018-05-08.
 530_ NKHR2018000107 2018-10-01.
 531_ NKHR2018000120 2018-10-22.
 532_ NKHR2020000013 2020-06-15.

이외에도 당 간부나 간부 가족만 따로 이용할 수 있는 진료과가 있다는 증언,⁵³³ 별도의 진료과가 없더라도 병원에서 당 간부들에게는 특별히 좋은 약을 제공한다는 증언,⁵³⁴ 당 간부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의료서비스가 주어진다는 증언,⁵³⁵ 당 간부만 전담하는 의사가 따로 있다는 증언⁵³⁶ 등 계층에 따라 의료 시설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에 차이가 있다는 증언이 다수 수집되었다.

표 III-9 계층별 의료서비스 접근성 불균형 실태

증언내용	증언번호
청진대의병원에 간부전용 병실 및 진료과가 있었고, 외국 지원물자는 간부전용 병실에만 있었음.	NKHR2017000028 2017-06-05
평양에 간부전용 병원인 남산병원(진료소)이 있으며, 일반인인 친구가 응급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진료를 거부당했음.	NKHR2017000031 2017-06-05
평양에 있는 봉화진료소는 당간부들만 이용하며, 독일기자재 등 수준급의 전문시설을 갖추고 있음. 진료소 내에서도 직책에 따라 대우가 다름.	NKHR2017000033 2017-06-05
당간부나 고위층들이 이용하는 의료시설은 따로 있음. 남산병원(진료소), 봉화진료소, 평양직접심자병원, 김만유병원, 1병원, 2병원 등임. 고위급 자체들도 이용함.	NKHR2017000068 2017-08-28
2018년 탈북한 40대 후반 여성은 해산시에 시병원, 제2병원, 의대병원 이 있었으며, 의대병원 진료과는 간부들만 가는 곳이라고 증언함.	NKHR2018000089 2018-08-27
병원 약은 주로 유엔 약인데 요직의 간부들에게만 공급됨. 해산 의학대학 병원에는 간부들이 입원하는 호가 따로 있다고 들었음.	NKHR2019000041 2019-07-01
양강도 해산시에 거주했던 50대 여성은 당 간부들이나 비서들을 치료하는 진료과가 매 병원마다 있다고 증언함.	NKHR2020000027 2020-07-06

533_ NKHR2019000054 2019-07-29; NKHR2019000083 2019-09-25.

534_ NKHR2019000055 2019-07-29; NKHR2019000076 2019-08-26.

535_ NKHR2019000029 2019-06-03.

536_ 위의 증언.

나. 개인의 불법적 의료행위 만연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의료시설에서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매우 떨어진다.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진은 충분한 실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의료기구도 대부분 낙후되어 있거나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증언이 많다.

2016년 탈북한 50대 여성은 원산의학대학병원 시설과 관련해, 수술기구, 초음파 기계는 있으나, 난방이 전혀 안 되었고 수술도구는 재래식이었다고 증언하였다.⁵³⁷ 또 평양에서 의사로 있었던 한 남성은 진단이 과학적이지 못하고 의사의 주관대로 이루어지다 보니 오진이 잦고, 그래서 치료가 엉뚱하게 진행되어 환자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증언하였다.⁵³⁸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의료시설과 의료진에 대해 신뢰하지 않으며, 주민들 사이에는 병원에 가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⁵³⁹

실제로 병원에서의 오진 혹은 잘못된 치료로 인해 환자가 어려움을 겪은 사례들도 확인된다. 북한이탈주민 ○○○은 2016년 7월에 복부에 통증을 느끼다 실신한 상태로 신포시립병원에 실려 갔다. X-레이 촬영 후 병원의사는 위천공으로 진단을 잘못

537_NKHR2017000013 2017-04-10.

538_NKHR2020000018 2020-07-04.

539_NKHR2017000039 2017-06-05; NKHR2020000004 2020-05-15; NKHR2020000023 2020-07-06.

내렸고, 개복 후에야 위천공이 아니라 담석증임을 확인하여 담석 수술을 실시했다. 그런데 수술 이후에도 통증이 있어 확인한 결과 수술용품이 배 안에 있었고, 그는 이를 제거한 후에야 회복될 수 있었다고 한다.⁵⁴⁰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2017년 11월, 옆집 사람이 간 질환으로 사망했는데, 처음에 결핵으로 오진하여 전혀 맞지 않는 약을 쓰다 한 달 만에 사망했다고 증언하였다.⁵⁴¹ 혜산시에 거주하다 2019년 탈북한 40대 여성의 증언에 따르면, 동네에 살던 15살 아이가 시력이 좋지 않았는데, 시병원의 오진으로 수술을 잘못 받아서 시력을 잃었으며, 평양병원까지 갔지만 결국 포기했다고 한다.⁵⁴²

의료기관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아프더라도 병원 대신 개인 의사를 찾아가 진료를 받고 의사가 소개해주는 약방에 가서 약을 사서 복용하거나, 스스로 판단해서 장마당이나 개인약국에서 약을 사서 복용하는 등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 의사들은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들을 가리키는데, 이는 불법이지만, 주민들은 이들이 병원의 의사보다 실력이 더 좋다고 인식해 이들을 더 찾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⁵⁴³ 2019년 탈북한 20대 중반 여성은 아버지가 개인 의원을 운영했는데 의술이 좋아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하는 병을 고치곤 했

540_NKHR2017000070 2017-08-28.

541_NKHR2019000045 2019-07-01.

542_NKHR2020000004 2020-05-15.

543_NKHR2019000093 2019-10-21; NKHR2019000083 2019-09-25; NKHR2020000023 2020-07-06.

으며, 동네 사람들이 병원을 가지 않고 아버지를 찾아왔다고 증언하였다.⁵⁴⁴ 2019년 탈북한 또 다른 20대 여성도 국가에서 주는 것이 없으니 병원 의사들 실력이 한심하다면서, 개인 의사들이 더 실력이 좋아서 많이 간다고 증언하였다.⁵⁴⁵

하지만 이처럼 개인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거나, 자가진단에 근거해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도 위험 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2010년부터 결핵으로 투병을 하던 친구 모친이 장마당에서 약을 구입해 복용하다가 2016년 11월 사망했다면서, 이처럼 격리가 필요한 개방성 결핵을 앓고 있으면서도 자체로 진단을 내리고 약을 사다 먹는 사람들이 많다고 증언하였다.⁵⁴⁶ 2018년 탈북한 40대 중반 여성은 2017년 경성군에서 여동생이 개인 의사 집에서 낙태수술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바 있는데, 소파수술을 마취도 하지 않고 하여 동생이 매우 심하게 아파했으며, 시술기구를 꿰어서 다른 사람한테 다시 사용한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⁵⁴⁷

또한 무자격자가 시술을 하거나 의약품을 파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불법적 의료행위는 일반 주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또 2018년 탈북한 30대 초반 여성은 개인 병원을 운영했는데, 관련해서 받은 정식 교육은 간호원학교에서 6개월 수학한 게 전부이며, 아는 도 병원 과장에게 물어가면서 독학해 진료를 했다고 한다.⁵⁴⁸ 2019년 탈북한 60대 여

544_NKHR2019000051 2019-07-20.

545_NKHR2020000014 2020-06-15.

546_NKHR2017000112 2017-11-20.

547_NKHR2018000074 2018-07-30.

548_NKHR2018000101 2018-10-01.

성은 의과대학을 갔지만 의사를 하지 않고 집에서 치료하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 책을 보고 공부해 치료하는 사람도 있다고 증언하였으며,⁵⁴⁹ 예산시에 거주하다 2019년 탈북한 50대 여성은 딸이 집에서 진료를 보았는데, 의학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으며, 개인에게 70만 원 가량을 주고 배운 게 전부였다고 증언하였다.⁵⁵⁰ 이에 따라 최근 몇 년 사이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나 약 판매에 대해서 단속이 많다거나 강화되었다는 증언도 있는데,⁵⁵¹ 이러한 조치가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민들이 잘못된 의료지식에 입각해 병두, 아편을 비롯한 마약류를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양상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탈북한 20대 남성은 아버지가 신장염을 앓았는데, 너무 아플 때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아편을 썼다고 증언하였다.⁵⁵² 2018년 탈북한 50대 후반 여성은 남편이 기관지확장증을 앓았고 아편을 약처럼 사용했다고 말했으며,⁵⁵³ 2019년 탈북한 60대 여성은 남편이 2018년 뇌혈전 증세가 있어 병두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증언하였다.⁵⁵⁴

이처럼 잘못된 의료지식에 입각해 마약류를 치료에 사용하는 것이 상당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해 북한 당국이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549_NKHR2020000025 2020-07-06.

550_NKHR2020000024 2020-07-06.

551_NKHR2020000018 2020-07-04; NKHR2020000023 2020-07-06.

552_NKHR2020000020 2020-07-04.

553_NKHR2018000127 2018-11-19.

554_NKHR2020000021 2020-07-06.

2019년 탈북한 30대 여성은 양강도 보천은 빙두보다 아편을 많이 사용하며, 아편을 몰래 파는 집들도 있다면서 걸릴 경우 처벌이 강하긴 하지만 뇌물을 주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증언하였다.⁵⁵⁵

다. 불충분한 예방의학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보면, 어린아이들에 대한 접종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헤산시에 거주하다 탈북한 30대 여성은 2018~2019년에 거주지 진료소에서 자녀(5~6세)에게 소아마비, 결핵, 간염, 홍역, 장티푸스 등에 대한 예방접종을 해줬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증언자들이 예방접종이 실시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⁵⁵⁶ 또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북한의 아동에 대한 예방접종률이 2019년 기준으로 96~98%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⁵⁵⁷

또한 장티푸스와 같은 전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북한 당국이 지역별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거나, 건강검진을 독려하고 격리 조치를 취하기도 하는 등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8년 탈북한 50대 후반 여성은

555_ NKHR2020000006 2020-05-15.

556_ NKHR2018000059 2018-07-02; NKHR2019000014 2019-05-07; NKHR2019000020 2019-05-07; NKHR2019000030 2019-06-03 외 다수의 증언.

557_ "WHO Vaccine-preventable Diseases: Monitoring System, 2020 Global Summary," 2020, <http://apps.who.int/immunization_monitoring/globalsummary> (검색일: 2020.1.15.).

혜산시에 장티푸스가 유행해 2018년 4월경 주민들에게 예방접종해주는 것을 목격했다고 하며,⁵⁵⁸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2016년 홍수가 발생했을 당시 회령시 차원에서 수질오염과 관련해 건강검진을 받을 것을 주민들에게 독려했다고 증언하였다.⁵⁵⁹

또한 2015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사스(SARS)나 콜레라 같은 전염병이 돌면 평양시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증언하였다.⁵⁶⁰ 2016~2017년 장티푸스가 유행했을 때 담당진료소에서 매일 새벽마다 가가호호 돌아다니며 예방주사를 놓아주었다는 증언도 있었다.⁵⁶¹

이와 달리, 혜산시에 거주했던 두 북한이탈주민은 감염병 발생 시 강연 자료로 선전하기만 할 뿐, 방역 등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어,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조치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⁵⁶²

한편, 결핵, 말라리아, B형 간염 등의 감염병은 여전히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은 말라리아관리 전략(2014-2017), 결핵관리전략(2014-2017) 등을 실시해 왔다고 밝히고 있으나,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결핵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WHO에서 발

558_NKHR2018000120 2018-10-22.

559_NKHR2017000024 2017-05-08.

560_NKHR2017000033 2017-06-15.

561_NKHR2019000059 2019-07-29.

562_NKHR2020000027 2020-07-06; NKHR2020000028 2020-07-06.

간한 『2020 세계 결핵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북한의 결핵환자 수는 13만 2천 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513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⁵⁶³

전염병 예방 측면에서 깨끗한 식수의 공급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북한에는 상수도 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상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경우에도 수돗물의 수질도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북한이탈주민 중에는 상수도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식수로 우물물 혹은 강물을 사용했다는 사람도 있다.⁵⁶⁴ 혜산시에 거주했던 20대 여성은 동네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먹었고, 겨울에는 우물이 얼기 때문에 압록강 물을 길어 마셨다고 한다. 압록강 물의 경우, 수질이 나쁜 편이라 물을 한 번씩 끓여서 먹기도 했지만 바쁘면 그냥 먹기도 했는데, 얼음이 풀릴 때 물을 길어 먹으면 대장염을 달고 살았다고 한다.⁵⁶⁵

반면, 샘물판매소에서 물을 사다 먹었던 사람들도 있다.⁵⁶⁶ 혜산시에 거주하다 2019년 탈북한 20대 여성은 샘물공급소에서 물을 사먹었는데, 비용이 크게 부담되지는 않았다고 한다.⁵⁶⁷ 이외에 식수로 수돗물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사람도 있는데,⁵⁶⁸ 식수를 사다 먹었던 사람들이 수돗물 수질이 좋지 않았

563_WHO, "Global Tuberculosis Report 2020," <www.who.int/en> 참조.

564_NKHR2020000026 2020-07-06; NKHR2020000027 2020-07-06.

565_NKHR2020000023 2020-07-06.

566_NKHR2020000012 2020-06-15; NKHR2020000029 2020-07-06.

567_NKHR2020000001 2020-05-15.

568_NKHR2020000004 2020-05-15; NKHR2020000020 2020-07-04.

다고 증언하는 것으로 보아,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주민들도 전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방의학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호담당의사제도는 어느 정도 기능을 하고 있다는 증언이 일부 수집되었다.⁵⁶⁹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통해 호담당의사가 전염병 발생 시 예방백신 접종 등의 역할을 담당하거나,⁵⁷⁰ 인민반에 앓는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되기도 했다.⁵⁷¹

그러나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은 호담당의사들이 북한 주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전하고 있다.⁵⁷² 호담당의사가 있다는 말은 들었으나 실제로는 만나보지 못한 경우도 있으며,⁵⁷³ 호담당의사제가 형식상 작동은 하나 돈이 없으면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증언도 있다.⁵⁷⁴ 2019년 탈북한 20대 여성은 호담당의사가 예방접종을 담당하지만, 국가에서 주는 돈이 없으니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는다면, 얻어먹을 게 있는 집에 개인적으로 다닌다고 증언하였다.⁵⁷⁵ 심지어 호담당의사제에 대해 주민들이 잘 모른다는 증언도 적지 않

569_ NKHR2019000018 2019-05-07; NKHR2019000010 2019-04-08; NKHR2019000062 2019-07-29.

570_ NKHR2018000016 2018-04-09; NKHR2020000004 2020-05-15; NKHR2020000029 2020-07-06.

571_ NKHR2018000080 2018-07-30; NKHR2019000032 2019-06-03.

572_ NKHR2015000018 2015-01-27; NKHR2015000019 2015-01-27; NKHR2018000084 2018-08-11; NKHR2018000099 2018-10-01; NKHR2019000011 2019-04-20; NKHR2019000019 2019-05-07.

573_ NKHR2017000058 2017-07-31; NKHR2017000066 2017-08-28; NKHR2018000018 2018-04-09; NKHR2018000058 2018-07-02.

574_ NKHR2017000004 2017-04-10.

575_ NKHR2020000014 2020-06-15.

았다.⁵⁷⁶ 2019년 탈북한 20대 남성은 본인은 친구의 삼촌이 의사로서 자신의 집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호담당 의사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호담당 의사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증언하였다.⁵⁷⁷

라. 평가

북한은 무상치료제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는 환자가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은 병에 걸리거나 다쳐도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층에 따라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에 차별이 존재하는 상황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의료서비스의 질도 떨어져 주민들은 의료기관을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아플 경우 병원에 가기보다는 개인 의사를 찾아가거나 직접 약을 사서 복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처럼 개인에 의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는 진료 및 시술 과정에서 오진, 의료과실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한편, 북한은 예방의학을 중시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예방접종을 비롯한 예방의학적 조치들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

576_NKHR2019000009 2019-04-08; NKHR2019000020 2019-05-07; NKHR2019000034 2019-06-03; NKHR2019000038 2019-06-15; NKHR2019000042 2019-07-01; NKHR2019000045 2019-07-01; NKHR2019000046 2019-07-01; NKHR2019000048 2019-07-01 외 다수의 증언.

577_NKHR2020000020 2020-07-04.

인다. 호담당의사제 역시 일부 작동하고 있으며 감염병 발생 시 위생교육과 예방접종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증언도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호담당의사제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는 증언이 다수 수집되어 완전한 제 기능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수질이 좋지 않은 수돗물이나 우물물, 강물 등을 식수로 사용하는 주민도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전염병 예방 측면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부분도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3

노동권

세계인권선언 제23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은 노동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선택의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에 관한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4조는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일을 포함한 휴식과 여가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권규약에서도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노동의 권리, 모든 사람이 향유할 수 있는 노동 조건, 노동조합의 결성과 참여에 대한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

표 III-10 사회권규약 제6조, 제7조, 제8조

제 6 조	제1항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포함하는 노동의 권리를 인정하며, 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2항	이 규약의 당사국이 노동권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제반조치에는 개인에게 기본적인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하에서 착실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과 생산적인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 및 직업의 지도, 훈련계획, 정책 및 기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	<p>이 규약의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이 확보되는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을 모든 사람이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p> <p>(a) 모든 노동자에게 최소한 다음의 것을 제공하는 보수</p> <p>(i) 공정한 임금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 특히 여성에게 대하여는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와 함께 남성이 향유하는 것보다 열등하지 아니한 노동조건 보장</p> <p>(ii) 이 규약의 규정에 따른 자신과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p> <p>(b)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p> <p>(c) 연공서열 및 능력 이외의 다른 고려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직장에서 적절한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p> <p>(d) 휴식, 여가 및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 공휴일에 대한 보수와 정기적인 유급휴일</p>
제1항 제8조	<p>이 규약의 당사국은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p> <p>(a) 모든 사람은 그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단체의 규칙에만 따를 것을 조건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가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권리. 그러한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위하여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할 수 없다.</p> <p>(b)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연합 또는 총연합을 설립하는 권리 및 총연합이 국제노동조합조직을 결성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권리</p> <p>(c) 노동조합은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공공질서를 위하거나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제한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활동할 권리</p> <p>(d) 특정국가의 법률에 따라 행사될 것을 조건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p>
제2항	<p>이 조는 군인, 경찰 구성원 또는 행정관리가 전기한 권리들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p>
제3항	<p>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1948년의 국제노동기구협약의 당사국이 동 협약에 규정된 보장을 저해하려는 입법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를 저해하려는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할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p>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개인과 그 가족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노동권은 직업선택의 자유,⁵⁷⁸ 양질의 일

578. UN CESCR, "Social and Cultural Rights (CESCR), General Comment No. 18: The Right to Work (Art. 6 of the Covenant)," February 6, 2006, para. 6. 여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고용을 하거나 고용에 종사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함을 의미하는, 노동의 수락 또는 선택을 자유로이 결정할 모든 인간의 권리, 모든 노동자에게 고용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보호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 및 부당하게 고용을 박탈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포함된다.

자리,⁵⁷⁹ 강제노동 금지,⁵⁸⁰ 부당해고 금지,⁵⁸¹ 차별금지원칙⁵⁸² 관점에서 검토된다. 자신의 의지에 따른 노동조합 결성 및 활동, 파업 역시 근로권의 주요한 항목이다.⁵⁸³

북한에서는 헌법과 사회주의노동법(2015)⁵⁸⁴을 비롯한 각종 법규에 노동권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 헌법은 노동권에 대해 “국민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노동능력이 있는 모든 국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국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노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70조). 또한 사회주의노동법은 사회주의 노동의 기본원칙과 임금, 근로조건, 노동보호 및 사회보장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보호법(2014)⁵⁸⁵은 국가가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579. *Ibid.*, para. 7. 규약 제6조에 특정된 노동은 양질의 일자리여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란 인간의 기본적 권리뿐 아니라 작업 안전과 보수 조건에 있어서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한다. 또한, 이는 규약 제7조에 강조하고 있듯이 노동자로 하여금 그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부양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을 제공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는 고용의 행사에 있어서의 노동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완전성에 대한 존중을 포함한다.

580. *Ibid.*, para. 9. 국제노동기구는 강제노동을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불이익(penalty)의 위협하에 강요되었으며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 또는 서비스”라고 정의한다. 본 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 제4조, 노예협약 제5조 및 자유권규약 제8조에 선언되어 있듯이 당사국이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를 철폐, 금지 및 방지할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581. *Ibid.*, para. 11. 고용의 종료에 관한 국제노동기구협약 제158호는 제4조에서 해고(dismissal)의 합법성을 정의하고 있으며, 특히 해고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공할 요건 및 부당한 해고의 경우 법적 보상 또는 기타 보상을 받을 권리를 부과하고 있다.

582. *Ibid.*, para. 12. (b) (i). 제2조 제2항과 제3조에 따라, 규약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건강 상태, 성적 지향 또는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또는 기타의 신분에 근거한 것으로서 평등에 입각한 근로권의 행사를 훼손하거나 무효화할 의도 또는 효력을 갖는, 고용에 대한 접근 및 유지에 있어서의 어떠한 차별도 금지한다.

583. 사회권규약 제8조 제1항.

584. 2015년 6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66호로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노동법」(이하 ‘사회주의노동법’).

585. 2014년 3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292호로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동보호법」(이하 ‘노동보호법’).

제도적 장치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실상은 법률조항의 규정과는 거리가 멀다. 아래에서는 북한 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 주민들이 직업선택의 자유, 양질의 일자리,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의 자유 등의 측면에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직업선택의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제23조). 사회권규약에서도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자신의 노동권을 선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제6조). 북한은 사회주의노동법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 실제로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북한에서 고용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직업과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노동력을 직장에 배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국가계획위원회에서 노동계획을 통해 경제 각 부문에 필요한 노동자 수를 정하면 노동성에서 그것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노동력이 배치되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직장배치 시 본인의 의사와 능력은 중요한 변수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⁵⁸⁶ 그보다는 토대(성분), 인맥, 뇌물공여 여부(경제력)에 따라 직장배치가 좌우되는 것으로 파악된다.⁵⁸⁷ 개인의 의사나 능력이 직장배치에 반

586_ NKHR2020000028 2020-07-06; NKHR2020000029 2020-07-06.

587_ NKHR2019000003 2019-04-08; NKHR2019000013 2019-05-07; NKHR2019000054 2019-07-29; NKHR2020000028 2020-07-06; NKHR2020000029 2020-07-06 외 다수의 증언.

영된다는 응답도 일부 수집되었으나,⁵⁸⁸ 이는 토대(성분)가 좋거나, 인맥이 있는 경우, 혹은 뇌물공여가 가능한 경우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탈북한 한 증언자는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뇌물과 아버지의 인맥을 이용했다고 증언하였다.⁵⁸⁹

최근에는 토대보다 경제력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으나,⁵⁹⁰ 부모 또는 조부모의 직업을 대물림하도록 직장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아,⁵⁹¹ 직장 배치에 있어서 토대 역시 여전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 탈북한 한 증언자는 400~500달러의 뇌물을 지불하지 않고는 부모가 농장원이면 자식도 농장으로 배치된다면서, 농장원들은 대개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그 자녀도 농장원이 된다고 하였다.⁵⁹²

토대는 특히 특급기업소에 배치를 받거나 간부로 배치를 받는 데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⁵⁹³ 북한이탈주민 000은 검찰서, 보안서, 인민위원회, 군당 등은 토대가 중요하고 나머지 직종은 경제력이 중요하다고 증언하였다.⁵⁹⁴

588_NKHR2019000004 2019-04-08; NKHR2019000026 2019-05-18; NKHR2019000032 2019-06-03.

589_NKHR2020000021 2020-07-06.

590_NKHR2018000058 2018-07-02; NKHR2019000013 2019-05-07; NKHR2019000024 2019-05-18; NKHR2019000045 2019-07-01; NKHR2019000054 2019-07-29; NKHR2019000078 2019-09-25.

591_NKHR2018000067 2018-07-11; NKHR2019000008 2019-04-08; NKHR2019000011 2019-04-20; NKHR2019000045 2019-07-01.

592_NKHR2020000022 2020-07-06.

593_NKHR2017000019 2017-05-08; NKHR2017000056 2017-07-31; NKHR2017000073 2017-08-28; NKHR2018000008 2018-03-12.

594_NKHR2019000068 2019-08-26.

북한에서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대표적인 예는 ‘무리(집단)배치’이다. 무리배치란 공장, 탄광 및 각종 건설공장과 작업장 등 인원이 부족한 곳에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의 지시에 의해 강제적, 일방적으로 노동력이 집단배치되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 졸업생, 제대군인들이 무리배치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들이 주로 배치되는 곳은 돌격대나 탄광, 광산, 군수공장, 농장, 건설대 등 기피되는 작업 시설인데,⁵⁹⁵ 무리배치 이후 다른 직장으로의 배치 요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⁵⁹⁶

무리배치 역시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무리배치는 돈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이 주로 당하고,⁵⁹⁷ 잘 사는 사람들이나 간부들의 자녀 등 힘이 있는 사람들은 무리배치에서 쉽게 빠지며,⁵⁹⁸ 무리배치를 피하려면 토대가 좋거나 뇌물을 제공해야 한다고 증언한다.⁵⁹⁹

북한에서는 취업뿐만 아니라 전직(轉職)도 노동자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자유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속 절차도 복잡하며 시간도 오래 걸린다.⁶⁰⁰ 2019년 탈북한 한 북한이탈주민은 이직하려는

595_ NKHR2018000030 2018-05-07; NKHR2019000003 2019-04-08; NKHR2019000011 2019-04-20; NKHR2019000036 2019-06-03; NKHR2020000029 2020-07-06.

596_ NKHR2020000008 2020-05-16; NKHR2020000010 2020-05-16.

597_ NKHR2018000041 2018-06-04; NKHR2019000043 2019-07-01; NKHR2020000014 2020-06-15.

598_ NKHR2018000027 2018-04-09; NKHR2019000078 2019-09-25; NKHR2019000083 2019-09-25.

599_ NKHR2019000058 2019-07-29; NKHR2019000079 2019-09-25; NKHR2020000014 2020-06-15; NKHR2020000029 2020-07-06.

600_ NKHR2019000064 2019-08-17.

기업소에서 이직자를 받겠다는 채용증을 발급받고, 이를 토대로 노동부에서 파견증을 발급받으면 이직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⁶⁰¹

하지만 뇌물이나 인맥이 동원될 경우에는 이직이 보다 용이한 것으로 보인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2017년 식료공장에서 도무역국 산하 광산 내 식당으로 이직하였는데, 이직하고자 하는 직장의 노동지도원에게 2만 원 정도 뇌물을 주면 문건 이동이 가능했다고 증언하였다.⁶⁰²

한편, 북한 노동자들은 배치된 직장에 반드시 출근해야 하며, 일정 기간 이상 무단결근 시 노동교양 처벌을 받게 되는데, 노동단련대에 보내지는 기간은 무단결근 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⁶⁰³ 한 북한이탈주민은 2015년에 한 달 정도 무단결근한 여성 노동자가 노동단련대 1개월 처벌을 받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⁶⁰⁴ 또 2016년도에 무단결근을 한 사람이 보안서의 단속에 걸려 3개월간 노동단련대에 다녀오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있으며,⁶⁰⁵ 1~3개월 정도 농장에 무단결근해 노동단련대에 가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는 증언도 있다.⁶⁰⁶ 노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치 않는 노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601_NKHR2020000028 2020-07-06.

602_NKHR2020000021 2020-07-04.

603_NKHR2019000036 2019-06-03; NKHR2019000082 2019-09-25.

604_NKHR2017000036 2017-06-05.

605_NKHR2019000016 2019-05-07.

606_NKHR2020000022 2020-07-06.

다만 북한에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다 보니, 무단결근으로 단속에 걸리게 되더라도 돈을 내고 무마하는 경우가 있으며,⁶⁰⁷ 돈을 내기로 미리 합의하고 출근하지 않는 노동자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⁶⁰⁸ 2019년 탈북한 한 여성은 남편이 1년에 500위안을 직장에 내고 무단결근을 했으며, 액수는 정세에 따라, 기관에 따라 다른데, 대체로 집안에 돈이 어느 정도 있고 활력이 있는 젊은이들은 직장에 수익금을 내고 결근하는 경우가 많다고 증언하였다.⁶⁰⁹

나. 열악한 근로환경 및 보수 조건

‘양질의 일자리’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는 노동자 자신과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가 여부와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이 보장되는가 여부이다(사회권규약 제7조). 북한은 모든 노동자들이 국가로부터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는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실태는 이와 상당히 괴리되어 있다.

우선 배치된 직장에서의 노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노동자 자신과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 북한 주민들은 대부분 배치된 직장 혹은 농장에서 사실상 무보수 노동을 하고 있으며, 설령 임금이 지급되더라도 금액이 너무

607_NKHR2018000095 2018-08-27; NKHR2019000038 2019-06-15; NKHR2019000052 2019-07-20.

608_NKHR2019000039 2019-07-01; NKHR2019000047 2019-07-01; NKHR2019000057 2019-07-29; NKHR2020000019 2020-07-04.

609_NKHR2020000006 2020-05-15.

적어 가족 생계유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된다.⁶¹⁰ 배급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 역시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체신소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 ○○○은 노임은 한 달에 2,000원~3,000원 정도였으며, 배급은 1년 치를 한 번에 주는데, 이마저도 2017년까지는 지급받았으나, 무산의 경우 경제봉쇄로 인해 광산 활동이 중지됨에 따라 2018년부터는 배급이 나오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⁶¹¹ 2017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북창군 탄광에서 근무했던 한 북한이탈주민도 한 달에 한 번 식량배급을 받는 것이 노동대가였다고 증언하였다.⁶¹² 또 다른 증언자는 남편이 의사로 근무하면서 식량배급 외에도 노임을 한 달에 북한돈 4,000원 정도로 받았는데, 너무 적은 돈이라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한다.⁶¹³

한편, 생활을 영위할 정도의 임금을 외화(위안화 및 달러)로 지급받았다는 증언이 일부 수집되고 있는데, 이는 수출을 하는 기업소나 작업장, 경제특구에서 근무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⁶¹⁴

610_NKHR2019000013 2019-05-07 외 다수의 증언.

611_NKHR2019000071 2019-08-26.

612_NKHR2020000042 2020-10-31.

613_NKHR2020000047 2020-11-28.

614_NKHR2019000043 2019-07-01; NKHR2019000060 2019-07-29; NKHR2019000072 2019-08-26; NKHR2020000021 2020-07-06.

표 III-11 북한의 임금 지급 실태

증언내용	증언번호
2015~2017년 간호사로 일할 때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1,000원의 노임을 받음. 원래는 매달 2,450원을 받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저것 떼고 나면 손에 쥐어지는 것은 1,000원이었음. 배급은 한 달에 옥수수 6kg을 받음. 이는 보름치에 해당함.	NKHR2018000102 2018-10-01
2016년 양강도에서 중학교 경리로 근무한 1994년생 여성은 월급으로 1,300원을 분기별로 지급받았으며, 가을마다 교직원에 대한 배급으로 감자 300kg을 받았다고 증언함.	NKHR2019000044 2019-07-01
노임으로 15일에 한 번씩 쌀 500~1,000g 살 수 있는 정도의 현금을 받음.	NKHR2018000042 2018-06-04
직장에서 받는 보수로는 가족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텃밭이나 소토지에서 농사지은 것으로 충당함.	NKHR2018000065 2018-07-11
임산사업소의 경우 배급으로 한 달에 강냉이와 밀쌀을 5~10kg을 받았고 생활비로 1,500원을 받음.	NKHR2018000079 2018-07-30
보위성에서 근무한 1997년생 여성은 월급으로 1,200원을 받았고, 당비를 제외하면 실제 수령금액은 거의 없었다고 증언함. 배급은 직장에서 먹는 세끼로 충당되어 별도 지급받지 않음.	NKHR2019000080 2019-09-25
간호원으로 근무한 1995년생 여성은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은 배급이나 노임을 받지 못하며, 치료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이 주는 뇌물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증언함.	NKHR2019000082 2019-09-25
정보통신국에 근무한 1994년생 여성은 노임은 형식적으로 1,000원을 받았지만, 사탕 값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증언함.	NKHR2019000083 2019-07-29
2019년 탈북한 한 증언자는 주택보수사업소에 8년 동안 근무하면서 감자 배급 2번 이외에는 받은 것이 없다고 증언함.	NKHR2020000008 2020-05-16

공식적인 직장생활만으로는 생계를 영위하기 어렵게 되자, 노동자들이 시장과 연계된 각종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현상이 보편화되었다. 북한이탈주민 ○○○은 아버지가 노임과 배급을 받았지만 생활하기에 크게 부족해 어머니가 장마당에서 채소를 팔아 생활비를 벌었다고 증언하였다.⁶¹⁵ 북한이탈주민 ○○○은 노동대가로 노임을 받지만 생계유지에 충분치 않아 개별적으로

615_NKHR2018000043 2018-06-04.

농사, 장사 등을 하며 생계를 유지한다고 설명하였다.⁶¹⁶ 평양에 거주하다 탈북한 20대 후반 남성의 경우, 기업소에 8:3 노동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기업소의 공간을 일부 빌려서 탁구장을 운영한다든지, 개인이 운영하는 공장에 돈을 투자해서 수익금을 받는다든지 해서 생활을 영위해 왔다고 증언하였다.⁶¹⁷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 우선 근로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 ○○○은 노동환경이 아주 열악하여 본인이 입고 간 옷이 곧 작업복이고, 안전모는 생각할 수도 없었으며, 모든 것을 노동자 본인 돈으로 구입해야 했다고 증언하였다.⁶¹⁸ 2019년 탈북한 한 증언자는 중장비 운전직으로 근무할 때 안전모 같은 안정장비를 지급받지 않았고 사전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되었다고 증언하였다.⁶¹⁹ 또 화약을 다루는 생산단위 노동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은 마스크와 작업 장갑은 지급받았으나, 별도의 작업복은 없었으며, 유해환경으로 인해 2~3년 일하면 병을 얻는 경우가 많았다고 증언하였다. 다만, 폭발물을 다루기 때문에 노동안전규정 등은 분기마다 교육받았다고 한다.⁶²⁰

북한은 법으로 근로시간과 휴식 등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러한 규정이 잘 지켜

616_NKHR2019000029 2019-06-03.

617_NKHR2017000031 2017-06-05.

618_NKHR2018000036 2018-05-08.

619_NKHR2020000016 2020-07-04.

620_NKHR2019000070 2019-08-26.

지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일단 법에 규정된 하루 노동시간이 의미 없는 기업이 많다. 전기와 원자재 부족, 공장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공장 가동률이 크게 낮아져, 직장에 일이 많지 않은 기업이 이에 해당한다.⁶²¹ 가동률이 높은 기업에서 하루 노동시간이 8시간 내외였다는 증언도 다수 있다.⁶²² 북한이탈주민 ○○○은 체신소에서 근무했는데 하루에 7시간 근무하였다고 하며,⁶²³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사업소에 근무할 때 총 8시간 근무했다고 증언하였다.⁶²⁴ 채종사업소에 경리담당자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 ○○○은 오전 8시에 출근하여 오후 3시까지 근무했다고 증언하였다.⁶²⁵

이와 달리, 장시간 노동을 해야 했다는 증언도 있다. 공장에서 군수품 만드는 일을 했던 한 북한이탈주민은 하루 15~16시간의 노동을 해야 했다고 하며,⁶²⁶ 광산에서 근무했던 북한이탈주민 ○○○은 정해진 근무시간이 없었고, 아침 5시에 기상하여 빠르면 저녁 7시, 늦으면 밤 10시까지 일했다고 한다.⁶²⁷ 2019년 탈북한 한 증언자는 증장비 운전직으로 근무할 때 12~13시간 근무했지만,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은 없었다고 증

621_NKHR2016000103 2016-06-28; NKHR2016000135 2016-08-22.

622_NKHR2018000036 2018-05-08; NKHR2019000003 2019-04-08; NKHR2019000070 2019-08-26; NKHR2019000082 2019-09-25.

623_NKHR2018000026 2018-04-09.

624_NKHR2018000043 2018-06-04.

625_NKHR2019000043 2019-07-01.

626_NKHR2018000003 2018-03-12.

627_NKHR2018000005 2018-03-12.

언하였다.⁶²⁸ 2016~2017년경 광산에서 일할 때 새벽 4시부터 23시 30분 정도까지 일했다는 증언도 있다.⁶²⁹ 농장원의 경우도 8시간 노동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농번기 때에는 야간작업이나 아침 식전 작업 등이 이루어졌다는 증언이 다수 수집되었다.⁶³⁰

노동자의 휴식 보장 수준은 노동시간과 마찬가지로 직장에 따라 서로 상이했다. 북한이탈주민 중에는 법적으로 보장된 15일 정도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⁶³¹ 규정은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지는 못했다는 사람도 있었다.⁶³² 10~11월까지 만근한 사람에 한하여 15일 유급휴가가 주어졌다는 증언도 있었다.⁶³³ 먹고 살기 힘든 노동자들이 다른 돈벌이를 위해 출근을 안 했기 때문에 휴가 개념이 없었다는 증언도 있다.⁶³⁴

다. 노동조합 결성·가입·탈퇴의 자유 제약

사회권규약 제8조 제1항은 규약 당사국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하며,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함을 규정

628_NKHR2020000016 2020-07-04.

629_NKHR2020000021 2020-07-06.

630_NKHR2019000008 2019-04-08; NKHR2019000027 2019-06-03; NKHR2019000046 2019-07-01.

631_NKHR2019000019 2019-05-07; NKHR2020000021 2020-07-06; NKHR2020000027 2020-07-06.

632_NKHR2019000023 2019-05-18; NKHR2019000045 2019-07-01; NKHR2019000065 2019-08-17.

633_NKHR2019000070 2019-08-26.

634_NKHR2017000135 2017-12-18.

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에는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권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자유노조가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자단체로 '조선직업총동맹(이하 '직업동맹')'이 있지만, 노동당의 통제하에 있는 직업동맹은 노동보호사업, 교양사업, 생산능률 제고, 노동규율 강화 등 노동통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조합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는 조직이다.⁶³⁵ 또한 북한의 노동자들은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직장 내 노동자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모임이나 활동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이러한 모임은 생각할 수도 없으며,⁶³⁶ 노동조합 결성이나 임금협상은 불가능하다고 증언한다.⁶³⁷ 국가에서 승인한 단체 외에는 노동자들의 조합이 허용되지 않으며,⁶³⁸ 노동조합을 결성할 경우 처벌을 받기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⁶³⁹ 직장생활에 대해 단체로 항의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증언도 있었다.⁶⁴⁰ 따라서 직장 내 노동자 대표와 관리자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협의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며, 관련 권리에 관한 북한 주민들의 인식 수준도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⁶⁴¹

635_ 김강식, 『북한의 노동』 (서울: 집문당, 2003), p. 155.

636_NKHR2019000011 2019-04-10 외 다수의 증언.

637_NKHR2018000005 2018-03-12.

638_NKHR2019000055 2019-07-29.

639_NKHR2019000008 2019-04-08.

640_NKHR2019000068 2019-08-26.

641_NKHR2017000019 2017-05-08 외 다수의 증언.

라. 평가

북한 노동자들은 노동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무리배치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북한 당국은 개인의 능력과 희망에 따른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해 주지 않은 채, 일방적인 직장 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배치된 직장에서의 이탈 역시 자유롭지 않다.

북한은 유리한 노동조건에서 노동할 권리,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권리 또한 보장해 주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은 사실상 무보수로 일을 하고 있어, 공식적인 일자리를 통해서도 안정적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별도의 경제활동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이나 휴가 등의 근로조건 관련 규정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결성·가입·탈퇴의 자유 역시 보장되지 않아 노동자들은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기업소 측에 노동환경 개선이나 처우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

4

교육권

모든 사람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는 교육권은 아동뿐 아니라 모든 연령층의 권리이다. 교육권은 공교육 혹은 정규교육뿐 아니라 사교육 및 비정규교육과 모든 사회구성원이 평생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는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북한이 당사국인 사회권규약 제13조는 교육권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표 III-12 사회권규약 제13조

제1항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교육이 인격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당사국은 나아가서 교육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자유사회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며, 민족 간에 있어서나 모든 인종적, 종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 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2항	이 규약의 당사국은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a) 초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무상 의무교육으로 실시된다. (b) 기술 및 직업 중등교육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형태의 중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다. (c) 고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능력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개방된다.

	(d) 기본교육은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초등교육의 전기간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가능한 한 장려되고 강화된다. (e) 모든 단계에 있어서 학교제도의 발전이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적당한 연구·장학제도가 수립되며, 교직원들의 물질적 처우는 계속적으로 개선된다.
제3항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법정후견인이 그들 자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이외의 학교로서 국가가 정하거나 승인하는 최소한의 교육수준에 부합하는 학교를 선택하는 자유 및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제4항	이 조의 어떠한 부분도 항상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원칙을 준수하고, 그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이 국가가 결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에 일치한다는 요건하에서, 개인과 단체가 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간섭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북한은 헌법(2019) 제73조에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법(2015), 보통교육법(2015), 고등교육법(2015)⁶⁴² 등에 사회주의교육학에 근거한 전반적무료의무교육제에 대한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패는 이러한 규정과는 괴리되어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전반적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령들을 제·개정하고 정책을 수립했다. 2019년 제3차 UPR에서 북한은 2014년에 교육발전을 위한 국가전략(2015~2023)을 마련한 후 교육발전 5개년 전략(2016~2020)을 수립하고, 초중등교육 향상을 위한 실천계획(2017~2020) 아래 교육 환경과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고했다.⁶⁴³ 북한이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을 늘

642. 2015년 12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48호로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법」(이하 ‘교육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통교육법」(이하 ‘보통교육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이하 ‘고등교육법’).

643. UN Doc. A/HRC/WG.6/33/PRK/1 (2019), para. 44.

리고 교육의 내용과 형식을 개편하는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은 교육 여건이 여전히 열악하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북한의 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가용성(avail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수용성(acceptability), 적합성(adaptability)을 기준으로 실태를 살펴본다.

가. 교육 여건

교육에 있어 가용성이란 충분한 질적 수준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교육에 있어서 가용성은 교육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 구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교육법 제7조에서 “국가는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리고 교육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 교육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한다”고 규정하여, 교육에 필요한 국가적 지원을 법제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교육법 제12조에서 “중등일반교육⁶⁴⁴을 받을 의무와 무료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무상의무교육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2019년 UPR에서 북한은 교육을 가장 중요한 국가 문제로 여겨 GDP의 8.6%까지 교육부문 투자를 증대했다고 보고했다.⁶⁴⁵ 그리고 2017~2018년에는 멀티미디어 기기를 교실에

644_ 여기에는 유치원 1년,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 과정이 포함된다.

645_UN Doc. A/HRC/WG.6/33/PRK/1 (2019), para. 42.

도입한 다기능교실, 각종 실험실과 야외학습장 등 편의시설을 갖춘 ‘본보기학교’를 세워 이를 확대하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 간 교육수준의 차이를 없애는 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고 보고했다.⁶⁴⁶

북한은 법으로 교육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며 공민에 대해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당국 또한 이의 구체적 실천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교육 여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신축 교사는 편의시설과 환경이 개선되어 깨끗했다는 증언이 있었지만,⁶⁴⁷ 대부분 교육 편의시설과 교육 기자재 구비는 지역 간, 학교 간 차이가 큰 것으로 파악된다. 게다가 학생들이 교실현대화를 위한 시설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수목적학교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학교에 양호실·체육실·도서실이 없었으며,⁶⁴⁸ 수도시설이 없어 물을 마실 수 없었다.⁶⁴⁹ 컴퓨터 교육이 대폭 확대되었지만 컴퓨터실이 없고, 컴퓨터실이 있더라도 컴퓨터가 없거나 오래된 기종이어서 사용을 못하고, 종이 키보드로 연습하거나 개인이 노트북을 지참한다고 한다.⁶⁵⁰

646_ *Ibid.*, paras. 45-46.

647_ NKHR2020000002 2020-05-15.

648_ NKHR2020000003 2020-05-15; NKHR2020000031 2020-08-03; NKHR2020000038 2020-09-26.

649_ NKHR2020000012 2020-06-15.

650_ NKHR2020000003 2020-05-15; NKHR2020000027 2020-07-06; NKHR2020000029 2020-07-06 외 다수의 증언.

표 III-13 교육 시설과 환경 실태

증언내용	증언번호
2020년 학교에 다니던 자녀에게 노트북을 사줘서 컴퓨터 시간에 사용했음. 요즘은 대부분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며, 한 반에 50명 정도면 절반은 노트북을 가지고 다님. 화장실은 야외에 있음. 학교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음. 양호실, 체육실, 도서관이 없음.	NKHR2020000038 2020-09-26
2019년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다녔던 중학교에는 화장실, 도서실, 컴퓨터실이 있었음. 화장실은 운동장에 별도로 있는데 시설이 별로였고, 도서관은 책을 빌릴 때 돈을 내야 함. 컴퓨터는 수업시간에만 사용했는데 문서작업은 안 배우고 타자연습만 했고, 키보드도 종이로 연습함. 학급당 40명 정도인데 약 10명 정도만 진짜 키보드로 연습했음.	NKHR2020000029 2020-07-06
2019년 양강도 혜산시 친구와 사촌 집에 노트북이나 노트북이 있었음. 집에 돈이 많거나 엄마들이 교육에 관심이 많으면 집에 컴퓨터가 있음. 도시바 것이 많고 리노버, 애플도 있음. 2014년에 중학교 졸업할 때 컴퓨터실 만든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학교에서 컴퓨터 한다는 얘기는 들은 적 없음.	NKHR2020000001 2020-05-15
2017년 평양시 평천구역에서 자녀들이 학교를 다녔는데, 컴퓨터 교실에 컴퓨터가 있어 한 사람당 1대씩 사용함.	NKHR2020000047 2020-11-28
(양강도) 김정애가 교육현대화를 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는 매 교실마다 티비와 컴퓨터, 배터리 등을 놔야 한다는 소리임. 비용을 학생들이 다 부담해야 하는데, 총액을 학생 수로 나눠서 배정했음. 컴퓨터실은 있지만 컴퓨터가 하나도 없었음. 도서관도 책이 기껏해야 200여 권 정도 있었음.	NKHR2020000027 2020-07-06
일반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집 근처로 학교를 다니지만, 외국어학원은 좀 멀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간다고 증언함. 일반학교는 건물이 하나이지만 외국어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 시설이 좋은 편임. 체육실, 도서관 같이 특수교실도 있고, 교육건물과 체육건물도 따로 있음.	NKHR2020000013 2020-06-15
양강도 혜산시 신장발전소를 세우면서 그 지역이 침수(수몰)되었는데, 그 지역에서 이사 온 사람들이 불어나면서 병합학교를 지음. 최근에 지은 학교나 병원은 설비가 멋있지는 않아도 깨끗하기는 함. 다른 군 농촌학교는 아담하게 꾸며놨는데, 혜산시 00동 00학교는 시설도 선생도 다 안 좋음.	NKHR2020000002 2020-05-15

2019년 UPR 실무그룹 보고서에서 국제사면위원회는 모든 아동에게 진정한 의미의 초중등 무상의무교육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⁶⁵¹ 이에 북한은 12년 무상의무교육제를 도입했고,

651_Summary of Stakeholders' Submissions o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port of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 Doc. A/HRC/WG.6/33/PRK/3 (2019), para. 82.

교과서·교육자료·교육장비·교통수단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⁶⁵²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학교에 내야 하는 각종 비용은 정규교육을 방해하는 장벽이 되고 있다.

또한 교원들이 자신들의 생계 방안을 별도로 강구해야 하는 상황은 교육환경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교원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실질적으로 교원의 처우는 열악한 상황이다. 북한 주민들은 교원의 생계가 불안정하기에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은 곧 교원의 생계를 학부모가 책임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며, 학생이 내는 돈으로 교원이 생활한다는 인식이 있다. 생계 불안 때문에 교원이 개인 교습과 부업을 하고, 교원 희망자가 없다는 증언은 열악한 교원의 처우를 보여준다.

표 III-14 교원 처우 실태

증언내용	증언번호
2019년 중학교 교원이었던 아버지는 배급이 없어서 자체 부업으로 농사를 지어 거의 다 자체소비하고 남은 것을 팔았음. 시내에 있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내는 돈을 교원이 가져가기도 한다고 들었지만 농촌 학교 교원은 그런 것이 없었음.	NKHR2020000035 2020-09-05
유치원 선생님은 돌아가며 쉬면서 부업해서 먹고 살. 딱히 배급은 없는 것 같고, 학부모가 생계를 책임져주는 것도 아님.	NKHR2020000040 2020-10-31
교원들은 부모들에게 걷은 돈 중 일부를 자신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노임을 해결함.	NKHR2020000038 2020-09-26
교사 월급은 북한돈 2,000원 정도인데, 거의 다 학생들에게 돈을 받음.	NKHR2020000029 2020-07-06
교원들도 오전엔 수업하고 오후에 초콜모자를 따서 겨우 살아가는 형편임.	NKHR2020000027 2020-07-06

652_ UN Doc. A/HRC/42/10 (2019), para. 78.

증언내용	증언번호
교사들의 생활이 힘들. 개인적으로 과외를 하는 교사들은 학교에 나가지 않음. 교원을 희망하는 사람이 없음.	NKHR2020000017 2020-07-04
교원들은 배급도 따로 없고 학부모가 주는 돈으로 충당해야 함.	NKHR2020000012 2020-06-15
교원은 농장원들보다 배급이 좀 있지만 보수가 별로 없는 편임. 등산할 때 선생님한테 변또(도시락)를 싸감. 자식을 선생님이 교육하니 부모된 사람으로서 하는 것이고, 변또를 안 싸도 선생님이 곤란함. 주기적으로 주는 돈은 사람에 따라 다름. 남자 선생님의 경우에는 담배, 여자 선생님은 비누라도 드림.	NKHR2020000002 2020-05-15

북한은 12년제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면서 수업과 실습, 견학, 답사, 학용품 등 학업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국가가 보장한다고 교육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은 수업료는 내지 않지만, 각종 명목으로 학교에 내는 돈이 많다고 증언하였다. 여름에는 교실꾸리기 비용, 겨울에는 화목 비용을 내야 하며, 고철과 파지, 토끼가죽 등도 내야 한다. 물품이 없으면 돈을 내야 하며,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못해 아무 것도 내지 못하면 교사의 질책을 받거나 벌로 청소한다는 증언도 있었다.⁶⁵³ 한편, 교과서는 무상으로 제공되지만 대개 현 교과서이며, 새 교과서는 불충분하게 공급되어서 별도로 구입해야 했다는 증언도 있다.⁶⁵⁴

653. NKHR2020000003 2020-05-15; NKHR2020000027 2020-07-06; NKHR2020000029 2020-07-06; NKHR2020000041 2020-10-31; NKHR2020000047 2020-11-28 외 다수의 증언.

654. NKHR2020000012 2020-06-15; NKHR2020000022 2020-07-06; NKHR2020000029 2020-07-06.

표 III-15 무상교육 실태

증언내용	증언번호
2019년에 자녀가 고등중학교에 다녔음. 수업료는 없지만 학교꾸리기, 교실꾸리기 등의 명목으로 하루에 3~4위안은 늘 내야하고, 한 달에 100위안 정도가 들어감. 삼지연 건설 지원, 도로공사 지원을 위해서 얼마씩을 내야 한다고 학교에 과제가 떨어지면 그것을 학급별, 학생별로 나누어서 할당 함. 너무 경제사정이 어려워 한 푼도 없는 학생들을 빼고는 한 사람당 3~4위안씩을 내야 함. 경제 부담으로 소학교부터 안 들어가는 아이들도 많음.	NKHR2020000038 2020-09-26
2019년에 TV, 컴퓨터, 투시기, 배터리 등 교육현대화 비용으로 돈을 냈음. 학교에서 거두는 돈을 내지 못해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6학년 아이들의 경우 20~30% 정도만 나옴. 가정곤란과 선생님이 돈을 내지 못하는 것을 질책해서 안 나옴. 고급중학교는 출석률이 더 저조함.	NKHR2020000027 2020-07-06
2019년 친구 동생이 중학교에 다녔는데 돈을 많이 내서 힘들어했음. 매일 돈을 내는데, 어떤 때는 정해진 수업료를 내는 것이 낫다고 함.	NKHR2020000001 2020-05-15
2018년에 학교에 다닌 자녀의 담임에게 화목대 15~20원(위안) 내고, 학교 꾸리기로 10원씩 냈음. 봄철 위생사업비 등 학교에서 정해주는 돈도 5~10원 정도 냄.	NKHR2020000002 2020-05-15
2015년에 토끼가죽, 두부콩, 겨울 화목, 돌격대 지원비, 교실꾸리기, 기와씩우기 등에 돈을 냈음. 기와는 학부모가 직접 싹얶음. 교과서는 무상으로 나왔는데, 새 교과서는 북한돈 50원 정도 돈을 보탬.	NKHR2020000031 2020-08-03
수업료는 없지만 매일 돈이 나갔음. 교과서는 모두가 받을 수 있게 충분히 주지 않고, 불공평하게 배급해 줌. 학용품은 자신이 준비해야 함. 다니던 학교가 붉은기운동으로 한 단계를 더 올라가기 위해 학교 현대화를 했음. 이때 학생들은 1인당 300위안씩을 내야 했음. 열성자는 더 내야 하고, 힘들어도 조금이라도 내야 함.	NKHR2020000029 2020-07-06
수업료는 없지만 ~지원, ~과제 등으로 잡다하게 내는 것이 많았음. 집이 가난한 학생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음. 의무교육이므로 학교에 다니지만, 위축이 되어서 다님.	NKHR2020000023 2020-07-06
꼬마계획, 파지값, 산나물 채집, 학교 꾸리기(책상, 의자, 칠판 도색 등) 등으로 소소하게 내는 돈이 많음. 과제를 수행하지 못할 때도 돈을 내야 함. 학교에서 새 교과서를 나눠줄 때 돈을 내야 함. 물려받는 것은 무상임.	NKHR2020000022 2020-07-06
교실꾸리기, 비품 구매, 밀대 등 청소도구도 사야하고, 학용품도 장마당에서 사야 함. 교과서도 충분하지 못하면 직접 사야 함. 현실적으로 돈이 많이 들고 있음.	NKHR2020000012 2020-06-15

나. 교육기회의 차별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에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접근 가능함을 지를 의미하는 접근성은 비차별, 물리적 접근성, 경제적 접근성

으로 구분된다.⁶⁵⁵ 비차별은 교육기회에 대한 접근이 법적, 실질적으로 사회 내 특정 취약집단에게도 차별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비차별 관점에서 볼 때, 북한 주민의 교육 접근성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특히, 북한은 정치범을 포함한 잠재적 저항세력으로 간주되는 집단의 자녀들에게 정상적인 교육제도 및 프로그램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정치범수용소에서는 북한제도상 의무교육인 12년제 무상의무교육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초등교육과정은 개설되어 있으나 일반사회와 다른 학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 개선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2017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북한에 “모든 교육기관에서 성평등을 증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⁶⁵⁶ 2017년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북한에게 과학기술 분야 등 여학생들의 입학을 차단해 온 전통적 인식과 구조적 제약들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⁶⁵⁷ 북한은 2019년 제3차 UPR에서 주요 대학이 제공하는 원격교육을 받는 여성의 수가 증가했다고 보고했지만,⁶⁵⁸ 성

655_UN CESCR, General Comment, No. 13 (1999), para. 6. (b) 접근성.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은 당사국 관할권 내의 모든 이에게 차별 없이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접근성은 세 가지 차별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부분적으로 겹치는 내용이 있다. 비차별 - 교육은 모든 이에게, 특히 가장 취약한 집단에게, 어떠한 금지된 근거에 의한 차별 없이 법률상 사실상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물리적 접근성 - 교육은 어떤 합리적으로 편리한 지리적 장소로의 등교(예, 동네 학교)에 의해, 혹은 현대적 기술(예, “원격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통하여 안전한 물리적 거리 내에 있어야 한다. 경제적 접근성 - 교육은 누구나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 접근성이란 측면에 대해서 제13조 제2항은 초등, 중등 및 고등교육에 대해 서로 다른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다. 초등교육은 “모든 이에게 무상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656_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ifth periodic report of the DPR Korea,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 Doc. CRC/C/PRK/CO/5 (2017), para. 46.

657_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second to fourth periodic reports of the DPR Korea,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UN Doc. CEDAW/C/PRK/CO/2-4 (2017), para. 34.

658_UN Doc. A/HRC/WG.6/33/PRK/1 (2019), para. 67.

별 차이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리적 접근성과 관련, 북한은 교육법과 보통교육법에서 외딴 지역의 아동과 장애 아동의 의무교육을 보장하고 있다. 2020년에는 원격교육법을 신설해 지리적 교육 장벽을 해소하는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교육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다 교육 기자재 구비의 차이가 있어 도서, 산간에 거주하는 아동의 교육 접근성을 보장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생활고 때문에 장기결석하거나 경제적 부담 때문에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다수의 증언은 지리적 장벽보다 경제적 접근성이 교육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II-16 취약계층 아동들의 교육 접근성

증언내용	증언번호
2016년에 고급중학교 다닐 때 어머니 집안일과 아버지 발일을 돕는 일이 많아 학교에 안 갔으며, 학교에서 내라는 것이 많은 것도 이유였음. 담임 교사가 집 사정을 다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찾아왔지만 나중엔 아무 말도 안 했음.	NKHR2020000041 2020-10-31
학교에 내는 비용이 부담되어 아예 학교를 나가지 않는 학생들이 있음. 한 반에 50명 정도인데 10명 정도는 안 나왔음. 결석 학생이 있으면 학생도 보내보고 장기결석하면 선생님이 찾아감. 돈 없어서 못 나간다 하면, 경제 부담을 면제해줄 테니 나오라고 설득하기도 함. 교원은 학생들 출석률이 떨어지면 징계를 받기 때문에 가정방문을 하지만, 빈곤계층을 위한 혜택은 전혀 없음.	NKHR2020000038 2020-09-26
학교에서 잡다하게 요구하는 돈을 감당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결석하기도 하는데, 한 반에 1~2명 정도였음.	NKHR2020000023 2020-07-06
생활고 때문에 장기결석하는 학생들이 많지만, 그래도 이전보다 주민들의 생활이 좋아지면서 이탈 학생들이 줄고 있음.	NKHR2020000017 2020-07-04
돈을 못 내서 학교에 안 가도 내버려 둬.	NKHR2020000003 2020-05-15
정말 가난한 애들은 이름만 (학적부에) 올리고 (학교에) 안 감. 집에서 그런 아이들은 농사를 짓고, 금 캐러 금장에 감.	NKHR2020000002 2020-05-15

북한의 전반적 도로상황이나 대중교통 상황, 원격교육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리적으로 고립된 학생들의 실제 교육 접근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게다가 이들 다수가 절대빈곤 계층이다. 지리적 격리로 인한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경제적 접근성의 차별과 중첩되어 왔다.

경제적 취약계층의 교육 접근성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비용을 제대로 내지 못해 교사의 질책과 벌을 받고, 상당한 부담을 느껴 장기결석하다가 결국에는 학교를 그만둔다는 증언이 다수 있었다.⁶⁵⁹ 빈곤계층의 아동은 입학하지 않고 농사를 짓거나 집안 일을 돕는 경우가 많으며,⁶⁶⁰ 일부 교사가 경제 부담을 면제해 출석을 장려하지만⁶⁶¹ 일시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형편이다. 국가나 학교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⁶⁶²

다. 사회주의교육 강조

교육과정과 교수방법을 포함한 교육의 형식과 본질이 피교육자이자 교육권의 직접 수혜자인 학생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수용성은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659_ NKHR2020000001 2020-05-15; NKHR2020000027 2020-07-06; NKHR2020000029 2020-07-06 외 다수의 증언.

660_ NKHR2020000031 2020-08-03; NKHR2020000038 2020-09-26; NKHR2020000041 2020-10-31 외 다수의 증언.

661_ NKHR2020000023 2020-07-06; NKHR2020000038 2020-09-26.

662_ NKHR2020000012 2020-06-15; NKHR2020000013 2020-06-15; NKHR2020000017 2020-07-04 외 다수의 증언.

아동권리협약은 제29조에서 아동 전인교육의 목표를 제시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2016년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제5차 보고서에서 아동권리협약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교육의 목표에 부합하게 교육프로그램을 개편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태는 이와 거리가 있어 보인다. 2019년 유엔 인권이사회 제3차 UPR 실무그룹 보고서는 정치이념과 선전 이주로 진행되는 수업을 언급하며, 교육과정의 탈정치화를 즉각 이행할 것을 북한에 권고하였다.⁶⁶³ 북한은 교육법 제3조에서 “건전한 사상의식과 깊은 과학기술지식, 튼튼한 체력을 가진 믿음직한 인재를 키우는 것은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법 제29조 교육의 내용에서는 정치사상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보편적 차원의 전인교육으로 전환되기는 요원해 보인다.⁶⁶⁴ 북한이탈주민 ○○○은 2018년에 유치원을 다니던 자녀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동화처럼 배웠다고 증언하였다.⁶⁶⁵ <표Ⅲ-17>은 현행 북한 초중등학교 교과목을 제시해 놓은 것인데, 전 과정을 거쳐 김일성·김정일·김정은 가계에 대한 과목이 편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도한 정치사상 교육, 정치행사 및 체제선전 동원, 의무적 군사훈련은 아동교육의 목표 실현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663_UN Doc. A/HRC/WG.6/33/PRK/3 (2019), paras. 85, 87.

664. 교육기관은 학생에게 건전한 사상과 도덕, 깊은 지식을 주고 그들이 튼튼한 체력과 풍만한 정서를 지닐 수 있게 정치사상교육을 앞세우면서 과학기술교육을 깊이 있게 하고 체육, 예능교육을 결합 시켜야 한다.

665_NKHR2020000010 2020-10-31.

표 III-17 북한 초·중등학교 교과목

학교급	교과목
소학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어린시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어린시절,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어머니 어린시절,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어린시절, 사회주의도덕, 국어, 영어, 수학, 자연, 정보기술, 체육, 음악무용, 도화공작
초급중학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활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혁명활동,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니 혁명활동,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혁명활동, 사회주의도덕, 조선력사, 조선지리, 국어, 영어, 수학, 자연과학, 정보기술, 기초기술, 체육, 음악무용, 미술
고급중학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혁명력사,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니 혁명력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혁명활동, 현행 당정책, 사회주의도덕과 법, 력사, 지리, 심리와 론리, 국어문학, 한문, 영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정보기술, 기초기술, 공업(농업)기초, 체육, 예술, 군사활동초보

출처: 박영자 외,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사회 8대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18), p. 165.

한편, 아동권리협약 제32조에 따르면 아동은 자신의 건강, 교육, 발달을 위협하는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북한의 학생들은 교육의 일환이란 명목 하에 농촌작업, 건설작업 등 각종 작업에 수시로 동원되고 있다. 학생들을 동원하여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는 것은 교육적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며,⁶⁶⁶ 이와 관련하여 2017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북한 당국이 아동들의 학습, 휴식 및 여가권, 신체적·정신적 안녕을 저해하는 노동을 강요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⁶⁶⁷

라. 학습자 선택권 제한

교육에 있어서의 적합성이란 피교육자의 관점에서 적절한 교육환경이 보장되고, 각각의 발달과정에 부합하는 교육내용을

666_ 교육에 있어서의 수용성 결여 문제는 ‘IV. 취약계층, 2. 아동’ 부분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667_UN Doc. CRC/C/PRK/CO/5 (2017), para. 46.

제공받는 정도를 의미한다. 또한, 다양하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이 교육에 적절한 수준으로 반영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북한의 학생들이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적합한 교육을 받고 있는지는 가정환경, 사회적 지위, 경제적 능력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개인 간 차이가 있다.

북한에서도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교육기관 이외에 직장, 사회단체, 각종 사회시설들이 교육을 주관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모든 형태의 교육에서 기본적인 교육제도, 방향, 내용, 방법을 국가, 특히 당이 결정한다. 학교교육에서부터 사회교육과 성인교육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교육과정안과 교재를 편찬하고 있다. 교육과정 운영도 중앙집권적이며 획일적이다. 그 결과 단위 학교와 교사들의 자율성과 학습자의 학습선택권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2013년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고급중학교 단계에서 적은 시수이지만 지역별 선택교과가 도입되었지만,⁶⁶⁸ 학생들에게 학습선택권이 주어진 것은 아니다.

특별한 재능을 지닌 학생을 교육하는 특수교육기관 이외에는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한다. 또한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대학교 등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가 설치, 운영하며 사립교육기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이 학교나 교육과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주도로 인한 경직성은 북한의 교육과정 및 체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사고의 변화와 시대적 혁신을 반영할 수 없게 한다.

668. 김지수 외, “김정은 시대 북한 유·초·중등 교육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9, p. 198.

마. 평가

북한은 2019년 UPR에서 교육의 내용, 형태, 방법을 비롯해 교육 여건과 환경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고하고,⁶⁶⁹ 무상교육의 실질적인 실현과 전반적인 교육권 향상을 위한 국가들의 권고를 수용한 바 있다.⁶⁷⁰ 그러나 북한의 교육현황은 가용성, 접근성, 수용성, 적합성의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각각의 기준에서 일부 개선을 확인할 수 있으나, 대부분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북한 당국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사상교육은 학생들의 학습 자율권 및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보다 보편적이고 창의적인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북한이 무상교육제도를 표방하고 있지만 이는 유명무실해진 지 오래며, 기본적인 학교운영 및 교사들의 보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이 이전됨에 따라 학생들의 중도탈락과 학업중단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다. 또한 학생들의 교육이 농업, 건설, 정치행사 등 다양한 차원의 노력동원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 현실도 지속되고 있다. 교육권 개선을 위한 북한 당국의 향후 조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669_ UN Doc. A/HRC/WG.6/33/PRK/1 (2019), paras. 42~44.

670_ UN Doc. A/HRC/42/10 (2019), paras. 126.150~126.153; UN Doc. A/HRC/42/10/Add.1 (2019), para. 9(a).

5

사회보장권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2조). 사회권규약도 당사국들이 모든 사람에게 사회보장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조). 사회보장권은 사회권규약의 권리를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⁶⁷¹ 또 사회보장권은 빈곤을 감축 및 완화하고, 사회적 배제를 방지하며 사회적 통합을 증진하는 데에 기여한다.⁶⁷²

북한은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령을 마련해 두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제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큰 만큼, 단순히 제도가 존재한다고 해서 사회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며, 제도들이 실제 기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이 요망된다. 이하에서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사회보장권을 적절히 보장해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령, 가족 및 아동, 질병 및 장애, 산업재해, 이렇게 4개 범주로 나누어 살펴본다.

671_ UN CESCR, General Comment, No. 19 (2007), para. 1.

672_ *Ibid.*, para. 3.

표 III-18 사회보장 관련 법규

사회보장의 범주	관련 법규	
	기본법	특별법
건강관리		공중위생법, 식료품위생법, 전염병예방법
질병		인민보건법, 의료법, 의약품관리법
고령		연로자보호법
실업		
산업재해	사회보장법	사회보험법, 사회주의노동법, 노동보호법
가족 및 아동에 대한 지원		어린이보육교양법, 아동권리보장법,
모성		여성권리보장법
장애		장애자보호법
유족 및 고아		사회보험법

가. 생활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의 연로연금

북한에서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 이전에는 많지는 않아도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연로연금이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⁶⁷³ 그러나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에는 법 규정과 달리 실제로는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⁶⁷⁴ 지급되더라도 연금액이 노후보장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어서 고령자의 생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⁶⁷⁵ 그러다보니 아예 수령하려 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⁶⁷⁶ 또 여성은 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근속기간 25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마저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⁶⁷⁷

673_NKHR2013000065 2013-04-02.

674_NKHR2019000018 2019-05-07; NKHR2019000081 2019-09-25.

675_NKHR2019000002 2019-04-08; NKHR2020000010 2020-05-16, NKHR2020000011 2020-06-15; NKHR2020000044 2020-10-31 외 다수의 증언.

676_NKHR2020000012 2020-06-15.

677_NKHR2020000024 2020-07-06; NKHR2020000044 2020-10-31.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살펴보면, 2017년 탈북한 30대 중반 여성은 모친이 연로보장금으로 한 달에 600원을 받았다고 하며,⁶⁷⁸ 역시 2017년 탈북한 30대 후반 여성은 아버지가 매달 1,600원씩 연로연금을 받았는데, 1월분이 4월에 들어오는 식으로 밀려서 들어왔다고 한다.⁶⁷⁹ 또한 2019년 탈북한 50대 중반 여성은 한 달에 800원~1,500원 정도 나온다고 증언했으며,⁶⁸⁰ 2019년 탈북한 20대 중반 남성은 자신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자신이 탈북할 때까지 연로보장금을 매달 870원씩 지급 받았는데, 그마저도 인민반장이 대신 수령하여 인민반 과제를 제하고 주었다고 증언하였다.⁶⁸¹

표 III-19 부족한 연로연금 관련 증언

증언내용	증언번호
함경북도 온성군에 거주하다 2016년 탈북한 40대 후반 여성은 선생님들도 연로연금으로 한 달에 최고 1,800원을 받으며, 적게 받는 사람은 700원~1,000원을 받는다고 함.	NKHR2017000006 2017-04-10
양강도 삼지연시에 거주하다 2016년 탈북한 50대 초반 여성은 연로연금이 매달 지급된다고 함. 그러나 연금액이 1,000원~2,000원 정도여서 그것으로는 쌀 1kg도 살 수 없다고 함.	NKHR2017000012 2017-04-10
2017년 탈북한 40대 중반 남성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한 달에 많아야 6,000원 정도 연금이 지급되는데, 하루 이를 생활하는 비용밖에 안 된다고 함.	NKHR2018000002 2018-03-12
2017년 탈북한 50대 중반 남성은 7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옛날에 국정가격으로 계산된 금액이어서 현실의 시장가격과 맞지 않는다고 함.	NKHR2018000006 2018-03-12

678_ NKHR2017000055 2017-07-31.

679_ NKHR2018000040 2018-05-08.

680_ NKHR2019000035 2019-06-03.

681_ NKHR2020000017 2020-07-04.

증언내용	증언번호
2018년 탈북한 40대 중반 여성은 한 달에 700원씩 지급받았는데 이 돈으로는 두부 한 모도 살 수 없었다고 함.	NKHR2019000016 2019-05-07
2019년 탈북한 50대 중반 남성은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 한 달에 한번 700원을 수령하였다고 함.	NKHR2019000025 2019-05-18
2019년 탈북한 50대 중반 여성은 연로연금으로 800원~1,500원 정도 지급된다고 함.	NKHR2019000035 2019-06-03
2019년 탈북한 60대 초반 여성은 남편에게 850원 정도의 연로보장금이 나왔는데, 몇 달 동안 수령하지 않다가 4,000~ 5,000원 정도를 한 꺼번에 받아 술 한 병 사먹었다고 함.	NKHR2020000025 2020-07-06

일부 증언에 따르면 공로 수준에 따라 연금 지급에 다소간의 차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금액이 너무 낮은 수준인 관계로 그러한 차별이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례로, 함경북도 온성군에 거주하다 2017년 탈북한 30대 초반 여성은 시어머니가 훈장을 받았고, 공로자라고도 불려서 다른 사람보다 연로연금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한 달 연금액은 2,700원에 불과했다.⁶⁸² 2019년 탈북한 50대 중반 여성은 기사급수(국가훈장 1급)를 받아 2015년 까지 한 달에 4,000원을 받아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받은 편에 속했지만, 그래도 연로연금은 생계유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고 한다.⁶⁸³

한편, 고령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대신 땅을 분배하여 관리하게 하고 그 소출을 갖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는 증언도 있다. 함경북도 회령시에 거주하다 2017년 탈북한 40대 초반 남성은 어머니가 연금을 받지 못했으나, 농장에서 연로보장자들에게

682_NKHR2017000092 2017-09-25.

683_NKHR2019000013 2019-05-07.

토지 100~150평을 주고 소출을 모두 갖도록 했다고 증언하였으며,⁶⁸⁴ 함경북도 경원군에 거주하다 2017년 탈북한 남성 역시 농촌에서 연로보장을 받는 사람들에게 토지를 주어 소출을 갖도록 한다고 증언하였다.⁶⁸⁵ 2019년 탈북한 30대 중반 여성은 연로연금 외에도 1인당 200평씩의 토지분배가 있었다면서, 자신의 부모님은 평지에 있는 괜찮은 땅 400평을 받아 두부콩을 재배했다고 증언하였다.⁶⁸⁶ 하지만 이러한 경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증언도 있는 것으로 보아,⁶⁸⁷ 이것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며, 국가 차원보다는 일부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조치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연로연금이 노후보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다 보니, 고령층은 자녀에게 의존하거나 스스로 일을 해서 소득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어려운 사람들은 양로원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8년 탈북한 40대 후반 여성은 시어머니가 연금으로는 생활할 수 없어 장마당에서 약장사를 했으며, 식량은 아들이 보내주었다고 한다.⁶⁸⁸ 2017년 탈북한 여성은 연로연금이 형식적인 수준에서 지급되고 있다면서, 자식이 간부 등으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고령층은 폐기밭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죽는 순간까지 움직여야 하며, 그렇게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양로원에 들어간다고 증언하였다.⁶⁸⁹ 2019년 탈북한 60대

684_ NKHR2017000004 2017-04-10.

685_ NKHR2017000016 2017-05-08.

686_ NKHR2020000040 2020-10-31.

687_ NKHR2020000016 2020-07-04; NKHR2020000017 2020-07-04.

688_ NKHR2018000055 2018-07-02.

689_ NKHR2017000043 2017-07-03.

초반 여성도 남편에게 지급되는 연로보장 금액이 적어 중국에 있는 자식들이 보내오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했다고 증언하였다.⁶⁹⁰ 2019년 탈북한 20대 여성은 연로보장으로 너무 적은 돈이 지급되므로, 보통은 가족들이 부양을 하며, 양로원에 가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양로원에 대해서는 갈 곳 없는 할머니들이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증언하였다.⁶⁹¹

나. 긴급복지 지원 시스템 부재

북한에는 주요 소득자의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생계가 곤란해진 가정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긴급복지 지원 시스템이 적절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이러한 상황이 초래되었을 경우 주민들은 경제적 위기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5년 탈북한 30대 중반 여성은 가정 생계가 곤란해졌을 때 부모나 형제가 있으면 돈을 빌리기도 하지만, 국가로부터는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증언하였다.⁶⁹² 2017년 탈북한 40대 중반 여성 역시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질병에 걸리거나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도움을 받을 곳이 없었다고 한다.⁶⁹³ 2018년 탈북한 30대 후반 여성 또한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가정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없다고 증언하였다.⁶⁹⁴

690_NKHR2020000025 2020-07-06.

691_NKHR2020000023 2020-07-06.

692_NKHR2017000060 2017-07-31.

693_NKHR2017000063 2017-07-31.

694_NKHR2018000093 2018-08-27.

2018년 탈북한 20대 초반 여성도 자신의 가정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졌을 때 국가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⁶⁹⁵ 청진에 거주하다 2019년 탈북한 10대 후반 여성 역시 가정경제에 위기가 와도 국가로부터의 도움은 없다고 말하였다.⁶⁹⁶

일부 지원이 있다는 증언도 있으나, 그 경우에도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지원 규모 역시 불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탈북한 50대 후반 여성은 가정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인민반에서 반사회에 호소해서 이웃들의 쌀을 모아 한두 번 도와주는 경우는 있으나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것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⁶⁹⁷ 또 2015년 탈북한 30대 초반 여성은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가정에 국가가 식량을 주거나 식당표를 줘서 돈을 안내고 국수를 먹을 수 있게 하며, 인민반에서 조사를 해가서 인민반장이 보고하면 읍사무소에서 가끔씩 관리를 한다고 증언하였다.⁶⁹⁸

다. 질병·장애로 인한 생계곤란자에 대한 지원 시스템 미비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현금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장기간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장애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⁶⁹⁹

695_ NKHR2019000030 2019-06-03.

696_ NKHR2020000029 2020-07-06.

697_ NKHR2017000052 2017-07-03.

698_ NKHR2018000094 2018-08-27.

699_ CESCR, General Comment, No. 19 (2007), para. 14.

하지만 북한에서는 질병·장애로 인해 장기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주민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 등록을 하더라도 별도의 지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6년 탈북한 30대 중반 남성은 형이 사고로 실명하여 노동력을 상실하였으나, 국가에서 생계유지와 관련해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⁷⁰⁰ 2018년 탈북한 30대 초반 여성의 시동생은 병으로 시력을 상실해서 사회보장 수속을 밟았는데, 이는 장애인 수속을 안 밟으면 무직으로 걸리기 때문이었다. 그 후 나라에서 나오는 지원금 같은 것은 한 푼도 없었고, 본인 부부가 먹여 살렸다고 한다.⁷⁰¹ 2019년 탈북한 20대 초반 여성의 증언도 이와 유사하다. 증언자의 아버지는 소아마비로 어렸을 때부터 다리를 절었는데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사회보장 등록을 하였다. 그러나 근무하는 동안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수를 더 주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⁷⁰²

이와 달리, 일부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증언도 있다. 2017년 탈북한 30대 여성은 사회보장을 받은 환자들은 병원 확인만 되면 농장 일에 불러내지 않으면서도 식량을 일반 농장원의 절반 정도 분배해 주었다고 한다.⁷⁰³ 하지만 이것이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전반적으로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주민에 대한 생계지원은 부재하거나 형

700_NKHR2017000018 2017-04-10.

701_NKHR2018000101 2018-10-01.

702_NKHR2019000045 2019-07-01.

703_NKHR2017000092 2017-09-25.

식적인 지원을 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영예군인에 대한 생계지원에 관해서는 ‘IV. 취약계층, 3. 장애인’에서 살펴본다.

라. 산재노동자에 대한 보호 시스템 취약

산업재해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자에 대한 보상 또한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이루어지더라도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형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016년 탈북한 20대 후반 남성은 농장에서 일하다가 농기계에 손이 끼어 다치거나 기계에 발이 잘리는 사고가 있었는데 노동능력상실연금 지급 등을 통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⁷⁰⁴ 2019년 탈북한 20대 중반 여성도 공장에서 손가락이 잘리는 등의 부상을 입어도 국가에서 나오는 돈은 없으며, 나온다고 해도 북한돈 3,000~5,000원 정도에 불과해 굶이 타려 노력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⁷⁰⁵

또 2017년 탈북한 20대 초반 여성은 철도건설대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2014~2015년경 일하다가 다리를 크게 다쳐 일을 못하게 되었으나, 생활비나 병원비 지원이 일절 없었다고 한다.⁷⁰⁶ 2019년 탈북한 20대 후반 여성은 공장에서는 다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국가에서 배상하는 것은 없으며, 공장과 작업반에

704_NKHR2019000046 2019-07-01.

705_NKHR2020000021 2020-07-06.

706_NKHR2018000038 2018-05-08.

서 자그마한 보상을 해주는 정도라고 증언하였다.⁷⁰⁷

산업재해에 따른 치료비 역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광산의 경우 조금 지원을 해준다거나,⁷⁰⁸ 노동 중 부주의로 다친 경우에도 국가에서 지불한다는 증언도 있긴 하지만,⁷⁰⁹ 북한이탈주민들은 대체로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2018년에 탈북한 20대 중반 여성은 2018년 6월 아파트 건설장에서 돌이 사람 머리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부상자는 병원에 후송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병원비는 본인이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다.⁷¹⁰ 또 2018년 탈북한 20대 초반 여성은 2017년 병원에 근무할 당시, 아파트 건설현장 5층에서 떨어져 다친 5명의 노동자가 후송되어 이 중 2명은 사망하고 일부는 다리에 장애를 입었는데, 병원비나 약값은 개인이 직접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다.⁷¹¹ 2019년 탈북한 20대 중반 여성도 공장에서 손가락이 잘리는 등의 부상을 입어도 공장 측에서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으며, 지배인이 성격이 괜찮으면 약 사먹을 돈을 줘 주는 정도라고 증언하였다.⁷¹²

이와 달리 상대적으로 사정이 괜찮은 기업소나 공장에서는 산재를 당한 노동자에게 치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

707_NKHR2020000005 2020-05-15.

708_NKHR2017000098 2017-10-23.

709_NKHR2017000111 2017-11-20.

710_NKHR2018000130 2018-11-19.

711_NKHR2018000102 2018-10-01.

712_NKHR2020000021 2020-07-06.

것으로 보이는데,⁷¹³ 지원 규모가 적절한지, 산재 노동자 중 이렇게 지원받는 노동자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17년 탈북한 20대 초반 여성은 2011년 동네에 거주하던 20대 초반 주민이 618 돌격대에서 기계에 깔려 사망했는데, 부모에게 강냉이 200kg이 지급되었다고 증언하며,⁷¹⁴ 2017년 탈북한 20대 초반 남성은 2017년 5월에 기차굴이 무너져 일하던 8명이 사망했는데, 보상이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다.⁷¹⁵ 2017년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학생이 일을 하다 떨어져 사망했는데 당국에서는 아무것도 보상해 주지 않았다는 증언도 있었다.⁷¹⁶ 2019년 탈북한 20대 초반 여성 역시 2018년에 공사하다가 떨어진 사람이 있었는데 다리가 부러지거나 다친다고 해서 국가에서 병원비가 전혀 나오지 않아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하였다고 증언하였다.⁷¹⁷

산업재해로 사망한 자에 대해 적절한 보상 대신 명예를 높여 주는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확인되는데, 이것이 유가족의 생계보장에 기여하는 바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7년 탈북한 20대 남성은 탈북 전 자신이 일하던 돌격대에서 낙석을 몸으로 막다가 22세 청년이 사망했는데, 김정일 청년영예상을

713_NKHR2020000016 2020-07-04.

714_NKHR2017000018 2017-05-08.

715_NKHR2017000111 2017-11-20.

716_NKHR2018000130 2018-11-19.

717_NKHR2019000045 2019-07-01.

주고 가족들에게 보상을 주긴 했으나 많이 주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⁷¹⁸ 또 2016년 탈북한 40대 초반 여성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노력영웅 등의 호칭을 부여하 기만 할 뿐 유가족에게 금전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없다고 한다.⁷¹⁹

마. 평가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는 법적인 측면에서는 잘 갖추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사회보장권을 존중·보호·실현하려는 북한 당국의 의지가 부족할 뿐더러 재정 상황도 열악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연로연금은 매우 적은 금액만 지급되고 있어 고령층의 생계유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 시스템이 부재하여, 가정의 경제 활동을 담당하던 구성원이 갑작스럽게 질병, 사망 등의 상황에 직면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될 경우, 이 가정은 경제적 위기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질병 혹은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주민에 대한 지원 시스템도 부재하거나 형식적인 지원을 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들의 생계 또한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산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규정상으로는 연금 또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지급되지 않거나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만 지급되고 있어 산재노동자와 그 가족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718_NKHR2017000111 2017-11-20.

719_NKHR2017000051 2017-07-03.

북한 주민의 사회보장권을 보호할 1차적인 책임은 북한 당국에게 있다. 하지만 북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 당국의 노력만으로 이러한 문제가 단기간 내에 크게 개선되기를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북한 내 취약계층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1

Chapter IV

취약계층

1. 여성
 2. 아동
 3. 장애인
-

1

여성

세계인권선언은 전문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함께 남녀평등권에 대한 개념을 재확인하고 있다. 제2조에서는 모든 사람이 성을 포함한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차별을 받지 않고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제25조 제2항에서는 어머니와 어린이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에도 여성의 권리와 연관되는 규정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과 양대 인권규약은 여성의 권리를 특수성 속에서 파악하기보다는, 남성과의 관계에서 평등권 실현의 형태로만 보장하려 하는 한계점을 보인다. 1981년 9월 3일 발효된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사적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성문제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과 성 인지적 관점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종래의 여성 관련 국제문서와 구별된다.⁷²⁰

720.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전문, 제6부, 총 3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제1조~제6조)는 차별철폐를 위한 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2부(제7조~제9조)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제3부(제10조~제14조)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제4부(제15조~제16조)는 법적능력, 혼인 및 가정생활에 관한 권리, 제5부(제17조~제22조)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국가보고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6부(제23조~제30조)는 발효요건과 개정절차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2001년 2월 27일 여성차별철폐협약을 비준했다. 북한은 2016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제2·3·4차 통합보고서에서 “북한 여성들은 사회의 완전한 주인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생활의 모든 분야에 있어 남성과 평등한 권리를 향유하며, 조국 번영을 위해 위대한 업적을 수행했다”고 자평하였다.⁷²¹ 북한은 법제도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남녀평등을 보장해 왔고, 헌법과 가족법에서 남성과 평등한 여성의 정치·사회 참여권과 가정생활에서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⁷²² 또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권리를 보다 철저히 보장하여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더욱 높이고자 2010년 여성권리보장법을 채택했으며, 남녀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고, 모든 형태의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⁷²³

한편, 북한은 2019년 UPR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서도 모성보건 환경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북한은 이처럼 여성 인권 측면에서 많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 왔음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도 여성 인권은 개선되고 있을까. 여기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 당국이 강조하고 있는 것과 같이 여성 인권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본다.

721_UN Doc. CEDAW/C/PRK/2-4 (2016), para. 2.

722_ *Ibid.*, paras. 9~10.

723_ *Ibid.*, para. 11.

가. 여성에 대한 차별

북한은 여성권리보장법을 통해 ‘모든 형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성에 근거한 관습적 구별과 배제는 직·간접적으로 북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기본적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남존여비 고정관념과 성역할의 정형화

북한 주민들의 인식 속에는 남존여비의 고정관념과 정형화된 성역할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북한에서는 여성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으며 여성에게 ‘조선여성다운’ 정형이 요구되는 등 남존여비의 관념이 여전히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⁷²⁴ 일례로 2019년 탈북한 한 증언자는 여자는 소심하고 착해야 하며, 단정해야 한다는 가정교육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다.⁷²⁵ 또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입지는 여전히 높아지지 못하고 있다는 증언도 다수 수집되었다.⁷²⁶

그러나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남존여비 사상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는 증언도 일부 존재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은

724_ NKHR2018000002 2018-03-12; NKHR2019000055 2019-07-29; NKHR2019000056 2019-07-29; NKHR2020000014 2020-06-15; NKHR2020000031 2020-08-03 외 다수의 증언.

725_ NKHR2020000004 2020-05-15.

726_ NKHR2018000010 2018-03-12; NKHR2018000017 2018-04-09; NKHR2018000021 2018-04-09; 2018000022 2018-04-09; NKHR2018000027 2018-04-09.

평양의 경우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나은 편지만 지방은 남녀차별이 심하다고 증언하였다.⁷²⁷ 또한 성차별에 대한 고정관념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가정 내에서 여성의 발언권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⁷²⁸ 2019년 탈북한 한 증언자는 옛날과 달리 요즘은 남자들이 여자들의 일을 도와야 한다는 인식이 생겼다면, 여자 귀가가 늦어지면 남자가 밥을 한다고 말했다.⁷²⁹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북한 젊은 세대의 성역할 인식이 기성세대와 조금씩 차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대 탈북여성 중에는 부모 세대의 성차별 인식과 고정관념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⁷³⁰ 또한 성역할에 대한 최근 북한 젊은이들의 생각은 부모 세대와는 다르다는 증언,⁷³¹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여자가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무시하지 못하는 사회로 바뀌었다는 증언,⁷³² 남존여비에 대한 인식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증언⁷³³ 등을 통해 북한에서도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남존여비의 고정관념이 다소 약화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다만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주로 여성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남성들의

727_NKHR2018000044 2018-03-14.

728_NKHR2018000049 2018-06-04; NKHR2018000102 2018-10-01; NKHR2020000017 2020-07-04.

729_NKHR2020000024 2020-07-06.

730_NKHR2019000048 2019-07-01; NKHR2019000055 2019-07-29.

731_NKHR2019000054 2019-07-29.

732_NKHR2019000077 2019-09-25.

733_NKHR2019000083 2019-09-25.

경우 “여전히 떠받들어주기를 요구”하거나,⁷³⁴ “가사일은 여전히 여자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⁷³⁵ 이와 관련, 2019년 탈북한 한 증언자는 “(남자가) 집에서 여자 일까지 도와준다”는 것은 똑똑하지 않은 사람을 달리 표현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⁷³⁶

표Ⅳ-1 남존여비 고정관념과 성역할의 정형화 관련 증언

증언내용	증언번호
2015년 탈북한 30대 여성은 “① 북한에서 돈을 벌어들인 모든 남자는 사회적 존재라 장사가 아니라 직장을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남자는 하늘이다 ③ 여자는 남자의 소유이다”라고 증언함.	NKHR2017000033 2017-06-05
2016년 탈북한 20대 여성은 가족 내에서 아무래도 남편이 우선이라고 증언함.	NKHR2017000009 2017-04-10
2018년 탈북한 50대 여성은 밥을 퍼도 남편 밥을 먼저 퍼야 하는 등 아내의 남편을 섬겨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증언함.	NKHR2018000032 2018-05-08
2018년 탈북한 40대 여성은 북한에서는 남자들이 가족부양을 하지 못해도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증언함.	NKHR2018000055 2018-07-02
2018년 탈북한 40대 여성은 북한 사회에서 남자는 직업이 있어야 하고 여자는 시집을 잘 가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증언하였음. 집이 가난한 사람들은 딸은 (교육을 시키지 않고) 그저 돈계산이나 할 줄 알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함.	NKHR2018000076 2018-07-02
2018년 탈북한 20대 여성은 여자가 할 일과 남자가 할 일이 따로 있다는 인식이 북한 사회 내에 존재한다고 증언함.	NKHR2018000118 2018-10-01
2018년 탈북한 30대 여성은 ‘남자답다’는 말은 좋은 직업을 가지고 권세있는 사람을 가리키며, ‘여자답다’는 말은 돈을 잘 벌고 가정을 잘 꾸리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증언함.	NKHR2019000077 2019-09-25
2019년 탈북한 50대 여성은 조선(북한)여성은 외모가 단정하고 품성이 좋아야 하며 마음이 고와야 한다는 등의 기준으로 평가당한다고 증언함.	NKHR2019000066 2019-08-26
2019년 탈북한 20대 여성은 “여자는 깨끗해야 한다, 착해야 한다, 말이 없어야 한다”는 식의 가정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증언함.	NKHR2019000068 2019-08-26

734_ NKHR2019000054 2019-07-01.

735_ NKHR2019000083 2019-09-25; NKHR2020000024 2020-07-06.

736_ NKHR2020000006 2020-05-15.

(2) 여성의 제한적 정치참여와 사회진출

북한은 2016년 제2·3·4차 통합보고서에서 북한 여성이 남성과 정치 및 공공생활에 있어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고 강조하였다.⁷³⁷ 또 2019년 UPR 보고서에서는 유능한 여성을 주요 직책에 임명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2018년에도 부처 및 부처급 기관에서 여성 지도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⁷³⁸ 그러나 실제 북한 여성의 사회활동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예로 여성의 정치참여 수준은 여전히 저조한 것을 볼 수 있다. 우선 2019년 3월 치러진 제14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의 당선자 중 여성의 비율은 17.6%인 것으로 보도되었다.⁷³⁹ 2014년 제13기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당선자 중 여성 비율이 20.2%였다는 점에서 대의원 중 여성 비율은 낮을뿐더러 5년 사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인민회의의 대의원 비율보다는 노동당 주요 직위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지표로 삼아 북한 여성의 정치참여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 있다.⁷⁴⁰ 2021년 1월 개최된 제8차 당대회 상황을 보면, 당중앙지도기관 성원 250명과 전당의 각급 조직들에서 선출된 대표자 4,750명이 참가했는데, 이 중 여성은 501명으로 10%를 차지하였다.⁷⁴¹ 2016년

737_UN Doc. CEDAW/C/PRK/2-4 (2016), paras. 75~83.

738_UN Doc. A/HRC/WG.6/33/PRK/1 (2019), para. 66.

739_“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선출,” 『통일뉴스』, 2019.4.12.

740_도경옥 외, 『북한 여성·아동 인권 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2016), p. 8.

741_“‘노 마스크’ 7천명 참석, 4가지 의제 다뤄,” 『통일뉴스』, 2021.1.6.

5월 개최된 제7차 당대회에서는 여성 대표자 비율이 8.6%였다는 점에서 다소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당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을 뿐더러, 권력의 핵심부로 갈수록 여성의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⁷⁴² 정치적·행정적 책임과 권한을 지닌 내각의 각료로 등용된 여성도 극소수에 불과하다.

북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기회도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며,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2002년과 2016년 제출한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에 대한 보고서 내용을 비교해 보면, 여성재판관과 여성 외무성 직원의 비율은 10여 년 사이 불과 1~2% 개선되는 데에 그치고 있다.⁷⁴³ 이와 관련하여, 2014년 발간된 COI 상세보고서는 중앙정부 관료 중 10%만이 여성임을 지적한 바 있으며,⁷⁴⁴ 2017년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최종견해에서 북한 여성의 정치적·공적 영역 참여가 매우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문제는 앞으로도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가 크게 확대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⁷⁴⁵ 우선 교육 기회에 있어서 남녀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서는 초·중등교육의 경우 의무교육이므로 이론적으로는 성별 취학률에 큰 차이가 없어야 하지만 여성이기 때문에 초·중등교육의 기회에 차별을 겪었다는 증언도 일부 존재하였다. 2018년 탈북한 20대 여성은 “여

742_ 도경옥 외, 『북한 여성·아동 인권 실태』, pp. 8~9.

743_ UN Doc. CEDAW/C/PRK/2-4 (2016), paras. 89, 254.

744_ UN Doc. A/HRC/25/CRP.1 (2014), para. 314.

745_ 도경옥 외, 『북한 여성·아동 인권 실태』, pp. 9~10.

자는 글자만 알면 된다’는 인식이 있어 소학교만 겨우 졸업했다”고 증언하였다.⁷⁴⁶ 2018년 탈북한 40대 여성도 “아들이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반 전체 인원 30명 중 여학생은 6명에 불과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늘 남학생의 비율이 높았다”고 진술하였다.⁷⁴⁷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경우에는 성별 진학률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인다. 2016년 탈북한 20대 여성인 북한이탈주민은 전문학교는 여성이 많고 대학은 남자가 많이 진학한다고 증언했으며,⁷⁴⁸ 2018년 탈북한 20대 여성은 “대학은 남자들이 주로 가며 여자들은 공부해봐야 필요 없다는 인식이 있다”고 증언하였다.⁷⁴⁹

여성 차별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북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가운데, 북한 여성들 스스로 성차별 인식을 내재화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면접조사에 응한 상당수의 탈북여성들은 “성차별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면서도,⁷⁵⁰ “남자니까 무조건 대우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⁷⁵¹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사고방식은 자연스럽다”,⁷⁵² “당

746_NKHR2018000009 2018-03-12.

747_NKHR2018000057 2018-07-02.

748_NKHR2016000141 2016-08-23.

749_NKHR2018000008 2018-03-12.

750_NKHR2019000014 2019-05-07; NKHR2019000015 2019-05-07; NKHR2019000017 2019-05-07; NKHR2019000018 2019-05-07; NKHR2019000020 2019-05-07; NKHR2019000029 2019-06-03; NKHR2019000030 2019-06-03 외 다수의 증언.

751_NKHR2019000018 2019-05-07.

752_NKHR2019000020 2019-05-07.

간부로는 남자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는 등⁷⁵³ 낮은 성평등 의식을 보여주었다.

(3) 남성 세대주 중심의 가정생활

북한의 가정생활에서는 전통적인 가부장질서가 유지되었다. 북한에서는 남성만이 ‘세대주’가 될 수 있으며, 모든 가정생활이 이러한 남성 ‘세대주’를 중심으로 결정되고 이뤄졌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북한 가정의 가부장적 특성이 약화되고, 가정에서 세대주(남편)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증언이 다수 확보되고 있다. 이는 여성권리보장법 제정과 같은 제도적 요인 때문이라기보다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여성이 생계를 부양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여성들의 발언권이 강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⁷⁵⁴

2019년 탈북한 한 증언자는 남녀평등 인식은 가정마다 다르지만, 최근 가계 살림을 여자들이 다 벌어서 하다 보니 여자들의 지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증언하였다.⁷⁵⁵ 또한 2017년 탈북한 20대 여성은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일을 하더라도 가정에서는 여성이 남성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참지 않고 이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⁷⁵⁶ 옛

753_ NKHR2019000030 2019-06-03.

754_ 도경옥 외, 『북한 여성 아동 인권 실태』, pp. 13~14; NKHR2018000004 2018-03-12.

755_ NKHR2020000019 2020-07-04.

756_ NKHR2018000003 2018-03-12.

날에는 이혼이 큰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인식이 그렇지 않아, 남편이 잘해주지 않으면 여자들이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남자들이 이혼을 당할까봐 무서워한다는 증언도 있다.⁷⁵⁷ 이 밖에도 아내가 돈을 벌면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지 못한다는 증언,⁷⁵⁸ 아내가 돈을 버는 경우 남편이 자격지심 때문에 아내를 더 함부로 대한다는 증언⁷⁵⁹ 등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성의 경제력이 북한 사회 내부의 공고한 가부장적 질서에 작은 균열을 만들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흥미로운 것은 북한 여성들이 결혼을 거부하고 동거를 통한 사실혼 관계의 유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⁷⁶⁰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남편의 생계까지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이혼이 매우 어렵고 이혼 시 사회적으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⁷⁶¹ 애초에 결혼 등록을 하지 않고 동거 상태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사이가 나빠지거나 사정이 생기면 헤어지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에 따르면 최근 북한 여성들은 결혼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으며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남자까지 어떻게 챙기냐’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⁷⁶² 2019년 탈

757_NKHR2020000024 2020-07-06.

758_NKHR2019000041 2019-07-01.

759_NKHR2019000028 2019-06-03.

760_NKHR2019000008 2019-04-08; NKHR2019000033 2019-06-03; NKHR2019000035 2019-06-03; NKHR2019000077 2019-09-25; NKHR2019000067 2019-08-26; NKHR2020000006 2020-05-15; NKHR2020000045 2020-10-31.

761_NKHR2020000047 2020-11-28.

762_NKHR2019000035 2019-06-03.

북한 한 증언자는 젊은 세대들은 동거하다 헤어지기 일쑤이며, 2~3년 정도 살아보고 계속 같이 살 것 같으면 등록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요즘 추세라고 증언하였다.⁷⁶³ 결혼하는 사람 중에 절반은 미등록에 해당한다는 증언도 있었다.⁷⁶⁴ 이로 인해 혼외 출산 아동이 급증하면서 2018년 6월 혼외자에 계도 모두 출생증을 내어주라는 김정은의 방침이 내려졌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⁷⁶⁵ 물론 면접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의 다수가 국경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북한 전역의 일반적인 추세라고 속단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국경지역에서는 실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가사노동과 사회노동의 이중부담

북한 당국은 가사노동의 사회화 및 자녀양육의 사회화를 통해 여성의 평등한 사회진출 여건을 보장해 왔다고 주장한다. 여성들에게 좋은 근무 조건을 제공하고 공장과 기업에 훌륭한 복지 시설을 세워 불편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져 왔다고 주장한다.⁷⁶⁶

그러나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가정에서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난이 계속되면서 가사 및 자녀양육의 사회화 시책이 축소되고 가정에서 가사 및 양육

763_NKHR2020000025 2020-07-06.

764_NKHR2019000077 2019-09-25.

765_NKHR2019000035 2019-06-03.

766_UN Doc. A/HRC/WG.6/33/PRK/1 (2019), para. 69.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북한 여성들은 과도한 노동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여성이 가정의 생계뿐만 아니라 가사노동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보았듯이, 살림을 돕는 남성이 늘어나긴 했지만, 아무리 여성이 생계유지를 위해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집안일은 무조건 여성이 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증언이 여전히 많이 수집되고 있다.⁷⁶⁷

경제활동과 가사노동만으로도 노동부담이 큰데, 그 외의 시간에도 북한 여성들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어렵다. 여맹 조직 등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생활총화, 학습, 노력동원 등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⁷⁶⁸ 2018년 탈북한 30대 여성은 결혼 이후 직장을 그만두면 여맹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데, 여맹에서 하게 되는 강제노동이 너무 고되어서 결혼 이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녔다고 증언하였다.⁷⁶⁹ 2018년 탈북한 또 다른 30대 여성 역시 예전에는 여성들이 결혼 이후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 ‘부양(가정 주부)’에 대한 강제노동 동원이 많아지면서 기업소에 적을 두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증언하였다.⁷⁷⁰ 부양을 동원한 사회노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수도 주어지지 않는다.⁷⁷¹

767_NKHR2018000073 2018-07-30; NKHR2018000080 2018-07-30; NKHR2019000047 2019-07-01; NKHR2019000048 2019-07-01; NKHR2019000055 2019-07-29; NKHR2019000056 2019-07-29; NKHR2019000071 2019-08-26; NKHR2020000016 2020-07-04; NKHR2020000022 2020-07-04 외 다수의 증언.

768_도경옥 외, 『북한 여성·아동 인권 실태』, p. 16.

769_NKHR2018000044 2018-06-04.

770_NKHR2018000041 2018-06-04.

771_NKHR2016000148 2016-09-06.

나. 여성에 대한 폭력

(1) 가정폭력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북한이 가정폭력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없다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에 북한은 여성권리보장법에 가정폭행금지 및 보호 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형법개정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실태에 있어서도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 대다수는 가정폭력이 빈발하고 있지만 가정폭력을 가정 내 문제로만 규정하는 사회적 분위기 탓에 공권력이 개입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진술하였다. 2016년 탈북한 30대 여성 ○○○은 가정폭력으로 사람이 사망하지 않는 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고 증언하였다.⁷⁷² 2017년 탈북한 50대 여성은 1989년 결혼 당시부터 2016년 남편이 사망할 때까지 심각한 가정폭력을 경험하였는데 여러 번 신고하였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증언하였다.⁷⁷³ 2015년 탈북한 20대 중반 여성 ○○○은 담당 보안원에게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너의 가정 문제니 너희들끼리 해결하라”며, 법적인 조치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고 증언하였다.⁷⁷⁴ 가정폭력을 목격한 보안원들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니 그냥 참고 이해하라고 종용하는 경

772_NKHR2018000041 2018-06-04.

773_NKHR2018000017 2018-04-09.

774_NKHR2016000154 2016-09-06.

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⁷⁷⁵ 2017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〇〇〇도 본인이 가정폭력 피해자로 보안서에 신고하였으나, 보안원이 폭력을 증지시키는 정도로 끝냈다고 증언하였다.⁷⁷⁶ 당기관에서도 폭력을 행한 남편에게 충고 내지 비판을 하는 정도라고 한다.

신고를 해보야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기 때문에 피해여성이 아예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한다. 2017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〇〇〇은 생활이 고되다보니 가정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신고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⁷⁷⁷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하고자 하더라도 이혼 절차가 너무 복잡하거나 재판 비용 및 뇌물 등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당의 방침이 이혼을 지양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혼이 어렵다는 증언도 다수 존재하였다.⁷⁷⁸ 2018년 탈북한 20대 여성은 남편으로부터 거의 매일 칼을 들고 찌르겠다는 협박을 당했는데, 이혼을 요구했으나 남편이 거부하면 이혼할 방법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⁷⁷⁹

간혹 가정폭력을 신고하여 남편이 조사나 처벌을 받았다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긴 하다. 예를 들어 2017년 탈북한 40대 여성에 따르면 이웃에 사는 남성이 가정폭력으로 체포되어 이틀간 구류된 뒤 풀려났다고 증언하였다. 하지만 이는 예외적인

775_NKHR2017000084 2017-09-25.

776_NKHR2017000049 2017-07-03.

777_NKHR2017000084 2017-09-25.

778_NKHR2017000099 2017-10-23; NKHR2017000100 2017-10-23; NKHR2018000040 2018-05-08; NKHR2018000041 2018-06-04.

779_NKHR2018000049 2018-06-04.

일로 보이며, 가정폭력에 의해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빚어지지 않고서야 형사처벌 등의 조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북한 주민들은 가정폭력을 신고해야 할 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가정폭력 신고를 망신스러운 일이라 생각하기도 한다.⁷⁸⁰ 가정폭력의 원인을 여성이 제공한다는 식의 인식도 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⁷⁸¹ 여성권리 신장을 표방하는 여맹 역시 가정폭력 문제 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⁷⁸²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도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북한에서 가정폭력에 노출된 여성들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다만 최근에는 여성의 경제력과 가정 내 발언권 강화로 가정폭력이 이전보다 줄어드는 추세라는 증언이 일부 수집되고 있다. 대체로 여성의 경제활동으로 가정의 생계가 가능하다보니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여성이 참지 않고 헤어지거나 이혼을 해버리기 때문에 남자들도 폭력을 자제한다는 것이다.⁷⁸³ 북한에서는 이혼이 어렵긴 하지만 가정폭력을 사유로 이혼이 가능했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⁷⁸⁴ 2018년 탈북한 50대 여성은 “최근 3~4년간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한 사례가 늘어나면서 가

780_ NKHR2018000012 2018-03-12.

781_ 도경옥 외, 『북한 여성·아동 인권 실태』, p. 18.

782_ 위의 책, p. 19.

783_ NKHR2019000012 2019-04-20; NKHR2019000030 2019-06-03; NKHR2019000056 2019-07-29; NKHR2019000062 2019-07-29; NKHR2019000063 2019-07-29; NKHR2019000077 2019-09-25; NKHR2020000016 2020-07-04.

784_ NKHR2019000022 2019-05-07; NKHR2019000036 2019-06-03; NKHR2019000042 2019-07-01; NKHR2019000062 2019-07-29; NKHR2019000077 2019-09-25; NKHR2020000006 2020-05-15.

성폭력이 점차 줄고 있으며, 312상무가 별거한 부부들을 이혼 시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조치한다”고 증언하였다.⁷⁸⁵ 이처럼 최근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증언이 얼마나 일반화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관찰이 필요하겠다.

(2) 성에 기초한 착취 및 폭력

북한은 2016년 제2·3·4차 통합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여성에 대한 성에 기초한 착취 및 폭력은 형법의 관련 규정(형법 제249조 매음죄, 형법 제279조 강간죄, 형법 제281조 미성인 성교죄)에 따라 엄격히 다루지며, 성적 착취를 조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퇴폐적인 문화반입과 유포죄(형법 제183조)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⁷⁸⁶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보장하고, 손해보상법에 따라 피해를 구제하고 있다고 밝혔다.⁷⁸⁷ 하지만 북한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심각성을 여전히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보호 및 예방절차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실 성폭력은 은밀히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들이 피해사실 공개를 꺼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확보 가능한 북한 이탈주민들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몇 가지 우려스러운 현상들이 확인되고 있다.

785_NKHR2019000062 2019-07-29.

786_UN Doc. CEDAW/C/PRK/2-4 (2016), paras. 66~70.

787_ *ibid.*, para. 71.

먼저 북한에서는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진다는 것이다. 2015년 탈북한 20대 여성은 직장에서 일상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이 이뤄졌으며, 남성들의 농담을 조금만 받아줘도 쉬운 상대로 여겨졌다고 한다.⁷⁸⁸ 2019년 탈북한 20대 여성은 직장에서 성폭행 당할 뻔한 것을 뿌리쳤다가 괴롭힘을 당했고 결국 쫓겨났다고 증언하였다.⁷⁸⁹ 또한 성폭행을 당하더라도 수치심과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⁷⁹⁰ 성폭력을 당하는 것은 피해여성이 자기 몸을 못 지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으며,⁷⁹¹ 신고를 하면 시집가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본인의 앞길을 위해 신고하지 않는다는 증언도 있었다.⁷⁹² 북한이탈주민 대부분은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후조치 역시 없고, 이러한 조치 자체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간혹 피의자가 처벌받은 사례도 조사되었다. 2016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양강도 혜산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가해자가 노동단련형 1년을 선고받았다고 증언하였다.⁷⁹³ 2018년

788_NKHR2018000033 2018-05-08.

789_NKHR2019000100 2019-10-21.

790_NKHR2016000139 2016-08-23; NKHR2016000140 2016-08-23; NKHR2017000050 2017-07-03.

791_NKHR2016000143 2016-08-23; NKHR2016000145 2016-08-23; NKHR2017000026 2017-05-08; NKHR2017000039 2017-06-05; NKHR2018000033 2018-05-08; NKHR2019000082 2019-09-25.

792_NKHR2016000148 2016-09-06; NKHR2017000046 2017-07-03; NKHR2019000082 2019-09-25.

793_NKHR2017000010 2017-04-10.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2016년 인민반 강연에서 성폭행으로 10년 노동교화형을 받은 남성의 사례를 들려주며 “자기 교양을 잘 하라”는 교육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다.⁷⁹⁴

물리적 폭력이 동반되지 않지만,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여성들이 성적 착취 내지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비공식적인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권력기관원들이 이들의 비법적인 행동을 눈감아주는 조건하에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적인 대가를 요구하는 기관원도 있다는 것이다. 장사를 통해 겨우 생계를 유지해 가는 여성들로서는 이러한 무리한 요구를 거부하고 저항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⁷⁹⁵

또 하나 지적할 문제는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⁷⁹⁶ 북한에서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물어보면, 북한이탈주민들은 공통적으로 그러한 교육을 받은 바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⁷⁹⁷ 북한이탈주민 ○○○은 사회주의 남녀평등에 관한 교육은 많이 받았으나 성교육은 받아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⁷⁹⁸ 이로 인해 북한 여성 중 일부는 성폭력행위를 경험 또는 목격하거나 성폭

794_ NKHR2018000049 2018-06-04.

795_ 도경옥 외, 『북한 여성·아동 인권 실태』, p. 22.

796_ 위의 책.

797_ NKHR2016000117 2016-07-26; NKHR2016000118 2016-07-26; NKHR2016000119 2016-07-26; NKHR2017000050 2017-07-03; NKHR2019000027 2019-06-03; NKHR2019000041 2019-07-01; NKHR2019000055 2019-07-29; NKHR2019000068 2019-08-26; NKHR2019000077 2019-09-25 외 다수의 증언.

798_ NKHR2016000134 2016-08-09.

력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탈북 후 송환된 여성에 대한 처우

(1) 인신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처벌

2014년 유엔 COI는 여성의 인신매매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하며, 무엇보다 여성이 이러한 폭력에 취약하게 된 구조적 원인들을 해결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⁷⁹⁹ 또 2017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송환된 탈북 여성들이 ‘비법일 경죄’로 형사처벌을 받으며 구금시설에서 성폭력, 강제낙태, 공정한 재판기회 박탈 등에 처해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들을 권고하였다.⁸⁰⁰

그러나 북한 당국은 인신매매에 취약하게 된 구조적 원인, 즉 국경을 넘기 위해 조직적인 인신매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인신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처벌은 계속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⁸⁰¹ 이는 인신매매를 당하는 여성들이 자신이 인신매매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근거로 북한 당국이 이들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보기보다는 비법국경출입죄를 저지

799_UN Doc. A/HRC/25/63 (2014), para. 89(i).

800_UN Doc. CEDAW/C/PRK/CO/2-4 (2017), para. 46.

801_NKHR2016000117 2016-07-26.

른 ‘범법자’로 간주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⁸⁰² 비법월경의 경우 무조건 처벌한다는 증언이 많으며,⁸⁰³ 법적 처벌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조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로 인해 범법자와 다름없는 대우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⁸⁰⁴

일반적으로는 중국 거주 기간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결정된다.⁸⁰⁵ 최근 탈북한 여성들의 증언을 살펴보면, 김정은 집권 이후 강제송환된 여성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9년 탈북한 50대 여성에 따르면 과거 인신매매 피해자는 단련대에 보내졌지만 최근에는 형벌이 강화되어 교화소에 보내지고 5~10년의 형을 받는다고 한다.⁸⁰⁶ 2015년 탈북한 30대 여성은 인신매매를 당했다가 강제송환되면 죄질에 따라 처벌이 다른데 중국에서 성매매 일을 했거나 한국행을 시도하다 잡힌 경우에는 관리소에 보내진다고 증언하였다.⁸⁰⁷ 한편, 인신매매 처벌은 강한 편이지만, 뇌물로 무마할 수도 있다는 증언도 있다. 2019년 탈북한 한 증언자는 “인신매매도 돈만 고이면 해결할 수 있다”⁸⁰⁸고 증언하였다.

802_NKHR2017000014 2017-04-10; NKHR2017000058 2017-07-31; NKHR2017000094 2017-10-23; NKHR2017000100 2017-10-23; NKHR2018000020 2018-04-09; NKHR2018000021 2018-04-09; NKHR2018000025 2018-04-09; NKHR2019000042 2019-07-01.

803_NKHR2016000143 2016-08-23; NKHR2016000134 2016-08-09.

804_NKHR2016000148 2016-09-06; NKHR2017000124 2017-11-20.

805_NKHR2016000131 2016-08-09; NKHR2016000133 2016-08-09.

806_NKHR2019000076 2019-08-26.

807_NKHR2019000041 2019-07-01.

808_NKHR2020000006 2020-05-15.

(2) 강제송환 및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북한 당국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중 가장 큰 문제는 강제송환 과정에서의 강제낙태와 조사과정에서의 비인도적 처우이다. 중국에서 임신한 이후 강제송환된 여성들에 대해 낙태를 종용하고 출산 시에 영아를 방치하여 사망하도록 하는 사례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제기되자, 북한은 일부 지역에서 출산을 허용하고 아이를 중국 남성 가족에게 인계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에서 거주하다 강제송환된 여성이 중국인의 아이를 임신한 경우, 송환 과정에서 강제로 낙태시킨다는 것을 목격하였거나 들었다는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이 수집되고 있다.⁸⁰⁹

표Ⅳ-2 강제송환 임신여성의 인권침해 사례

증언내용	증언번호
2016년 10월 함경북도 청진시 송평구역 집결소에서 임신 여성에게 주사로 약물을 투입하여 낙태시켰음.	NKHR2017000099 2017-10-23
2016년 11월 양강도 해산시 보위부 구류장에서 임신 4개월로 조사받던 여성을 병원에 데리고 가서 소파수술을 시킴.	NKHR2017000128 2017-12-18

809_ NKHR2017000047 2017-07-03; NKHR2017000099 2017-10-23; NKHR2017000128 2017-12-18; NKHR2017000058 2017-07-31; NKHR2017000104 2017-10-23; NKHR2017000130 2017-12-18.

구금시설 내에서의 성폭력 문제 역시 확인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2016년 7월 보안성 집결소에서 계호원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동료 수감생이 “죽은 사람만 강간이 있지, 산 사람은 강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증언하였다.⁸¹⁰

강제송환되어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여성들에게 돈이나 비밀편지, 비밀문건을 찾기 위해 몸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자궁검사라고 하는, 여성들이 치욕스럽게 느낄 뿐만 아니라 매우 비위생적인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강제송환 경험이 있는 여성 북한이탈주민 상당수가 보위성 구류장과 보위성 집결소 등에서 이러한 검사를 당했다고 증언하였다.⁸¹¹ 대부분의 경우 여성에 대한 몸수색은 여성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군관이나 군의가 아니라 문건정리를 하는 여성이 자궁검사를 했다는 증언도 있다.⁸¹² 몸수색은 여성이 하지만 옆에서 남정보안원이 수감자를 지켜보며 때리고 “몸매도 못생긴 게 중국 시중을 들었다”고 욕을 했다는 증언도 있다.⁸¹³ 이처럼 중국에서 가져온 돈을 찾는다는 명목하에 북한 조사기관들은 자궁검사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앉았다 일어섰다가 반복시킨다거나 밥을 먹여 용변을 보도록 한 후 검사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⁸¹⁴

810_NKHR2017000045 2017-07-03.

811_NKHR2017000025 2017-05-08; NKHR2017000045 2017-07-03; NKHR2017000104 2017-10-23; NKHR2018000023 2018-04-09; NKHR2018000024 2018-04-09; NKHR2019000041 2019-07-01; NKHR2019000075 2019-08-26.

812_NKHR2017000104 2017-10-23.

813_NKHR2017000130 2017-12-18.

814_NKHR2016000131 2016-08-09; NKHR2016000149 2016-09-06.

라. 여성 건강 및 모성 보건

북한은 2019년 UPR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모자보건교육전략(2014-2018) 및 신생아 건강을 위한 행동 프로그램(2015-2016)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산모 사망률(출생 10만 명당)이 2014년 62.7명에서 2017년 53.2명으로 감소하였다”고 밝히고 있다.⁸¹⁵ 또 북한은 “출산휴가가 240일로 연장되고 모든 도립 산부인과가 현대화되어 출산 여성의 건강과 회복을 위한 환경과 아이의 영양관리가 개선되었다”고도 언급하고 있다.⁸¹⁶ 모성보건을 위한 제도적 환경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조치가 실제 여성의 건강권 향상으로 이어졌는지는 불분명하다. 이하에서는 여성건강과 모성보건으로 나누어 관련 실태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본다.

(1) 여성건강

많은 북한 여성들이 1990년대 이래 지속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과중한 노동, 가족부양 책임 증대에 따른 심적 부담 등으로 인해 영양실조와 빈혈에 시달리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2012년 9월 북한 중앙통계국이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영양조사 결과에도 이러

815_UN Doc. A/HRC/WG.6/33/PRK/1 (2019), para. 69.

816_UN Doc. A/HRC/WG.6/33/PRK/1 (2019), para. 71.

한 실태가 잘 나타나 있다.⁸¹⁷ 이 조사에서는 5세 미만 자녀를 둔 15~49세의 가임기 여성 7,649명을 대상으로 혈중 헤모글로빈 농도와 상완위둘레(Mid-upper arm circumference) 측정 등이 이루어졌는데, 여성들의 건강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빈혈을 지니고 있는 여성의 비율은 20대 31.8%, 30대 30.2%, 40대 38.7%로 상당히 높았으며, 영양불량 상태에 있는 여성의 비율 역시 20대 25.2%, 30대 21.4%, 40대 21.8%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쉽게도 그 이후에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임기 여성의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앞서 여성 건강 저해 요인으로 언급한 사항들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그 사이 가임기 여성의 건강 상태가 획기적으로 좋아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임과 낙태가 가임기 여성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실시된 MICS(다중지표군집조사)에 따르면, 북한 여성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피임법은 북한에서 ‘고리’라고 불리는 자궁 내 장치(IUD)를 삽입하는 것이다. 2019년 탈북한 20대 후반 여성도 피임 방법을 위해 피임약을 먹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고리’를 한다고 증언하였다.⁸¹⁸ 그런데 IUD는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해 주어야 함에

817. 도경옥 외, 『북한 여성·아동 인권 실태』, pp. 30~31. 조사 결과에 관한 내용은 UNICEF *et al.*, “DPRK Final Report of the National Nutrition Survey 2012”; 윤소윤·권영혜·윤지현, “남북한 가임기 여성의 영양상태 비교,”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제21권 3호 (2016) 참고.

818. NKHR2020000042 2020-10-31.

도 북한에서는 이를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부인성 질환을 앓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⁸¹⁹

북한에서 낙태는 불법이 아니며,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⁸²⁰ 문제는 낙태 시술이 의료 장비가 충분치 않고, 위생 상태도 좋지 않은 개인의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심한 경우 시술을 받은 여성이 사망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동생이 2017년 마취도 하지 않은 채 소파수술을 받았으면서, 시술 기구도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였다고 하였다.⁸²¹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2017년 사촌 언니가 집에서 중절수술을 받았는데 의료사고가 발생해 사망했다고 증언하고 있으며,⁸²² 7~8년 전쯤 지인이 낙태수술을 받다가 사망했다는 증언도 있다.⁸²³

생리대 사용과 관련해서는 개선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통일연구원의 면접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5.4%가 생리대로 ‘가제천’을 사용한다고 답하였으며, ‘헌옷’을 사용한다고 답한 응답자도 10.7%에 이른 반면,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1.0%에 불과했으며,⁸²⁴ 가제천 사용 등에 따른 위생상 문제는 부인성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819_ 이금순 외, 『북한의 건강권』(서울: 통일연구원, 2018), pp. 38~39.

820_ NKHR2018000074 2018-07-30; NKHR2020000042 2020-10-31 외 다수의 증언.

821_ NKHR2018000074 2018-07-30.

822_ NKHR2017000132 2017-12-18.

823_ NKHR2020000040 2020-10-31.

824_ 도경옥 외, 『북한인권백서 2015』(통일연구원, 2015), p. 335.

그런데 최근에는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하는 비율이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탈북한 50대 중반 여성은 옛날에는 위생대(생리대)가 없어서 가제천을 사용했지만 지금은 위생대를 사서 쓴다고 증언하였으며,⁸²⁵ 2019년 탈북한 40대 후반 여성도 중 젊은 사람들은 위생대(생리대)를 사용한다고 증언하였다.⁸²⁶

(2) 모성보전

북한은 모성보전을 위해 임신부에게 제도적으로 다양한 혜택을 보장하고 있다.⁸²⁷ 출산 비용은 무료이며, 출산휴가가 보장되고, 젓먹이가 있거나 임신한 여성에게는 야간 노동을 금지시키는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전히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성보전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지표는 모성사망률일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은 2019년 UPR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서 2014년 10만 명당 62.7명이었던 모성사망률이 2017년 53.2명으로 감소되었다고 밝혔다.⁸²⁸ 3년 사이 10명 가까이 감소했다는 점은 긍정적이거나, 국제적으로 볼 때 여전히 높은 편에 속한다. 게다가 2019년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모성사망률 추이: 2000~2017』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북한의

825_NKHR2020000024 2020-07-06.

826_NKHR2020000028 2020-07-06.

827_이금순 외, 『북한의 건강권』 (서울: 통일연구원, 2018), pp. 34~37.

828_UN Doc. A/HRC/WG.6/33/PRK/1 (2019), para. 70.

모성사망률은 10만 명당 89명으로 북한의 발표와는 차이가 있다.⁸²⁹

모성사망률 하락에서 볼 수 있듯이, 임신 및 출산 여성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취약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된다.

우선 임신부가 산전검사를 받는 비중은 과거보다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유엔아동기금이 실시한 2017년 북한 MICS에 따르면 2015~2017년 출산한 북한 여성의 99.5%는 적어도 한 번의 검진을 받았으며 4회 이상 검진을 받았다는 응답도 93.7%나 됐다. 이는 임신부 대부분이 산전검사를 받았다는 것인데,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보면 산전검사를 받는 비율이 그 정도로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임신 기간 동안 검진을 받았다는 증언도 있지만,⁸³⁰ 산전 검사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증언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⁸³¹

산전 검사에 대한 몇 가지 증언 사례를 살펴보자. 2015년 출산한 한 북한이탈주민은 임신 5개월 때부터 매월 산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 아이의 성별이나 태아 위치 등을 확인했다고 한다.⁸³² 북한에서 2016년 출산한 경험이 있는 여성도 검진을 받으라고 했지만 바빠서 받지 못하다가 임신 6~7개월부터 검진

829_ WHO, *Trends in Maternal Mortality 2000 to 2017: Estimates by WHO, UNICEF, UNFPA, World Bank Group, and the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9).

830_ NKHR2017000049 2017-07-03; NKHR2018000040 2018-05-08; NKHR2018000093 2018-08-27; NKHR2020000048 2020-11-28 외 다수의 증언.

831_ NKHR2018000038 2018-05-08; NKHR2018000117 2018-10-22; NKHR2019000001 2019-04-08; NKHR2019000007 2019-04-08; NKHR2019000041 2019-07-01 외 다수의 증언.

832_ NKHR2018000093 2018-08-27.

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다.⁸³³ 반면 2014년 출산했던 한 여성은 산전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며,⁸³⁴ 2015년 출산한 경험이 있는 다른 북한이탈주민도 초진을 받을 때 외에는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간 적이 없었다고 증언하였다.⁸³⁵

한편, 최근에는 출산이 대체로 병원이나 산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⁸³⁶ 하지만 여전히 집에서 출산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⁸³⁷ 2019년 탈북한 30대 후반 여성은 병원에서 출산을 하면 돈이 좀 들기 때문에 집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출산을 도와준 사람에게는 식사 정도를 대접한다고 증언하였다.⁸³⁸ 또 2015년 출산한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돈도 없고, 시골에 살아서 병원에 가기 어려워 집에서 출산했다고 증언하였다.⁸³⁹

이처럼 집에서 출산하는 경우에는 개인의사가 오기도 하지만, 자격증이 없는 산파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의료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환경에서의 출산은 아무래도 병원에서의 출산에 비해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모성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833_NKHR2020000048 2020-11-28.

834_NKHR2018000117 2018-10-22.

835_NKHR2018000038 2018-05-08.

836_NKHR2017000094 2017-10-23; NKHR2018000024 2018-04-09; NKHR2018000057 2018-07-02 외 다수의 증언.

837_NKHR2018000038 2018-05-08; NKHR2019000033 2019-06-03; NKHR2019000034 2019-06-03.

838_NKHR2020000006 2020-05-15.

839_NKHR2018000038 2018-05-08.

위의 증언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부분은 출산 시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것이 안전한 환경에서 출산하는 것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술했듯이, 북한은 출산 비용을 무료로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은 공통적으로 출산 시 비용이 발생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2015년 출산한 여성은 출산비로 100위안, 약값으로 70위안을 지불했으며, 간호사에게 15위안, 의사에게 담배 5갑을 별도로 주기도 했다고 증언하였다.⁸⁴⁰ 2017년 출산한 여성도 해산 비용으로 50위안을 지불했다고 한다.⁸⁴¹

마지막으로, 출산휴가에 대해 살펴보면 북한은 2015년 임산부의 출산휴가를 기존의 180일에서 240일로 연장하였으며, 2019년 UPR 보고서에서도 이 같은 조치를 강조하였다.⁸⁴² 이와 관련해서는 출산휴가가 잘 지켜지며, 임신한 여성은 동원에서 면제된다는 증언이 많다.⁸⁴³ 북한이탈주민 ○○○은 임신한 여성의 경우 대략 출산 전 3개월, 출산 후 6개월 정도 휴가가 주어진다고 설명했으며,⁸⁴⁴ 2019년 탈북한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출산휴가는 법에 정해진 대로 나오고, 그 기간 동안 식량도 나온다고 증언하였다.⁸⁴⁵ 그러나 여성이 결혼 후 직장을 다니는

840_NKHR2018000091 2018-08-27.

841_NKHR2018000038 2018-05-08.

842_UN Doc. A/HRC/WG.6/33/PRK/1 (2019), para. 8.

843_NKHR2017000001 2017-04-10; NKHR2017000009 2017-04-10; NKHR2017000014 2018-04-10; NKHR2017000075 2017-08-28; NKHR2017000100 2017-10-23; NKHR2018000016 2018-04-09; NKHR2018000081 2018-07-30; NKHR2018000115 2018-10-22.

844_NKHR2019000008 2019-04-08.

845_NKHR2020000048 2020-11-28.

경우가 많지 않아 산전후휴가 및 유급육아휴직이 의미가 없다는⁸⁴⁶ 등의 증언이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출산 여성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써 얼마나 실효성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파악이 필요해 보인다.

마. 평가

여성차별철폐협약 전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여성에 대한 차별은 권리평등 및 인간존엄성 존중의 원칙에 반한다.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조건하에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생활에 참여하는 데 장애가 될 뿐 아니라, 사회와 가정의 번영 증진과 여성 잠재력의 완전한 개발을 어렵게 한다. 북한은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명시된 차별의 개념을 여성권리보장법에 수용하고 모든 형태의 직·간접적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북한 여성은 성역할의 정형화와 제한적인 사회진출, 남성 세대주 중심의 가정생활, 시장화 이후 가사노동과 사회노동의 이중부담으로 인해 여전히 직·간접적인 차별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피임이나 낙태 과정에서 가임기 여성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아직도 많은 여성이 임신 기간 내내 적절한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최근 조사에서는 여성의 경제력 향상으로 가정 내 발언권이 높아졌다는 증언과, 젊은 세대 중심으로 성평등적 가치관

846_NKHR2018000057 2018-07-02.

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는 증언이 수집되고 있다. 또한 남성이 여성의 경제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가정폭력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는 증언도 있었다. 그러나 이는 당국의 조치에 의한 구조적 개선이 아닌, 배급제 붕괴와 장마당의 출현이라는 현상이 빚어낸 의도치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은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으로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며 가사일까지 전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아동

아동은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⁸⁴⁷ 세계인권선언은 모자보호(제25조 제2항)와 교육의 권리(제26조)를 규정하였으나, 아동의 권리를 특별히 언급하지는 않았다. 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에는 아동의 권리와 연관될 수 있는 규정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두 규약 모두 아동의 권리주체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고 1990년의 9월 2일 발효된 아동권리협약은 오랜 기간 동안 보호대상에 머물러 있었던 아동을 권리주체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종래의 아동 관련 국제문서와 구별된다. 아동권리협약은 전문, 제3부, 총 5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제1조~제41조)는 아동의 권리와 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2부(제42조~제45조)는 아동권리위원회와 국가보고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3부(제46조~제54조)는 서명, 비

847. 자유권규약은 “모든 어린이는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또는 출생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족, 사회 및 국가에 대하여 미성년자로서의 지위로 인하여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4조 제1항). 사회권규약은 “가문 또는 기타 조건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어린이와 연소자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와 원조의 조치가 취하여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조 제3항).

준, 가입, 개정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상의 권리들은 크게 생존의 권리, 보호의 권리, 발달의 권리, 참여의 권리로 구분된다.

표Ⅳ-3 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

생존의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아동이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보호의 권리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발달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등 아동이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참여의 권리	표현의 자유,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 아동이 국가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북한은 1990년 9월 21일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고 한 달 뒤인 1990년 10월 21일부터 발효되었다. 또한, 북한은 2014년 11월 10일 아동의 매매·성매매·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10일부터 발효되었다.

당사국들은 협약 이행보고서를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제44조), 북한은 1996년 2월 최초보고서, 2003년 5월 제2차 보고서, 2007년 12월 제3·4차 통합보고서, 2016년 4월 제5차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아동권리위원회는 2017년 2월 북한의 제5차 보고서에 대한 예비심의를 마쳤으며, 2017년 9월 본 심의를 열어 주요 우려사항 및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 견해를 발표하였다.

북한은 2017년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제5차 보고서에서 “북한 아동들은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아동 사랑 정책에 따라 그들의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였으며 그들의 복지는 보다 높은

수준에서 촉진되었다”고 자평하였다.⁸⁴⁸ 그리고 아동권리보장법 제정(2010년), 보통교육법 제정(2011년),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한 법령 발표(2012년), 조선어린이후원협회 창설(2013년) 등 여러 조치를 취하였음을 강조하였다.⁸⁴⁹

한편, 북한 아동권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연령에 대한 규정이다. 아동권리보장법(2014)이 아동의 연령을 “16살까지” 규정한 것은 기존의 11년제 학제에서 교육이 종료되는 나이가 16세 또는 17세인 점을 고려한 것이며, 새로운 12년제 학제에서 교육이 17세 또는 18세에 종료될 것이므로 아동권리협약과 동일하게 아동의 정의를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⁸⁵⁰ 2019년 UPR에서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아동의 법적 기준이 교육받는 시기에 한정되고 있으며, 태어나면서 1세가 되는 북한의 연령 계산상 14세 또는 15세의 아동이 성인에게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를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⁸⁵¹ 북한은 최소 혼인연령을 18세로 높이는 것을 비롯해 18세 미만의 아동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아동권리보장법 수정과 국내법 검토를 권고받았으며,⁸⁵² 이에 수용한다고 답변하고 있어,⁸⁵³ 향후 법 개정에서 지속적인 주목이 필요하다.

848_UN Doc. CRC/C/PRK/5 (2016), para. 7.

849_ *Ibid.*, paras. 8~10, 17, 21, 25.

850_ *Ibid.*, paras. 27~28.

851_UN Doc. A/HRC/WG.6/33/PRK/3 (2019), para. 97.

852_ Questions in Advance Prepared by UN Members States. Advance Questions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2nd Batch), Belgium, 3 May 2019; UN Doc. A/HRC/42/10 (2019), paras. 126.191, 126.192.

853_UN Doc. A/HRC/42/10/Add.1 (2019), para. 9(a).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당사국은 협약상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닌다(제4조). 북한은 아동권리보장법에서 아동권리협약상의 권리들을 대체로 반영하고 있다. 사상·종교의 자유, 결사·집회의 자유 등 시민적 권리 및 자유는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관련 규정들을 찾을 수 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2017년 최종견해에서 북한의 ‘아동복지행동강령(2011~2020)’ 채택을 평가하면서, 교육 및 보건 관련 국가계획을 넘어서서 아동에 대한 폭력, 아동착취, 아동빈곤 문제 해결을 포괄적인 계획에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다.⁸⁵⁴

북한은 2019년 UPR에서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조치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보고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아동에게 제공하고, 아동 영양을 과학적으로 관리하여 영아 사망률과 만성 및 급성영양실조 비율을 낮추었으며, 문화와 여가 및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을 여러 지역에 건설하여 아동의 창의적 사고가 증진되도록 했다고 보고하였다.⁸⁵⁵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은 교육환경과 조건을 개선하고, 현대적인 문화후생시설들을 확충하였으며, 대형 아동병원을 설립하여 아동의 성장과 영양개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언론 보도를 통해 선전해 왔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의하면, 이 같은 정책들이 균질하게 시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854_ UN Doc. CRC/C/PRK/CO/5 (2017), para. 7.

855_ UN Doc. A/HRC/WG.6/33/PRK/1 (2019), paras. 61-64.

아래에서는 북한 아동의 인권 실태를 주요 쟁점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아동 보건·복지

(1) 장애아동 교육시설의 부족

아동권리협약 제23조는 정신적·신체적 장애아동은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 사회참여가 조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위 있는 생활을 향유하며,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장애인보호법(2013)에서 장애자의 회복치료, 교육, 문화생활, 노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권리보장법(2014)에서도 장애아동의 보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30조). 특히 아동권리보장법 제30조 제2항은 “교육지도기관과 보건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맹, 농아학교를 바로 운영하며 장애아동의 교육, 치료, 생활에 필요한 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제5차 보고서에서 일반학교에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시청각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를 설립했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북한 내에는 8개의 농아학교와 3개의 맹아학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북한 당국은 2012년 3월 평양에 조선장애어린이회복원을 설립하고 장애아동의 재활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림 IV-1 북한의 농아학교와 맹아학교



출처: 국제푸른나무 홈페이지, <<http://www.greentreekorea.org>> 참조.

북한은 2019년 UPR에서 시각 및 청각장애자 학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법적, 제도적 조치를 마련했다고 보고하였다.⁸⁵⁶ 평양 외곽에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유치원이 개원했다는 소식이 단편적으로 있으나,⁸⁵⁷ 북한 전역에 시청각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는 11개에 불과하다. 특히 양강도 지역에는 이러한 학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장애아동에 대한 특수교육 실태가 열

856_ UN Doc. A/HRC/WG.6/33/PRK/1 (2019), para. 11.

857_ "North Korea opens kindergarten for hearing-impaired children," UPI, 1 July 2016. <https://upi.com/6352451>.

악하다는 것을 보여준다.⁸⁵⁸

강원도 원산시에서 거주하다가 2016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원산시 장춘동에 농아학교가 있었다고 하였다. 함경남도 함흥시에 거주하다가 2016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함흥시 덕산에 농아학교가 있었으나, 소요비용을 학생 측이 부담해야 해서 돈이 없는 가정에서는 보낼 수가 없었다고 한다.⁸⁵⁹

북한은 2018년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보고서에서 미취학 장애아동은 지역사회 유치원에서 평등하게 양육되며, 연령과 심리 및 장애 유형에 맞게 재활과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애어린이 회복중심과 같은 전문기관이 마련되어 재활과 조기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2018년에는 평양의 소학교를 통합교육 시범학교로 지정해 운영할 준비를 진행중이라 밝혔다.⁸⁶⁰ 또한, 북한은 2019년 UPR에서 2015년부터 맹아학교와 농아학교가 12년 의무교육과정에 맞게 커리큘럼을 개정하고 직업훈련을 결합했다고 소개하였다.⁸⁶¹ 그러나 2020년 조사에서는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운영이나, 장애아동의 재활과 직업훈련에 대한

858. 양강도 김정숙군에서 거주했던 북한이탈주민들은 해당 지역에 장애인 특수학교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NKHR2017000023 2017-05-08; NKHR2017000049 2017-07-03; NKHR2017000056 2017-07-31. 양강도 해산시에도 장애인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NKHR2017000060 2017-07-31; NKHR2017000025 2017-05-08. 양강도 백암군에 거주했던 북한이탈주민도 장애인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을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NKHR2017000062 2017-07-31.

859_ NKHR2017000049 2017-07-03.

860_ Initial Report Submitted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der Article 35 of the Convention, due in 2018. UN Doc. CRPD/C/PRK/1 (2018), paras. 143-144.

861_ UN Doc. A/HRC/WG.6/33/PRK/1 (2019), para. 76.

증언은 수집되지 않았다. 주변에서 장애인을 본 경험이 적고, 장애아동 재활과 교육에 관심과 주의가 적은 것이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양강도 해산시에 거주했던 북한이탈주민 ○○○은 동네 아이가 2000년생인데, 다리 하나를 저는 것이 부끄럽다고 소학교부터 안 다녔고, 2019년 탈북할 때까지 국가로부터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 주어진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였다.⁸⁶² 북한의 장애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은 교육과 의료 분야에서 시행 중이지만, 일부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소통을 개방하고, 인식개선 교육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보건의료 및 영양

아동권리협약 제24조는 아동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인민보건법(2012)에서 무상치료제, 예방의학에 의한 건강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아동권리보장법(2014)에서 아동의 무상치료를 받을 권리, 아동에 대한 의료봉사, 아동병원, 아동요양시설, 영양제·영양식품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어린이보육교양법에서는 탁아소 및 유치원 어린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의료봉사와 탁아소 내 아동병동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제25조 및 제26조).

862_NKHR2020000001 2020-05-15.

북한은 2019년 UPR에서 공공 보건의료를 개선하여 평균 기대수명을 늘리고, 유아 사망률 감소를 보건 부문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는 등 주요 건강 지표를 선진국과 일치시키기 위해 국가 투자를 늘리고 제도적, 실제적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하였다.⁸⁶³ 또한 현대식 의료기관을 건립하고 의료기기 공장을 재건하였으며, 의료인 역량 강화를 비롯해 중앙과 지역 병원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원격진료시스템을 운영하고, 약품의 질과 품종 및 수량을 개선하여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개선했다고 밝혔다(‘Ⅲ.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태, 2. 건강권’ 참조).⁸⁶⁴

그동안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에서 질병예방을 위한 예방접종률은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아동들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도시 지역보다는 농촌 지역 상황이 더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아동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는지, 도서 산간 지역 아동에게 의료서비스가 보장되고 있는지,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최악의 상태는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상당수의 북한 아동은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9년 유엔세계식량계획과 식량농업기구(FAO)가 북한을 방문하여 공동으로 수행한 긴급식량안보평가에 의하면, 6개월 이상 5세 미만

863_UN Doc. A/HRC/WG.6/33/PRK/1 (2019), para. 35.

864_ *ibid.*, paras. 37~41.

아동 15~25%가 영양부족 상태라고 보고되었다.⁸⁶⁵ 이에 따라 유엔세계식량계획은 2018년에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던 탁아소 아동을 위한 강화비스킷 생산을 2019년 4월부터 시작했다.⁸⁶⁶ 만성영양실조의 국가 비율 개선에도 불구하고, 농촌과 도시 지역은 그 차이가 뚜렷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32%가 발육부진으로 나타났다.⁸⁶⁷ 더욱 심각한 것은 6개월 이상 2세 미만 영유아의 20%가 발육부진에 시달리고 있으며, 만성 식량 불안으로 5세 미만 아동의 3%에 해당하는 약 14만 명이 급성영양실조를 앓고 있다는 점이다. 이 중 3만 명은 사망위험이 높은 상황에 처해 있다.⁸⁶⁸ 유엔아동기금은 2019년 보고서에서 5세 미만 아동 가운데 10명 중 1명은 저체중(약 15만 3천 명), 5명 중 1명은 발육부진(약 32만 명)이며, 약 14만 명이 급성영양실조에 걸려있다고 보고하였다.⁸⁶⁹ 2020년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에 의하면, 아동의 발육 부진은 평양 10%, 양강도 32%로 지역 간 차이가 있으며, 하위 20% 빈곤계층의 4~5세 아동은 41%가 성장에 장애를 겪고 있다.⁸⁷⁰

865_ WFP/FAO,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FAO/WFP Joint Rapid Food Security Assessment," 2019, p. 42 <<https://www.wfp.org/publications/democratic-peoples-republic-korea-dprk-faowfp-joint-rapid-food-security-assessment>>.

866_ WFP, "DPR Korea Country Brief," 2019, <<https://reliefweb.int/report/democratic-peoples-republic-korea/wfp-dpr-korea-country-brief-may-2019>>.

867_ WFP, "DPR Korea Country Brief," 2019, <<https://reliefweb.int/report/democratic-peoples-republic-korea/wfp-dpr-korea-country-brief-june-2019>>.

868_ UNDP *et al.*, "DPR Korea Needs and Priorities 2019," p. 26, <<https://dprkorea.un.org/en/10164-dpr-korea-needs-and-priorities-2019>>.

869_ UNICEF, *Analysis of the Situation of Children and Woma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Korea*, Pyongyang: 2019, p. 54.

870_ UN Doc. A/75/271 (2020), para. 28.

2019년에는 대북제재로 인하여 아동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반입이 차단되어 어려움을 겪었다면,⁸⁷¹ 2020년에는 코로나19 조치가 만성적인 식량 불안정과 영양실조를 악화시키는 상황이다.⁸⁷²

나. 아동교육권

아동권리협약 제28조는 아동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9조에서는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 (b)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c) 자신의 부모, 문화적 정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d)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e)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이 그 내용이다. 또한, 아동권리협약 제31조는 아동은 여가를 즐기고, 놀이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교육법, 보통교육법, 어린이보육교양법 등을 제정·시행

871_UN Doc. A/HRC/42/10 (2019), para. 13.

872_UN Doc. A/75/271 (2020), para. 30; 2020년 유엔 사무총장 보고에 의하면, 유엔 관계자나 국제기구 활동가들의 인도주의적 지원은 국경봉쇄와 엄격한 격리조치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했다. 이로 인하여 2020년 6월 이후 임신부나 아동에게 제한적인 지원만 가능해졌으며, 탁아소나 유치원에 가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인도적 지원을 받던 아동들은 더 취약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Ibid.*, para. 32.

하고 있으며, 아동권리보장법(2014)에서도 무료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희망과 재능을 발전시킬 권리, 휴식과 문화정서생활의 권리 등 교육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제22조~제28조).

(1) 정치사상교육

북한은 제5차 보고서에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이 아동교육의 목표를 규정하고 있는 아동권리협약 제29조에 부합하게 개편되었다고 밝히고 있다.⁸⁷³ 아동교육은 존중·평화·관용·평등·연대의 정신을 함양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북한의 교육과정 편성 현황을 보면 정치사상교육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으며, 현 최고지도자와 그의 가계를 우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3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은 주 1시간 이상 김정은 관련 수업을 편성하고 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관련 과목에 대한 학년별 교육시간은 <표Ⅳ-4>와 같다.

표Ⅳ-4 김일성·김정일·김정은 관련 과목 연간 교육시간

구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초급 중학교	1학년	68시간		34시간
	2학년	68시간	68시간	34시간
	3학년		68시간	34시간
고급 중학교	1학년	104시간		27시간
	2학년	56시간	56시간	27시간
	3학년		92시간	27시간

김정은 관련 과목은 김일성, 김정일 관련 과목에 비해서는 비중이 작지만 신설과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큰 비중이

873_ UN Doc. CRC/C/PRK/5 (2016), para. 209.

다.⁸⁷⁴ 주된 학습 내용은 당과 수령의 위대성, 주체사상 원리, 당 정책, 혁명전통, 혁명 및 공산주의 교양의 다섯 가지 범주이 나, 이 모두는 수령의 위대성을 인식하게 하는 것으로 귀결된다.⁸⁷⁵ 정치사상교육은 학교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며, 학생들도 당연시하는 것으로 보인다.⁸⁷⁶

북한에서는 정치사상교육이 정규 교과뿐만 아니라 조선소년단,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등 의무적인 조직생활을 통해서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조선소년단에는 만 7~13세의 아동들이 가입하여 사상교양 활동과 조직 활동을 통해 유일사상을 학습하고 실천한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에는 만 14~30세의 청소년들 및 청년들이 가입하여 조직생활을 한다. 소년단과 청년동맹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은 2016년 8월 청년동맹 9차 대회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2020년에 국내에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청년동맹 명칭 변경에 따른 청년동맹의 성격이나 활동 변화를 조사하였으나, 관련 증언은 확보되지 않았다. 한편, 2019년에 탈북한 10대 후반의 북한이탈주민은 소년단과 청년동맹 가입을 형식적으로 하며, 가입할 때 돈을 낸다고 증언하고 있다.⁸⁷⁷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정치 조직체 활동에 변화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증언 수집을 통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874. 조정아 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과서』 (서울: 통일연구원, 2015), p. 69.

875. 위의 책, pp. 95~96.

876. NKHR2017000115 2017-11-20.

877. NKHR2020000029 2020-07-06.

(2) 정치행사 및 체제선전 동원

북한은 제5차 보고서에서 아동권리협약의 관련 규정들과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하여 아동의 교육 및 여가와 관련하여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2019년 UPR에서 북한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교육 거점뿐 아니라 북한 주민 누구나 문화적으로 휴식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각종 문화 편의시설을 개보수했다고 보고하였다.⁸⁷⁸ 아동의 발달권을 보장한다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각종 정치행사나 체제선전에 동원되고 있어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 등이 침해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정치행사 동원으로 인해 어린이들이 학습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진술하였다.⁸⁷⁹

표Ⅳ-5 정치행사 및 체제선전 동원 사례

증언내용	증언번호
선거철이 되면 '가창대'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을 동원하였음. 보통 선거 한 달 전부터 점심시간과 방과 후 집에 가기 전 종이로 만든 해바라기꽃을 들고 선거 관련 노래를 대열을 맞춰 부르고 다녔음.	NKHR2016000121 2016-07-26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 생일 준비에 동원되었는데, 한 달 정도 오후마다 마을을 돌며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였음.	NKHR2016000133 2016-08-09
군대 가는 사람들 환송 행사에 동원되었음.	NKHR2016000152 2016-09-06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때 꽃을 들고 선거유세를 진행하는 데 학생들이 동원됨.	NKHR2017000063 2017-07-31
김정일 생일, 김일성 생일 등 명절 때마다 꽃바구니 증정에 동원되며, 학교별로 혜산시 광장에 모여 결의모임에 참석함.	NKHR2017000078 2017-08-28

878_UN Doc. A/HRC/WG.6/33/PRK/1 (2019), paras. 56-57.

879_NKHR2018000121 2018-10-22.

증언내용	증언번호
태양상에 꽃을 놓고 환영사업을 함. 군대환영사업에도 동원됨. 김정일 서거일에도 동원됨.	NKHR2017000086 2017-09-25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탄생일 행사에 동원되어 노래를 부름.	NKHR2018000103 2018-10-01
정치행사에 동원될 경우 100% 참석해야 하며 아니면 반동으로 몰림.	NKHR2018000104 2018-10-01
2015년 졸업할 때는 명칭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었는데 졸업 후 1년이 지나니,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으로 바뀌었음. 김정일 서거일에 추모행사 공연을 했음.	NKHR2020000003 2020-05-15
2015년 소학고 시절 겨울(3.8 국제부녀절 추정)에 꽃이나 부채를 들고 열을 지어 걸으면서 노래를 부르고 30분 정도 도로를 도는 동원이 있었음.	NKHR2020000031 2020-08-03
2019년 탈북한 10대 후반 북한이탈주민은 육체적으로 피로한 노동동원과 달리 체제선전 관련해선 아이들이 정치라고 생각 안 하고 오히려 재미 있어함.	NKHR2020000029 2020-07-06
당에서 주관하는 행사에서 아리랑 같은 집단체조를 할 때는 보통 6개월 이상 연습하고 중학교 3학년 이상부터 동원되는데, 돈을 내고 선발되지 않는 부잣집 아이들과의 학습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함.	NKHR2019000023 2019-05-18
김일성 생일, 김정일 생일 등 명절에 보고대회에 동원되어서 박수치고, 수령님 노래 부르고, 애국가를 부름.	NKHR2019000045 2019-07-01
선거철에 학생들은 선거 독려 가창대 활동에 동원됨.	NKHR2020000022 2020-07-06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학생들은 국가기념일에 가두에 동원되어 행진하거나 선거일에 가창대 활동에 동원되고, 김정일 서거일 추모행사 공연을 한다. 집단체조에 동원된 경우 장시간 연습으로 인해 육체적 부담이나 학습 방해 등의 고충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후반의 한 북한이탈주민은 매년 4·15 태양절 행사 준비를 위하여 2월부터 추운 날씨 속에 주말 까지도 집단체조 연습을 했으며, 가끔은 밤늦게까지도 연습을 했다고 증언하였다.⁸⁸⁰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에 따르면 한여름

880_NKHR2016000123 2016-07-26.

무더위 속에서 3~4시간씩 연습을 하다가 쓰러지는 학생들도 있다고 한다.⁸⁸¹ 집단체조 아리랑 연습에 6개월 이상 동원되느라 학습을 하지 못했으며, 학교에 돈을 내고 선발되지 않은 부잣집 아이들과 학습격차가 생겼다는 증언도 있었다.⁸⁸² 학급의 반이 돈을 내고 정치행사에 빠지고, 반만 동원되었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⁸⁸³ 그런데 이 같은 동원을 의무로 생각하여 힘들어도 해야만 한다는 인식이 아직은 남아 있지만,⁸⁸⁴ 대체로 경제적인 여건이 되면 뇌물을 바쳐 정치행사에 빠지는 것이 목인되고 있다.

(3) 의무적 군사훈련

북한은 의무적 군사훈련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지속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급중학교 과정에서 ‘군사활동초보’라는 군사과목을 유지하고 있다. 제5차 보고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회피한 채, 고급중학교의 교육 목표에는 “군사복무, 사회생활, 대학생활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강한 심신 함양이 포함된다”고만 밝히고 있다.⁸⁸⁵ 고급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1주간 붉은청년근위대 야영훈련소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3학년 과정에서는 1주간 야외숙영을

881_ NKHR2016000151 2016-09-06.

882_ NKHR2019000023 2019-05-18.

883_ NKHR2019000068 2019-08-26.

884_ NKHR2016000143 2016-08-23; NKHR2016000152 2016-09-06; NKHR2018000103 2018-10-01; NKHR2018000104 2018-10-01; NKHR2019000023 2019-05-18; NKHR2019000053 2019-07-29.

885_ UN Doc. CRC/C/PRK/5 (2016), para. 198.

통해 초보적인 군사활동 능력을 기른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군사훈련에서는 사격, 총기 분해 및 조립, 포복, 대열, 군 규범 교육 등이 실시된다고 한다.⁸⁸⁶ 군사훈련 마지막 날에는 실탄을 쏜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⁸⁸⁷

다. 학생 노동동원

아동권리협약 제32조는 아동은 자신의 건강, 교육, 발달을 위협하는 노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헌법, 사회주의노동법, 아동권리보장법에서 아동노동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행 아동권리보장법(2014)은 아동의 나이를 “16살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2019)과 사회주의노동법(2015)에서도 노동가능연령을 16세로 규정하고 있어, 아동권리협약에 합치되지 않음은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북한은 2019년 UPR에서 모든 형태의 아동 노동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농장에서 수행하는 활동은 본질적으로 교육적이며 학교 교육과정에 부합한다고 답하였다.⁸⁸⁸ 실제로 북한의 교육과정을 보면, 초급중학교의 경우 나무심기, 그리고 고급중학교의 경우 나무심기와 생산노동을 포함시키고 있다.

886_NKHR2016000118 2016-07-26; NKHR2016000121 2016-07-26; NKHR2016000123 2016-07-26.

887_NKHR2020000038 2020-09-26.

888_UN Doc. A/HRC/42/10 (2019), para. 79.

표Ⅳ-6 학생들의 노동동원 실태

증언내용	증언번호
2014~2015년경 중학교 때 산림복구전투에 동원된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매년 여름에 동원됨. 등산을 하고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야 함. 뚱 푸기도 시켰는데, 빠지고 싶으면 돈을 내야 했음.	NKHR2020000029 2020-07-06
2019년 소학교 3, 4학년인 친구 동생이 동원 나갔다고 들음. 애들 대신 어머니들이 나가기도 하는데, 돈 있는 엄마는 다른 사람을 내보내기도 함. 선생님에게 돈을 내면 안 갈 수 있음. 고등중학교 때 오전엔 공부하고 오후에는 작업을 많이 감. 위원아파트 건설에서 돌을 나르고 철길 공사 등에 동원됨.	NKHR2020000001 2020-05-15
2019년 탈북한 20대 초반 북한이탈주민은 중학교 4학년(고등중 1학년) 때부터 모든 학생이 매년 의무적으로 농촌동원을 나가는데, 보통 새벽부터 했음. 매년 약 20일 정도 나가는데, 5월 말 모내기철 전에 나가서 김매기 끝나고 6월 중순에 들어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의무적이라서 정신적 부담감과 압박감이 심함.	NKHR2020000003 2020-05-15
2020년에 매년 있는 감자동원에 공부를 위해 200~300위안을 내고 자녀가 동원에서 빠지게 했음.	NKHR2020000038 2020-09-26
소학교 아이들은 노동동원이 많아 저녁에는 힘들어서 쓰러짐.	NKHR2020000012 2020-06-15
농번기에 학생들이 김매기에 동원되는데, 아프다든지 사정이 있는 학생들은 양해를 구하고 빠질 수 있음.	NKHR2020000022 2020-07-06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공식적으로 정해진 교육과정 외에도 방과 후나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각종 작업에 수시로 동원하고 있다. 봄에는 김매기와 모내기에, 가을에는 감자캐기에 동원된다.⁸⁸⁹ 매년 의무적으로 나가는 농촌동원은 새벽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육체적으로 힘들고,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 정신적인 부담도 크다고 한다.⁸⁹⁰ 또한 학생들은 모래나르기, 자갈나르기와 같은 건설작업이나 벌목, 철길 공사에

889_NKHR2017000002 2017-04-10; NKHR2017000008 2017-04-10; NKHR2017000029 2017-06-05; NKHR2018000008 2018-03-12; NKHR2018000041 2018-06-04; NKHR2018000121 2018-10-22; NKHR2019000023 2019-05-18; NKHR2019000045 2019-07-01.

890_NKHR2020000003 2020-05-15.

동원되기도 한다.⁸⁹¹ 몸이 아픈 경우엔 동원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⁸⁹² 동원에서 빠지려면 대부분 돈을 내는 것이 관행이 되었다.

한편, 소학교 학생에게 노동동원이 부과되어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들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⁸⁹³ 그렇기에 소학교 학생이 노동에 동원되면 학생 대신 어머니가 대신 나가고,⁸⁹⁴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돈을 내고 빠지거나⁸⁹⁵ 인력을 사서 아동 대신 동원에 나간다는 것이다. 아동노동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북한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소학교 학생들의 노동에 동원되는 상황이다.

라. 특별보호조치 필요 아동

(1) 강제송환된 아동에 대한 처우

아동권리협약 제37조는 어떠한 아동도 고문, 가혹한 취급이나 처벌, 불법체포 또는 자유의 박탈을 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9조는 국가는 고문, 학대, 착취 등의 피해 아동의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891_NKHR2016000133 2016-08-09; NKHR2018000103 2018-10-01; NKHR2018000123 2018-10-22; NKHR2019000020 2019-05-07; NKHR2019000058 2019-07-29; NKHR2019000083 2019-09-25; NKHR2020000001 2020-05-15.

892_NKHR2020000022 2020-07-06.

893_NKHR2020000012 2020-06-15.

894_NKHR2020000001 2020-05-15.

895_NKHR2020000038 2020-09-26.

서 관련 규정들을 두고 있으며, 아동권리보장법(2014)에서도 사법분야에서의 아동권리보장의 기본요구, 아동에 대한 형사책 임추궁 및 사형 금지, 사회적교양처분의 적용, 사건취급처리에서 아동의 인격존중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47조~제49조 및 제 51조).

북한은 제5차 보고서에서 “불법월경하였다가 귀환한 아동들은 교양조치의 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⁸⁹⁶ 즉, 불법월경의 동기와 목적을 조사한 다음 아동권리보장법, 출입국법, 형법 등의 관련 규정들을 숙지하도록 함으로써 법에 대한 준수를 제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⁸⁹⁷ 그리고 학교 측은 그런 아동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며, 관할 인민위원회는 그러한 아동을 양육하면서 부모가 직면 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동의 부모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한다고 설명하였다.⁸⁹⁸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심층면접 조사 결과 중국에서 송환된 아동들이 취조과정에서부터 폭언, 폭행 등 가혹행위와 고문을 당하며, 구금 중에는 구타, 중노동, 배고픔 등에 시달린다는 증 언들이 일부 수집되었다.⁸⁹⁹ 북한이탈주민 ○○○은 2016년 누 나가 어린 조카와 함께 탈북하다 붙잡혀 강제송환되었는데, 누 나가 보는 앞에서 조카를 구타하며 누나의 자백을 유도했다고 증언하였다.⁹⁰⁰

896_ UN Doc. CRC/C/PRK/5 (2016), para. 239.

897_ *Ibid.*

898_ *Ibid.*

899_ NKHR2016000121 2016-07-26.

900_ NKHR2018000109 2018-10-06.

한편, 탈북 후 송환된 아동이 교양처분만 받고 풀려났다는 증언들도 수집되었다.⁹⁰¹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미성년자는 성인과 같이 구류장에 구금될 수 없어 927상무로 보내진다고 증언하였다.⁹⁰² 최근엔 강제송환된 아동 관련 사건이 수집되지 않아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며, 기존에 가해졌던 교양처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2) ‘꽃제비’

아동권리협약 제20조는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정환경에 있는 것이 스스로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아동권리보장법(2014)에서 “부모 또는 후견인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은 육아원과 애육원, 학원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키운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1조).

북한은 제5차 보고서에서 ‘꽃제비’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만, 자연재해, 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아동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좋은 생활 환경 및 학습환경을 제공한다고만 설명하고 있다.⁹⁰³ 마찬가지로 2019년 UPR에서도 부모가 없는 아동, 벽지와 재해지역에

901_NKHR2016000112 2016-07-26; NKHR2016000123 2016-07-26.

902_NKHR2016000143 2016-08-23.

903_UN Doc. CRC/C/PRK/5 (2016), para. 109.

있는 아동의 양육과 교육을 위한 당사국의 시책을 주목할 만한 업적 중 하나로 들고 있다.⁹⁰⁴

꽃제비가 고아들을 위한 애육원과 중등학원에 어느 정도 수용되고 양육과 교육의 혜택을 받는지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북한 당국은 꽃제비들을 보호·관리한다는 취지 아래 단속에 걸린 꽃제비들을 ‘구호소’, ‘숙박소’, ‘소년교양소’, ‘방랑자 숙소’, ‘구제소’ 등으로 불리는 수용시설로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꽃제비 수용시설이 건축되어 꽃제비가 감소했다는 증언이 있는 반면에,⁹⁰⁵ 여전히 꽃제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증언도 수집되어 지속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 000은 2015~2016년경에 서해지구(평안남도에 위치)와 동해지구에 방랑자 수용시설을 신축한 이후 꽃제비가 감소했지만 남포시는 2019년 대북제재로 인해 꽃제비가 증가했다고 증언하였다.⁹⁰⁶ 여전히 국경 지대 및 지방의 역전이나 장마당을 중심으로 꽃제비들이 종종 목격된다고 한다. 함경북도 청진시에 거주했던 북한이탈주민 000은 2019년에 역전, 골목에 꽃제비가 많았으며, 세수도 안 하고 여름에도 겨울 동복을 입고 다니는 등 행색이 한심했다고 증언하였다.⁹⁰⁷ 꽃제비는 시장이나 도로에서 목격되었으며, 구걸하거나 음식을 훔쳐간다는 증언도 있었다.⁹⁰⁸

904_UN Doc. A/HRC/WG.6/33/PRK/1 (2019), para. 65.

905_NKHR2020000012 2020-06-15.

906_NKHR2020000045 2020-10-31.

907_NKHR2020000029 2020-07-06.

908_NKHR2020000048 2020-11-28.

한편, 꽃제비들이 수용시설에 수용이 되어도 오히려 시설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 2019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시설에서의 생활이 ‘꽃제비질’보다 더 힘들어 떠돌이 생활이 낫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하였다.⁹⁰⁹ 시설과 환경이 열악하고, 규율이 엄격한 데다 식사가 부실해 결국 도망치는 경우가 많다는 이전의 증언에 비추어볼 때⁹¹⁰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마. 평가

2019년 제3차 UPR 당시 북한이 제출한 국가보고서에는 아동에 대한 폭력, 아동착취, 아동빈곤 문제를 해소할 제도적 장치나 실현 방안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2020년 조사에 따르면, 북한 아동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적,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보건·복지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북한 당국은 장애아동을 위한 의료시설과 재활시설을 확충하고 있다고 보고하지만, 균질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장애 불이익이 생길 것을 우려해 장애를 숨긴다는 증언은 북한 당국이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심을 기울여야

909_NKHR2020000029 2020-07-06.

910_NKHR2016000143 2016-08-23; NKHR2016000157 2016-09-20; NKHR2018000041 2018-06-04; NKHR2018000093 2018-08-27; NKHR2018000128 2018-11-19; NKHR2019000047 2019-07-01; NKHR2019000048 2019-07-01; NKHR2019000052 2019-07-20; NKHR2019000064 2019-08-17.

함을 의미한다. 또한, 북한 아동들은 과도한 정치사상교육을 받고 있으며, 정치행사 및 체제선전에 동원되고 있어 이해와 관용, 평화와 연대를 교육받고 성장해야 하는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특히 아동에 대한 모든 노동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북한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소학교 학생들도 노동에 동원되고 있다.

고아들을 위한 시설 현대화 및 물자 우선 배급을 실시하고 있는 등 일부 긍정적인 변화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최근에 꽃제비가 종종 목격된다는 증언에 비추어보면, 북한 당국은 이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가족과 재결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3

장애인

장애인권리협약은 당사국의 일반의무에 대해 “당사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차별 없이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북한은 2013년 7월 3일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고 2016년 12월 6일 협약을 비준하여 마침내 장애인권리협약의 당사국이 되었다. 2018년 12월에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최초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가. 장애인 정책 및 장애인 규모

(1) 장애인 정책

북한 당국은 장애인 차별대우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 및 우려를 인식하여 2003년 6월 장애자보호법을 채택하였다. 장애자보호법(2013)은 “장애자의 회복 치료와 교육, 문화생활, 노동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장애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생활환경과 조건을 마련하여 주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이 법의 제2조에서는 장애인을 “육체적, 정신적

기능이 제한 또는 상실되어 오랜 기간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받는 공민”으로 규정하고 “국가는 장애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그의 사회정치적 권리와 자유, 이익을 건강한 공민과 똑같이 보장하도록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보호법(2013)에는 장애자의 회복치료(제2장), 장애자의 교육(제3장), 장애자의 문화생활(제4장), 장애자의 노동(제5장) 등에 관한 규정들이 명시되어 있다. 이외에도 사회보험법, 사회주의노동법, 사회보장법 등에도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장애인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단체로는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이 활동하고 있다.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은 장애인에 대한 조사 수행, 보건과 생활조건의 개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도의 제고를 위한 행동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각 도와 시·군에 산하 위원회를 두고 있다.⁹¹¹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은 보건성이 임직원의 급여 및 기반시설 경비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비정부기구(NGO)로 구분하고 있다.⁹¹² 또한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산하에 조선농인협회, 조선장애어린이회복원, 조선맹인협회, 조선장애자후원회사, 조선장애자체육협회, 조선장애자예술협회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⁹¹³ 또한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은 2008년 7월 베이징에 처음으로 대표부를 개설하였다. 그리고 2015년 선양대표부를 개

911_CRC,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The Combined Third and Fourth Periodic Reports of States Parties Due in 2007: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CRC/C/PRK/4 (2008), para. 134.

912_Katharina Zellwege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a Changing North Korea,” *Shorenstein APARC Working Paper* (2014).

913_『노동신문』, 2012.9.30; 『조선중앙통신』, 2014.12.16.

설하였고 리분희 전 조선장애자체육협회 서기장이 초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⁹¹⁴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최초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실행계획(Action Plan) 2008~2010, 실행계획 2013~2015, 실행계획 2016을 수립·시행하였으며 장애인권리보호를 위한 전략계획 2018~2020을 시행하였다.⁹¹⁵

(2) 장애인 규모

북한 당국은 장애자보호법(2013)에서 “국가는 장애자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며 장애정도를 정확히 평가하고 그 기준을 바로 정하도록 한다”(제5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자보호법에 따라 북한 당국 차원에서 장애인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얼마나 자주 수행하고 있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1999년 ‘조선장애자지원협회’가 실시한 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북한에는 당시 전체 인구의 3.41%에 해당하는 76만 3,237명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적장애인이 29만 6,518명(38.8%)으로 가장 많았고 청각장애인 16만 8,141명, 시각장애인 16만 5,088명, 중증장애인 6만 8,997명, 정신장애인 3만 7,780명 등으로 나타났다. 평양의 경우 1.75% 가량이 장애인으로 조사됐다. 거주지역은 농촌지역(35.4%)보다 도시(64%)에 더 많이 살았다.⁹¹⁶

914_ 『미국의 소리』, 2015.5.13.

915_UN Doc. CRPD/C/PRK/1 (2018), para. 30.

916_ 『연합뉴스』, 2006.4.9; 『연합뉴스』, 2006.11.23.

북한은 2008년 인구총조사에서 5세 이상을 대상으로 장애인과 관련해 장애정도, 연령, 성별, 지역별(농촌, 도시) 분포 등의 조사항목을 추가하였다. 2009년 발표된 북한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시각장애 51만 9,573명(2.4%), 청각장애 37만 4,452명(1.73%), 보행장애 53만 7,496명(2.48%), 인지능력장애 33만 4,852명(1.54%)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여성장애비율이 62%로 남성 32%에 비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⁹¹⁷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은 중앙통계국과 함께 2011년 11월 3개도(평안남도, 황해남도, 강원도)에서 2천4백여 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장애인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⁹¹⁸ 이에 근거하여 북한은 제5차 아동권리협약 이행보고서에서 15세 미만 장애아동의 비율은 0.9%라고 언급하고 있다.⁹¹⁹ 2012년 제14회 런던 장애인 올림픽(8월 30일~9월 10일)에 참가한 북한 대표단의 김문철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통해 동 조사결과 의 일부내용이 밝혀졌다. 동 조사에 따르면 시력, 청력, 지체(사지), 정신(지능 포함), 복합장애 등 5대 부문의 장애인 인구는 5.8%로 집계되었다.⁹²⁰ 2014년 4개도(함경남도, 강원도, 평안북도, 평안남도)에서 실시한 장애표본조사 결과는 전체 인구의 6.2%인 약 150만 명이 장애를 갖고 있으며, 성별로는 여성의

917_ UN Doc. A/HRC/37/56/Add.1 (2018), para. 10.

918_ 『노동신문』, 2012.9.30.

919_ UN Doc. CRC/C/PRK/5 (2016), para. 135.

920_ 『연합뉴스』, 2012.9.10. 북한은 2014년 제2차 UPR을 위해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장애인 비율이 5.8%라고 밝히고 있다. National Report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5 of the Annex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6/21.

비율이 55.1%로 남성의 44.9%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⁹²¹ 그리고 독일에 본부를 둔 대북 구호단체 ‘투게더-함흥’이 2015년 8월 7일부터 평양에서 ‘제7회 국제 농아모임’을 개최했는데, 약 35만 명의 농아인들이 등록되어 있다고 한다.⁹²²

2018년 12월 북한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한 최초 보고서는 북한의 장애인 규모 및 특성에 대한 가장 최신 자료를 반영하고 있다.⁹²³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북한의 장애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5.5%를 차지한다. 남성의 경우 5.1%, 여성의 경우 5.9%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60세 이상 여성 고령 인구의 장애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전체 인구의 2.5%로 가장 많았고, 청각장애(1.3%), 시각장애(1.2%), 언어장애(0.4%), 정신장애(0.4%), 지능장애(0.3%)가 뒤를 이었다. 아동(0~16세) 장애인구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1.8%로 남아의 경우 2.2%, 여아의 경우 1.4%였다.

표 IV-7 장애인 성별 및 연령별 비율(2016년 기준) (단위: %)

연령(세)	남성	여성	합계
0~4	0.4	0.2	0.3
5~6	0.6	0.4	0.5
7~16	1.2	0.8	1.0
17~59	5.4	4.2	4.8
60 이상	13.3	19.1	16.9
합계	5.1	5.9	5.5

출처: UN Doc. CRPD/C/PRK/1.

921_UN Doc. A/HRC/37/56/Add.1 (2018), para. 10.

922_『미국의 소리』, 2015.8.13.

923_UN Doc. CRPD/C/PRK/1 (2018), Annex.

나. 장애인 권리 실태

(1) 훈련 및 재활 실태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훈련 및 재활에 대해 “당사국은 장애인이 최대한의 독립성, 완전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및 직업적 능력 그리고 삶의 전 분야에서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동료집단의 지원을 포함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6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도 장애자보호법(2013)에서 “국가는 장애자의 회복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전문 또는 종합적인 장애자회복치료기관을 조직한다”(제11조), “보건지도기관과 해당기관, 기업소는 교정기구, 삼륜차, 안경, 보청기 같은 보조기구를 계획적으로 생산 보장하여야 한다”(제14조)고 훈련 및 재활 규정을 두고 있다.

북한 당국은 장애자보호법에 따라 장애인의 훈련 및 재활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선 2013년 3월 평양에 지능장애와 사지장애를 겪는 어린이들을 위주로 장애에 대한 조기 발견과 회복을 위한 ‘조선장애어린이회복원’을 건립하였다.⁹²⁴ 그리고 2013년 12월 6일 평양에 장애인들에게 종합적인 기능회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수기능회복원’이 개원되었다. 동 회복원은 각 도, 시, 군병원들에 개설되어 있는 기능장애인 치료를 위한 물리치료과의 모체병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⁹²⁵ 또

924_ 『노동신문』, 2012.9.30; 『조선중앙통신』, 2013.3.29; 이규창 외,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증진 방안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13), p. 69.

925_ 『조선신보』, 2013.12.17; 『조선중앙통신』, 2014.12.16.

한 평양시 동대원구역에 장애인 운동선수를 위한 ‘동대원장애 자운동관’을 건설하였다.⁹²⁶

북한에도 함흥교정기구공장, 송림교정기구공장, 평양영예군 인교정기구수리공장 등 장애인을 위한 교정기구 생산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함흥교정기구공장에서는 폴리프로필렌수지로 교정기구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교정기구공장의 직원들이 이동수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⁹²⁷ 그렇지만 의족이나 의수 등 장애인 용품이 비싸기 때문에 일반 장애인들이 구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⁹²⁸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 최초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일련의 ‘실행계획’을 통해 장애인 교정기구 및 수술기구의 현대화, 장애인에 대한 직업교육 증진, 장애아동을 위한 원거리 교육 체계 구축 등 장애인의 훈련 및 재활을 위한 사업을 실시해왔다.⁹²⁹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면접조사 결과 실제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교육이나 재활 프로그램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게 대다수의 증언이다.⁹³⁰

926_ 『통일뉴스』, 2016.2.27.

927_ 『조선신보』, 2013.5.23; 이규창 외,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증진 방안 연구』, p. 71; 『연합뉴스』, 2014.12.3.

928_ NKHR2015000131 2015-09-22.

929_ UN Doc. CRPD/C/PRK/1 (2018), para. 30.

930_ NKHR2018000017 2018-04-09; NKHR2018000018 2018-04-09; NKHR2018000101 2018-10-01; NKHR2018000007 2018-03-12; NKHR2018000121 2018-10-22; NKHR2018000114 2018-10-13.

(2) 적절한 생활수준 및 고용 실태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당사국은 적절한 수준의 의식주를 포함하여 장애인 자신과 그 가족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생활조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하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8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장애인들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을 위한 공장을 운영하면서 배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북한 내에서 장애인은 우대를 받는 영예군인과 일반 장애인으로 구분되는데, 공장의 경우에도 영예군인 공장과 일반 장애인 공장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⁹³¹ 왜소증, 소아마비 등의 장애인들은 지역 편의봉사시설(편의봉사관리소)에서 도장 만드는 일, 시계, 자전거, 신발, 텔레비전 등을 수리하는 일 등의 경노동을 하며, 일부 시각장애인들은 기타를 연주하여 돈벌이를 하기도 한다.⁹³² 북한은 2007년 평양에 재봉작업장, 시계수리점, 머리방과 미용시설을 갖춘 보통강 종합편의를 개설하여 장애인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⁹³³ 2017년까지 평양에 거주한 북한이탈주민 ○○○은 평양에 장애인들만 다니는 공장이 있었고, 실제로 운영되어 단추나 간단한 경첩, 지퍼 등을 만든다고 들었다고 증언하였다.⁹³⁴

931_ 『데일리NK』, 2012.8.28; 이규창 외,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증진 방안 연구』, pp. 71~72.

932_ NKHR2015000036 2015-02-10; NKHR2017000007 2017-04-10.

933_ Katharina Zellwege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a Changing North Korea,” p. 21.

934_ NKHR2020000047 2020-11-28.

북한이 2018년 12월 제출한 장애인권리협약 최초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17~59세 장애인구 가운데 58.4%(남성 61.6%, 여성 54.7%)가 직업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⁹³⁵ 현재 북한에는 시각장애인이 근무하는 전용 공장이 북한 전역 60개 이상 시군구에 설립되어 있다.⁹³⁶

표Ⅳ-8 영예군인 공장 운영 실태

증언내용	증언번호
양강도 해산시에 영예군인 공장이 있음. 과거 각종 그릇을 생산했으나, 현재는 생산품 없음.	NKHR2015000043 2015-02-24
함경북도 길주군에 영예군인이 운영하는 통신기계공장이 있으며 배급도 실시됨. 다만 정상 배급은 아니고, 연 최대 6개월치 정도 배급됨.	NKHR2015000053 2015-03-10
양강도 해산시 연봉1동, 연두동, 송봉동, 위연동에 영예군인 공장이 있음. 현재 전기, 원료 문제로 제대로 가동되지 않음.	NKHR2015000130 2015-09-22
함경북도 회령시 성천동에 맹인 영예군인 공장이 있음.	NKHR2016000099 2016-06-14
양강도 갑산군에 영예군인 공장이 있었으며, 가동되기도 하고 중단되기도 함.	NKHR2017000046 2017-07-03
양강도 갑산군에 영예군인 공장이 있었음.	NKHR2017000050 2017-07-03
함경북도 무산군 남산구에 영예군인 공장이 있었음.	NKHR2018000029 2018-05-08
양강도 해산시 연봉동에 영예군인 공장이 있었음.	NKHR2018000029 2018-05-08

935_UN Doc. CRPD/C/PRK/1 (2018), Table 5.

936_UN Doc. CRPD/C/PRK/1 (2018), para. 169.

표Ⅳ-9 일반 장애인 공장 운영 실태

증인내용	증인번호
2014년 삼지연 리명수 노동자구에 장애인들을 위한 경노동직장이 있었으나 운영되지는 않음.	NKHR2016000030 2016-03-08
함경북도 청진시 수성구역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공장이 있음.	NKHR2013000036 2013-02-19
함경북도 회령시 성천동에 장애인을 위한 경노동직장이 있음. 현재 제대로 운영되지 않음.	NKHR2013000095 2013-05-14 NKHR2015000131 2015-03-22
함경북도 무산군에 장애인 공장이 있었으나 현재 기자재가 없어 유지되지 않고 있음.	NKHR2013000116 2013-06-11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노동직장이 있음.	NKHR2013000186 2013-09-17
양강도 삼수군에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공장들이 있음.	NKHR2016000083 2016-05-31
평양시 축전동에 중견기업 규모의 장애인 공장이 있음.	NKHR2016000170 2016-11-01
함경남도 원산에 장애인을 위한 경노동 사업소가 두 곳 있었으나, 실제 장애인은 없고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 적만 걸어 놓는 데 활용함.	NKHR2017000007 2017-04-10
함경북도 청진시 수성동에 시각장애인 공장이 있었음. 규모는 크지 않음.	NKHR2018000016 2018-10-01

북한 당국은 장애인들의 적절한 생활유지를 위해 일부 지원을 하고 있다. 2014년 탈북한 20대 후반 여성은 어머니가 한 쪽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는데, 보조금은 없었지만 동사무소에서 하루 300g씩 배급이 나왔으며, 달마다 지급되었다고 한다.⁹³⁷ 인근에 거주하던 지체장애인에게 당국 차원에서 쌀도 주고 물품도 가끔 한 번씩 주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있다.⁹³⁸ 그러나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국가적으로 배려 내지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가족 부양으로 생활하거나, 아니면 구걸을 하며 살아

937_NKHR2018000096 2018-08-27.

938_NKHR2018000094 2018-08-27.

가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질병이나 장애로 장기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한 별도의 국가적 지원은 없다고 증언하였다.⁹³⁹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혜산시에서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은 직업이 없어서 가족들이 먹여 살렸고, 따로 연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⁹⁴⁰ 또한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장애인에게 보조금이 있는 것 같지 않다고 증언하였다.⁹⁴¹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시동생이 시각장애인이었는데 국가에서 받는 지원이 전혀 없었고 가족이 생계를 책임졌다고 증언하였다. 2017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생계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장애인이나 영예군인들이 장마당에 많으며, 강매를 하거나 행패를 부리기도 한다고 증언하였다.⁹⁴²

국가 차원에서의 장애인 대우나 지원은 대개 영예군인을 대상으로 한다. 영예군인들에 대한 혜택과 지원은 그들의 급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영예군인에게는 국가의 배려가 크다고 증언하였다. 영예군인이 결혼할 때 결혼식과 집, 혼수 등 재산을 국가에서 다 해주며, 결혼식에는 도당, 시당 책임비서도 와서 매우 잘 해준다고 증언하였다.⁹⁴³

북한은 영예군인을 고용하는 공장을 운영한다. 2019년 탈북

939_NKHR2020000007 2020-05-16.

940_NKHR2020000014 2020-06-15.

941_NKHR2020000048 2020-11-28.

942_NKHR2017000028 2017-06-05.

943_NKHR2020000005 2020-05-15.

한 북한이탈주민 ○○○은 자신이 영예군인으로 1987년 12월 제대하여 1988년 1월부터 영예군인 공장에 다녔다고 증언하였다.⁹⁴⁴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영예군인 수지용품공장이 원산시 남산동에 있다고 증언하였다.⁹⁴⁵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남포에 영예군인 공장이 있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이곳에서 가구와 우산을 생산하였다고 증언하였다.⁹⁴⁶

급수가 높은 영예군인들은 많은 혜택과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영예군인은 급수에 따라 보장이 다른데, 3급 같은 낮은 영예군인은 혜택이 없다. 그러나 특급영예군인이 결혼하면 아내는 일을 하지 않고 남편만 돌보게 한다고 증언하였다.⁹⁴⁷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영예군인들에게는 한 달에 한 번 수산물 1~2kg을 배분하며, 특급영예군인은 조금 더 대우한다고 증언하였다.⁹⁴⁸

이외에도 영예군인들이 국가에서 의식주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는 증언이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부친이 영예군인으로 감자수확철에 감자 배급을 받았으며 양은 매년 다르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증언하였다.⁹⁴⁹ 북한이탈주민 ○○○은 군사복무

944_NKHR2020000019 2020-07-04.

945_NKHR2020000012 2020-06-15.

946_NKHR2020000045 2020-10-13.

947_NKHR2020000014 2020-06-15.

948_NKHR2020000045 2020-10-31.

949_NKHR2017000018 2017-04-10.

중 실명한 영예군인에게 아파트, 전화, 배급 등 우선적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한다.⁹⁵⁰ 함경남도 출신 북한이탈주민 ○○○은 학교에서 영예군인들을 위해 현금이나 장갑 또는 옷 등의 지원물자를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증언하였다.⁹⁵¹ 양강도 혜산시 출신 북한이탈주민은 2015년 혜산 배급소에서 일반 인민은 제외하고 영예군인에게만 식량을 배급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하였다.⁹⁵²

그러나 영예군인에 대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실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증언도 많았다. 상당수의 영예군인에 대한 지원은 안정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영예군인의 급수에 따라 지원규모와 내용이 다르다. 급수가 낮은 영예군인들에게는 지원 규모가 크지 않고, 해마다 일정치도 않으며,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2015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다리를 다쳐서 제대한 장애인이 직장을 찾아서 들어간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국가에서 영예군인에게 특별히 주는 것은 없었던 것 같다고 증언하였다.⁹⁵³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영예군인 지원 체계는 되어 있지만 형식으로만 남아 있다고 증언하였다.⁹⁵⁴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영예군인에게 나라에서 따로 보장해주는 것이 거의 없다고 증언하였다.⁹⁵⁵

950_NKHR2017000046 2017-07-03.

951_NKHR2016000135 2016-08-23.

952_NKHR2016000041 2016-04-05.

953_NKHR2020000031 2020-08-03.

954_NKHR2020000007 2020-05-16.

955_NKHR2020000014 2020-06-15.

아버지가 영예군인이었던 함경북도 출신 북한이탈주민은 영예군인에게 실제로 지원되는 물자 또는 보조금은 지극히 형식적이었다고 말하였다.⁹⁵⁶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고모 아들이 군복무 중 눈을 다쳐 영예군인이 되었는데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게 전혀 없었다고 증언하였다.⁹⁵⁷ 2016년 탈북한 30대 중반 남성은 부친이 영예군인이었는데, 영예군인 배급이라고 하여 강냉이나 감자를 배급받았다고 한다. 감자 배급의 경우 1년에 한 번 감자철에 이루어지는데, 50kg이 주어질 때도 있고 100kg이 주어질 때도 있었으며, 배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해도 있었다고 한다.⁹⁵⁸ 2019년 탈북한 20대 후반 남성은 군복무 당시 나무를 하다가 허리를 다쳐 강제제대 당했는데 보조금으로 한 달에 50원을 받는 것 외에 다른 보장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⁹⁵⁹

영예군인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거나, 영예군인 등록 시 혜택보다 불이익이 커서 등록을 하지 않는다는 증언도 있다. 2018년 탈북한 30대 중반 여성은 사촌이 군복무 중 눈을 다쳐 영예군인이 되었는데 나라에서 해주는 것이 없었다고 한다.⁹⁶⁰ 2018년 탈북한 30대 초반 여성은 남편이 군복무 중 다쳤지만 영예군인으로 등록하지 않아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영예군인으로 등록하면 배우자가 공식 직장에 속해서 일을 해야 하고 그

956_NKHR2016000046 2016-04-19.

957_NKHR2018000058 2018-07-02.

958_NKHR2017000018 2017-04-10.

959_NKHR2019000065 2019-08-17.

960_NKHR2018000058 2018-07-02.

렇게 되면 장마당에서의 사경제 활동에 지장이 초래된다며 시 어머니가 등록을 말렸기 때문이라고 증언하였다.⁹⁶¹ 2019년 탈북한 50대 초반 여성은 아들이 군대에 갔다가 실명을 당해 제대하였는데 영예군인이 되더라도 특별한 우대가 없기 때문에 영예군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⁹⁶²

위험한 곳에서 근무하다가 장애를 입은 영예군인에게는 보다 많은 지원이나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탈북한 20대 초반 여성의 아버지는 직업군인이었는데 유해물질을 다루는 곳에서 복무를 하다가 장애를 입어 2011년 특수영예군인으로 제대하였다고 한다. 증언자에 따르면 특수영예군인이 되면 자녀의 학교비용이 면제되고 명절공급을 받으며 일정기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해준다고 한다. 이 여성은 아버지가 일년에 네 번 명절공급을 받고, 일년에 한 번 도병원에서 40일 동안 치료요양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다.⁹⁶³

북한은 장애인보호법(2013)에서 “교육지도기관과 해당기관은 장애자의 학력, 연령,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안마사, 컴퓨터 타자수, 미술원, 설계원양성소와 직업학교 같은 것을 조직 운영할 수 있다”(제22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에 따라 북한은 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2012년 5월 2일 평양에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 직업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조선

961_NKHR2018000072 2018-07-30.

962_NKHR2019000074 2019-08-26.

963_NKHR2019000071 2019-08-26.

장애자기능공 양성반'이 개설되었다. 동 양성반은 1년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농아들과 절단장애인을 비롯한 신체장애인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⁹⁶⁴ 또한 영국의 대북 지원 민간 단체인 '두라 인터내셔널'은 2016년 5월 2일 평양에 장애인 학생을 위한 디자인 학교를 개설하기로 조선장애자보호연맹과 합의하였다.⁹⁶⁵

다. 가정 및 지역사회 동참 노력 실태

(1)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에의 동참 위반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 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가지며, 특정한 주거형태를 강요받지 아니한다”(제19조 가.)고 거주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별지원을 포함하여, 장애인은 가정 내 지원서비스, 주거 지원서비스 및 그 밖의 지역사회 지원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제19조 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대표적 인권유린 사례는 거주지 선택과 지역사회 통합을 방해하는 왜소증 장애인에 대한 격리 지역의 운영이다. 북한이탈주민 상당수는 왜소증 장애인을 격리하는 지역이 존재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이 김

964_ 『조선중앙통신』, 2012.5.2; 『조선신보』, 2012.5.9; 『조선신보』, 2013.5.23; 『에이블뉴스』, 2013.8.9; 이규창 외,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증진 방안 연구』, p. 70.

965_ 『미국의 소리』, 2015.12.29.

형직군(구 후창군) 연하리이다.⁹⁶⁶ 그러나 일반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왜소증 장애인을 목격하였다는 사례도 수집되고 있다. 함경북도 나선시에 거주했던 북한이탈주민 ○○○은 2016년 나선 시내에서 왜소증 장애인과 척추장애인을 목격했다고 증언하였다.⁹⁶⁷ 이러한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일부 왜소증 장애인 격리촌이 운영되지만 모든 왜소증 장애인을 격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속적인 증언을 통해 왜소증 장애인 격리에 대한 보다 분명한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표Ⅳ-10 왜소증 장애인 격리 관련 증언

증언내용	증언번호
왜소증 장애인의 격리수용 및 강제 불임수술이 시행되었음.	NKHR2014000004 2014-02-18
왜소증 장애인들을 따로 살게 하며, 아이를 못 낳게 통제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 있음.	NKHR2014000055 2014-05-20
양강도 김형직군 연하리에서 왜소증 장애인을 목격했는데, 이들은 주민부락에서 살지 못하고, 산에 깊이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살았음.	NKHR2014000076 2014-06-17
장애인의 후대를 남기지 않도록 하고, 후창군에 밀집해서 퍼지지 않도록 했다고 함.	NKHR2014000137 2014-09-12
2015년 탈북한 20대 여성은 이모부를 따라 부업지 밭에 다녀오는 길에 후창에서 왜소증 격리지역을 목격함.	NKHR2017000131 2017-12-18

966_ NKHR2015000074 2015-04-07; NKHR2015000106 2015-05-19; NKHR2016000083 2016-05-31.

967_ NKHR2016000186 2016-12-13.

표Ⅳ-11 왜소증 장애인 비격리 관련 증언

증언내용	증언번호
어렸을 때부터 2015년 탈북시점까지 함경북도 회령시 산업동에 왜소증 장애인이 거주했음.	NKHR2015000141 2015-10-06
2017년 탈북한 20대 여성은 후창에 격리수용 구역이 있다는 말을 들었으나 혜산시에서 왜소증 장애인을 목격함. 친척이 있으면 거주를 허용하는 것으로 새로운 변화라고 생각함.	NKHR2017000022 2017-05-08
함경북도 청진시 장마당에서 왜소증 장애인이 CD-R 장사를 하는 등 왜소증 장애인을 많이 목격했음.	NKHR2014000010 2014-03-04
왜소증 장애인을 많이 목격함.	NKHR2014000027 2014-04-01
인민반 내에 왜소증 장애인이 있었는데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었음. 양강도 혜산시에는 왜소증 장애인이 여럿 살고 있음.	NKHR2014000075 2014-06-17
고모가 사는 양강도 보천군에서 이웃집에 왜소증 장애인(남성)이 사는 것을 목격했음.	NKHR2014000131 2014-08-26

장애인의 거주지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또 다른 사례는 장애인에 대한 거주지역 제한이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특수지역인 평양과 외국인의 출입이 잦은 남포, 개성, 청진 등에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장애인들이 외국인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준다는 이유로 특기자를 제외하고는 장애인들이 평양이나 외국인들의 방문이 잦은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⁹⁶⁸ 북한이탈주민 ○○○은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한국에도 장애인이 많은 것 같은데 왜 평양에는 없는가’라는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다.⁹⁶⁹

968_ NKHR2014000078 2014-07-01.

969_ NKHR2015000176 2015-12-15.

(2) 가정과 가족에 대한 존중 위반

장애인권리협약은 “적령기에 있는 모든 장애인이 장래 배우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 아래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제23조 제1항 가.)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이 자녀의 수와 출산계획을 자유롭게 수립하고 책임 있게 선택할 권리를 인정”(제23조 제1항 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인도적 차별 대우와 가정 및 가족에 대한 존중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인권 침해행위로 왜소증 장애인에 대한 불임수술을 들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2014년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왜소증 장애인들이 강제로 불임수술을 당했다고 증언하였다.⁹⁷⁰ 그러나 이에 대한 불만과 항의가 계속됨에 따라 최근에는 자녀를 낳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이탈주민 면접조사 결과 장애인에 대한 강제 불임수술 관련 증언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보호자의 승인 없이는 왜소증 장애인에 대한 강제불임 수술을 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⁹⁷¹

(3) 이동성 실태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에 대하여 최대한 독립적인 개인적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제20조)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한 이후 2013년 11월

970_NKHR2015000171 2015-12-01.

971_NKHR2019000084 2019-10-05.

장애자보호법을 개정하였는데, 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건물과 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⁹⁷²

북한은 순안국제공항을 개축하면서 화장실에 장애인을 배려하는 공간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한 시설을 제외하고 북한은 경제난으로 인해 장애인의 이동성을 보장하는 조치들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7년 5월 북한을 방문한 유엔장애인권리특별보고관은 과학기술센터, 평양순안공항(입국장), 평양초등학교 등 새로운 공공건물조차 장애인의 접근이 어렵다고 확인하였다.⁹⁷³ 또한 주거시설, 공공교통시설에 대한 접근상 제약들이 장애인들의 일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특별보고관에게 2017년 5월 이래 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양에서 무료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건설감독성 산하 국가건설위원회가 지침을 정했다고 보고하였다.⁹⁷⁴ 그러나 특별보고관은 북한이 최근의 접근기준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북한이 국제적 기준에 대한 기술협력을 요청한 것을 환영하였다.⁹⁷⁵

북한은 장애인권리협약 최초보고서에서 공공시설 등에 대한 북한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들이 사회에 완전히 통합되어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선진기술 도입 및 확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⁹⁷⁶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2019년에 건설법규로 ‘무장애건축설계기준’을 채

972_ 『조선신보』, 2013.12.6; 『연합뉴스』, 2013.12.6.

973_ UN Doc. A/HRC/37/56/Add.1 (2018), para. 45.

974_ *Ibid.*, para. 46.

975_ *Ibid.*

976_ UN Doc. CRPD/C/PRK/1 (2018), para. 76.

택하였다.⁹⁷⁷ 이는 북한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조치의 일환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 실태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사회적 인식의 증대를 촉진”(제8조 제2항 가. 2)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도 장애자보호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먼저 북한 당국은 장애자보호법(2013) 제49조에 따라 2011년부터 6월 18일을 ‘장애자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⁹⁷⁸ 그리고 북한은 2010년부터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12월 3일 평양에서 ‘세계 장애인의 날 행사’를 기념하는 ‘장애자 연합모임(Joint Celebrations on the Occasions of the International Da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매년 개최하여 오고 있다.⁹⁷⁹ 북한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스포츠 행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제고하는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의 조직(2012년 11월) 등을 통해 장애인 체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있다. 최근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참가하는 탁구경기가 정례화되고 있으며 참가인원 수도 늘어나고 있다.⁹⁸⁰

977_ 『조선중앙통신』, 2019.12.18.

978_ 『조선신보』, 2014.6.24.

979_ 이규창 외,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증진 방안 연구』, p. 72; 『조선신보』, 2013.12.7.

980_ 이규창, 위의 책, p. 72.

유엔장애인권리특별보고관은 방북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장애인 지원이 필요하고 사회적으로 기여하지 못한다는 낙인과 차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⁹⁸¹ 또한 특별보고관은 북한 법률에 장애인을 지칭하는 적절하지 못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⁹⁸² 인지장애 및 심리사회장애가 있는 경우 후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법적권리를 제한하고 선거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장애인권리협약 제4조와 부합하도록 사법당국이 포괄적인 심의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⁹⁸³ 전반적으로 북한에서는 장애인을 별도의 시설에서 교육이나 서비스를 받도록 함으로써 비장애인과 동등한 시설이나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⁹⁸⁴

최근에는 북한 당국이 대중 매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를 꾀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2018년 탈북한 북한 이탈주민 ○○○은 2016년경 장애인에 대한 당국의 배려를 TV에서 선전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다.⁹⁸⁵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 ○○○도 2017년 말부터 TV에서 장애인 공연단, 장애인 학교 등 장애인에 대한 소식이 많아졌다고 증언하였다.⁹⁸⁶

981_ UN Doc. A/HRC/37/56/Add.1 (2018), paras. 39~44.

982_ *Ibid.*, paras. 26~28. 북한 형사소송법 제 172조와 제229조(범어리, 귀머거리)와 민사소송법 제49조(행위무능력자), 사회주의노동법 제78조(불구자), 인민보건법 제13조(로동능력상실자), 민사소송법 제49조(부분적행위능력자, 행위무능력자), 헌법 제66조(정신병자).

983_ *Ibid.*

984_ *Ibid.*, para. 42.

985_ NKHR2018000056 2018-07-02.

986_ NKHR2018000117 2018-10-22.

2019년에는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 해 동안 북한 당국이 장애인 인권 증진을 취해 실시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⁹⁸⁷ 이는 장애인 복지를 통해 당국의 치적을 알리려는 정치적 의도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언급 자체가 기피되었던 과거와 비교할 때 긍정적 변화로 볼 수도 있다.

마. 국제사회와의 협력

북한은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추진해 왔다. 먼저 남북 사이의 협력을 살펴보면, 남북 장애인 교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에서는 대구대 대표단, 북한에서는 조선적십자병원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 12월 19일 평양 양각도 호텔에서 재활 치료, 특수교육 부문 등에 대한 상호 간의 연구 결과를 논의하는 남북 간의 재활과학 분야 첫 토론회가 개최되었다.⁹⁸⁸ 또한, 2007년 5월 등대복지회의 지원으로 평양시 보통강구역 붉은거리에 ‘보통강 종합편의’를 건립·개원하였으며, 이는 북한 최초의 장애인 자립자활센터로 조선장애자보호연맹과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다.⁹⁸⁹

둘째, 국제NGO와의 협력이다. 국제푸른나무는 평양에 장애인 의료지원 및 재활기술 교육, 장애인 체육 및 예술인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동강 장애인회복원 건립을 추진 중에 있

987_ 『조선중앙통신』, 2019.12.18.

988_ 『연합뉴스』, 2006.12.22.

989_ ○○○,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12년 6월 29일. 본인의 요청에 따라 익명으로 처리.

다.⁹⁹⁰ 또한 핸디캡 인터내셔널은 평양의 ‘문수기능회복원’, ‘조선장애어린이회복중심’ 등의 물리치료사들에게 작업 치료법을 전수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⁹⁹¹ 독일 대북 민간단체 ‘투게더-함흥’은 카톨릭 단체와 기부자들의 지원으로 2016년 4월 평양 모란봉구역에 교실 10개 정도와 40여 명의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는 북한 최초의 청각장애인 유치원을 개원하였다.⁹⁹² 2019년 미국 구호단체 이그니스 커뮤니티(IGNIS Community)는 평양의학대학 내에 ‘척추·소아행동발달장애치료 연구소’를 건립하였다. 이 연구소는 환자 치료 외에 북한 의료진을 상대로 뇌성마비, 자폐증 등 행동발달장애 어린이 진료법을 훈련할 계획이다.⁹⁹³

셋째, 국제사회와 장애인 교류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2011년 2월 9일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와 세계농인연맹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데, 이 양해각서에 따라 북한 조선맹인협회(2014년 3월 발족)와 조선농인협회(2013년 12월 발족)가 세계연맹에 가입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⁹⁹⁴ 그리고 2014년 11월 7일 핀란드농아인협회의 주선으로 북한의 청각장애인 3명 등 북한대표단 6명이 핀란드를 방문하였으며, 핀란드 국제개발부 세르파 파테로 장관을 예방하였다.⁹⁹⁵ 그리고 2015년 2월 20일

990_ 국제푸른나무 홈페이지, <www.greentreekorea.org> 참조.

991_ 핸디캡인터내셔널 홈페이지, <www.handicap-international.org> 참조.

992_ 『노컷뉴스』, 2016.7.1.

993_ 『미국의 소리』, 2020.1.1.

994_ 『조선신보』, 2014.6.24.

995_ 『미국의 소리』, 2014.11.8.

부터 3월 2일 사이에 영국과 프랑스에서 장애학생 연주회를 개최하였다.⁹⁹⁶ 또한 2014년 8월 8일부터 12일까지 일본, 싱가포르, 네덜란드의 청각장애인 18명이 북한을 방문하였다.⁹⁹⁷ 독일 본에 본부를 둔 국제패럴림픽위원회 관계자는 2016년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 탁구선수 13명과 수영선수 8명 등 21명에게 패럴림픽위원회가 채택하고 있는 ‘장애등급제도’와 규정, 분류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⁹⁹⁸

넷째, 장애인 관련 국제경기에 대한 참여이다. 북한은 2010년 조선장애자체육협회를 설립하였고 2011년 9월에는 민족장애자 올림픽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2013년 11월 22~24일 아테네에서 개최된 국제패럴림픽위원회에서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또한 2012년 런던 하계패럴림픽대회, 2013년 10월 쿠알라룸푸르 아시아 장애청소년 경기대회, 2014년 10월 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2016년 9월 리우데자네이루 하계패럴림픽대회, 2018년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에 참가하는 등 장애인 관련 국제경기대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과 언어 장애인으로 구성된 북한 농아축구팀은 2014년 12월에 이어 두 번째로 2016년 12월 오스트레일리아를 방문해 오스트레일리아 농아축구팀과 친선경기를 가졌다.⁹⁹⁹

996_ 『조선신보』, 2014.8.27; 『MK뉴스』, 2014.9.17; 『아시아경제』, 2015.2.6.

997_ 『조선신보』, 2014.8.27.

998_ 『미국의 소리』, 2016.6.7.

999_ 『미국의 소리』, 2016.11.19.

바. 평가

북한은 장애인을 특정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장애인 정책을 전향적으로 대응한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인식이 북한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서비스를 별도의 시설에서 진행함으로써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영예군인들에게는 부분적으로 혜택이 부여되는 것으로 파악되나, 산업재해 및 사고로 인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호 및 지원조치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왜소증 장애인 격리와 불임 등 지역사회 통합 및 가정에 대한 존중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영예군인 공장, 일반 장애인 공장 운영 등 재활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으나 경제난으로 인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당국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의미 있는 재정을 투입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2019년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장애건축설계기준을 채택하는 등 장애인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했다.¹⁰⁰⁰

또한 북한은 2019년 제3차 UPR 시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유엔 회원국들의 권고¹⁰⁰¹를 수용하였다.¹⁰⁰² 북한 장애인들의 인권이 증진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장애인 관련 국내법 및

1000_『조선중앙통신』, 2019.12.18.

1001_UN Doc. A/HRC/42/10 (2019), para. 126.193~126.199.

1002_UN Doc. A/HRC/42/10/Add.1 (2019), para. 9(a).

장애인권리협약을 준수하고,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교류·협력 하여야 한다. 고무적인 것은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대해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장애인권리협약 최초보고서에서 그동안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을 역설하였다.¹⁰⁰³ 이러한 노력이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에 충실히 부합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1003_ UN Doc. CRPD/C/PRK/1 (2018), paras. 199~204.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21



Chapter V

주요사안

1. 정치범수용소
 2. 해외 탈북자
 3. 해외 노동자
 4.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

1

정치범수용소

북한 당국은 ‘관리소’라고 불리는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의 인권침해 실상은 다양한 증언을 통해 알려졌다. 2020년 조사에서는 정치범수용소의 수용 절차나 수감자 처우에 대한 추가적인 증언이 수집되지 않았다. 이하에서는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 실태를 주요쟁점별로 설명한다.

가. 정치범수용소 현황

북한 당국이 ‘관리소’라는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치범수용소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면서 국가보위성에서 운영하는 비공식적인 구금시설이다. 북한 당국은 공식적으로 관리소의 존재를 부정해 오고 있다. 현재 개천 14호 관리소, 요덕 15호 관리소, 명간 16호 관리소, 개천 18호 관리소, 청진 25호 관리소 등 총 5개의 수용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¹⁰⁰⁴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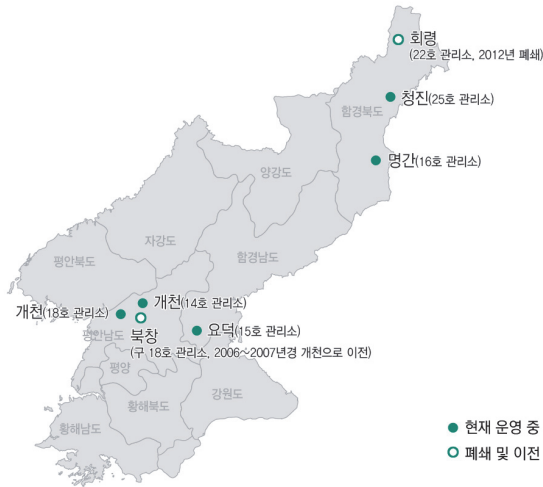
1004_ 최근까지 총 6개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탈주민의 증언 등을 종합해 볼 때 함경북도 회령시 낙생리, 행영리, 남석리 일대에 위치하던 22호 관리소가 2012년경 최종 폐쇄된 것으로 파악된다. 2015년 조사에서도 회령 22호 관리소 폐쇄 관련 증언이 다수 수집되었다.

천 14호 관리소는 평안남도 개천시 창동, 잠상리, 동창골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요덕 15호 관리소는 함경남도 요덕군 대숙리, 입석리, 구읍리, 용평리, 평전리 등 다섯 개 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요덕군 전체 면적의 1/3에 해당하는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명간 16호 관리소는 함경북도 명간군 증평동, 가리동, 부화리 일대에 소재하고 있다. 명간의 구 지명을 따서 ‘화성관리소’로도 불린다. 개천 18호 관리소는 평안남도 개천 동림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2006~2007년경 평안남도 북창군 세포동, 삼포동, 신흥리 일대에 위치하던 구 북창 18호 관리소가 대폭 축소되어 평안남도 개천 동림리 지역으로 이전한 것으로 파악된다. 청진 25호 관리소는 함경북도 청진시 송평구역 수성동에 위치하고 있다. 청진 25호 관리소는 ‘수성교화소’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범을 수용하는 관리소라고 한다. 청진 25호 관리소에는 도당 보안부장,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등 간부들이 수용된다는 증언도 있다.¹⁰⁰⁵

NKHR2015000023 2015-01-27; NKHR2015000025 2015-01-27; NKHR2015000026 2015-01-27; NKHR2015000031 2015-02-10; NKHR2015000129 2015-09-22; NKHR2015000135 2015-09-22; NKHR2015000163 2015-12-01.

1005_NKHR2014000010 2014-03-04; NKHR2014000056 2014-05-20.

그림 V-1 정치범수용소 위치



북한 정치범수용소는 운영 형태, 구역구분, 사회복지 여부, 가족동반 여부 및 관리주체에 따라 <표V-1>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¹⁰⁰⁶

표 V-1 정치범수용소 관리 및 운영 현황

	개천 14호 관리소	요덕 15호 관리소	명간 16호 관리소	개천 (구 북창) 18호 관리소	청진 25호 관리소
형태	마을	마을	마을	마을	구급시설
구역구분	완전통제구역	혁명화구역 안전통제구역	완전통제구역	이주민 (별도 구분 없이 수용)	교회소 식
사회복지	불가능	불가능, 가능	불가능	불가능, 가능	불가능, 가능
가족동반 여부	가족동반	본인/ 가족동반	가족동반	본인/ 가족동반	본인
관리주체	국가보위성	국가보위성	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	국가보위성

1006_ 자세한 내용은 이금순 외, 『북한 정치범수용소』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p. 11~16.

나. 정치범의 수용

그동안 정치범수용소 출신 북한이탈주민들은 매체를 통해서 정치범수용소의 규모나 실상에 대해 증언했다. 북한이탈주민 심층면접을 통해 정치범수용소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증언이 다수 수집되었다. 북한주민들은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¹⁰⁰⁷ 북한이탈주민 ○○○은 정치범수용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 반동으로 몰리지 않기 위해 항상 언사를 신중히 했다고 증언했다.¹⁰⁰⁸

‘정치범죄’에 대해 국제적으로 확립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정치범죄란 ① 내란죄, 외환죄, 간첩죄와 같은 ‘절대적 정치범죄’와, ② 살인, 방화, 절도 등 일반범죄의 요소가 절대적 정치범죄 행위에 결합돼 있는 ‘상대적 정치범죄’로 분류된다.¹⁰⁰⁹ 그동안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 정치범수용소에는 북한 체제를 비판하거나 수령을 모독한 경우, 한국행을 기도한 경우, 한국 사람과 접촉하거나 한국에 대한 우호적 발언을 한 경우, 한국이나 외국에 중요 문건이나 정보를 제공한 경우 등 주로 절대적 정치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이 수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2019년 조사에서는 한국에서 돈을 받거나 한국으로 전화를 하는 것이 발각된 경우 관리소에 가게 되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¹⁰¹⁰ 북한이탈주민 ○○○은 2016년 양강도에서 33살 여

1007_NKHR2019000020 2019-05-07.

1008_NKHR2019000104 2019-11-09.

1009_이금순 외, 『북한 정치범수용소』, p. 9.

1010_NKHR2019000019 2019-05-07.

성이 한국에서 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다 적발되었으며, 여성의 남편은 ○○중국 초기복무 중이었는데, 부인이 관리소에 가게 되면서 제대하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¹⁰¹¹

인신매매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교화소에 가게 되지만, 조직적 인신매매의 경우이거나 한국과 관련된 경우에는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이탈주민 ○○○은 2015년에 같은 여맹에 있던 한 여성이 70명을 인신매매로 넘기다가 적발되어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었다고 증언하였다.¹⁰¹² 북한이탈주민 ○○○은 2015~2016년경 국경지역에 사는 동창생이 인신매매로 사람을 중국에 넘기는 일을 하다 보위성에 적발되어 관리소에 들어갔다는 소문을 득문했다고 증언하였다.¹⁰¹³ 북한이탈주민 ○○○은 2016년경 양강도 김정숙군 인민반장이 인신매매 과정에서 한국에서 보내준 돈을 받아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었다고 증언하였다.¹⁰¹⁴

한국행을 기도하다 적발되어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수집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2015년 함경북도 무산군에 살던 가족 11명이 탈북 후 중국 비행장에서 검거되어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었으며, 관련 사실은 보위지도원이 주민들을 모아놓고 공지하여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다만, 미성년 자녀의 경우(당시 8세로 추정) 무산의 고아들을 키우는 숙박소에 들어갔다고 전했다.¹⁰¹⁵ 북한이탈주민 ○○○

1011_NKHR2019000031 2019-06-03.

1012_NKHR2018000101 2018-10-01.

1013_NKHR2019000046 2019-07-01.

1014_NKHR2019000019 2019-05-07.

1015_NKHR2019000033 2019-06-03.

은 2017년 온성 보위부 구류장에 있을 때 한국행을 기도하다가 적발된 일가족 5명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진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¹⁰¹⁶

북한 주민의 한국행을 알선하던 탈북 브로커가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었다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수집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은 탈북 브로커였던 고모부가 2015년에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졌다고 증언하였다.¹⁰¹⁷ 2017년 탈북한 한 50대 여성은 탈북 브로커였던 동생이 2016년에 보위부에 체포된 이후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진 것으로 추측된다고 증언하였다.¹⁰¹⁸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2017년에 탈북 브로커였던 이웃 주민이 한국으로 탈북한 부모의 부탁으로 북한에 남아 있던 그들의 아이를 중국 브로커에게 넘겨준 일이 발각되어 보위성에 잡혀갔고, 이후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진 것으로 들었다고 증언하였다.¹⁰¹⁹ 북한이탈주민 ○○○의 특문사례에 따르면, 2018년 대흥단 쪽으로 탈북을 시도한 7명 중 인솔자 여성 1명은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고, 나머지 인원은 10,000위안을 주고 풀려났다고 한다.¹⁰²⁰

한국이나 외국에 문건이나 정보를 제공한 것이 발각되어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 사례도 지속적으로 수집되었다. 북한이탈주민 ○○○은 자신의 남편과 사돈 관계인 여성이 중국 측에 북

1016_NKHR2019000075 2019-08-26.

1017_NKHR2017000099 2017-10-23.

1018_NKHR2018000028 2018-05-08.

1019_NKHR2018000057 2018-07-02.

1020_NKHR2019000074 2019-08-26.

한에 대한 정보를 넘기고 시계를 받았는데 이것이 간첩행위로 인정되어 2015년에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졌다고 증언하였다.¹⁰²¹ 이외에도 종교활동을 이유로 수용된 사례도 있는데, 북한이탈주민 ○○○은 2015년 12월 동네 주민의 집에서 성경책이 발견되어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졌다고 증언하였다.¹⁰²² 북한이탈주민 ○○○은 2018년 4월 중국에서 성경책을 받아 북한에서 사람들에게 배포 및 선교하다 보위성에 적발되어 관리소에 들어간 친척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¹⁰²³

2020년 조사에서도 정치범수용소의 수감사유로 한국과의 통화, 한국 영화 시청, 마약, 인신매매, 북한 실상 녹화물을 외국으로 유포하는 경우라고 증언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 ○○○은 2006년도에 공개총살 녹화물을 국외에 유포시킨 것을 '적선' 죄라고 해서 온 가족이 25호 관리소에 갔다고 들었다고 증언하였다.¹⁰²⁴ 2015~2016년경 지인이 정치범수용소에 갔다는 북한이탈주민 ○○○은 수감 사유가 한국에 있는 친척과의 전화, 한국 영화 시청, 마약, 인신매매 등이었다고 증언하였는데, 이전에 법 단련을 받은 조사문건으로 재범 처리가 되었고 여러 죄를 중복해서 저질렀기 때문에 수용소에 보내졌다고 증언하였다.¹⁰²⁵ 다른 증언자 ○○○은 정치범수용소에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나오던 시절에 '검은 돈' 죄목으로 친척

1021_NKHR2018000105 2018-10-01.

1022_NKHR2017000012 2017-04-10.

1023_NKHR2019000051 2019-07-20.

1024_NKHR2020000030 2020-08-03.

1025_NKHR2020000005 2020-05-15.

이 정치범수용소에 갔었다고 말했다.¹⁰²⁶

한편, 정치범에 대한 처벌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친척까지도 연계해서 처벌하는 연좌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연좌제를 적용하는 범위는 직계에 해당된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이 득문한 내용을 바탕으로 증언한 바에 따르면, 2014년경 모녀가 한국행을 기도하다 붙잡히자 할머니까지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한다.¹⁰²⁷ 배우자가 정치범으로 몰렸을 때 이혼하게 되면 정치범수용소에 가지 않는다는 증언도 있었다.¹⁰²⁸ 다만, 예전에는 가족이 탈북하여 한국으로 갔다는 이유로 수용되는 사례가 많았으나, 한국행이 많아지면서 일일이 그런 식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워 가족이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는 사례는 많이 줄었다는 증언도 수집된 바 있다.¹⁰²⁹ 또한, 연좌제가 적용되어 가족이 수용된 경우에도 아이는 관리소에서 내보냈다는 증언과 한국행을 기도한 가족을 관리소에 수용하면서 아이들은 제외하였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¹⁰³⁰ 북한이탈주민 ○○○의 득문사례에 따르면, 2010년 일가족이 한국행을 위해 탈북하다 강제송환되어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었는데 가족 중 미성년자(14세, 7세)는 풀려났다고 한다.¹⁰³¹ 전년도 조사에서도 2015년 일가족이 한국행을 위해

1026_NKHR202000029 2020-07-06.

1027_NKHR2017000038 2017-06-05.

1028_NKHR2013000154 2013-08-20.

1029_NKHR2015000028 2015-02-10; NKHR2017000067 2017-08-28.

1030_NKHR2015000015 2015-01-27; NKHR2015000030 2015-02-10.

1031_NKHR2016000171 2016-11-01.

탈북하다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었으나, 미성년 자녀의 경우 제외되었다는 구체적인 사례가 수집되었다.¹⁰³²

정치범 피의자들을 체포하고 이들을 정치범수용소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는 준수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탈주민 ○○○은 정치범수용소 수용은 재판을 하지 않고 국가보위성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고 증언하였다.¹⁰³³ 정치범 피의자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가족, 친지 등의 정치범수용소 수용 사실 및 상황을 알기는 쉽지 않다.

다. 수용자 생활 실상

(1) 초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

그동안 수집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정치범수용소에서는 규율 위반, 명령 불복종 등의 이유로 어떠한 법적 절차도 없이 보위원에 의한 처형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식의 처형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1032_NKHR2019000033 2019-06-03.

1033_NKHR2016000171 2016-11-01.

(2) 강제노동

정치범수용소에서 수용자들은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파악된다. 노동의 종류는 정치범수용소별로 다른데, 구 북창 18호 관리소의 경우 탄광 노동을 주로 하였으며 지리적 특성상 농사는 불가능하였다고 한다.¹⁰³⁴ 요덕 15호 관리소의 경우 공업반, 농산반 등이 있다고 한다.¹⁰³⁵ 탄광 노동의 경우 ‘생산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루 노동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마칠 때까지 일해야 한다고 한다.¹⁰³⁶ 수용자들은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노동에 동원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3) 비인도적 처우

정치범수용소에서는 폭행 및 가혹행위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이탈주민 000은 구 북창 18호 관리소에서 탄광교대 책임자인 000 교대부갱장이 탄광노동 중 계획량을 채우지 못했을 때 발로 걷어차고 자루로 가격하는 등 구타를 하였으며, 탄광 보안원 역시 구타를 하였다고 증언하였다.¹⁰³⁷

정치범수용소 내 영양·위생·의료 상황도 열악하여 수용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구 북창 18호 관리소에 수용되어 있었던 김혜숙은 일곱 식구에게 배급되는 안남미

1034_ 북한이탈주민 000, 2012년 9월 14일, 서울에서 면접; 북한이탈주민 000, 2012년 10월 12일, 서울에서 면접.

1035_ 북한이탈주민 000, 2012년 9월 27일, 서울에서 면접.

1036_ 북한이탈주민 000, 2012년 9월 14일, 서울에서 면접.

1037_ 위의 증언.

가 한 달에 고작 8kg이었다고 증언하였다.¹⁰³⁸ 쌀을 구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산에 가서 산나물을 뜯어오는 것밖에는 허기를 채울 다른 방도가 없었으며, 쉬는 날에도 온 집안 식구들이 산에 가서 먹을 수 있는 풀을 모조리 뜯어다가 식량으로 모아 놓았다고 한다.¹⁰³⁹ 북한이탈주민 ○○○은 구 북창 18호 관리소에서 자신의 아버지는 지병과 영양실조로, 동생 2명은 각각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증언하였다.¹⁰⁴⁰ 또한, 구 북창 18호 관리소 내에는 영종병원이 있었는데 자신이 2004년 4월 탄광에서 다리를 다쳐 병원에 갔을 때 X-레이 검사만 받고 치료는 받지 못하였으며 다리를 절단하라는 얘기만 들었다고 한다.¹⁰⁴¹

(4) 가족생활 제한

그동안 수집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완전통제구역에서는 부모형제라도 함께 살 수 없으며 부부조차도 따로 떨어져 살아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혁명화구역에서는 일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혼과 출산이 금지된다고 한다. 부부관계를 못하도록 밤과 낮에 서로 번갈아가며 일을 시킨다는 증언도 있었다.

1038_ 김혜숙, 『눈물로 그린 수용소』 (서울: 시대정신, 2011), pp. 73~76.

1039_ 위의 책, pp. 73~76.

1040_ NKHR2013000126 2013-07-09.

1041_ 위의 증언.

라. 평가

2020년 조사에서는 정치범수용소 수감 사유로 한국과의 통화, 한국 영화 시청, 마약, 인신매매, 북한 실상 녹화물을 외국으로 유포하는 경우로 과거와 비슷한 이유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는 것으로 수집되었다. 또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인식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들어보기만 했다는 증언부터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곳’ 등의 구체적인 이미지를 가진 증언자도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도 정치범수용소의 수용 절차나 처우에 대한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구체적인 증언은 없었다. 또한, 정치범수용소 수용자들의 생활 실상에 관련된 증언 역시 수집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상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가정한다면 수용자들은 자유권규약에서 인정되는 여러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

2

해외 탈북자

북한 해외 탈북자에 대한 실태와 인권 침해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조사에서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이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국경통제 및 탈북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수집되었다.

가. 해외 탈북자 규모 및 배경

자유권규약에는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퇴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제12조 제2항).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제3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이들은 불안정한 신분상 공개적으로 도움을 청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 등 실태파악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1) 탈북 단속 강화와 중국 체류 탈북자 감소

2000년대 후반 이후 중국 체류 탈북자의 규모가 급감하였다. 그 이유는 국경경비와 단속 강화, 지속적인 강제송환, 탈북비용 증가로 인한 신규 탈북자의 감소, 국경통행증 발급 확대에 따른

합법적인 중국방문 확대, 장마당 활성화 등 북한 내 경제사정의 호전, 한국 등 제3국 정착 증가 등으로 판단된다. 2009년 이래 북한 당국은 국가보위성 차원에서 탈북차단 비상대책을 점검하면서 탈북자 가족 및 친척들에 대한 사상동향 파악 및 감시, 사상교양 강화, 국경지역 여행증 및 숙박검열, 국경 경비사령부 검열을 강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북한 당국은 국경지역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주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북한은 2015년 형법 개정 당시 ‘비법적인 국제통신죄’(제222조)를 신설하고, “비법적으로 국제통신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기존의 비법국경출입죄(제221조)와 동일한 형량으로, 불법적 국제전화 통화가 불법적 국경 출입과 마찬가지로 무거운 죄로 간주됨을 시사한다.

특히 주된 탈북경로로 활용되고 있는 혜산지역의 경우 탈북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되었다. 휴대전화 전자장벽을 설치하고 휴대전화 탐지활동을 크게 강화하였다. 이로 인해 외부에서 탈북희망자와 접촉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 또한 12km에 이르는 혜산지역 국경지대에 철조망이 세워졌다. 철조망은 2015년 6월을 기준으로 가로로만 철사가 연결되어 있지만 세로 방향으로도 철사가 추가되었다.¹⁰⁴² 그리고 2층 초소들이 세워졌다.¹⁰⁴³ 2016년부터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되기 시작했다는 증언도 있었다.¹⁰⁴⁴ 2017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1042_ NKHR2015000130 2015-09-22.

1043_ NKHR2015000136 2015-09-22.

1044_ NKHR2019000012 2019-04-20.

○○○은 압록강변 바로 앞에 살았는데 2017년경 철조망이 쳐져서 정해진 시간 이외에는 물을 걷는 것도 불가능했다고 증언하였다.¹⁰⁴⁵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현재 탈북에 대한 감시가 심해져 국경을 따라 50m마다 군인들이 잠복해 있다고 증언하였다.¹⁰⁴⁶

탈북자의 경우 ‘3족을 멸한다(처벌한다)’ 혹은 ‘현장에서 사살한다’는 강력한 처벌 경고가 이루어짐에 따라 탈북현상이 크게 위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북한 병사들에게 실탄을 지급하고 월경자 발생 시 현장에서 총살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는 증언이 있었고,¹⁰⁴⁷ 실제로 탈북과정에서 총기사용이 이루어졌다는 증언들이 있었다.

반면 국경지대에서의 총기사용은 탈북 방지를 위한 위협일 뿐 실제 사격은 못한다는 증언도 있었다.¹⁰⁴⁸ 2020년 조사에서 탈북과정에서 총기사용 사례에 대한 증언도 수집되었다. 2019년 탈북한 ○○○은 국경경비대가 총을 실제로 쏜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위협용으로 빈 공간에 쏜다고 증언하고 있다.¹⁰⁴⁹ 또한, 2019년 탈북한 한 증언자는 최근에는 탈북을 감시하기 위해 실탄을 쏘는 경우가 있는 듯하지만, 실제 사례는 들어본 바 없다고 증언하면서, 다만 국경 감시가 더 삼엄해졌다는 얘기는 들어보았다고 말했다.¹⁰⁵⁰

1045_NKHR2018000109 2018-10-06.

1046_NKHR2019000103 2019-11-09.

1047_NKHR2016000028 2016-03-08.

1048_NKHR2015000122 2015-09-08.

1049_NKHR2020000005 2020-05-15.

1050_NKHR2020000022 2020-07-06.

탈북자에 대한 총살이 있었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는데,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000 최근 북한에서 탈북 중 검거된 주민 5명 정도가 총살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최근 탈북한 사람이 '탈북자는 무조건 총살한다'고 말해주었다고 증언하였다.¹⁰⁵¹

표 V-2 탈북과정 중 총기사용 사례

증언내용	증언번호
2016년 함경북도 온성군 수해복구 작업에 투입된 남성 3명이 두만강 너머로 중국이 보이자 즉흥적으로 탈북을 시도했으나 총에 맞아 사망함.	NKHR2018000107 2018-10-01
2017년 압록강 건너편에서 물고기를 잡던 중국 주민을 국경경비대가 탈북자로 오인해 총을 쏜 사건이 있었음. 다리에 맞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이 일로 경비대원은 다른 곳으로 전출됨.	NKHR2018000057 2018-07-02
2017년 말 탈북하던 3명 중 1명이 경비대원에게 허벅지를 관통상당하는 사건이 있었음. 도강할 때 군인들에게 발견되면 일단 서라고 하지만, 무시하고 뛰어가면 실탄사격함.	NKHR2019000024 2019-05-18
2017년 겨울~2018년 초 인신매매를 통해 탈북하려던 3명에게 경비대가 총을 쏘. 2명은 무서워서 현장에서 검거되고, 나머지 한 명은 뛰어서 도강함.	NKHR2019000019 2019-05-07
2019년 탈북한 한 증언자는 최근 북한에서 탈북 중 검거된 주민 5명 정도가 총살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함. 또한 최근 탈북한 사람이 '탈북자는 무조건 총살한다'고 말해주었다고 함.	NKHR2020000019 2020-07-04

탈북과정에서 단속의 위험이 커지면서, 단순히 중국에 가서 돈을 벌 목적으로 탈북하는 경우는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반대로 김정은의 탈북단속 지시가 너무 심해 역효과가 나서 탈북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증언도 있었다.¹⁰⁵²

1051_ NKHR2020000019 2020-07-04.

1052_ NKHR2016000165 2016-11-01.

(2) 탈북자들의 전 세계 이주 시도

탈북 주민은 중국 이외에도 러시아와 구소련 지역, 몽골, 동남아시아 지역 등 세계 전 지역으로 이동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들은 관련 민간단체 및 자원 활동가의 지원을 받아 태국, 일본, 캐나다, 호주, 미국, 유럽연합국가, 이스라엘 등 세계각지에서 망명신청을 시도하여 왔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2019년 말을 기준으로 전 세계에 난민 신청을 한 탈북자 수는 886명으로 보고되었다.¹⁰⁵³ 이 수치는 태국 등 제3국에서 난민지위를 신청한 통계가 포함되어 있어 실제 2019년 남한에 입국한 1,047명과 중복될 수 있다.

표 V-3 **난민 자격 해외 탈북자 수**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수(명)	1,052	1,110	1,166	1,282	1,103	1,422	1,175	802

출처: <https://unhcr.or.kr/unhcr/program/board/detail.jsp?boardTypeID=98&searchSelect=&keyWord=¤tPage=1&menuID=001006003007&finishIsYN=&boardID=20216&boardCategory=&mode=detail> (검색일: 2021.2.1.)

2004년 이후 한국이나 미국 등에 정착하기 위해 태국에 밀입국하는 탈북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이에 따라 태국에 불법입국하다 집단으로 체포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였다. 이민국 감호소 내 체류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단식농성도 이루어짐에 따라 입국 소요기간이 크게 단축되었다. 한때 유럽연합 국가에 정치적 망명(난민 지위)을

1053_UNHCR, “Global Trends: Forced Displacement in 2018, Annex Table 2,” <www.unhcr.org>.

신청하는 경우가 급증하였으나, 이들 중 상당수가 탈북자로 위장한 조선족 등 중국인이거나 한국에 이미 정착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난민지위 심사 및 인정 절차가 강화되었다. 영국의 경우 2007~2008년에만 무려 512명의 탈북자를 난민으로 받아들였지만 2016년에는 단 한 명의 탈북자도 난민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¹⁰⁵⁴ 또한 북한 주민이 국경을 넘어 유럽연합 등 서방국가로 망명신청을 위해 이동하려면 상당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서방국가 망명신청이 사실상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북한 당국이 국경을 폐쇄하고 있어 해외 탈북은 더욱 힘들어 지고 있다. 2009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¹⁰⁵⁵에 따라, 한국 국적 취득을 속이고 제3국에 위장 망명을 신청한 경우 한국 정부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 또는 종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해외 탈북자 체류 실태

식량난이 장기화되면서 북한 여성 중에는 중국으로 건너가 돈을 벌어 오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며 중국에 왔다가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착하는 경우가 늘게 되었다. 미혼 여성뿐 아니라 남편과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들도 중국에서 숨어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중국 남성과 동거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런 여성들은 중국 남성을 소개로 만나 자발적으로 동거하는 경우

1054_ 한동호·김수경·이경화, 『북한인권 정책환경 분석』, p. 216.

도 있으나,¹⁰⁵⁵ 자신도 모르는 사이 팔려 강제결혼하는 경우도 많다.¹⁰⁵⁶ 또한 북한 여성이 매매형태로 거래되었기 때문에 가족 및 이웃들의 지속적인 감시 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¹⁰⁵⁷ 2015년 중국으로 인신매매당한 북한이탈주민 ○○○은 중국인 남편이 출근할 때마다 대문을 밖에서 걸어 잠갔기 때문에 남편과 함께 외출하는 게 아니면 한 발짝도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고 증언하였다.¹⁰⁵⁸

탈북 여성들의 중국 체류기간이 장기화되면서, 호구를 취득하는 경우도 일부 생기게 되었다.¹⁰⁵⁹ 또한, 탈북 여성이 중국 남성과의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게 되고,¹⁰⁶⁰ 일부 아동들은 호구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된다.¹⁰⁶¹ 그러나 많은 경우 탈북 여성들은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강제송환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¹⁰⁶² 이는 중국 남성과의 강제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017년 탈북해 중국으로 인신매매를 당한 30대 여성 ○○○은 처음 도강할 당시에는 결혼생각이 없었

1055_NKHR2019000010 2019-04-08; NKHR2019000044 2019-07-01; NKHR2019000046 2019-07-01; NKHR2019000048 2019-07-01; NKHR2019000099 2019-10-21; NKHR2019000042 2019-07-01.

1056_NKHR2017000025 2017-05-08; NKHR2018000004 2018-03-12; NKHR2019000061 2019-07-29 외 다수의 증언.

1057_NKHR2019000100 2019-10-21; NKHR2019000061 2019-07-29.

1058_NKHR2017000094 2017-10-23.

1059_NKHR2017000046 2017-07-03.

1060_NKHR2018000020 2018-04-09; NKHR2019000044 2019-07-01; NKHR2019000046 2019-07-01; NKHR2019000048 2019-07-01; NKHR2019000058 2019-07-29 외 다수의 증언.

1061_NKHR2017000014 2017-04-10; NKHR2018000021 2018-04-09; NKHR2019000044 2019-07-01; NKHR2019000048 2019-07-01; NKHR2019000099 2019-10-21 외 다수의 증언.

1062_NKHR2019000099 2019-10-21; NKHR2019000067 2019-08-26.

으나 신분이 불안하기 때문에 중국 남자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브로커의 설득에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하였다.¹⁰⁶³ 또한 중국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브로커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증언도 있었다.¹⁰⁶⁴

탈북 주민의 중국 체류가 장기화되면서 이들의 체류형태도 변화하게 되었다. 초기와는 달리 탈북 주민들은 친척이나 조선족들 집에서 기거하는 비율보다 한족 등 현지인 가정에서 생활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었다. 탈북 주민들이 중국에서 지내는 동안 적응 능력이 높아져 중국어를 익히고 취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 등 나름대로 체류방식을 체득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¹⁰⁶⁵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탈북 여성이 중국 체류 중인 한국 남성과 동거하다가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도 나타나게 되었다. 일부는 취업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조선족 동거남성이 북한이 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혜택을 알고 중국 체류 탈북 여성에게 한국 입국을 권유하기도 한다. 중국에서 위조호구로 여권을 발급받고, 무비자여행지인 제주도로 입국하여 탈북자임을 신고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한족들이 거주하는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한국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이 생활하는 탈북 여성들이 상당수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63_NKHR2019000067 2019-08-26.

1064_NKHR2019000061 2019-07-29.

1065_NKHR2017000064 2017-07-31.

다. 탈북자 처벌

(1) 처벌규정

북한 형법(2015)은 탈북행위를 비법국경출입죄와 조국반역죄로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다. 비법국경출입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을 부과하되,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까지 부과할 수 있다(제221조). 그리고 조국반역죄에 대해서는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3조). 또한, 북한 출입국법(2013)은 북한 공민이 출입국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벌금 부과, 출국금지의 행정처벌이 가해지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가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5조).

탈북자에 대한 처벌은 형법 이외에도 인민보안단속법(2007)과 행정처벌법(2017)에도 근거를 두고 있다. 인민보안단속법 제30조는 “인민보안기관은 려행질서, 걸어다니는 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7조는 위반자에 대해 인민보안기관이 직접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인민보안단속법은 직접적으로 탈북행위에 대한 처벌이라기보다는 북한 주민들이 탈북을 위해 국경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활용된다. 행정처벌법 제271조는 국경을 비법적(불법적)으로 출입한 자에게 3개월 이하의 노동처벌(정상이 무거운 경우 3개월 이상)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82조는 여행질서 위반자에게 경고, 엄중경고, 벌금, 3개월 이하의 무보수노동, 노동교양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무보수노동, 노동교양, 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처벌 실태

(가) 조사 및 이송

중국에서 단속된 북한 주민들은 변방부대를 거쳐 송환지역 국가보위성에서 기본적인 조사와 신원확인절차를 거친 후 본인의 거주지역으로 이관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별사례에 따라 송환지역 노동단련대, 도 집결소를 거쳐 지역기관(인민보안성)으로 넘겨지는 경우도 있으며, 곧바로 지역기관으로 이송되기도 한다. 송환 이후 처벌절차는 최초 구금시설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최초 구금시설이 본인의 거주지에 소재한 경우 혹은 근거리인 경우에는 보다 단기간에 형이 결정된다. 반면 본인의 거주지가 국경지역 국가보위성과 거리가 먼 경우 지역 인민보안성이 신변인수를 위해 출석하여야 하고, 이송과정에서의 도주 우려, 운송수단의 확보, 가족에 대한 연락수단 미비 등으로 인해 장기간 구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송환된 북한 주민들의 1차 수용기관에서는 처벌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송환지역 국가보위성 구류장은 주로 함경북도 온성군, 무산군, 회령시, 평안북도 신의주시, 양강도 혜산시가 활용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알몸수색, 소지품 검사, 위생검사(에이즈 검사)를 거친 후 수용된다. 구류장에서 남녀는

별로 수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송환규모에 따라 분리수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체포되어 강제송환될 경우 대체로 중국 내 경찰·공안 기관, 혹은 세관에 며칠에서 길게는 몇 달 동안도 구금생활을 한다. 이후 ‘도 보위부 집결소’와 ‘시 보안서 구류장’을 거쳐 예심과 재판을 받고 처벌수위가 결정된다. 2020년 조사에서 2015년 탈북 후 중국에서 검거된 북한이탈주민 ○○○은 중국 변방대에서 1주일 구류생활을 하고, 북중세관을 통해 북한 당국에 신병인수되었다. 이후 보위부 집결소에 23일을 있다가 시 안전부 집결소로 넘어갔고 최종적으로 노동단련형 처벌을 받았으나 뇌물을 통해 석방되었다고 증언하였다.¹⁰⁶⁶ 또한, 2019년 4월부터 구금시설에서 근무한 한 증언자는 탈북 중 잡힌 사람들은 보위부 안에 있는 구금시설에 수감이 된다고 증언하고 있다.¹⁰⁶⁷

북한의 여성권리보장법 제37조는 여성에 대한 신체 수색을 금지하고 있으나 북한 조사기관은 강제송환된 탈북 여성을 발가벗긴 채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시키거나, 알몸수색을 하거나, 자궁검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¹⁰⁶⁸ 이는 북한 주민이 중국에서 번 돈을 몸속에 숨겨오는 경우가 있어 이를 압수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2016년 ○○시 보위부 구류장에 수감

1066_NKHR2020000024 2020-07-06.

1067_NKHR2020000035 2020-09-05.

1068_NKHR2017000014 2017-04-10; NKHR2017000045 2017-07-03; NKHR2017000046 2017-07-03; NKHR2017000119 2017-11-20; NKHR2018000081 2018-07-30; NKHR2019000041 2019-07-01; NKHR2019000075 2019-08-26.

된 북한이탈주민 ○○○은 여성 군인으로부터 자궁검사를 당했으며 매우 아프고 수치스러웠다고 진술하였다.¹⁰⁶⁹ 심지어 사건이 이관되어 조사를 받을 때마다 여러 차례 알몸수색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북한이탈주민 ○○○은 2017년 탈북하다 국경 경비대에 붙잡혔는데 소대, 중대, 대대, 군 보위부, 시 보위부, 시 보안서에서 총 여섯 번의 알몸수색을 당했다고 증언하였다.¹⁰⁷⁰

2020년 조사에서 중국으로 갔다가 송환된 탈북민의 경우 한국행 탈북민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수집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행 기도자들에게는 처벌이 더 강하게 이루어지나, 뇌물을 통해 어느 정도 처벌을 무마할 수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은 조사과정에서 뇌물을 바쳐 형기를 단축하거나 처벌을 면제받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¹⁰⁷¹ 2016년 탈북을 시도하다 붙잡힌 북한이탈주민 ○○○은 ○○도 ○○시 보위부 정보과장에게 5,000위안을 뇌물로 주고 교양 조치로 풀려났다고 진술하였다.¹⁰⁷² 또한 관련 법일군들에게도 뇌물을 주고 조사문건을 조작하여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북한이탈주민 ○○○은 2015년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송환되었는데 검사, 판사, 변호인에게 뇌물을 주고 중국 체류

1069_NKHR2017000045 2017-07-03.

1070_NKHR2018000091 2018-08-27.

1071_NKHR2017000057 2017-07-31; NKHR2017000058 2017-07-31; NKHR2017000098 2017-10-23; NKHR2017000103 2017-10-23; NKHR2017000121 2017-11-20; NKHR2017000128 2017-12-18; NKHR2019000019 2019-04-08; NKHR2019000105 2019-11-09; NKHR2019000074 2019-08-26.

1072_NKHR2017000057 2017-07-31.

기간을 단축시켜 형을 감면받았다고 진술하였다.¹⁰⁷³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 ○○○은 2017년 탈북하다 체포되었지만 3,000위안을 예심원에게 뇌물로 바친 덕분에 비교적 가벼운 형량인 단련대 1개월형을 선고받았다고 증언하였다.¹⁰⁷⁴ 이처럼 북한에서는 탈북을 하다 붙잡히더라도 뇌물을 통해 처벌을 피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돈이 없어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¹⁰⁷⁵

또한, 북한이탈주민 ○○○은 2018년 1월 탈북 시도 후 검거되었는데 보위부 구류장에 수감되었다. 그러나 어머니가 7,000~7,500위안을 써서 재판을 받지 않고 나올 수 있었다. 증언자는 한국행으로 붙잡힌 경우 조국반역죄에 해당되며 이는 가장 중한 범죄가 된다고 말하였다.¹⁰⁷⁶ 북한이탈주민 ○○○은 2019년 4월까지 구금시설에서 근무하였다. 그는 구금시설에 탈북자들이 수감되는 것을 보았고 중국에서 오래 살다가 송환된 경우 재판을 통해 결정되는 형량은 모두 5년이었고 그 이상 형량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한국행 기도는 관리소 행이며, 보위부 안에 따로 있는 구류장에 수감이 되는데 그때 뇌물을 주면 형벌을 면할 수도 있다고 증언하였다. 다만 보안서에서 형이 확정되어 구류에 들어간 경우 면제가 불가능하다고 증언하였다.¹⁰⁷⁷

탈북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위한 뇌물의 액수가 상당히 높아

1073_NKHR2017000005 2017-04-10.

1074_NKHR2018000091 2018-08-27.

1075_NKHR2017000026 2017-05-08.

1076_NKHR2020000020 2020-07-04.

1077_NKHR2020000035 2020-09-05.

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 ○○○은 2016년 송금브로커를 하던 남편이 체포되어 함경북도 회령시 보위부 구류장에 구금되었는데 1만 5,000위안을 내고 보름 만에 풀려났다고 한다.¹⁰⁷⁸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 ○○○은 2016년 탈북을 시도하다 붙잡혀 구금소에 수용되었는데 1만 5,000위안을 뇌물로 주고 풀려났다고 증언하였다.¹⁰⁷⁹ 북한이탈주민 ○○○은 2015년 시누이의 남편이 탈북하다 붙잡히자 남한에 먼저 가있던 시누이가 1,000만 원을 보내와 전부를 뇌물로 바쳤다고 진술하였다.¹⁰⁸⁰ 이외에도 3만~4만 위안의 뇌물을 주고 풀려났다는 증언,¹⁰⁸¹ 심지어 6만 위안의 뇌물을 주고 풀려났다는 증언도 존재하였다.¹⁰⁸²

국경지역 국가보위성에서의 조사내용은 인적사항 및 주소지, 도강 시기 및 횟수, 도강 이후의 행적(한국인 및 기독교인 접촉 여부, 한국행 여부, 인신매매 관련 여부, 음란물 및 한국영상물 시청 여부) 등을 포함한다. 국경지역의 국가보위성에서 취조를 받은 뒤에는 인민보안성 구류장이나 국경지역의 도 집결소로 보내진다. 북한의 형사소추절차에 따르면, 범죄혐의자의 범죄 행위를 밝혀내 기소 또는 사건기각을 위한 예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심에서는 탈북자의 도강 목적과 중국 내에서의 행적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구타 및 언어폭력,

1078_NKHR2018000099 2018-10-01.

1079_NKHR2018000056 2018-07-02.

1080_NKHR2018000105 2018-10-01.

1081_NKHR2018000109 2018-10-06.

1082_NKHR2019000009 2019-04-08.

위협 등이 이루어지고, 형 감면을 명분으로 다른 송환자의 중국 내 행적을 증언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나) 형벌의 부과

김정은 집권 이후 탈북자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되어,¹⁰⁸³ 노동단련대나 노동단련형보다는 노동교화형으로 많이 다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¹⁰⁸⁴ 2013년까지는 1차 복송의 경우 노동단련대 6개월 정도, 2회 이상 복송된 경우 노동교화형이 주어졌으나, 2014년부터는 탈북 횟수에 관계없이 노동교화형이 부과되고 있다는 증언들도 있다.¹⁰⁸⁵ 교화기간은 3~5년이 주어지는데, 그 기간은 탈북 횟수 및 중국 체류 기간에 따라 차이가 난다.¹⁰⁸⁶ 특히 비법월경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비법월경 출입죄 제2항에서 규정한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 해당되어 가중 처벌을 받는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¹⁰⁸⁷ 그러나 단순 탈북일 경우 뇌물을 주면 노동단련형을 받기도 한다.¹⁰⁸⁸ 비법국경 출입죄로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함경북도 전거리교화소와 평안남도 개천교화소에 수용되고 있다.¹⁰⁸⁹ 특히, 전거리교화소는 수형자의 70% 정도가 비법월경으로 수용

1083_NKHR2017000001 2017-04-10; NKHR2017000002 2017-04-10; NKHR2017000067 2017-08-28.

1084_NKHR2012000151 2012-07-24.

1085_NKHR2015000084 2015-04-21; NKHR2015000092 2015-05-12.

1086_NKHR2015000023 2015-01-27; NKHR2015000035 2015-02-10; NKHR2015000080 2015-04-21.

1087_NKHR2017000005 2017-04-10.

1088_NKHR2015000031 2015-02-10.

1089_한동호 외, 『북한 교화소』, pp. 10~12.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⁰⁹⁰ 한국행 기도는 정치범으로 처벌된다는 증언도 다수 수집되었으며,¹⁰⁹¹ 심지어 한국행 탈북자가 잡히면 무조건 총살이라는 증언자도 있었다.¹⁰⁹² 2019년 탈북한 50대 여성에 따르면 2018년 가을 무렵부터 인민반 회의를 할 때마다 보위지도원이 와서 “탈북은 역적이다, 사형에까지 처한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¹⁰⁹³

최근에는 과거보다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이 전반적으로 강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과거 중국으로의 탈북은 중국에서 생활한 기간만큼 교화형이지만, 최근에는 2배로 형을 받는 등 중국행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¹⁰⁹⁴ 2019년 탈북한 20대 여성은 2015년경부터 탈북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이전에는 중국으로의 탈북은 단련대형을 받았지만 지금은 모두 2~3년 교화형을 받는다고 증언하였다.¹⁰⁹⁵ 2018년 탈북한 20대 여성은 2015년 중국으로 탈북해 3개월간 머물다 강제송환 당했는데 당시 1년 교화형을 받았지만 지금은 하루만 탈북해도 1년형을 받는다고 증언하였다.¹⁰⁹⁶

1090_ 위의 책, p. 14.

1091_ NKHR2015000031 2015-02-10; NKHR2017000007 2017-04-10; NKHR2017000039 2017-06-05; NKHR2017000111 2017-11-20; NKHR2017000112 2017-11-29; NKHR2017000130 2017-12-18; NKHR2019000048 2019-07-01; NKHR2019000101 2019-10-21.

1092_ NKHR2019000007 2019-04-08.

1093_ NKHR2019000019 2019-05-07.

1094_ NKHR2016000072 2016-05-17.

1095_ NKHR2019000039 2019-07-01.

1096_ NKHR2019000043 2019-07-01.

김정일 시대에는 도강 후 자발적으로 북한으로 돌아올 경우 형사처벌이 아닌 교육조치만 받은 사례들이 있었지만 김정은 시대에는 자발적 귀환도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¹⁰⁹⁷ 2007년과 2014년에 두 차례 탈북한 경험이 있는 증언자에 따르면, 김정일 시대인 2007년에는 자발적으로 북한으로 돌아올 경우 죄를 묻지 않았으나, 2014년에 귀환하였을 때는 자수를 해도 용서하지 않고 오히려 조사를 무리하게 진행했다고 한다.¹⁰⁹⁸ 강제송환 시 한국행이 명백하고 뇌물도 주지 않았다면 정치범수용소로 가게 되어 가장 중한 처벌을 받는다.

표 V-4 탈북자 처벌 사례

증언내용	증언번호
2015년 9월 양강도에서 사위가 탈북하다 붙잡혀 도 보위부에 잡혀감. 이후 청진 수성교화소(정치범수용소)에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음.	NKHR2018000123 2018-10-22
2016년 중국에 강제송환된 33세 남성이 교화 2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들음. 이 사람의 경우 구류장에서 자살하겠다고 비늘을 먹어 수술까지 했다고 함.	NKHR2019000093 2019-10-21
2016년 아들이 탈북했다 6시간 만에 붙잡혀 강제송환됨. 단련형 3개월을 받았으나 뇌물을 주고 한 달 만에 나옴.	NKHR2019000096 2019-10-21
2018년 1월 탈북시도 후 검거되었는데 보위부 구류장에 수용되었으나, 어머니가 7,000~7,500위안을 써서 재판을 받지 않고 나올 수 있었음.	NKHR2020000020 2020-07-04

마지막으로 해외파견노동자의 탈북 관련한 처벌도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조사에서 해외파견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 은 파견자 중 일부가 행방불명이 되면 예전에는 누군가 책임을 지려고 했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 책임을 지는 사

1097_NKHR2016000131 2016-06-09.

1098_NKHR2016000148 2016-09-06.

람에게 가차없이 처벌로 이어지게 되면서 행방불명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¹⁰⁹⁹

(다) 탈북자 가족 처벌

김정은 시대 들어 탈북 통제 강화의 일환으로 탈북자 가족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더불어 강화되었으며,¹¹⁰⁰ 온가족이 추방을 당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¹⁰¹ 2016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2015년 경 이웃에 사는 한 부녀가 중국에서 강제복송되었는데 나머지 가족들이 전원 양강도 운흥군으로 강제추방을 당했다고 증언하였다.¹¹⁰²

그러나 최근에는 탈북자가 너무 많아 탈북자 가족을 실제로 처벌하거나 추방하는 사례는 줄어들었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¹¹⁰³ 북한이탈주민 ○○○은 남편이 2015년 탈북한 뒤 보위성에서 본인을 감시했으나 실제 어떤 처벌이나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¹¹⁰⁴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 ○○○은 “한 집 건너 탈북자가 있는 상황이라 가족을 처벌하는 일이 별로

1099_ NKHR2020000018 2020-07-04.

1100_ NKHR2019000008 2019-04-08; NKHR2019000038 2019-06-15; NKHR2019000031 2019-06-03; NKHR2019000092 2019-10-21.

1101_ NKHR2017000038 2017-06-05; NKHR2017000039 2017-06-05; NKHR2017000072 2017-08-28; NKHR2019000046 2019-07-01.

1102_ NKHR2019000046 2019-07-01.

1103_ NKHR2017000077 2017-08-28; NKHR2017000085 2017-09-25; NKHR2017000092 2017-09-25; NKHR2019000012 2019-04-20; NKHR2019000074 2019-08-26; NKHR2019000078 2019-09-25; NKHR2019000087 2019-10-05.

1104_ NKHR2017000092 2017-09-25.

없다”고 증언하였다.¹¹⁰⁵ 특히 국경지방의 경우 가족 중 탈북한 경우가 너무 많아 모두를 처벌하거나 추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은 양강도 혜산시 주민의 90%는 가족 중 탈북민이 있고 조카뻘까지 합치면 모든 주민에게 탈북민 가족이 있으므로 강제추방이나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증언하였다.¹¹⁰⁶

2020년 조사에서도 탈북자의 가족들에 대한 감시 및 단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언이 다수 수집되었다.¹¹⁰⁷ 2019년에 탈북한 한 증언자는 어머니가 중국에 갔기 때문에 2010년부터 감시를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이후 북한 당국은 어딘가 가려고 해도 이유와 목적지를 따져 묻고 방문했던 집에서 연락을 취해야 하며 방문 지역의 안전부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¹¹⁰⁸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어머니가 2011년에 탈북하여 행방불명자가 되자 그 이후로 감시를 당했는데, 이웃에 사는 보위부 통보원이 감시를 했다고 증언하였다.¹¹⁰⁹ 또한, 어머니가 2013년에 중국으로 탈북하여 2016년 한국에 입국했다는 한 증언자는 자신이 있는 곳마다 감시가 붙었다고 증언하였다. 주로 인민반장이 감시를 하고 회사에서도 감시를 받았다고 한다.¹¹¹⁰

1105_ 위의 증언.

1106_NKHR2019000078 2019-06-10.

1107_NKHR2020000012 2020-06-15; NKHR2020000013 2020-06-15; NKHR2020000014 2020-06-15; NKHR2020000024 2020-07-06; NKHR2020000028 2020-07-06
외 다수의 증언.

1108_NKHR2020000021 2020-07-06.

1109_NKHR2020000029 2020-07-06.

1110_NKHR2020000013 2020-06-15.

또한, 가족의 탈북이 오점이 되어 원하는 직장이나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승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 2019년 탈북한 ○○○은 군 입대, 당원 등에 지원하고 싶었지만 2007년 남한에 입국한 어머니로 인해 불가능했다고 증언하였고, 어머니의 도강 문건에 남아 있어 본인이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혼에서는 제약이 없었다고 증언하였다.¹¹¹¹ 2019년 탈북한 50대 남성은 형이 명망있는 판사였으나 딸이 탈북하는 바람에 일반 판사에서 더 이상의 승진이 어려웠다고 증언하였다.¹¹¹² 2019년 탈북한 40대 여성은 오빠가 당비서로 승진하게 될 예정이었으나 2016년 가족 중 탈북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밝혀져 무산되었다고 한다.¹¹¹³ 즉, 사법적 처벌은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사회적 차별과 같은 우회적 방법으로 탈북민 가족에 대한 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1111_NKHR2020000017 2020-07-04.

1112_NKHR2019000108 2019-11-18.

1113_NKHR2019000009 2019-04-08.

표 V-5 탈북자 가족 처벌 사례

증언내용	증언번호
2015년 이웃에 사는 한 부녀가 중국으로 탈북했다 강제복송 당했는데 나머지 가족들이 전원 양강도 운흥군으로 강제추방을 당함.	NKHR2019000046 2019-07-01
2016년 함경북도 회령에 사는 할머니를 만나러 가던 중 여행중 단속에 걸렸는데, 조사과정에서 어머니가 탈북자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무조건 탈북을 기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보위성에 한 달 동안 구금되었음.	NKHR2017000054 2017-07-31
2019년 탈북한 증언자는 어머니가 2011년에 탈북하여 행방불명자가 된 후에 이웃에 사는 보위부 통보원이 감시를 했는데, 가택수색을 하지는 않지만 돈을 얼마씩이라도 내지 않으면 단련대에 보내겠다고 협박했다고 증언함.	NKHR2020000029 2020-07-06
2019년 탈북한 증언자는 같이 탈북한 친구의 아버지가 집 두 채를 몰수 당하고 단련대에 다녀왔으며, 자신의 아버지도 동일한 처벌을 받았다고 증언함. 김영정 제1부부장이 '한국에 간 것이 확정되면 집을 빼앗고 단련대, 교화를 보내라'고 했다고 함.	NKHR2020000021 2020-07-06

라. 인신매매

국제법과 각국의 국내법은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의 반인권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상당수의 인권단체들이 인신매매 활동을 감시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0년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UN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이하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따르면, 인신매매는 “위협 혹은 폭력이나 기타의 강제력, 납치, 사기, 유인,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 활용,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금전 혹은 혜택을 주고받는 행위 등에 의해 ‘착취

(exploitation)’의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이전, 은신, 접수하는 행위”를 통칭한다. 여기서 착취의 개념은 매우 중요하며, 착취는 “성매매 및 성적 착취, 강제노동 및 서비스, 노예상태에 준하는 행태 및 노예제, 장기절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인신매매가 밀입국 알선(human smuggling)과 다른 점은 불법적인 국경이동 주선 이후에도 지속적인 착취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¹¹¹⁴

(1) 조직적 인신매매

북한 주민의 불법 국경이동 규모가 급증하면서, 이들을 조직적으로 매매하여 이익을 챙기려는 조직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의 도시 역전이나 시장에서 북한 주민을 붙잡아 넘기고자 하는 시도들이 빈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조직적 인신매매는 대부분 몇 단계를 거치면서 이루어지게 된다. 북한에서 여자를 유인해 넘기는 사람과 중국 국경에서 인제받는 사람, 그리고 일정 장소에서 북한 여성들을 은신시켜 두고 이들의 거래를 주선하는 사람 등이 관여하며, 단계별로 거래비용은 상승하게 되어있다. 이와 같은 조직적인 인신매매가 이루어지면서 국경에서 거리가 먼 중국 동북3성의 내지까지 북한 주민들이 거래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성들이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남성들의 경우에도 노동력이 귀한 오지로 거래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1114_ Norma Kang Muico, “An Absence of Choice: The Sexual Exploitation of North Korean Women in China,” (Anti-Slavery International, 2005), p. 3.

중국에서의 인신매매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가 부각되면서, 중국 당국은 인신매매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조직적인 인신매매 사례는 크게 근절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 주민의 중국 체류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북한 주민들은 같은 처지의 불법체류 북한 주민들의 인신매매에 관여하게 된다. 즉 인신매매에 관련된 중국 남성과 동거하는 북한 여성이 다른 북한 여성들을 중국인에게 넘기거나 유흥업소에 소개하고 금전적 보상을 챙기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개인들은 탈북 여성들을 한쪽 남성들에게 넘기면서 마음에 들지 않거나 힘든 일이 발생하면 연락하도록 알려주고, 도움을 요청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 다시 연계시키면서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5년 탈북한 20대 여성은 중국에서 4번이나 인신매매를 당했는데, 강제결혼 당한 남성에게서 도망칠 때마다 브로커인 청진 출신의 ‘조선여자’(북한 출신 여성)에게 도움을 청했고 새로운 남성에게 연결해주었다고 증언하였다.¹¹¹⁵

인신매매는 중국에서도 불법이기 때문에 발각될 경우 벌금을 물게 된다. 북한 여성을 인계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알려지면 주변으로부터 인신매매자로 경계대상이 된다.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에 대한 변방대대의 조사과정에서도 인신매매 및 마약거래 관련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1115_NKHR2019000061 2019-07-29.

한편, 이번 2020년 조사에는 대부분의 증언자가 인신매매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해외로 팔려가는 사례도 수집되었다. 당시 한국 나이로 16살이었던 북한이탈주민 ○○○은 2015년에 중국에 돈을 벌러 가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했다고 증언했으며,¹¹¹⁶ 다른 북한이탈주민 ○○○은 2017년 자신의 딸이 친구와 중국에 가서 몇 달 동안 돈을 벌려고 했던 것인데 인신매매를 당했다고 말하였다.¹¹¹⁷

(2) 인신매매 여성의 인권침해 실태

중국이 산업화되면서 농촌 여성들은 도시로, 또는 한국 등 외국으로 돈을 벌기 위해 이주하게 되었다. 그 결과 중국사회에서 결혼상대자 혹은 성적 욕구를 충족할 대상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발생한 가운데 북한 여성들은 중국 남성들의 동거자로 거래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상당수의 북한 여성들은 본인이 누구에게 팔려 가는지 모른채 중국 남성에게 인계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일부는 도강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인신매매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브로커에게 도강을 의뢰하기도 한다. 또한 김정은 집권 이후 탈북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인신매매만이 북한을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해 어쩔 수 없이 스스로 팔려가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¹¹¹⁸ 2015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은 인신매매로 중국에 팔

1116_NKHR2020000031 2020-08-03.

1117_NKHR2020000028 2020-07-06.

1118_NKHR2017000033 2017-06-15; NKHR2017000094 2017-10-23; NKHR2018000033 2018-05-08.

러가는 것이 탈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며, 그마저도 인신매매 브로커를 구하기 어려워 탈북을 못하는 여성들이 많다고 증언하였다.¹¹¹⁹

강제결혼의 형태로 소개된 경우 중국 남성과의 동거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도 있으나, 배우자의 성적 학대, 폭력, 음주나 도박 등으로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도주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동거남성이 북한 여성과의 사실혼 관계 지속을 원할 경우에는 북한 여성에게 호구를 구입해주거나 북한 여성 본인 및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등 여러 노력을 하게 된다. 북한 여성 본인이 인신매매 브로커의 도움 없이 국경을 넘었다 할지라도 중국에서의 생활이 막막해 스스로 중국 남성과의 동거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의 결혼생활은 강제결혼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현지어를 못하는 북한 여성은 식당이나 공적인 장소에서 취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속을 피하려면 중국 남성과의 사실혼 관계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다. 인신매매를 당한 이후 가까스로 도망쳤으나 혼자 살아갈 방법이 없어 중국 남성과 다시 결혼(사실혼)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¹¹²⁰

중국에서 거래된 북한 여성이 노래방 및 유흥업소 등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사례들도 발견되고 있다.¹¹²¹ 2015년 탈북

1119_NKHR2017000094 2017-10-23.

1120_NKHR2017000065 2017-07-31.

1121_NKHR2017000066 2017-08-28; NKHR2019000043 2018-12-25.

한 20대 여성은 중국에 일자리를 알선해주겠다며 브로커를 따라나섰는데 막상 가보니 성매매업소였다고 증언하였다.¹¹²² 북한 여성들을 활용하여 중국에서 음란 화상채팅사업을 운영하는 조직들도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¹¹²³ 북한이탈주민 ○○○은 인신매매 브로커를 통해 2015년 탈북했는데, 중국 산둥성에 있는 화상채팅 업체에 팔아넘겨져 2년 6개월간 일했다고 증언하였다.¹¹²⁴ 최근 중국 내에서 인신매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밀수를 하던 중국 업자들이 인신매매까지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¹¹²⁵

한편 북한 내에서는 인신매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인신매매 선을 잡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인신매매범은 공개처형을 당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다는 증언도 다수 확보되었다.¹¹²⁶ 함경북도 회령시, 무산군 등은 여전히 인신매매가 활발하지만 온성군은 단속이 강화되어 인신매매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증언도 있었다.¹¹²⁷

1122_NKHR2019000043 2019-07-01.

1123_NKHR2015000125 2015-09-08.

1124_NKHR2018000133 2018-11-19.

1125_NKHR2015000170 2015-12-01.

1126_NKHR2017000009 2017-04-10; NKHR2017000010 2017-04-10; NKHR2017000067 2017-08-28; NKHR2017000103 2017-10-23; NKHR2017000113 2017-11-20; NKHR2017000134 2017-12-18; NKHR2018000057 2018-07-02; NKHR2018000105 2018-10-01; NKHR2019000048 2019-07-01.

1127_NKHR2015000171 2015-12-01.

마. 평가

탈북자 강제송환은 많은 인권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북한이 국경질서위반행위를 출입국법과 형법을 통해 처벌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출입국 문제는 국가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송환 이후 집결소, 구류장, 노동단련대, 교화소에서 조사, 재판 및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 받고 있다. 중국 내에서의 한국행 기도나 기독교 접촉은 공개처형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되고 있는데 이는 생명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중국에서 임신한 탈북 여성에 대한 강제낙태와 북한 여성 인신매매 행위 역시 심각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 체제 출범을 전후하여 국경통제 및 탈북 단속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강제송환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위한 뇌물의 액수가 치솟고 있으며, 재탈북에 성공하는 경우도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탈북자 가족에 대한 감시 및 단속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탈북자의 인권 침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북한 당국의 정책변화가 요구되며, 북한의 사법제도와 재판제도 및 교정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3

해외 노동자

북한은 중국, 러시아 등의 국가에 노동자들을 파견해 왔다. 그 규모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많을 때에는 대략 5만~10만 명 정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추정된다.¹¹²⁸ 북한이 노동자들을 해외로 대거 파견한 것은 외화벌이를 위해서이다. 이들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돈은 연간 수억 달러에 이르렀던 것으로 추정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실험에 대한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2017년 9월 11일 결의 제2375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 관할권 내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 허가를 제한했으며, 2017년 12월 22일 결의 제2397호를 통해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도 24개월 이내에 송환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외 노동자 규모는 크게 감소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에 대해서는 이처럼 노동자들이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이들의 인권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해서도 문제

1128_ 2015년 10월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가 58,000여 명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자본주의 물들 위험에도, 달러벌이 8만 명 내보낸 북한,” 『중앙일보』, 2015.11.10.

제기가 이루어져 왔다. 이하에서는 북한 해외 노동자의 인권 실태를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선발 절차

모든 개인은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일할 권리를 갖는다. 근로의 권리는 개인의 생존과 가족의 생존에 동시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간 존엄성의 분리될 수 없는 본질적인 부분을 구성하며, 다른 인권을 실현하는 데에 필수적이다.¹¹²⁹ 사회권규약 제6조 제1항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포함하는 근로의 권리를 인정하며, 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권규약의 당사국으로, 동 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원칙적으로 국가 차원의 인력수급 계획에 따라 노동력의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노동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제한받고 있다.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해외파견의 경우에도 북한 노동자의 직업선택의 권리는 제한되고 있다. 북한에서 해외파견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인식되어 왔다.¹¹³⁰ 따라서 많은 주민이 해외파견을 희망해 왔으나, 해외파견의 기회는 토대가 좋고 뇌물을 바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춘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1129_UN CESCR, General Comment, No. 18 (2005), para. 1.

1130_NKHR2017000007 2017-04-10; NKHR2018000022 2018-04-09.

일반적으로 해외에 파견되기 위해서는 토대(성분)가 좋아야 한다.¹¹³¹ 가족 내력은 보통 8촌까지 보며,¹¹³² 기혼자의 경우 처가 쪽도 확인한다.¹¹³³ 또한 해외파견 노동자는 대부분 당원 이고,¹¹³⁴ 이전 근무지가 평양인 경우가 많았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신분이 좋고 경제적 면에서 중산층 이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해외파견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탈북 가능성 때문에 인질이 필요하여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 보내주지 않는다거나,¹¹³⁵ 자녀가 2명 있어야 한다는 증언도 있다.¹¹³⁶ 북한이탈주민 ○○○은 중국에 있는 식당에 파견할 접대원을 뽑는 데 지원하였으나,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선발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¹¹³⁷ 실제 파견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은 간부과에서 이력서를 보고 해외 친척 거주 여부, 결혼 유무 등을 보고 심사하여 허가를 내준다고 설명했다.¹¹³⁸

선발과정에서의 뇌물 공여는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2013년경 도당위원회 간부들과 접촉하여 해외 노동자를 알선한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 ○○○은 노동자 1인당 250달러를 간부에게 뇌물로 주고 자신은 150달러 정도를 받았으며, 식당봉사

1131_ NKHR202000014 2020-06-15

1132_ NKHR2013000196 2013-10-29.

1133_ NHKR2014000020 2014-03-18.

1134_ NKHR2014000080 2014-07-01.

1135_ NKHR2018000031 2018-05-07.

1136_ NKHR2018000008 2018-03-12.

1137_ NKHR2019000005 2019-04-08.

1138_ NKHR2019000050 2019-07-20.

(700달러)나 의사(2,000~3,000달러)로 파견될 경우 뇌물액수가 컸다고 증언하였다.¹¹³⁹ 2015년 아버지가 러시아에 파견되었다는 북한이탈주민 ○○○은 선발을 위해 1,000달러 정도 뇌물을 주었다고 증언하였다.¹¹⁴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몽골에 건설노동자로 파견되었다는 증언자는 선발을 위해 잇선에 뇌물을 고이는 것은 관례라고 생각했을 뿐 뇌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증언하며, 뇌물액수는 50~100달러 정도라고 설명했다.¹¹⁴¹ 2017년 탈북한 한 증언자는 처녀들이 살기 힘들니까 중국에 식당일, 접대일을 하기 위해 많이 나가는데, 딸을 보내려 했을 때 150~300달러 정도를 뇌물로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¹¹⁴² 남편이 2017년 의사로서 해외파견을 갈 때 동행했던 한 북한이탈주민은 파견을 나가기 전 뇌물을 고이는데, 남편은 1만 달러 정도를 바쳤다고 증언하였다.¹¹⁴³ 또 2019년 탈북한 한 증언자는 접대원, 서빙, 재봉, 식품제조, 농사 등의 직종으로 중국에 파견가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일반적으로 1,000위안씩은 고여야 했다고 증언하였다.¹¹⁴⁴ 예외적이지만 뇌물을 주지 않고 해외에 파견된 사례도 간혹 수집되고 있다.¹¹⁴⁵ 2015년 태국 식당 봉사원으로 파견되었다는 북한이

1139_NKHR2018000022 2018-04-09. 단, 이 경우에는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노동자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뇌물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40_NKHR2019000020 2019-05-07.

1141_NKHR2019000023 2019-05-18.

1142_NKHR2017000073 2017-08-28.

1143_NKHR2020000047 2020-11-28.

1144_NKHR2020000014 2020-06-15.

1145_NKHR2018000043 2018-06-04.

탈주민 ○○○은 신원조회와 신체검사만 합격하면 갈 수 있었고 지원과정 중 뇌물을 주지는 않았다고 증언하였다.¹¹⁴⁶

이처럼 해외 노동자 선발 절차에서 토대가 중시되고 뇌물 공여가 만연함에 따라 해외 근로를 통해 생계를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당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특히 성분(토대)과 당원 여부와 같은 선발단계의 조건은 사회적 출신, 출생, 재산 또는 기타의 신분에 의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권에 반하며, 이로 인해 주민들은 실질적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해외에 파견된 노동자의 작업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의 국내 거주 등이 선발과정에서 고려되는데, 이 역시 개인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정당한 기회를 보장받으며 직업을 선택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나. 과도한 노동시간

북한 해외 노동자들은 장시간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건설현장의 경우 대부분 현지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북한 기업소 측이 노동자들의 작업현장을 직접 관리 하는데, 현지 국가의 노동규정을 어기고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 하는 경우가 많다. 러시아 마가단주에서 2014년까지 근무한 북한이탈주민 ○○○은 하루 16시간 근무했다고 증언하였다.¹¹⁴⁷

러시아 모스크바에 대외건설사업소 미장공으로 파견되어 2010년

1146_NKHR2019000014 2019-05-07.

1147_NKHR2018000002 2018-03-12.

부터 2017년까지 근무했다는 북한이탈주민 ○○○은 노동시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였고, 주말에도 쉬는 날이 없었다고 증언하였다.¹¹⁴⁸ 2015년 아버지가 러시아에 별목공으로 파견되었으나, 실제로 농사를 지었다고 설명한 북한이탈주민 ○○○은 아버지가 하루 14시간 정도로 오래 노동을 했으나 임금은 한달에 100달러 정도밖에 받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¹¹⁴⁹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몽골 건설노동자로 파견되었던 북한이탈주민 ○○○도 하루 일은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어졌고, 중간에 점심시간을 빼고는 쉬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명절이나 주말에도 쉬는 날이 전혀 없었다고 증언하였다.¹¹⁵⁰

2016년 러시아 소치로 해외파견을 간 북한이탈주민 ○○○은 새벽부터 밤까지 18시간씩 일하였지만 제대로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으며,¹¹⁵¹ 쿠웨이트에서 2017년까지 근무한 북한이탈주민 ○○○은 아침에 일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면 술 마시고 그냥 잠드는 ‘노예 같은’ 생활을 했다고 증언하였다.¹¹⁵² 2019년 말까지 러시아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증언자도 아침 8시부터 밤 10~11시까지 근무했으며, 주말에도 쉬지 않았고 직장장의 재량으로 한 달에 이틀 정도 휴일을 가졌다고 말했다.¹¹⁵³

1148_NKHR2019000037 2019-06-15.

1149_NKHR2019000020 2019-05-07.

1150_NKHR2019000023 2019-05-18.

1151_NKHR2019000050 2019-07-20.

1152_NKHR2018000031 2018-05-07.

1153_NKHR2020000049 2020-11-28.

한편 북한 해외 노동자들은 과도한 노동에 시달릴 뿐 아니라, 상납금을 충당하기 위해 기본 근로시간 외 ‘개인청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수 있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다. 쿠웨이트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파견된 바 있는 북한 이탈주민 ○○○은 쿠웨이트 회사에서 주는 월급으로는 상납금 맞추기도 버거워 개인적으로 일감을 구해 벌어들인 수입으로 국가 상납금의 일부를 충당했다고 증언하였다.¹¹⁵⁴

다. 과도한 상납금 부과와 중간관리자의 임금 착복

이처럼 북한 해외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나, 대체로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북한 노동자들이 현지인이나 다른 국가에서 온 노동자들에 비해 차별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러시아 건설현장에 파견된 바 있는 북한이탈주민 ○○○은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체첸 출신 노동자들과 함께 일했는데 북한노동자의 노임은 제일 낮아, 그들의 75% 수준에 불과했다고 한다.¹¹⁵⁵

둘째, 이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국가계획분 명목으로 과도한 금액이 부과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노동자들은 대체로 현지

1154_ NKHR2015000144 2015-10-06.

1155_ 북한이탈주민 ○○○, 2016년 10월 12일, 서울에서 면접.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현지 기업과 노동인력 공급계약을 체결한 북한 기업소에 소속된다. 따라서 노동자는 대체로 임금을 현지 기업으로부터 직접 받지 않고 자신이 소속된 북한 기업소로부터 지급받게 되는데,¹¹⁵⁶ 국가계획분을 제외하고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계획분 중 일부는 북한 당국에 보내지고, 일부는 세금, 사회보험료, 회사 운영비, 노동자 숙박비용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노동자들에게는 국가계획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려주지 않는다.¹¹⁵⁷

그렇다면 노동자가 상납해야 하는 국가계획분은 어느 정도 규모일까. 국가계획분은 지역이나 직종 등에 따라서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체로 연간 수천 달러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2019년 말까지 러시아에서 건설 노동자로 근무했던 한 증언자는 한 달 계획분이 600달러였는데, 이는 돈을 잘 버는 편인 러시아 노동자의 소득과 맞먹는 수준이었다고 증언하였다.¹¹⁵⁸ 또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역시 러시아에 파견되었던 한 북한이탈주민은 2016년의 경우, 한 사람당 연간 8,000달러가 계획으로 주어졌는데, 여러 다른 명목으로도 돈을 더 받아가 노동자들이 실제로는 1만 달러를 상납했다고 증언하였다.¹¹⁵⁹

1156_노동자가 현지 기업으로부터 임금을 직접 수령했다는 증언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북한 노동자는 총성자금, 당자금, 국가계획분의 명분으로 수령한 임금의 상당 부분을 북한 당국에 납부해야 한다. 2006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사할린의 건설현장에서 일한 북한이탈주민 ○○○는 매월 평균 6만~7만 루블을 벌었으며, 2013년까지 매월 국가에 2만 5천 루블을 바쳤다고 증언하였다(NKHR2015000001 2015-01-13).

1157_2006년부터 2008년까지 쿠웨이트에 파견된 북한이탈주민 ○○○는 쿠웨이트 회사에서 월급을 주지만 그 중 60%는 국가에서 갖고 40%만 노동자에게 돌아온다고 증언하였다 NKHR2014000144 2015-10-06; NKHR2020000050 2020-11-28.

1158_NKHR2020000049 2020-11-28.

1159_NKHR2020000050 2020-11-28.

2018년부터 2019년에 걸쳐 아프리카의 한 국가에서 의사로 근무한 한 증언자는 파견을 가면 3개월간은 상납을 면제해주지만, 이후에는 한 달에 600달러를 바쳐야 한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국가계획분 상납 규모는 노동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해외에 나와 돈을 제법 벌어가던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러시아 건설 노동자로 근무할 당시 한 달 계획분이 600달러였다고 한 증언자의 경우, 상납하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은 한 달에 230달러 정도였다고 한다.¹¹⁶⁰ 2018년 초까지 동유럽에 있었던 북한이탈주민 ○○○은 자신이 근무한 회사의 월급이 500달러 정도였는데, 본인 월급으로 기록되는 것은 150~200달러 정도였으며, 나머지는 당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¹¹⁶¹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아버지가 러시아 벌목공으로 파견되었다는 북한이탈주민 ○○○은 임금으로 원래 500달러를 주게 되어있었으나, 당자금 등 여러 명목으로 떼어가 100달러도 미처 받지 못할 때도 있었다고 설명했다.¹¹⁶² 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몽골에 건설 노동자로 파견되었던 북한이탈주민 ○○○은 파견 첫 7개월 동안은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다가, 이후 한 달에 20달러 정도를 받았으며, 본인 생각으로는 70~80% 정도 공제되는 것 같았다고 증언하였다.¹¹⁶³

1160_NKHR2020000049 2020-11-28.
1161_NKHR2018000043 2018-06-04.
1162_NKHR2019000020 2019-05-07.
1163_NKHR2019000023 2019-05-18.

근로 관련 계약이 대체로 작업소장과 현지 회사 간에 체결되기 때문에, 북한 해외 노동자 상당수는 자신의 실제 임금과 상납금 비율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 동유럽에서 일한 바 있는 북한이탈주민 ○○○은 이에 대해 단장에게 알려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단장이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¹¹⁶⁴ 다만 일부 노동자들의 증언을 통해 상납의 대략적인 규모 파악이 가능한데, 전반적으로 해외 노동자의 보수 중 상당한 부분이 상납분 명목으로 공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현지 여건이 좋지 않아 노동자가 상납금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3년 러시아 건설현장에 파견된 바 있는 북한이탈주민 ○○○은 매월 800~850달러를 자신이 소속된 북한 기업소에 내야했으며, 2013년 러시아 금융위기로 루블화 가치가 하락하자, 달러로 환전해 송금할 경우 상납금을 채우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증언하였다.¹¹⁶⁵ 2016년 러시아 소치에 파견되었던 북한이탈주민 ○○○도 러시아 경제상황의 악화와 환율 상승으로 돈을 거의 벌지 못했다고 증언하였다.¹¹⁶⁶ 2013년부터 2019년 말까지 러시아에 파견되었던 한 증언자는 2017~2018년에는 회사가 적자가 나서 집에 돈을 보내지 못했고, 2019년에는 200 달러를 빌려서 보냈다고 증언하였다.¹¹⁶⁷

1164_NKHR2018000037 2018-05-08.

1165_NKHR2016000163 2016-11-01.

1166_NKHR2019000050 2019-07-20.

1167_NKHR2020000050 2020-11-28.

해외노동자의 임금 중 60%는 국가에 바치고 40%는 개인이 가지는데 40% 중 10%는 중앙급 선물, 행정에 필요한 자금을 내는 데에 지출되어, 결국 30%만 개인에게 지급되는 꼴이라는 증언도 있다.¹¹⁶⁸ 2016년 러시아 소치로 파견된 북한이탈주민 ○○○은 절반 정도는 떼인다고 증언하였다.¹¹⁶⁹

한편, 이처럼 상납을 명목으로 공제되는 금액 중 일부는 실제로는 국가로 상납되지 않고, 중간 관리자, 간부들에 의해 착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증언도 있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국가보다 이러한 중간 간부들에게 떼이는 게 더 크다고 증언했으며,¹¹⁷⁰ 2017년에 탈북한 증언자는 자기 월급에서 중간 간부가 농간을 부려 많이 가져가는 바람에 본인 월급에서 30%도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로 인해 요즘에는 해외파견을 나가도 예전보다 돈을 못 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¹¹⁷¹ 2010년 러시아 모스크바로 파견되어 2017년까지 근무한 북한이탈주민 ○○○은 임금을 받을 때는 100달러에서 250달러 사이 임금을 받았고, 임금 계산은 기업소에서 (노동자 간) 등수를 매겨 1등은 250달러, 최하위는 100달러 등으로 차등을 두어 지급하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임금이 노동량에 비해 10%밖에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임금이 터무니없이 적은 것은 중간에서 간부들이 착복을 했기 때문이라 추정했다. 그는 또한 2014년 말부터 대북제재가 시작되며 임금

1168_ NKHR2017000063 2017-07-31.

1169_ 위의 증언.

1170_ NKHR2015000158 2015-11-17.

1171_ NKHR2017000134 2017-12-18.

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증언하였다.¹¹⁷²

한편, 북한 노동자들은 현지 회사의 임금 체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¹¹⁷³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러시아 건설현장에 파견된 바 있는 한 북한이탈주민은 자신이 속한 작업소가 반년 동안이나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에 대해 노동자들이 소속된 북한 기업소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한다.¹¹⁷⁴

라. 북한 당국에 의한 감시와 통제

북한에서 송출된 인력은 현지 회사와 계약한 북한 기업소의 관리를 받으며 생활한다. 현지의 북한 기업소는 노동자들에게 통역, 숙박 등을 제공하며, 노동자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북한 해외 노동자는 대부분 작업장 인근에서 단체생활을 하는데, 이들의 생활환경은 대체로 열악한 것으로 파악된다. 2013년도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건설노동자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은 잠은 컨테이너에서 자며, 침구류가 공급되는데, 한 컨테이너를 3칸으로 갈라 1칸에 10명 정도가 생활했다고 했다. 그는 몇백 명이 함께 쓰는 공동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위생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으며, 빨래도 못하고 휴식이 일절 없었다고 증언하였다.¹¹⁷⁵ 식사는 노동자들끼리 자체적으로 했다는 증언도 있

1172_NKHR2019000037 2019-06-15.

1173_북한이탈주민 000, 2016년 9월 29일, 서울에서 면접.

1174_북한이탈주민 000, 2016년 10월 10일, 서울에서 면접.

1175_NKHR2014000112 2014-08-12.

고,¹¹⁷⁶ 식비를 한 달에 30달러 정도 냈다는 증언도 있는데, 후자의 경우 식사 수준이 좋지 않았다고 한다.¹¹⁷⁷ 현지 회사가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¹¹⁷⁸ 작업 현장에 따라 현장 임시 숙소에서 숙식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¹¹⁷⁹ 물론 작업현장의 특성상 이러한 형태의 숙식 자체를 집단생활이 강제되고 있다거나, 개인의 주거에 대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작업조가 함께 움직이는 형태로 구성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활동할 여지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관련하여 더욱 우려되는 것은 북한 당국에서 파견된 관리에 의한 생활감시 및 상호감시 시스템이다. 북한 당국은 현지에서도 중앙집권적인 통제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 당국은 현지 기업소마다 해외 노동자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당비서와 보위지도원을 파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¹¹⁸⁰ 러시아와 쿠웨이트에 파견된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참고할 때, 이들 보위지도원은 공식적으로는 노동안전을 담당하는 ‘안전기장원’의 직책으로 파견되는 것으로 파악된다.¹¹⁸¹

1176_ NKHR2020000005 2020-05-15.

1177_ NKHR2020000050 2020-11-28.

1178_ 북한이탈주민 ○○○, 2016년 10월 6일, 서울에서 면접.

1179_ 북한이탈주민 ○○○, 2016년 10월 10일, 서울에서 면접; 북한이탈주민 ○○○, 2016년 10월 12일, 서울에서 면접.

1180_ 북한이탈주민 ○○○, 2016년 9월 29일, 서울에서 면접.

1181_ 북한이탈주민 ○○○, 2016년 10월 12일, 서울에서 면접; 북한이탈주민 ○○○, 2016년 10월 30일, 서울에서 면접.

실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생활은 함께 파견된 국가보위원 또는 소속된 북한 회사의 관리자에 의해 감시받는다. 공동생활을 하는 북한 해외 노동자들은 소속 회사 기숙사에서 열리는 총화에 참석해야 한다.¹¹⁸² 이들은 일주일에 2~3차례 노동자들의 소지품을 검열하며, 핸드폰의 소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¹¹⁸³ 집에서 오는 편지는 백 퍼센트 보위부에서 검열하기 때문에 본인도 편지에 구체적인 사항은 쓰지 않았다는 증언도 있다.¹¹⁸⁴ 노동자들은 일탈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을 받거나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수 있다. 제일 엄중하게 처벌되는 행위는 한국 라디오를 청취하거나 TV를 보는 것이다.¹¹⁸⁵

하지만 이러한 사항들이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사할린에 2006년부터 2013년까지 파견된 바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한국 TV를 보다가 적발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파견된 보위원 역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비판서를 쓰고 뇌물을 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증언하였다.¹¹⁸⁶ 2013년부터 2019년 말까지 러시아에 파견되었던 한 증언자는 회사에서 스마트폰은 쓰지 못하게 했지만 노동자들이 전화를 암암리에 사용했으며, 전화기를 검열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또 관리자 몰래 유튜브에도 많이 접속하여, 2018년 남북정상회담도 시청하고, 한국 노래를 듣기도 했

1182_ 이애리아·이창호, 『연해주 지역 북한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 (서울: 통일연구원, 2015), p. 35.

1183_NKHR2013000196 2013-10-29.

1184_NKHR2020000049 2020-11-28.

1185_NKHR2015000068 2015-04-07.

1186_NKHR2015000001 2015-01-13.

다고 한다.¹¹⁸⁷ 또 생활총화는 실제로는 하지 않았는데, 보위부에서 파견된 인원도 별로 상관하지 않고, 검열에 대비해서 문건만 만들어두라고 했다는 증언도 있다.¹¹⁸⁸

해외에 파견된 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단독 외출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¹⁸⁹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러시아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은 집체적으로 다녀야 하며, 10명 내지 15명이 함께 다닌다고 증언하였다.¹¹⁹⁰ 2018년 초까지 동유럽에 파견되었던 북한이탈주민 ○○○ 역시 사전 신고 시 3명이 조를 짜서 지정된 상점을 방문할 수 있었다고 증언하였다.¹¹⁹¹ 또한 북한 노동자들은 원칙적으로 외부인과의 접촉이 금지되며, 현장소장과 통역만이 접촉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¹¹⁹² 이와 달리, 관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동했다거나 개인 혼자서 이동이 가능했다는 증언도 있다.¹¹⁹³ 일례로, 러시아에 파견되었던 한 증언자는 원래는 개별적인 외출이 금지되어 있지만, 본인은 러시아 말도 좀 알고 파견 경력이 어느 정도 길다 보니 혼자 다니기도 했다고 증언하였다.¹¹⁹⁴ 또한 이러한 개인적 외출 제한이 언어적 장벽이나 단독으로 외출할 때의 위험성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증언도 있다.¹¹⁹⁵

1187_ NKHR2020000049 2020-11-28.

1188_ NKHR2020000050 2020-11-28.

1189_ 북한이탈주민 ○○○, 2016년 10월 4일, 서울에서 면접.

1190_ 북한이탈주민 ○○○, 2016년 9월 5일, 서울에서 면접.

1191_ NKHR2018000043 2018-06-04.

1192_ 이애리아·이창호, 『연해주 지역 북한 노동자의 실태와 인권』 (서울: 통일연구원, 2015), p. 35.

1193_ 북한이탈주민 ○○○, 2016년 10월 30일, 서울에서 면접; 북한이탈주민 ○○○, 2016년 10월 7일, 서울에서 면접; 북한이탈주민 ○○○, 2016년 10월 10일, 서울에서 면접.

1194_ NKHR2020000050 2020-11-28.

1195_ 북한이탈주민 ○○○, 2016년 10월 6일, 서울에서 면접.

마. 강제노동에 처할 위험성

자유권규약 제8조 제3항은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동 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강제노동이란 “어떠한 사람으로부터 처벌의 위협 하에 강요되었으며,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¹¹⁹⁶ 여기서의 처벌은 형사적 처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권리 또는 특권의 박탈과 같은 경우도 포함된다.¹¹⁹⁷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노동이 ‘강제노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정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판단이 가능하다. 강제노동 성립여부에 있어 일차적 기준인 자발성 여부를 살펴볼 때, 북한 해외 노동자의 경우 처벌의 위협 하에 강요를 받아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노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들 대부분은 자원해서 해외로 파견되었으며, 선발을 위해 뇌물을 공여했다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¹¹⁹⁸ 파견신청 동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해외파견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은 파견 시기를 불문하고 대부분 힘이 들더라도 해외에 나가면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고 답한다.¹¹⁹⁹ 근로 중단 및 종료의 자율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무리한 노동으로 인한 휴식의

1196_ 강제근로에 관한 국제노동기구협약 제29호 (1930), 제2조 제1항, 제2항.

1197_ Sarah Joseph & Melissa Casta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ases, Materials, and Commentary*, 3r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 324.

1198_ NKHR2017000064 2017-07-31; NKHR2017000120 2017-11-20.

1199_ 북한이탈주민 ○○○, 2016년 10월 4일, 서울에서 면접; 북한이탈주민 ○○○, 2016년 10월 7일, 서울에서 면접; 북한이탈주민 ○○○, 2016년 10월 23일, 서울에서 면접 등.

사의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지만,¹²⁰⁰ 건강상의 이유로 북한으로의 귀환을 원하는 경우 해외파견을 중단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¹²⁰¹ 2019년 말까지 러시아 건설 노동자로 근무했던 한 증언자는 일을 하지 못할 만한 신체적 문제가 있을 경우 직장장이 귀국시켰다고 증언하였다.¹²⁰² 건강상의 이유가 아닌 경우에도 해외파견 중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허용치 않을 경우 일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¹²⁰³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해외파견과 이후의 노동이 반드시 강제적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러한 자발적인 파견과 노동이라 하더라도, 이후의 과정에서도 부채로 인한 결박, 임금연체, 신분증의 압수, 취약성의 악의적 이용 등의 요인에 의해 강제노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¹²⁰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북한 해외 노동자들은 외부와의 접근이 차단된 집단생활을 하는데, 이들의 신분증명서(여권 등)는 압수되며, 북한 당국에서 파견된 관리자가 이를 보관한다. 신분증을 압수하는 주체는 안

1200_ “그렇 수도 없어요. 거저 죽지 않거나 다리 부러지지 않은 정도면 계속 나가 일을 해야 돼요,” 북한이탈주민 ○○○, 2016년 10월 4일, 서울에서 면접.

1201_ 북한이탈주민 ○○○, 2016년 9월 29일, 서울에서 면접; 북한이탈주민 ○○○, 2016년 10월 7일, 서울에서 면접.

1202_ NKHR2020000049 2020-11-28.

1203_ 북한이탈주민 ○○○, 2016년 9월 5일, 서울에서 면접.

1204_ ILO, “ILO Indicators of Forced Labour-Special Action Programme to Combat Forced Labor,” 2012, <www.ilo.org/forcedlabour>. ILO는 강제노동 정의에서 도출되는 성립요건인 처벌의 위협이나 강박에 의해 강제적으로 일하는 경우뿐 아니라, 강제노동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11개의 지표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① 취약성의 악용, ② 기만, ③ 이동의 제한, ④ 고립, ⑤ 신체적 및 성적 폭력, ⑥ 협박과 위협, ⑦ 신분증명서 압수, ⑧ 임금연체, ⑨ 부채로 인한 결박, ⑩ 열악한 근로 및 생활조건, ⑪ 장시간 노동이 해당한다.

전부(경찰), 책임자, 당위원회 등으로 보이며(〈표V-6〉 참조), 북한 당국이 아닌 현지 회사 차원에서 신분증을 압수했다는 증언도 있다.¹²⁰⁵ 대북제재로 인해 해외 노동자 파견이 어렵게 되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북한에 돌아가고 싶어 하는 노동자도 계속 해외에 체류하도록 강제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다.¹²⁰⁶

표V-6 신분증 압수 주체 관련 증언

증언내용	증언번호
“(나가자마자) 안전부에 다 바쳐야 해요.”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16년 10월 4일, 서울에서 면접
“내꺼 증명서 여권은 … 우리 책임자가 다 모아가지고 갔어.”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16년 10월 5일, 서울에서 면접
“우리가 갈 때는 여권은 내가 가지고 목적지까지 가요, 그 다음에는 경찰이 몽땅 다 뺏어요. 안 줘요. 여권을 다 뺏어요.”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16년 10월 6일, 서울에서 면접
“도착하면 시간 썩 넘어가면, 넘어가기 전에 여권 찢다가 그 시간 썩 통과하면 몽땅 회수하니까 본인이 여권 쥐고 5분도 못 있어요. … 안전부에서, 경찰에서 다 거둬가지고.”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16년 10월 17일, 서울에서 면접
“소지를 못하고 거기서는 저거 당위원회에 다줘요.”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16년 10월 12일, 서울에서 면접

또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은 대부분 항공 교통비, 비자 수수료 등의 빚을 안고 해외 생활을 시작한다. 때문에 현지에 도착해 몇 개월간은 파견에 소모된 비용을 상환하기 위해 노동을 하게 된다. 2013년도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건설노동자로 파견된 바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한 달에 1,500달러 정도를 받는데, 이 중 950달러를 국가 당 자금, 회사 사장, 작업반장, 당비

1205_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16년 10월 10일, 서울에서 면접; 북한이탈주민 〇〇〇, 2016년 10월 12일, 서울에서 면접.

1206_ NKHR2018000043 2018-06-04.

서 뭉으로 가져갔으며, 처음 1년 동안은 항공료, 거주비 등 각종 명목으로 추가 공제가 이루어져 사실상 무보수로 노동을 한다고 증언하였다.¹²⁰⁷ 2019년 말까지 러시아 건설 노동자로 근무했던 한 증언자도 국가계획분 외에 파견 나올 때 들었던 항공료와 철도운임 약 1,000달러 정도도 내야 했다고 증언하였다.¹²⁰⁸ 이러한 상황은 실제 이들이 채무로 인해 강제적으로 노동을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처럼 북한 당국 관리자에 의한 생활통제, 신분증의 압수와 파견 이후 자동적으로 지게 되는 채무 등은 자발적 의사로 해외파견을 신청한 노동자라 하더라도, 의사에 반해 노동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바. 평가

북한에서 해외파견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외파견을 희망하는 자들이 많았다. 하지만 그 기회는 토대가 좋고, 뇌물을 바칠 수 있는 자들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는 해외 파견자를 선발과정에서 평등권이 침해되는 결과로 이어져 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파견된 노동자들은 현지에서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어 온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장기간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1207_NKHR2014000112 2014-08-12.

1208_NKHR2020000049 2020-11-28.

소득 중 상당 부분을 상납금 형태로 국가에 납부하고 있는데, 그 중 일부를 중간관리자가 착복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은 현지 체류 기간 내내 신분증을 압수당한 채, 북한 당국의 감시와 통제 속에 단체생활을 하고 있어 사생활의 침해를 받고 있으며, 파견과정에서 생긴 빚 때문에 강제노동에 처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7년 하반기 이후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 노동자의 해외파견이 금지됨에 따라 해외 노동자 규모는 크게 줄어들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적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제재가 해제되면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은 다시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비록 지금은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지만, 지속적으로 북한 해외 노동자의 인권 상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며 개선 방안을 모색해 갈 필요가 있다.

4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는 국제인도법이 적용되는 인도주의 사안에 속한다. 동시에 이 문제들은 국제인권법이 적용되는 인권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부침과 관계 없이 지속적으로 해결을 모색해야 할 절박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의 현황과 인권 문제를 살펴본다.

가. 이산가족

(1) 현황

남북이산가족이란 가족과 헤어져 남북한 지역에 분리된 상태로 거주하고 있는 8촌 이내의 친인척과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자를 말한다.¹²⁰⁹ 이산가족 발생 원인은 한반도 분단, 자진 월남·월북, 한국전쟁 기간 중 납치나 의용군 입대, 일본에서의 북송, 정전협정 체결 이후 미귀환, 납북, 북한 이탈 등 시대상황에 따라 다양하다. 남북이산가족의 규모는 2005년 조사에서

1209_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북한에 가족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72만 명이었고 그 중 북한 출신이 16만여 명으로 집계되었다.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 이북5도위원회는 이산가족정보통합 센터를 설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산가족은 13만 3,406명, 생존자는 4만 9,452명, 사망자는 8만 3,954명이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이산가족 생존자 가운데 80세 이상이 64%를 넘으면서, 생존자 가운데 70세 이상은 85%를 상회한다. 해가 거듭될 수록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사망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표 V-7 이산가족 등록 현황

구분	신청자(명)	생존자(명)	사망자(명)
2010	128,461	82,477	45,984
2011	128,668	78,892	49,996
2012	128,779	74,836	53,943
2013	129,264	71,480	57,784
2014	129,616	68,264	61,352
2015	130,808	65,674	65,134
2016	131,143	62,631	68,512
2017	131,344	59,037	72,307
2018	133,208	55,978	77,221
2019	133,370	52,730	80,640
2020	133,406	49,452	83,954

출처: 통일부 남북이산가족찾기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2020.12.31. 기준), <<https://reunion.unikorea.go.kr/reuni/home/pds/reqststat/list.do?mid=SM00000129>> 참조하여 작성.

표 V-8 이산가족 생존자 현황

구분	90세 이상	80~89세	70~79세	60~69세	59세 이하	계
인원수(명)	12,189	19,621	10,421	4,168	3,053	49,452
비율(%)	24.6	39.7	21.1	8.4	6.2	100

출처: 통일부 남북이산가족찾기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2020.12.31. 기준), <<https://reunion.unkorea.go.kr/reuni/home/pds/reqtstat/list.do?mid=SM00000129>> 참조하여 작성.

표 V-9 생존 이산가족의 80세 이상 비율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생존자(명)	68,264	65,674	62,631	59,037	55,987	52,730	49,452
80세 이상(명)	37,717	37,442	37,259	36,499	34,546	33,318	31,810
비율(%)	55.3	57.0	59.5	61.8	61.7	63.2	64.3

출처: 통일부 남북이산가족찾기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2020.12.31. 기준), <<https://reunion.unkorea.go.kr/reuni/home/pds/reqtstat/list.do?mid=SM00000129>> 참조하여 작성.

남북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이산가족법’)이 2009년 3월 25일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남북이산가족법은 남북이산가족의 현황 및 교류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이에 따라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는 공동으로 매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 1차 조사에 이어 2016년 2차 조사가 완료되었다. 2차 조사에서 남북이산가족찾기 신청자 5만 1,174명의 정확한 인적 사항을 조사하였다. 또한, 2013년 남북이산가족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이산가족의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정부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 51,328건의 혈액, 타액, 모발 등 유전자 검체를 조사했다.

표 V-10 이산가족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체 조사 현황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실적 (건)	1,211	10,274	10,030	1,178	11,245	17,390	10,997	62,325

출처: 통일부 이산가족과(2020.12.31. 기준)

(2) 인권 문제

(가) 가족결합권 침해

이산가족들은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며 가족끼리 함께 살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산가족들은 국제인도법상 가족권을 침해받고 있다. 1949년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일명 ‘제네바 제4협약’)은 ‘가족권(family rights)’을 명시적으로 보호하고 있다.¹²¹⁰

표 V-11 제네바 제4협약 가족권 관련 규정

제27조 제1항	피보호자들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들의 신체, 명예, 가족으로서 가지는 권리들, 신앙 및 종교상의 행사, 풍속 및 관습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하 생략)
----------	---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남북한은 제네바 제4협약의 당사국이 아니었다. 한국은 1966년 8월 16일에 제네바 제4협약에 가입하였고, 북한은 1957년 8월 27일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 발발 직후 당시 국제적십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총재는 남북한 모두 제네바협약의 가입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동 협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210_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Geneva Convention Relative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August 12, 1949).

하였다. 이에 1950년 7월 5일 이승만 대통령은 제네바협약의 조건에 따를 것임을 다짐하였으며, 같은 달 13일 북한 당국도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제안을 수락하는 전문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달하였다. 따라서 제네바 제4협약은 한국전쟁 당시부터 한국과 북한 모두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¹²¹¹

이산가족들은 국제인권법상의 권리 가운데 하나인 가족결합권을 침해받고 있다. 가족권 중에서 가족이 함께 살 권리를 ‘가족결합권(right to family unification)’ 또는 ‘가족재결합권’이라고 한다.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들은 혼인적령의 남녀가 혼인결혼을 하고 가정을 구성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가정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²¹² 또한 가정은 부모와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의해 확대되는데, 아동권리협약은 제9조에서 아동이 의사에 반하여 부모와 분리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가족결합권은 이와 같이 남녀가 혼인하여 가정을 이룰 권리, 아동이 부모와 분리되지 않고 함께 살 권리 등으로부터 파생되는 개념이다. 가족권 및 가족결합권은 남북한의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한국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6조 제1항). 북한 헌법은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1211_ 제성호, “전시 민간인 납치의 국제인도법적 고찰,” 『서울국제법연구』, 제18권 1호 (서울국제법연구원, 2011), p. 200.

1212_ 세계인권선언 제16조 제3항; 자유권규약 제17조 및 제23조; 인종차별철폐협약 제5조(d)(iv); 유럽인권협약 제12조; 미주인권협약 제17조 제2항.

고 규정하고 있다(제78조). 가족결합권 실현 차원에서 우리 정부는 그동안 남북적십자회담과 장관급회담 등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왔다. 2018년 8월에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개최되었고, 이어 9월에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산가족 간의 상설면회소 설치에 성사되지 못했으며, 이산가족 간의 교류와 상봉 모두가 연결되지 못했다.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서신교환, 방남·방북 상봉, 화상 상봉 등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가 전무하다.

표 V-12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현황** (단위: 건/명)

구분	생사확인	서신교환	방남상봉	방북상봉	화상상봉
1985~2003	963 (19,096)	8 (679)	331 (2,700)	735 (2,817)	-
2004	681 (5,007)	-	-	400 (1,926)	-
2005	962 (6,957)	-	-	397 (1,811)	199 (1,323)
2006	1,069 (8,314)	-	-	594 (2,683)	80 (553)
2007	1,196 (9,121)	-	-	388 (1,741)	278 (1,872)
2008	-	-	-	-	-
2009	302 (2,399)	-	-	195 (888)	-
2010	302 (2,176)	-	-	191 (886)	-
2011~2012	-	-	-	-	-
2013	316 (2,342)	-	-	-	-
2014	-	-	-	170 (813)	-

구분	생사확인	서신교환	방남상봉	방북상봉	화상상봉
2015	317 (2,155)	-	-	186 (972)	-
2016~2017	-	-	-	-	-
2018	292 (1,996)	-	-	170 (833)	-
2019	-	-	-	-	-
2020	-	-	-	-	-
계	8,262 (59,563)	679 (679)	331 (2,700)	4,024 (18,061)	557 (3,748)

출처: 통일부 남북이산가족찾기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2020.12.31. 기준), <<https://reunion.unikorea.go.kr/reuni/home/pds/reqststat/list.do?mid=SM00000129>> 참조하여 작성.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남북 교류 활성화에 대비하면서 사후에라도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에 1,010편이, 2020년에 1,001편이 제작되었다.¹²¹³

우리 정부는 당국 차원의 교류와 함께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1998년 ‘이산가족 교류 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생사확인, 상봉, 서신교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왔다. 그러나 2020년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도 현저히 감소했다. 서신교환만 4건 성사되었으며 생사확인이나 상봉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민간 차원의 교류도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1213_ 통일부 이산가족과(2020.12.31. 기준).

표 V-13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현황

(단위: 건)

구분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
1990~2006	3,667	10,680	1,614
2007	74	413	55
2008	50	228	36
2009	35	61	23
2010	16	15	7
2011	3	21	4
2012	6	16	3
2013	9	22	3
2014	6	11	5
2015	4	26	1
2016	6	43	3
2017	10	46	1
2018	7	36	1
2019	2	16	1
2020	-	4	-
합계	3,895	11,638	1,757

출처: 통일부 남북이산가족찾기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 (2020.12.31. 기준), <<https://reunion.unikorea.go.kr/reuni/home/pds/reqststat/list.do?mid=SM00000129>> 참조하여 작성.

(나) 월남자 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가족이 월남하여 이산가족이 된 북한 주민들은 입당과 군입대를 하지 못하며 이 밖에 대학진학, 결혼 등에 있어 차별을 받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월남자 가족들은 당국의 지속적인 감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북한이탈주민 ○○○은 2006년 이산가족 찾기를 통해 친할아버지가 남한에 살아있다는 것이 알려진 뒤 10년 동안 당국으로부터 미행과 감시를 당했고, 이를 견딜 수 없어 2016년 탈북을 감행했다고 증언하였다.¹²¹⁴

월남자 가족이라는 특정한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는

1214_NKHR2017000084 2017-09-25.

것은 자유권규약 및 사회권규약에 위반된다. 자유권규약 제2조 제1항과 사회권규약 제2조 제2항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금지하고 있다.

표 V-14 이산가족 북한 주민에 대한 차별 사례

증언내용	증언번호
시할아버지와 큰아버지가 월남자, 해외거주자여서 토대가 나뉘었음. 남편이 2005년 군대에 갔으나 출세하지 못하였음. 또한 할아버지가 전쟁 때 행방불명되었고, 사촌언니가 남한에서 기자회견을 함으로 인해 친척들이 모두 수용소로 갔음.	NKHR2016000021 2016-01-26
아버지 가족이 월남자 가족이며 1960년대에 평양에서 추방되는 등 토대가 나뉘었음. 오빠는 군대를 못 가고 뇌물을 써서 입대하였고, 아들이 군대를 갔지만 군관학교에 가지 못했음. 토대가 나뉘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음.	NKHR2016000041 2016-04-05
외할아버지가 월남자라서 평생 당국의 감시와 사회적 차별을 받았음. “까마귀는 까마귀랑 살아야 한다”고 해서 결혼을 할 때도 토대가 좋지 않은 남자와 결혼할 수밖에 없었음.	NKHR2017000032 2017-06-05
한국전쟁 당시 할아버지가 미국으로 간 것 때문에 모든 가족이 양강도 금산으로 강제추방 당했고 본인은 추방지에서 태어남.	NKHR2018000025 2018-04-09
한국전쟁 당시 외할아버지와 외삼촌이 월남한 것 때문에 1976년 모든 가족이 평양에서 평안남도 안주로 강제추방을 당함. 본인은 추방지에서 태어남.	NKHR2018000085 2018-08-11

나. 납북자

(1) 현황

(가) 전시납북자

한국전쟁 기간 납북된 한국국민들의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는 않으며, 현재까지 발굴된 7개의 관련 명부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50년 공보처 통계국의 서울특별시 피해자 명부(2,438명), 1952년 공보처 통계국에서 간행된 6·25사변 피랍치자 명부(8만 2,959명), 1954년 내무부 치안국이 발표한 납치자 명부(1만 7,940명), 1956년 대한적십자사의

실향사민등록자 명단(7,034명), 1963년 국방부가 작성한 실향사민 명부(1만 1,700명) 등이 부분적이거나 전시 납북자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게 한다.¹²¹⁵ 이 명부들에 동일인이 중복 수록된 경우는 납북사실을 확인하기 쉽지만, 어떤 명부에도 기재되지 않은 납북자들도 다수 존재하며 심지어 한 인물이 피랍치자 관련 명부와 월북자 명부(1952, 공보처)에 각각 수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표 V-15 전시납북자 규모

구분	작성주체	시기	인원	존재 여부
서울시 피해자 명부	공보처 통계국	1950년	2,438명	○
6·25사변 피랍치자 명부	공보처 통계국	1952년	82,959명	○
6·25사변 피랍치자	내무부 치안국	1952년	(126,325명)	×
6·25사변 피랍치자 명부	공보처 통계국	1953년	(84,532명)	×
6·25동란으로 인한 피랍치자 명부	내무부 치안국	1954년	17,940명	○
실향사민등록자 명단	대한적십자사/ 공보처 통계국	1956년	7,034명	○
실향사민 명부	국방부	1963년	11,700명 -	1권 ○ 2권 ×

출처: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 “위원회 정보마당 - 6·25납북자 현황,” <http://www.abductions625.go.kr/home/dta/dta01/dta01_02.jsp> (검색일: 2021.1.23.) 참조.

전시납북자들 중 귀환자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시납북자의 숫자가 매우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력으로 귀환한 경우가 없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다수의 납북자들이 북한 측에 협조하

1215_이외에도 1951년 9월 결성된 6·25사변피랍치인사가족회가 1950년 9월 28일 서울수북 이후 그 때까지 회원들의 등록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한 6·25사변 피랍치인사 명부(2,514명)가 있다.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전쟁납북자 명단-납북인사DB,” <<http://www.kwafu.org/korean/directory.php>>.

지 않아 피살되었고, 전쟁 중 활용(군, 부역)되는 과정에서도 희생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식량난 이후 탈북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귀환납북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대부분 고령이며 납북자 본인들이 북측 가족들에게 전시납북자 여부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2010년 12월 13일에 공식출범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는 2015년 12월까지 전시납북자 피해 사건을 접수하여 중복 및 취하된 사건을 제외한 후 다음과 같이 결정을 내렸다.

표 V-16 전시납북자 처리 현황

(단위: 건)

납북자 결정	납북자 비결정	판단불능 결정	합계
4,777	138	460	5,375

출처: 통일부 이산가족과 (2020.12.31. 기준).

(나) 전후납북자

휴전 이후 북한으로 납치된 전후납북자는 총 3,835명으로, 이들 중 일부는 교육수준, 신체건강 등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북한 당국이 억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²¹⁶ 납북자 중 3,310명(86.5%)은 납북 이후 6개월부터 1년 이내에 송환되었고, 9명은 2000년 이후 탈북 귀환하였다. 귀환 납북자 9명 가운데 1명은 사망하여 2020년 말 기준 생존 귀환

1216_ 귀환 납북자 이○○에 따르면, 봉산 21호와 22호 선원 27명은 해주에서 평양으로 이관되어 어선이 간첩선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작업을 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체 건강하고 일정수준(고교중퇴 이상)의 학력을 가진 어부 7인을 선발하여 청진에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나머지 어부들은 귀환 조치하였다.

납북자는 8명이다. 2020년 말 기준 북한에 억류된 전후납북자는 516명으로 추정된다.

표 V-17 전후납북자 현황(추정) (단위: 명)

구분	합계	어선원	KAL기	군·경	기타		
					국내	해외	
피랍	3,835	3,729	50	30	6	20	
귀환	송환	3,310	3,263	39	-	-	8
	탈북	9	9	-	-	-	-
미귀환	516	457	11	30	6	12	

출처: 통일부 이산가족과(2020.12.31. 기준).

표 V-18 연도별 납북억류자 현황 (단위: 명)

연도	억류자 수	누계	연도	억류자 수	누계
1955	10	10	1973	8	429
1957	2	12	1974	30	459
1958	23	35	1975	28	487
1962	4	39	1977	4	491
1964	16	55	1978	4	495
1965	20	75	1980	1	496
1966	19	94	1985	3	499
1967	52	146	1987	13	512
1968	133	279	1992	1	513
1969	20	299	1995	1	514
1970	36	335	1999	1	515
1971	20	355	2000	1	516
1972	66	421			

출처: 통일부 이산가족과(2020.12.31. 기준).

표 V-19 귀환 납북자 현황

성명	납북일자	직업	귀환일자
이○○	1970.04.29.	봉산22호 선원	2000.07.26.
진○○	1967.04.12.	천대11호 선원	2001.10.30.
김○○	1973.11.24.	대영호 기관장	2003.06.23.
고○○	1975.08.17.	천왕호 선원	2005.07.12.
최○○	1975.08.17.	천왕호 선원	2007.01.16.
이○○	1975.08.17.	천왕호 선원	2007.09.10.
윤○○	1968.07.02.	금용호 선원	2008.01.09.
윤○○	1975.08.17.	천왕호 선원	2009.02.26.
전○○	1972.12.28.	오대양61호 선원	2013.09.05.

출처: 통일부 이산가족과(2020.12.31. 기준).

한편, 전후 납북피해자는 2007년에 제정된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북피해자가 귀환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정착지원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07년에 구성된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는 2020년 12월 까지 총 460건을 접수하였다. 53회 회의를 개최하여 436건을 인정하고, 피해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약 150억 원을 지급하였다.

표 V-20 납북피해자 연도별 피해위로금 등 신청·접수 결과 (단위: 건)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3년	2015년	2019년	2020년	합계
피해위로금	232	99	97	0	1	2	6	437
정착금· 주거지원금	7	1	0	1	0	0	0	9
보상금	0	8	4	1	0	0	1	14
합계	239	108	101	2	1	2	7	460

출처: 통일부 이산가족과(2020.12.31. 기준).

표 V-21 남북피해자 피해위로금 등 지급결정 현황

구분	신청건수	인정건수	지급액(백만 원)
피해위로금	437	425	13,210
정착금·주거지원금	9	9	1,773
보상금	14	2	181
합계	460	436	15,164

출처: 통일부 이산가족과(2020.12.31. 기준).

표 V-22 남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구분	2007년~2010년	2011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9년	2020년	계
회의 개최	34회	6회	2회	2회	3회	2회	2회	2회	53회

출처: 통일부 이산가족과(2020.12.31. 기준).

(2) 인권 문제

(가) 가족결합권 침해

납북자도 이산가족과 마찬가지로 가족결합, 서신교환, 상봉 등에 있어 인권문제를 겪고 있다. 이 점에서 납북자와 국군포로는 특수이산가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우리 정부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를 북한에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이 문제가 부각되는 것을 회피하였다. 2012년과 2013년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함께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도 제안하였다. 그러나 2014년 2월 금강산에서 개최된 제19차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는 우리 측에서 생사확인을 요청한 전시납북자 중 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정도에 그쳤다. 2015년 10월 제20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서는 1972년 오대양호 사건 때

납북된 어부 정진목이 납북 어머니를 상봉하였다.¹²¹⁷ 2018년 8월 이산가족행사에서 국군포로·납북자 21명의 생사를 확인하였고 6가족 12명이 재북 가족과 상봉하였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2018년 말까지 생사가 확인된 국군포로 및 납북자는 133명, 가족 상봉이 이뤄진 경우는 60건이었다.¹²¹⁸ 2020년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는 전쟁 중과 그 후에 납치된 사람들의 송환을 촉구했다.¹²¹⁹ 납북자의 생사 유무를 확인하고, 가족과 소통하고 결합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이 필요하다.

(나) 강제이송과 억류

북한의 전시 민간인 납치행위는 민간인의 강제이송(forcible transfer)을 금지한 제네바 제4협약 제49조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된다. 이는 당시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된 규범이었다.¹²²⁰ 또한 전시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제4협약은 민간인의 억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제79조).

1217_ 『연합뉴스』, 2015.10.24.

1218_ 통일부, 『2019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19), p. 184.

1219_ OHCHR, “UN experts urge DPRK to repatriate abductees on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25 June 2020.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5998>>(검색일 2021.1.28.).

1220_ 정민정,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분석,”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북한에 의한 납치 및 강제실종』 (서울: 통일연구원, 2015), p. 93.

표 V-23 제네바 제4협약 강제이송 및 억류 관련 규정

제49조	피보호자들을 점령지역으로부터 점령국의 영역 또는 피점령 여부를 불문하고 타국의 영역으로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강제이송 또는 추방하는 것은 그 이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금지된다. (이하 생략)
제79조	총돌당사국은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68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보호자들을 억류하여서는 안 된다.

(다) 강제실종

북한 당국에 의한 민간인 납치행위는 강제실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강제실종은 여러 종류의 인권이 중첩적으로 위반된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즉, 강제실종을 자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강제실종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고문 등의 비인도적 대우, 건강권과 교육권 박탈 등으로 인해 다양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위반하게 된다.¹²²¹

북한은 1950년 이래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다른 국가 국민들을 조직적으로 납치해왔으며 이들의 송환을 거부하였다. COI는 북한에 강제실종 피해자가 아동을 포함하여 20만 명을 훨씬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¹²²² 강제실종 피해의 대다수는 북한 당국을 위해 노동력 및 기술을 착취할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간첩 및 테러 활동에 투입되었다. 유럽, 중동 및 아시아에서 납치된 여성들은 다른 국가에서 온 남성들과 강제결혼을 당하기도 하였다.¹²²³

1221_OHCHR,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 Fact Sheet No. 6/Rev.3. (2009); 정구연, “강제실종 개념의 등장과 확산,”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북한에 의한 납치 및 강제실종』 (서울: 통일연구원, 2015), p. 7에서 재인용.

1222_UNHRC,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4), para. 64.

1223_ *Ibid.*

그러나 북한은 강제실종의 존재 자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KAL기 납치 피해자 가족회(이하 ‘가족회’)는 유엔 인권 이사회 산하의 ‘강제적 또는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 WGEID, 이하 ‘강제실종 실무그룹’)에 KAL기 납북 미귀환자 황원(2010.6.17.), 이동기(2010.10.8.), 최정웅(2010.11.8.) 사건을 접수하였다.¹²²⁴ 북한은 이에 대해 “미귀환자 3명은 강제 실종에 해당하지 않으며, 북한에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또는 강제억류자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2020년 2월 13일에 북한에 서한을 보내 1969년 북한의 KAL기 납치로 강제실종된 11명 송환을 촉구했다.¹²²⁵ 그리고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WGAD)은 황원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황원이 엄중한 보안 속에서 가택연금 중이며,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위반되는 자유 박탈 상태에 있다고 2019년 7월 17일에 북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북한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구금된 사람이 없다는 답변을 2019년 8월 26일에 제출했다.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황원이 대한민국 시민이며 자신의 자유의지로 북한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즉각 송환하고 배상하라고 조치했다. 북한은 이

1224_ 1969년 KAL기 납치사건 당시 승무원 4명과 승객 46명 등 50명이 납치되었다. 북한은 1970년 2월 14일 승객 39명을 송환하였을 뿐 승무원 4명과 승객 7명 등 11명은 송환하지 않았다. 유엔 인권위원회(현 인권이사회) 결의로 설치된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강제실종 피해자 가족이나 민간단체들로부터 실종사건을 접수해 심사한 뒤 이를 납치 의심 국가들에 통보해 명확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1225_ OHCHR, “UN experts urge North Korea to repatriate 11 abducted from plane hijack 50 years ago,” 13 February 2020.

같은 의견과 조치가 악의적이고 전형적인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하고 있다.¹²²⁶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2020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강제실종에 대한 긴급청원에 북한을 포함했다.¹²²⁷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2015년 5월 22일에 이어 2020년 4월 11일에 북한 방문 조사를 재차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¹²²⁸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북한의 강제실종 사례 중에서 미결 건수를 총 316건으로 정리했다. 실무그룹은 북한에 긴급청원(urgent appeal)과 고소장(allegation letter)을 각각 1건씩 보냈으나, 북한은 고소장에 대한 답변만 보냈다고 밝히고 있다. 미결 사례 316건 가운데 여성이 48건에 해당한다.¹²²⁹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강제실종에 대한 당사국들의 참여와 협력 부족이 우려되며, 그중에서 북한은 전달된 사건에 대해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형식적인 답변만 보낸다고 예시했다.¹²³⁰

2014년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강제실종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요청하였다.¹²³¹ 또한 2017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66건의 강제실종에 대한 정보공개를 북한 측에 요청하였으며,¹²³² 이 중에는 앞서 언급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씨

1226_WGAD, Opinion No. 69/2019 concerning Hwang Won(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A/HRC/WGAD/2019/69 (2020).

1227_WGEID,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UN Doc. A/HRC/45/13 (2020), para. 27.

1228_UN Doc. A/HRC/45/13 (2020), Annex 1, p. 26.

1229_ *ibid.*, p. 9.

1230_ *ibid.*, para. 43.

1231_UN Doc. A/HRC/27/49 (2014), para. 72.

1232_UN Doc. A/HRC/39/46 (2018).

가 포함되어 있다.¹²³³ 강제실종 실무그룹이 2018년까지 북한에 정보 공개를 요청한 강제실종 사례는 총 233건이다.¹²³⁴

강제실종자들 중엔 물리적인 강압 또는 거짓 설득을 통해 납치된 자들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북한 내로 이동한 자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모두 결과적으로 북한을 떠날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점에서 강제실종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은 북한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박탈당하였으며, 고문 및 그 밖에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상실하였다. 강제실종된 모든 사람들은 삼엄한 감시하에 관리되고 있으며, 교육이나 취업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¹²³⁵ 유엔 인권이사회는 COI 보고서 발표 이후 채택한 2014년 북한인권결의에서 북한 당국에 의한 조직적 납치와 송환 거부 및 강제실종을 비난하면서,¹²³⁶ 북한 당국에게 이들이 즉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라고 촉구하였다.¹²³⁷ 이후 다수의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에서도 강제실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¹²³⁸

1233_ UN Doc. A/HRC/WGEID/114/1 (2018).

1234_ UN Doc. A/HRC/39/46 (2018).

1235_ UN Doc. A/HRC/25/63 (2014), para. 68.

1236_ UN Doc. A/HRC/RES/25/25 (2014), para. 2(f).

1237_ *Ibid.*, para. 3(f).

1238_ UN Doc. A/HRC/RES/28/22 (2015), paras. 1(f), 2(f).

(라) 북한 당국의 납북자 이용

납북자들 중 일부는 대남방송이나 간첩교육에 이용되었다. KAL기 승무원이었던 성경희, 정경숙 등은 대남방송에 이용되어 왔다. 또한, 납북자들은 남파간첩을 훈련시키는 교원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1993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납북자 중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20여 명이 평양 용성구역 소재 ‘이남화 혁명관’에 배치되어 남파간첩을 교육시키는 교원으로 활동하였다. ‘이남화 혁명관’은 남파간첩 양성기관인 중앙당 3호 청사 내 작전부가 관할하는 ‘김정일정치군사대학(1992년 개칭)’ 출신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실상과 한국에서의 생활방법 등을 훈련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축소된 한국모형관이다. 또한, 북한은 납북자들 가운데 일부를 대남사업에 종사시키고 있다. 2000년 6월에 탈북, 귀환한 납북어부 ○○○의 증언에 따르면, 납북어부들 가운데 일부는 일정 교육을 받은 후 대남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자신도 대남간첩교육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¹²³⁹

그러나 이용가치가 없는 나머지 납북자들은 한 때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납북자의 정치범수용소 수용 사실이 확인된다. 국제앰네스티가 1994년에 발표한 『북한정치범에 관한 새로운 정보』라는 특별보고서에는 1990년 당시까지 ‘승호리수용소’에 수용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납북자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1999년 1월 국가정보원은 이재환 등 납북·월북자 22명이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다고 밝혔다.

1239_ 북한이탈주민 ○○○, 2004년 1월 7일, 서울에서 면접.

다. 국군포로

(1) 현황

국군포로는 적국 등에 억류되어 귀환하지 못한 대한민국 군인을 의미한다. 한국전쟁 정전 당시 유엔군사령부에서 추정한 국군실종자는 8만 2,000여 명이었으나, 1953년 4월부터 1954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친 전쟁포로 상호 교환에 의해 최종 송환된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하며, 이에 따라 다수의 국군포로가 북한에 억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¹²⁴⁰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 중 귀환자는 1994년 고(故) 조창호 중위를 시작으로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 기준으로 귀환 국군포로는 80명, 국군포로 가족은 430여 명에 이른다. 귀환 국군포로의 출신지는 함경북도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국군포로 대부분이 함경북도 지역의 탄광에 배치되어 노역에 종사하였기 때문이다. 2011년 이후부터는 귀환한 국군포로가 없다. 국군포로의 고령화, 김정은 정권의 탈북 감시 강화 등으로 국군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¹²⁴¹

1240_ 대한민국 국방부, 『2012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2), p. 110.

1241_ 대한민국 국방부, 『2020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20), p.253.

표 V-24 연도별 귀환 국군포로 현황 (단위: 명)

연도	귀환포로	누계	연도	귀환포로	누계
1994	1	1	2005	11	59
1997	1	2	2006	7	66
1998	4	6	2007	4	70
1999	2	8	2008	6	76
2000	9	17	2009	3	79
2001	6	23	2010	1	80
2002	6	29	2011~2020	-	80
2003	5	34	합계		80
2004	14	48			

출처: 국방부(2020.12.31. 기준).

표 V-25 국군포로(사망자 포함) 출신지 현황

구분	함경 북도	함경 남도	평안 북도	평안 남도	양강도	자강도	황해 북도	황해 남도	강원도	총계
인원 (명)	60	9	0	3	4	1	1	1	1	80
비율 (%)	75.0	11.25	0.0	3.75	5.0	1.25	1.25	1.25	1.25	100

출처: 국방부(2020.12.31. 기준).

(2) 인권 문제

(가) 가족결합권 침해

국군포로는 이산가족, 납북자와 마찬가지로 가족결합, 서신 교환, 상봉 등에 있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유엔군 측은 정전협정에 따른 전쟁포로 상호교환 직후부터 1960년대까지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해결을 북한 측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국군포로는 전원 중립국송환 위원회에 이관하였고, 강제역류 중인 국군포로는 단 한 명도 존

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¹²⁴²

국군포로의 상봉은 인도주의 차원과 가족결합권 실현 차원에서 조속히 실시되어야 한다. 2020년 들어 4명이 사망하면서¹²⁴³ 80명의 귀환 국군포로 가운데 생존해 있는 귀환 국군포로는 20명뿐이다. 모두 86세 이상의 고령이고 90세 이상도 11명에 달한다. 2018년까지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확인한 국군포로는 56명이며, 이 중 18명이 가족과 재회하였다.¹²⁴⁴

표 V-26 생존 국군포로 연령 현황

구분	86세	87세	88세	89세	90세	91세	92세	93세	96세	총계
인원(명)	1	1	3	4	2	5	1	2	1	20
비율(%)	5.0	5.0	15.0	20.0	10.0	25.0	5.0	10.0	5.0	100

출처: 국방부(2020.12.31. 현재).

표 V-27 사망 국군포로 연령 현황

구분	70세 이하	71세~75세	76세~80세	81세~85세	86세 이상	총계
인원(명)	1	4	11	23	21	60
비율(%)	1.7	6.7	18.3	38.3	35.0	100

출처: 국방부(2020.12.31. 현재).

(나) 강제역류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일명 ‘제네바 제3협약’)은 적대행위가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전쟁포로

1242_ 대한민국 국방부, 『2012 국방백서』, p. 110.

1243_ “58년만에 북한 탈출한 국군포로, 88세로 영면,” 『조선일보』, 2020. 12. 11.

1244_ 대한민국 국방부, 『2020 국방백서』, p. 253.

를 석방·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18조).¹²⁴⁵ 북한은 1957년 8월 27일 동 협약의 당사국이 되었다. 국군포로 존재 부인과 송환 거부는 전쟁포로의 석방 및 송환을 규정하고 있는 제네바 제3협약 제118조 위반이다. 전쟁포로의 즉각적인 석방 및 송환은 국제관습법상으로도 모든 국가의 의무로 간주된다.¹²⁴⁶ 이는 당시 국제관습법으로 확립된 규범이었다.¹²⁴⁷

(다) 강제노동

귀환 국군포로와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국군포로들은 1950년 한국전쟁 시기 인민군으로 재편입되거나, 휴전 이후 1954년부터 1956년 사이에 대부분 탄광, 기업소, 농촌 지역에 집단배치되어 전후복구 작업에 동원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2007년 4월 12일 발표된 미 국방부 비밀해제 문서 「한국전쟁 포로들의 소련 이동 보고서」¹²⁴⁸에 따르면 수천 명의 국군포로들이 1951년 11월~1952년 4월 오희츠크 등 소련 극동 항구로 이송된 뒤 야쿠츠크 주변의 콜리마 수용소 등으로 보내졌다.¹²⁴⁹ 추크치해 지역으로 이송된 포로들은 최소 1만 2,000명

1245_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Geneva Convention Relating to the Treatment of the Prisoners of War,” (August 12, 1949).

1246_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Customar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 451, 재인용: 백법석, “북한에 의한 강제실종과 인도에 반한 죄,”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북한에 의한 납치 및 강제실종』, p. 63.

1247_ UN Doc. A/HRC/25/CRP.1 (2014), para. 1143, footnote 1626.

1248_ 미국과 러시아가 냉전 종식 후 한국전쟁 당시 미군 포로의 러시아 생존 여부 확인 및 유해 발굴, 반환을 위해 공동으로 만든 ‘마려 합동 전쟁포로 및 실종자 위원회’가 조사활동 결과의 하나로 1993년 8월 26일 작성한 것이다.

1249_ 『연합뉴스』, 2007.4.13.

에 달하고, 도로 공사와 비행장 건설 등에 동원돼 사망률이 높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2007년 12월 18일 한국 국방부는 미 국방부 문서작성자를 비롯해 국군포로 소련 이송을 주장한 구소련 장성 강상호의 아들, 카자흐스탄 거주 한국전 참전 고려인 10여 명, 귀환 국군포로, 러시아 체류 탈북자 100여 명의 증언, 러시아 군사사연구소 방문 등을 통해 확인했으나, 국군포로 이송을 확인할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국군포로의 대부분이 함경북도 및 함경남도 지역 탄광에 배치되었던 것은 당시 북한에서 탄광 노동자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일반 주민들이 탄광 노동을 기피하였고, 탄광의 경우 생활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용이하였기 때문이다.¹²⁵⁰ 통일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군포로들은 함경북도 온성군 상화청년탄광(안화식, 우광윤, 장○○, 홍승로, 박인공, 김상진, 신상원, 최○○, 옥삼식, 배명조, 백부재, 정원모, 리복만), 무산탄광(리갑도, 강영호, 리희근), 회령시 세천군 학포탄광(장용연, 류태인, 오○○, 이증호, 정수환) 등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탄광 노동자로 배치된 국군포로들은 하루 2교대로 12시간씩 탄광 일을 하였으며, 함경북도 일대의 탄광에 배치된 국군포로는 한때 1,100~1,200명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국군포로들은 한국전쟁 종료 이후 청진 25호 관리소에 수용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청진 25호 관리소는 한국전쟁 이후 포로수용소로 사용되다가 후에 정치범수용소로 용도가 변경되

1250_『조선일보』, 2013.4.30.

었다.¹²⁵¹ 국군포로들은 1956년 6월 공민증을 받고 집단수용소에서 사회로 배치되었으나, 대부분이 집단수용소 시절 생활 하였던 탄광에 배치받음으로써 노동력으로 활용되었다.

2001년에 탈북한 귀환 국군포로 한모(86)씨와 노모(91)씨는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47년에 이르는 강제노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016년 10월에 제기했고, 2020년 7월 7일에 승소했다.¹²⁵² 이어 국군포로 5명은 아오지 탄광 지역인 함경북도 경원군에서 51년간 탄광 생활을 하거나, 국군포로가 된 후 8번 탈북 시도를 하다 40년간 구금되어 있었다며 2차 소송에 참여했다.¹²⁵³ 2차 손해배상 소송은 민법상 불법행위, 정전협정상 포로 송환 의무 위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¹²⁵⁴

국군포로에 대한 강제노동은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 모두에 위반된다. 우선 국군포로에 대한 강제노동은 제네바 제3협약 제13조, 제51조, 제52조에 위반된다. 제네바 제3협약은 전쟁포로는 항상 인도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13조), 적절한 노동조건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1조). 그리고 제네바 제3협약은 전쟁포로에 대해 건강에 해롭거나 위험한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제52조). 또한 국군포로에 대한 강제노동은 강제노동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자유권규약 제8조 제3항,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에 대한 인도적인 처우를 규정하고 있는 자유권규약 제10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된다.

1251_ 북한이탈주민 ○○○, 2012년 9월 27일, 서울에서 면접.

1252_ “47년 강제노역 탈북 국군포로, 북한·김정은 상대 손해배상 승소,” 『이데일리』, 2020. 7. 7.

1253_ “국군포로 5명, 北 김정은 상대 2차 소송 “6억씩 배상하라,” 『조선일보』, 2020. 9. 2.

1254_ “탈북 국군포로 5명, 北 김정은 상대로 2차 손해배상…2100만 원씩 청구,” 『동아일보』, 2020. 9. 2.

제13조	포로는 항상 인도적으로 대우되어야 한다. 억류하에 있는 포로를 사망케 하거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여하한 억류국의 불법한 작위 또는 부작위도 금지되어야 하며, 이는 또한 본 협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된다. (이하 생략)
제51조	포로들에게는 특히 숙소, 음식, 피복 및 장비에 관하여 적절한 노동조건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한 조건은 유사한 노동에 종사하는 억류국의 국민이 향유하는 조건보다 불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제52조	포로는 스스로 희망하지 않는 한 건강에 해롭거나 위험한 성질의 노동에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하 생략)

(라) 국군포로 및 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국군포로와 가족들은 북한에서 사회적 차별을 받았다. 거주 지역과 직장 선택의 제한을 받았으며, 국군포로들의 자녀들은 입당과 진학, 직장 선택에 차별을 받았다.¹²⁵⁵ 예외적으로 국군포로 출신이라도 상황에 따라 입당하거나 큰 차별 없이 생활한다는 증언도 있다. 최근에는 북한에 생존한 국군포로와 가족의 증언 사례가 거의 수집되지 않고 있어 오랫동안 고착되어 온 포로병 출신과 가족에 대한 차별이 불식되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국군포로와 그 가족 또는 친족을 사회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자유권규약(제2조 제1항) 및 사회권규약(제2조 제2항)에 위반될 수 있다.

1255_NKHR2015000095 2015-05-12.

표 V-29 국군포로와 가족들에 대한 차별 사례

증언내용	증언번호
할아버지가 국군포로라는 이유로 고모부의 직장배치 시 차별을 당했음.	NKHR2014000093 2014-07-15
조카는 중앙당 5과에 선발되었으나, 조카의 할아버지가 포로교환병이라는 이유로 합격이 취소되었음.	NKHR2014000168 2014-10-07
할아버지가 포로병 출신이어서 토대가 매우 나빴으며, 다른 가족들이 입당 및 간부 등용, 승진에서 차별을 당했음.	NKHR2016000099 2016-06-14

(3) 귀환 국군포로 대우 및 지원

한국 정부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포로가 된 날부터 대한민국에 귀환하여 전역한 날까지의 보수, 연금, 정착금 및 주거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군포로가 억류지인 북한에서 사망한 경우, 국군포로의 배우자와 자녀가 한국으로 입국할 때에는 일반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되는 정착지원금과 별도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국방부는 2008년 12월 31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제6조의2)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8년 말부터 귀환 국군포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귀환 국군포로들은 민간 전문기관의 교육을 통해 생활에 필요한 기본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정서적 안정을 얻고 있다.¹²⁵⁶ 2013년 3월 22일 개정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은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에

1256_ 대한민국 국방부, 『2012 국방백서』, p. 112.

관한 조항(제5조의2), 역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취업지원(제15조의2), 고공 등의 이용지원(제15조의3),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제15조의4) 규정을 신설하여 국군포로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및 예우를 강화하였다.

표 V-30 귀환 국군포로(사망자 포함)의 거주지 현황

구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남	충북	대구	경북
인원(명)	22	1	20	5	2	0	1	4	6
비율(%)	27.5	1.3	25.0	6.3	2.5	0.0	1.3	5.0	7.5

구분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총계
인원(명)	5	2	6	1	3	2	0	80
비율(%)	6.3	2.5	7.5	1.3	3.8	2.5	0.0	100

출처: 국방부(2020.12.31. 기준).

표 V-31 생존 국군포로의 거주지 현황

구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충남	충북	대구	경북
인원(명)	6	0	9	2	0	0	0	1	0
비율(%)	30.0	0.0	45.5	10.0	0.0	0.0	0.0	5.0	0.0

구분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총계
인원(명)	1	0	0	0	1	0	0	20
비율(%)	5.0	0	0.0	0.0	5.0	0.0	0.0	100

출처: 국방부(2020.12.31. 기준).

라. 평가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는 국제인도법이 적용되는 인도주의 사안인 동시에 국제인권법이 적용되는 인권문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산가족은 국제인도법상 가족권(제네바 제4협약 제27조)을 침해받고 있다. 또한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

포로는 가족결합권 즉, 가정이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자유권규약 제17조)와 가정을 구성하고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자유권규약 제23조)를 침해당하고 있다.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의 가족결합권 실현을 위해서는 전면적인 생사확인, 상봉 정례화, 상봉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 2019년 제3차 UPR에서 대한민국은 가족 분리 피해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했고,¹²⁵⁷ 북한은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¹²⁵⁸ 그러나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이산가족 교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북한의 전시 민간인 납치 및 억류행위는 민간인의 강제이송 및 억류를 금지한 제네바 제4협약 제49조와 제79조 위반이다. 그리고 국군포로의 존재부인과 송환거부는 전쟁포로의 석방 및 송환을 규정하고 있는 제네바 제3협약 제118조 위반이다. 또한 국군포로에 대한 강제노동은 제네바 제3협약상의 인도적으로 대우 받을 권리(제13조), 적절한 노동조건을 부여받을 권리(제51조), 건강에 해롭거나 위험한 성질의 노동에 이용되지 않을 권리(제52조) 위반이며, 자유권규약상의 강제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제8조), 자유를 박탈당한 상황에서 인도적 처우를 받을 권리(제10조) 위반에 해당된다. 또한 월남자 가족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의 사회적 차별은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사회권규약 제2조와 자유권규약 제2조에 위반될 수 있다. 한편, 납북자

1257_UN Doc. A/HRC/42/10 (2019), para. 126.149.

1258_UN Doc. A/HRC/42/10/Add.1 (2019), para. 9(a).

가운데는 강제실종의 피해자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9년 UPR에서 북한은 납북자, 전쟁포로, 강제실종 등에 관련된 권고는 ‘즉각거부’ 하였다.¹²⁵⁹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의 진전을 위해서는 남북 간의 정치 상황과 이 문제들을 분리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북한은 권고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제기된 현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의 대화와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1259_ UN Doc. A/HRC/42/10 (2019), paras. 127, 127.30, 127.31, 127.51~127.53.

북한인권백서

2021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값 21,000원

 통일연구원



9 791165 890438

ISBN 979-11-6589-043-8